

ISSN 1229-1161

북한연구학회보

제21권 제1호

2017년 여름



북한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북한연구학회 임원진

(2017년)

회 장	김석향(이화여대)
차 기 회 장	김병로(서울대)
고 문 (전임회장)	강성운(제1-5대), 김동규(제6대), 강신창(제7대), 최완규(제8대), 전현준(제9대), 이상만(제10대), 유호열(제11대), 백영옥(제12대), 김영수(제13대), 최대석(제14대), 고유환(제15대), 류길재(제16대), 최진욱(제17대), 박종철(제18대), 조성렬(제19대), 이우영(제20대)
부 회 장	서울,경기,강원(12) : 구분학(한림대), 권영정(통일교육원), 김기석(강원대), 김수암(통일연구원), 김성수(성균관대), 김성민(건국대), 김용현(동국대), 김용호(연세대), 김현중(한국외대), 양무진(북한대), 이기동(전략연), 이승현(입법조사처), 임강택(통일연구원), 전우택(연대의대), 조동호(이화여대), 조봉현(가온), 홍순직(현대경제연)
부 · 울 · 창 · 경남북(6)	권오윤(동국대), 김용복(경남대), 김정수(대구대), 김창근(부산교대), 김태일(영남대), 신정화(동서대), 이성봉(부경대), 주봉호(동의대), 진희관(인제대)
대전 · 충남북(3)	김도태(충북대), 김학성(충남대), 송정호(우석대), 윤미량(공군사관), 이춘근(STEPI)
광주 · 전남북(4)	기광서(조선대), 김재기(전남대), 김창희(전북대), 안문석(전북대)
총무위원회	이사 조영주(동국대), 장인숙(남북하나재단), 안경모(국방대)
연구위원회	이사 전미영(이화여대), 이상숙(외교안보연), 이상근(이화여대), 이주철(KBS)
대 외 협 력 위 원 회	이사 최용환(경기연), 박영자(통일연구원), 이석(KDI), 임수호(대외경제정책연), 김경목(초쿠바대), 김정수(통일교육원), 박영민(한국외대), 박정란(아스토니아대), 박정진(경남대), 박지연(수출입은행), 유현정(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승열(입법조사처), 이유진(산은), 정일영(성균관대)
편집위원회	위원장 김연철(인제대)
	위원 고경민(제주대), 김성경(북한대학원대), 김성수(성균관대), 박정진(일본 쓰다쥬쿠대), 박찬석(공주교대), 신정화(동서대), 정은미(서울대통일평화연), 최지영(한국은행), 송영훈(강원대)
한반도국제포럼 (KGF) 2017 조직위원회	위원장 김석향(이화여대)
	사무처장 전영선(건국대)
	위원 윤보영(동국대)
분과위원회	정치외교분과 김일기(전략연) 국제안보분과 최종진(연세대)
	과학기술분과 김유향(입법조사처) 법 제도 분과 이규창(통일연)
	경제분과 김일한(동국대) 산업분과 이상준(국토연)
	문화분과 김정수(통일교육원) 사회분과 김진환(통일교육원)
	통일교육분과 박찬석(공주교대) 인도인권분과 한동호(통일연)
	보건복지분과 전우택(연세대) 여성가족분과 이수정(덕성여대)
감 사	김갑식(통일연구원), 박희진(동국대)
소 수 자 연 특 별 위 원 회	위원장 현인애(통일연구원)
	위원 김성경(북한대), 신호숙(남북하나재단), 이선경(이화여대), 이정재(홍콩대), 주승현(기전대), 전연숙(남북하나재단), 전정희(하나원), 정경자(UTS), 정은미(서울대), 채정희(충신대)
사 무 국	사무국장 김미주(이화여대)
	사무처장 박민주(이화여대), 유선아(이화여대)
이 사	고재홍(전략연), 구갑우(북한대), 권오국(치안정책연), 김광웅(방송통신대), 김귀옥(한성대), 김동엽(경남대), 김동한(법과인권연구소), 김병조(국방대), 김보근(한겨레연), 김수민(선문대), 김연수(국방대), 김영희(산은), 김원식(전략연), 김종수(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김중호(수출입은행), 나희승(철도기술연), 남광규(고려대), 동용승(삼성경제연), 박봉규(공사), 박인휘(이화여대), 박정원(국민대), 박현선(이화여대), 변상정(전략연), 서보혁(서울대 통일평화연), 신중대(북한대학원), 안제노(전략연), 안병민(교통연), 안정식(SBS), 양문수(북한대), 오경섭(통일연), 우승지(경희대), 이소희(한양여대), 이수석(전략연), 이영훈(SK연), 이정철(송실대), 이창희(동국대), 이호명(국방연구원), 임재천(고려대), 장용석(서울대 통일평화연), 장형수(한양대), 정낙근(여의도연), 정성임(육사), 정성장(세종연), 정지웅(통일미래사회연구소), 조정아(통일연구원), 장용훈(연합), 차문석(통일교육원)

북한연구학회보 안내

북한연구학회는 『북한연구학회보』를 다음 기준에 의해 출판하고 있습니다.

- (1) 북한연구학회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보에 게재를 신청한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 (2)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기타 학회보와 관련된 사항은 『북한연구학회보』 본 호(제21권 1호) 권말에 수록되어 있는 <『북한연구학회보』 발행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본 학회보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nk-study@naver.com

북한연구학회보

제 21 권 제 1 호

2017년 여름

목 차

‘조선민족’ 개념의 형성과 변화	최선경·이우영/ 1
북한 최고지도자의 이미지, ‘아버이’ 성격 분석연구: ‘이미지의 상징화’ 개념적용 및 ‘메타포-상징적 이미지’유형 평가	정교진/ 25
불가리아 사유화 정책과 시사점 연구	탁용달/ 53
통일이후 독일주민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 삶의 만족도와 스트레스의 영향을 중심으로	양계민/ 81
북한의 주민 일상에 대한 법적 통제: 비사회주의적 행위와 범죄규정화를 중심으로	황의정/ 115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전략과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	임상순/ 151
‘비판적 북한학’ 시론: 사회비판이론의 관점에서	김원식/ 179
마음의 통합을 위한 남북한 주민 의식 비교: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최순미/ 203
『북한연구학회보』 발행 규정	227
『북한연구학회보』 연구윤리 규약	232

‘조선민족’ 개념의 형성과 변화

최 선 경*·이 우 영**

목 차

- | | |
|---|--------------------------------------|
| I. 들어가며 | IV. 북한의 ‘민족’ 재창조:
1990년대~2000년대 초 |
| II. ‘민족’의 기원과 개념 | V. 나가며 |
| III. 북한 ‘민족’의 개념 형성: “피줄, 언어,
문화, 지역의 공통성” | |

[국문요약] 이 연구는 북한 문헌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민족’ 개념의 변천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건국 이래, 북한은 ‘민족’ 개념을 변화시켜 왔으며, 이는 북한의 대내외적 전환점을 반영한다.

북한의 ‘민족’ 개념의 원형은 스탈린의 민족 이론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북한의 ‘민족’ 개념은 탈(脫)스탈화 과정을 거쳐, ‘혈통’ 요소를 강조하게 되었고, 1980년대 정립된 개념 정의가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민족 범주를 해외 동포로 확장하였고 조선민족을 동일한 인종으로 구성된 단일민족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단군 신화’를 (재)창조하기에 이른다. 북한의 ‘민족’ 개념 (재)구성은 전통의 발명을 통한 ‘근대 국가 건설’의 과정이자, ‘초국가적 민족 만들기’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조선민족, 민족(주의), 개념사, 근대 국가 건설, 초국가적 민족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3A2043571).

**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이메일: cuishanjing@hanmail.net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메일: wylee@kyungnam.ac.kr

I. 들어가며

김정은 정권은 2013년부터 신년사에서 통일의 주체는 “북과 남, 해외 전체의 조선 민족”임을 천명해오고 있다.¹⁾ 올해 1월 북한은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기도 했다.²⁾ 건국 이래, 북한은 ‘민족’에 대한 개념을 변화시켜 왔는데, 이것은 단순한 개념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북한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인식 및 미래에 대한 전망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민족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계의 문제는 민족에 대한 ‘개념 정의’ 또는 민족의 ‘경계 짓기’가 자연에 속하는 일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민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문제는 북한의 민족주의적 열망이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리고 민족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자각과 의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지 구성원들 사이에서 동일 민족이라는 자각과 그에 따르는 규범적 함축이 수반되어야 하나, 이 글에서는 민족에 대한 ‘국가적 규정’만을 다루고자 한다.

북한은 ‘민족주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경계하면서도, ‘민족’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의해왔다.³⁾ 북한이 출판하는 민족 관련 텍스트(text)는 북한의 민족에 대한 개념(재)구성 과정을 보여주는 주요 자료들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사전류, 최고지도자의 저작 및 논문(로작), 역사서, 『로동신문』 등을 중심으로 북한 문헌 자료 속의 ‘민족’ 범주를 규정하는 내용들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텍스트가 생산된 시점의 컨텍스트(context) 속에서 텍스트를 읽으며, 북한이 ‘민족’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그 개념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왔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북한의 민족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이다. 특별히 북한은 1990년대 말에서

1) 『로동신문』, 2013년, 1월 1일, 2면, 2014년 1월 1일, 1면, 2015년 1월 1일, 1면, 2016년 1월 1일, 1면, 2017년 1월 1일, 1면.

2) 『로동신문』, 2017년 1월 19일, 2면.

3) 북한은 1970년대까지 ‘민족주의’라는 용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해왔으며, 자주성과 민족적인 것의 옹호를 위해 북한이 선택한 개념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민족주의를 ‘부르조아의 착취 논리’로 비판적으로 보고 있던 입장에서 1992년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진보적 사상’으로 격상하기에 이른다. 전미영, “통일담론에 나타난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3집 1호 (2003), p. 194. 1991년 김일성은 처음으로 ‘민족주의’ 개념을 사용했고, 스스로를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이고 국제주의자”라고 선언했다. 『로동신문』, 1991년 8월 5일, 1면.

2000년대 초에 걸쳐 기존의 민족 담론과는 다른 지점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진 일련의 로작과 역사서를 발행하였다. 이 기간 출간된 북한의 공간 문헌에서는 북한이 정의하는 민족의 징표인 “피줄, 언어, 문화, 지역의 공통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민족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북한에서 생산된 문헌 분석을 통해 민족 개념의 형성 과정뿐만이 아니라, 그 범주의 변화와 활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II. ‘민족’의 기원과 개념

코젤렉(Koselleck)은 “개념이 역사적으로 이해되듯이, 역사는 그 개개의 개념들을 통해서 해석된다: 개념사는 개념과 역사의 수렴을 테마로 한다”⁴⁾고 설명한바 있다. 개념은 곧 역사를 인식하는 매개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재)구성 및 역사의 변천과도 연결되는 주된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개념에 대한 연구는 명칭이 갖고 있는 고유의 의미론적 역사(의미사)와 그 대상이 만들어져 실제로 진행된 역사(진행사) 사이를 왕복하며 통시적 차원과 공시적 차원을 함께 엮어 (재)구성하는 일이 된다.⁵⁾ ‘개념’은 분류를 가능하게 하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며, 비교의 표준을 제공하고, 대상에 대한 특정한 태도를 생산하게 한다.⁶⁾ 예컨대, ‘민족’이라는 개념도 ‘민족’과 ‘비민족’인 것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민족적’인 것과 ‘비민족적’인 것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며, ‘민족’ 중심으로 ‘비민족’을 가늠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민족’과 ‘비민족’에 대한 집합적 태도를 만들어내는 이데올로기적 작용을 한다. 개념의 기능에서 알 수 있는 점은 하나의 개념이 이항대립적인 개념을 만들어내고, 다른 개념과의 차이를 통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개념이 한번 형성되면, 개념은 개념의 요소들을 동질하다고 가정하게 되므로 개념은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의 차이를 억누르게 된다.

4) Reinhart Koselleck, “Richtlinien für das Lexikon politisch-sozialer Begriffe der Neuzeit,” *Archiv für Begriffsgeschichte*, Vol. 11(1967), p. 85. 이진일, “개념사의 학문적 구성과 사전적 기획 사이에서: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제7호 (2011), p. 136에서 재인용.

5) 코젤렉 따르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경과나 관계를 규정하는 용어들은 다양한 역사적 움직임이나 변화와 관련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개념의 형성은 철저히 경험의 변화에 대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 개념들을 매개하는 것은 언어이다. 개념 속에는 한 사회나 시대의 입장이 녹아 있으며,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 이진일, “개념사의 학문적 구성과 사전적 기획 사이에서: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을 중심으로,” pp. 136-137.

6) 스튜어트 홀 편, 전효관 외 옮김, 『현대성과 현대문화』 (서울: 현실문화연구, 2001), pp. 407-408.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의 기원이 근대 서구 네이션(nation)에 있으며 민족 국가(nation-state)들의 세계 체제 출현 역사와 궤를 같이 해왔고⁷⁾ 국내에서는 20세기 초반 ‘민족’이라는 번역어로 수용되었다.⁸⁾ 따라서 ‘민족’의 개념에 있어서 서구의 ‘네이션’과 한국의 ‘민족’ 개념 간에는 개념사적 간극이 존재하며,⁹⁾ 한국적 맥락에서의 민족 개념은 네이션, 종족, 인종 개념이 뒤섞여 있다.¹⁰⁾ 또한 한(韓)민족의 개념 속에는 국가적인 것, 종족적인 것, 남북공동체 지향적인 것이라는 세 차원의 의미망이 상호 연결되어있기도 하다.¹¹⁾ 따라서 네이션(nation)을 ‘민족’으로 번역할 때, 역사적 맥락의 차이로 의미상의 ‘미끄러짐’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북한의 ‘민족’ 개념을 양자의 개념사적 간극과 북한적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네이션의 기원에 대해서는 원초론(primordialism)과 근대론(modernism)의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해왔다. 양 캠프 안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네이션이란 실체를 ‘에스니’와 같이 변화하지 않는 본질적인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데올로기적인 구성물로서 변화 가능한 것으로 보느냐에 있다.¹²⁾ 앤서니 스미스(A. Smith)는 민족이 근대적인 현상임을 인정하면서도, 근대적 네이션 이전의 ‘역사적 연속성’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근대 민족이라는 현상이 발생한 근저에는 일정한 종족적 공동체들이 근대 이전에도 존재했다는 것을 논증했다. 이러한 집단을 ‘에스니(ethnie)’라고 지칭하며, “공통된 조상에 관한 신화, 공유된 역사적 기억들, 하나 이상의 공통된 문화의 요소들, 하나의 구체적인 ‘모국’과 함께 한 연합체,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을 관통하는 연대감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¹³⁾라고 정

7) 신기욱, 이진준 옮김,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파주: 창비, 2009), p. 24.

8) 박찬승, “한국에서의 ‘민족’ 개념의 형성,” 『개념과 소통』, 1권 1호 (2008).

9) 코젤렉은 이에 대해 개념들에 내포되는 긴장과 갈등은 역사 속에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각각의 경험 공간(space of experience)와 기대지평(horizon of expectation)이 상이한 방식으로 결합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Keith Tribe, “Translator’s Introduction,” in Koselleck, *Futures Past: On the Semantics of Historical Tim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4).

10) Gi-Wook Shin, James Freda, and Gihong Yi, “The Politics of Ethnic Nationalism in Divided Korea,” *Nations and Nationalism*, Vol. 5, No. 4 (1999), p. 469. 한국적 맥락에서 인종, 종족, 민족은 융합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족’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사용한 것은 보면 알 수 있다. ‘민족’은 ‘nation’이라는 뜻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지만 또한 ‘ethnie’나 ‘race’를 가리키기도 한다. 신기욱, 이진준 옮김,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p. 20.

11) 박명규, “네이션과 민족: 개념사로 본 의미의 간격,” 『동방학지』, 147권 (2009), pp. 27-65.

12) 강진웅, “대한민국 민족 서사시: 종족적 민족주의의 전개와 다양한 얼굴,” 『한국사회학』, 47권 1호 (2013), p. 193.

의하였다. 다시 말해, 민족이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근대적 산물이 되지만 동시에 이데올로기로 환원되지 않는 종족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어네스트 겔너(E. Gellner), 베네딕트 앤더슨(B. Anderson), 에릭 홉스봄(E. Hobsbawm)등¹⁴⁾은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 ‘발명된 전통(The Invention of Tradition)’ 등의 표현으로 민족이 ‘근대의 산물’이며, 민족의 출현이 ‘근대적 현상’임을 강조하였다. 앤더슨은 ‘상상된 공동체’로서의 민족은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구축물로서 국가에 의해 주조된 산물로 보았다. 홉스봄에 따르면, “민족이 민족주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가 민족을 만든다”¹⁵⁾는 것인데, 즉, 민족은 민족주의의 산물이며 민족주의가 18세기 이전에는 없었던 이데올로기적 운동이기 때문에 그것의 산물인 민족 역시 근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언어, 종족, 집합적 소속감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원형적 민족주의(proto-nationalism)의 요소들이 근대적 현상에 흡입될 수 있다고 보았다.¹⁶⁾

기본적으로 이 글은 민족이 근대론적 관점으로 민족을 단일하면서도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힘에 의해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구성물로 보고자 한다.¹⁷⁾ 이와 함께 스미스의 ‘에스니(ethnie)’ 논의를 북한적 맥락에서의 민족 개념 형성과 변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민족을 근대적 구성물로 바라보되, ‘민족’의 의미망에 종족적 요소를 확장시켜온 북한의 민족 개념 재구성 과정을 전근대적 연속성 이론에 기대어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원초론과 근

13) Anthony D. Smith,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Oxford: Blackwell, 1986), p. 32; Anthony D. Smith, *National Identity* (NV: University of Nevada Press, 1991), p. 21.

14)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y: Reflection on Origins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83);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서울: 나남, 2002); Ernest Gellner, *Nations and Nation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어네스트 겔너, 이재석 역,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예하, 1988); Eric Hobsbawm,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1990); 에릭 홉스봄 (1990), 강명세 옮김,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15) 에릭 홉스봄, 강명세 옮김,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p. 26.

16) 에릭 홉스봄, 강명세 옮김,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던칸(J. Duncan)은 홉스봄의 원형적 민족주의 개념을 고려와 조선의 전근대사회로 투영시킴으로써 근대 민족의 전근대적 연속성이 한국의 근대 민족과 민족국가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John Duncan, “Proto-Nationalism in Pre-modern Korea,” in Sang-Oak Lee and Duk-Soo Park, eds., *Perspectives on Korea* (Sydney: Wild Peony Press, 1998), pp. 198-221.

17) 버디리(Verdery)는 정치적 행위와 담론을 통해 구성되는 ‘상징(symbol)’으로서의 민족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Katherine Verdery, “Whither ‘Nation’ and ‘Nationalism,’” p. 230 in Gopal Balakrishnan, eds., *Mapping the Nation* (London·New York: Verso, 1996).

대론의 스펙트럼 안에서 이 글은 북한의 민족 개념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탐색하며, 그에 대한 해석이 어떠한 방식으로 동족 의식을 창출하면서, 지배 이데올로기로 활용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Ⅲ. 북한 ‘민족’의 개념 형성: “피줄, 언어, 문화, 지역의 공통성”

1. 북한 ‘민족’ 개념의 기원

사회주의에서 ‘민족’에 대한 입장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로 대변되며,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¹⁸⁾ 민족은 ‘만국 노동자의 단결’과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소멸될 것이라 예견되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족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며, 초기 북한의 ‘민족’ 개념은 민족문제를 집대성한 스탈린의 이론을 차용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민족’ 개념 변화 과정은 스탈린의 이론에서 벗어나, 점차 종족적 유대를 강조하고 남과 북을 아우르는 통일 지향적 성격을 띠게 된다. 그 변화 과정에서 민족을 초월하고자 했던 사회주의적 가치는 민족주의적 가치와 경합하여 새롭게 (재)구성되어왔으며, 이 과정은 북한적 맥락과 특수성을 담지한다. 북한 체제의 형성 과정에서 스탈린주의가 미친 영향은 지대하며¹⁹⁾, 민족 개념 또한 “민족은 언어, 영토, 경제 생활 및 문화 공동체 내에 구현된 심리 구조 등을 지닌 역사적으로 진화한 안정된 공동체”²⁰⁾라는 스탈린의 민족 개념 4개 구성 요소를 그대로 차용한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957년 발행된 『대중정치용어사전』은 민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민족이란 사회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언어, 지역, 경제 생활 및 문화의 공통성에 의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집단이다. 이 네 개의 공통성 중 어느 하나가 빠져도 그것은 민족으로는 되지 못한다. 때문에 영국인과 미국인은 공통된 언어

18) 마르크스·엔겔스, “공산당선언,” Karl Marx 외, 편집부 편역,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민족이론: 민족해방이론의 주체적 정립을 위하여』(서울: 나라사랑, 1989).

19) 정성장, “김일성체제의 이념적·문화적 기원과 성격,” 『고향정치학회보』, 1권 (1997), pp. 113-118.

20) Joseph Stalin, *Marxism and the National Colonial Question*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35).

즉 영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들은 한 민족을 이루지 못한다. 이들에게는 언어의 공통성을 제외한 기타의 공통성이 없기 때문이다.²¹⁾(강조는 필자)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민족’을 이루는 조건으로 스탈린의 4개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결여되면 민족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으로 간주했다. 또한 언어를 제외한 다른 공통 요소의 결여로 인해 동일 민족이 될 수 없는 예로 영국인과 미국인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1961년에 발행된 『조선말사전』에서도 ‘민족’ 표제어에 동일한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다.²²⁾ 1960년대 중반까지도 북한은 민족을 “자본주의의 발생과 함께 발생한 역사적 산물”로 간주하는 등, 민족이 근대적 현상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언어, 령토, 경제 생활, 심리적 상태(문화의 공통성에 의하여 표현되는)의 공통성에 의하여 오랜 역사를 거쳐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을 말한다(이 네 개의 공통성 중 어느 하나가 빠져도 그것은 민족으로 되지 못한다). 민족은 **자본주의의 발생과 함께 나타난 역사적 산물**이다. 민족에는 부르쥬아 민족과 사회주의 민족이 있다. 민족은 역사적 현상이므로 그 시초를 가질 뿐만 아니라 종말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가 실현되고 모든 민족들이 유일한 공산주의적 경제 체제를 가지게 되면 점차 민족들의 합류가 실현될 수 있다.²³⁾

이 해설에서 북한이 전 세계 공산주의의 실현으로 민족이 융합, 즉 소멸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민족을 인종과 같은 생물학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문화·역사적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60년대까지 북한은 민족의 필수적 구성 요소들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부르쥬아 민족’을 ‘사회주의 민족’과 구분하는 등 기본적으로 스탈린 민족 이론의 틀로 민족을 이해하고 있다.

2. 탈스탈린화와 ‘혈연’의 등장

북한 사전류에서 “피줄”의 구성 요소는 1973년 『정치사전』의 민족 표제어 정의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에 앞서 1964년 김일성은 ‘언어학자들과 한 대화’에서²⁴⁾

21) 『대중정치용어사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p. 114.

22) “언어, 령토, 경제 생활 및 문화의 공통성에 의하여 표현되는 심리적 상태의 공통성의 토대 위에 발생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 『조선말사전』 (평양: 과학원출판사, 1961), p. 736.

23) 『대중정치용어사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p. 173.

“조선인민은 피줄과 언어를 같이하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밝히며, 민족의 구성 요소로 ‘혈통’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표 1> 참조).²⁵⁾ 1973년 ‘혈통’ 요소의 추가는 64년 김일성의 ‘핏줄’에 대한 언급을 공식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64년 담화의 내용 중 ‘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²⁶⁾은 『철학사전(1970)』, 『정치사전(1973)』에서 인용 문구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지역적 분단과 상이한 경제공동체로 나뉘어진 남북한의 현실을 감안한 듯, 다른 요소들과 대등한 요소였던 언어의 공통성을 “민족을 특징짓는 표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로 차별화시킨 것이다.

〈표 1〉 1970년대 북한의 ‘민족’ 개념

	철학사전(1970년) ²⁷⁾	정치사전(1973년) ²⁸⁾
개념정의	언어, 지역, 경제생활, 문화와 심리 등에서 공통성을 가진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	언어, 지역, 경제생활, 혈통과 문화, 심리 등에서 공통성을 가진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
인용문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공통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입니다. 피줄이 같고 한 영토 안에서 살아도 언어가 다르면 하나의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공통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입니다. 피줄이 같고 한 영토 안에서 살아도 언어가 다르면 하나의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이러한 북한 ‘민족’ 개념의 탈(脫)스탈린화 과정에는 북한 지도부의 남북한 민족의 이질화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⁹⁾ 1960년대 이후 남북한의 경제 격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경제생활의 공통성을 강조하는 스탈린의 민족 이론은 더 이상 북한의 ‘하나의 조선’ 정책을 뒷받침할 기반을 제공하지 못했던 것이다. 남과 북은 이미 사회·문화·경제 측면에서 차이가 뚜렷해져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남북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언어와 혈연의 공통성을 강조함으로써 민족문제 인식과 통일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4)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언어학자들과 한 담화 1964년 1월 3일),”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 1.

25)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423.

26)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공통성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의 하나입니다. 피줄이 같고 한영토 안에서 살아도 언어가 다르면 하나의 민족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p. 1.

27)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256.

28)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423.

29) 김태우, “북한의 스탈린 민족이론 수용과 이탈과정,” 『역사와 현실』, 제44권 (2002), pp. 268-269.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주체사상의 체계화와 중소의 대립은 북한의 ‘민족’ 개념에 독자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김일성에 의해 제시된 주체사상은 반사대주의와 중국과 소련의 간섭배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 사회주의의 독자적 발전 전략이라는 성격을 띠었다.³⁰⁾ 이러한 주체사상의 체계화는 1970년대 들어와 북한의 공식 이데올로기였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전개되었다.³¹⁾ 당시 북한의 대내외적 변화는 ‘민족’ 개념 수정과 궤를 같이 했으며, 사전에 “민족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자주적인 정권을 가져야 하며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합니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등 민족의 자주성³²⁾이 강조되는 내용을 볼 수 있다. 73년 ‘혈통’ 요소의 등장은 1972년도 ‘7·4남북공동성명’³³⁾ 발표와 1972년 12월 『사회주의 헌법』이 공포된 이후의 시점이기도 하다. 수령 중심의 유일 체제가 확립되는 과정과 남북 관계의 전환점이 맞물리는 시기에 북한의 ‘민족’ 개념 또한 새롭게 규정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내외적 영향 하에서 ‘민족’이라는 의미망에 종족적 유대와 더불어 국가적인 것(statehood)이 결합되어 작동되기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2〉 1980년대 북한의 ‘민족’ 개념

	철학사전(1985년) ³⁴⁾	정치사전(1985년) ³⁵⁾
개념정의	피줄과 언어, 령토와 문화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생활단위이며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	오랜 역사적기간 자주성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피줄과 언어, 지역의 공통성으로 하여 결합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
인용문	“조선민족은 한 피줄을 이어받으면서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몇 천년 동안 한강토우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입니다”(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³⁶⁾	“민족을 피줄과 언어, 지역의 공통성으로 하여 결합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30) 정성장, “김일성체제의 이념적·문화적 기원과 성격,” p. 124.

31)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은 “맑스-레닌주의와 우리나라의 현실에 그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했다.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집 제2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 232-256.

32)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423.

33) 7.4 남북공동성명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3대 원칙으로 내세웠는데 여기서 ‘민족대단결’은 남북한 주민의 단결이 통일의 주요한 근거가 됨을 의미한다.

34)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246.

35) 『정치사전』 (평양: 과학백과출판사, 1985), p. 330.

1985년 발행된 철학사전과 정치사전에서는 “피줄”이 민족의 첫 번째 요건으로 등장하였고, ‘경제생활’과 ‘심리상태’ 요소는 삭제되는 것을 볼 수 있다(<표 2>참조). 스탈린이 민족을 근대의 산물로 간주하면서 ‘경제생활’을 민족 구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던 반면, 김일성은 ‘핏줄’과 ‘언어’를 민족의 구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위치시켰던 것이다.

이 시기 혈통의 생물학적 범주에 대해서는 “씨족, 종족의 인종적 특징을 계승하면서도 세대를 걸쳐 내려오는 계보적 유대관계”³⁷⁾로 보고 있으며, 그 혈연적 유대를 통해 “씨족, 종족 내부의 정치·경제·문화적 관계가 맺어지는 과정”³⁸⁾에서 민족이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스미스가 족류-상징주의(ethno-symbolism)라는 개념을 통해 전근대의 에스니와 근대의 네이션을 연결짓고자 했던 점에 있어서 유사하다. 그러나 네이션의 전근대적 현상 가운데 북한은 ‘하나의 혈통’에 치우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이 혈통 요소를 전면에 내세운 변화는 수령론에서 논의되어 왔던 수령과 인민 간의 ‘혈연적 관계’, ‘주체의 혈통’, ‘당의 혈통’, ‘혈통의 계승성’ 등의 연설들을 규범화할 수 있는 논리적 명분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⁹⁾ 후계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권력 세습의 논리를 혈연적 관점에 담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아직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 남북한을 하나의 공동체로 상징하고 독자적 민족국가를 형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를 드러낸다. 1985년 『정치사전』의 ‘민족’ 표제어 해설에서는 “조선민족은 원래 수천년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하나의 피줄로 이어 지고 하나의 강토,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 온 단일민족”⁴⁰⁾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와 ‘타자’를 구분하는 ‘자기정의’의 과정⁴¹⁾

36)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뻬루아메리타인민혁명동맹대표단과 한 담화(1983년 6월 30일, 7월 1일, 5일),” 『김일성저작선집 제3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47.

37)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246-247.

38) 『정치사전』 (평양: 과학백과출판사, 1985), p. 330.

39) 전미영, “북한의 지배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5권 1호 (2001), p. 246.

40) 『정치사전』 (평양: 과학백과출판사, 1985), p. 330.

41) 스미스는 민족의 형성에서 필수적인 과정들로 자기-정의(self-definition)의 과정, 신화와 기억 만들기(myth and memory making), 영토화(territorialisation), 공중 문화(public culture), 법률의 표준화(legal standardisation)가 있다고 하였다. Anthony D. Smith, “Ethno-symbolism,” Introduction, in Atsuko Ichijo and Gordana Uzelac eds., *When is the Nation? Towards an Understanding of Theories of Nationalism* (London·New York: Routledge, 2005), p. 97.

에서 북한이 ‘핏줄’을 강조한 배경에는 ‘민족’의 범주에 남한을 포함시키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민족 개념을 통일문제, 한반도 문제로 확장시킨 것으로 1민족 1국가를 주장하는 1980년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창립 방안과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⁴²⁾ 또한 “사람들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자주적인 생활을 마련해 나가는 사회생활의 기본 단위이며 혁명과 건설의 투쟁단위”⁴³⁾라는 어구로 ‘자주성’을 강조함으로써 주체사상의 자주성 원칙을 민족 단위로까지 확장하였다. 북한이 민족 개념에서 ‘혈통’ 요소를 전면적으로 내세운 시점은 1984년 북한이 남한으로 수해 이재민을 위해 구호물자를 보내고, 1985년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 고향 방문단 상호 교환을 결정한 시기와도 맞아 떨어진다.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조선말대사전』, 『조선대백과사전』, 『조선말사전』 등의 ‘민족’ 표제어 정의는 1980년대 형성된 개념 정의와 동일하다. “피줄, 언어, 문화, 지역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생활단위이며 사람들의 공고한 운명 공동체”⁴⁴⁾라는 80년대 정립된 개념이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 볼 수 있다.

IV. 북한의 ‘민족’ 재창조: 1990년대~2000년대 초

1990년대 북한의 민족 개념은 기본적으로 1980년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 말, 새롭게 민족이라는 범주를 재조명하기 시작했으며, 민족 문제를 다룬 다수의 논문(로작)⁴⁵⁾과 역사서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텍스트들이 생산된 시점의 배경에는 북한의 위기 상황이 존재했으며, 북한의 90년대 ‘국가적 위기’는 탈냉전을 배경으로 발생했다. 90년대 중반 김일성 사망과 김정일의 공식승계 과정에

42) 1민족, 1국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생활보다 혈통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김갑식, “북한 민족주의의 전개와 발전,” 『통일문제연구』, 제45호 (2006), p. 152.

43)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247.

44)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1229; 『조선대백과사전 제10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9), p.68; 『조선말대사전(증보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6), p. 1804; 『조선말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p. 561; 『조선말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p. 561.

45) 북한의 ‘로작’은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상적·이론적 지침을 담은 모든 출판물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명칭이다. ‘로작’은 “현시대와 공산주의 미래의 전역사적 시대를 대표하는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이 집대성되어 있으며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한 투쟁, 공산주의 건설 및 세계혁명 등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이론 실천적 문제들과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들이 밝혀져 있다”고 정의된다. 송승섭, 『북한자료의 수집과 활용』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1), pp. 48-49.

서 내부적으로 잇단 수해와 식량난으로 대량의 아사자가 발생하였고,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토대인 배급체제마저 마비되었다. 북한은 1996년부터 ‘고난의 행군’⁴⁶⁾을 선포하였고, 1999년부터 경제난 타개를 위해 ‘제2의 천리마 대진군’을 전개해 나갔다.

또 다른 한 축으로,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는 남북 관계가 호전된 시기이기도 하다. 1990년대 말 북한은 남한의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으로 대북 비로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차관급회담을 수용하고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하는 등의 태도 변화가 일어났다. 2000년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6.15 공동선언에서는 “통일문제를 나라의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천명하였으며, 이후 북한 문건에서 민족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⁴⁷⁾ 이 시기 발간된 북한의 공식 문헌은 다음과 같다.

〈표 3〉 ‘민족’ 관련 공간 문헌(1990년대~2000년대 초)

저자	제목	인용연도	발행연도	출판사
김일성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대표들앞에서 한 연설)		1990	조선로동당 출판사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89.12.28	1992.4.10	조선로동당 출판사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동경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 위원회	-	1997.6.19	조선로동당 출판사
김정일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 일을 이룩하자(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 단체대표자련석회의 50돐기념 중앙연구토론회 에 보낸 서한)	1998.4.18	1998.4.19	조선로동당 출판사
김정일	민족문제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	1960.10.4	1999.1.10	조선로동당 출판사
김정일	언어와 민족문제(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	1964.2.20	1999.1.9	조선로동당 출판사
조성박	『김정일 민족관』	-	1999	평양출판사
김일성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국제태권도련맹 총재와 한 담화)	1979.5.12	2000.1.25	조선로동당 출판사
김일성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자(세계 평화연합 총재와 한 담화)	1991.12.6	2000.1.25	조선로동당 출판사

46) 공식적으로 북한에서는 1996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고난의 행군을 천명하였고, 2000년에 종료되었다고 하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다. 김갑식,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 북한의 인식과 대응,” 『현대북한연구』, 8권 1호 (2005), p. 9.

47) 박명규, “네이션과 민족: 개념사로 본 의미의 간격,” p. 48.

저자	제목	인용연도	발행연도	출판사
김일성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자 : 제3차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해외동포들과 한 담화	1992.8.19	2002.3.25	조선로동당 출판사
-	『조선민족의 력사적 뿌리』	-	2002.4	사회과학 출판사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성을 견지하고 민족성을 살릴 데 대하여 하신 말씀	-	2002	평양출판사

위의 목록 가운데, 1999년에 출간된 김정일의 논문 2편과 『김정일민족관』 및 2002년에 발행된 『조선민족의 력사적 뿌리』는 ‘민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으며, 그 범주를 새롭게 변형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통일지향적인 구호로서의 활용과는 차별성을 지닌다.

1. 민족 범주의 확대: 해외동포 포섭

이 시기 민족 범주는 스탈린의 규정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북한적 ‘민족’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였다.⁴⁸⁾ 동시에 “나라와 민족은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결합체이며 운명의 공동체”⁴⁹⁾로 설명하며 민족을 국가와 등가치로 놓고 있다. 또한 사회가 발전하여 공산주의 사회에 이르면 민족 자체가 소멸될 것이라는 스탈린의 주장과는 달리 “계급과 계층은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 변할 수 있어도 사람들의 운명공동체인 민족은 영원한것”⁵⁰⁾으로 인식하고 있다. 민족과 계급은 모두 사회적 집단이지만 민족은 계급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집단이므로, 계급과 계층은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 변할 수 있어도 사람들의 운명공동체인 민족은 영원하다는 것이다.

1990년대 말에 들어서 해외 동포를 ‘조선민족’으로 호명한 것⁵¹⁾은 주목할 만한 지

48) 스탈린의 민족 정의가 민족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민족이 지닌 개별적 특성을 열거하는데 머물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49) 조성박, 『김정일민족관』 (평양: 평양출판사, 1999), p. 17.

50) 조성박, 『김정일민족관』, p. 17, 233.

51) 김정일, 『민족문제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 1960년 10월 4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p. 1; 김정일, 『언어와 민족문제(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 1964년 2월 20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p. 1.

점이다. 해외 동포는 “같은 피줄을 타고 났”지만, “몇대를 내려오면서 사회제도가 다른 이국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역과 경제생활에서도 차이가” 많은데 스탈린의 이론은 이런 부분을 간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⁵²⁾ 다시 말해, 지역과 경제생활의 공통성보다 핏줄이 우선한다는 논리이다. 또한 재일 동포들이 “비록 일본땅에 살지만 조선민족으로 되는것도 다름아닌 피줄과 언어가 같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⁵³⁾ 김정일은 해외 동포들을 ‘조선민족’의 범주로 포섭하기 위해 지역의 공통성을 절대화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⁵⁴⁾

김정일장군께서는 **해외에서 살고있는 우리 동포들도 다 조선민족**이다, 일본에서 살고있는 조선동포들은 지난날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지주, 자본가들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에 못이겨 정든 고향을 버리고 살길을 찾아 현해탄을 건너간 사람들이다, 그런것만큼 재일동포들이 지금은 비록 **일본땅에서 살고있지만 그들도 조선민족**이라고 하시였다...(중략)... 그러시면서 지난날 살길을 찾아 해외로 떠나갔거나 징용과 징병으로 다른나라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은 우리와 한피줄을 이어받고 고유한 우리 말을 쓰며 조선의 미풍양속을 존중하고 우리 조선사람의 넋을 간직하고 있는 **조선민족이라고 강조**하시였다.⁵⁵⁾

이러한 변화는 과거 김일성이 재일 동포와 재중 동포를 각각 “재일 조선공민”, “중국에서 사는 조선사람”⁵⁶⁾, 김정일이 “재일조선공민”, “재일조선동포”, “재일동포”⁵⁷⁾ 등 비교적 공식적인 용어로 지칭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 시기 북한은 ‘조선민족’의 구성 요소 중 핏줄과 언어를 강조하며 해외 동포, 특히 재일 동포 집단을 포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민족 범주의 재정의를 통해 식민시기 이주자들을 ‘조선민족’으로 포용하는 탈식민주의적인 ‘초국가적 근대 국가’ 건설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국’으로서의 조선과 ‘조선민족’으로서의 해외동포를 재구성하고, ‘조선

52) 김정일, 『민족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데 대하여(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 1960년 10월 4일)』, p. 1

53) 김정일, 『언어와 민족문제(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 1964년 2월 20일)』, p. 1.

54) 김정일, 『민족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데 대하여(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 1960년 10월 4일)』, p. 1

55) 조성박, 『김정일민족관』, p. 21.

56)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국장 및 교도통신사 기자와 한 담화(1971년 9월 25일, 10월 8일),” 『김일성저작집 제2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p. 153-154.

57)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 1966년 1월 26일),” 『김정일선집 제2권(증보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p. 131-140.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해외 동포를 ‘조선민족’으로 호명하여 외부 식민 세력에 의해 흩어진 그룹을 원초적인 범주로 묶고, 이미 존재했던 ‘민족’ 개념에 모든 해외 동포를 아우르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는 1999년 남한이 혈통주의를 바탕으로 한 재외동포법을 제정하여 ‘조국’과 해외의 ‘형제들’, 그 가운데 미국, 일본 동포를 선별적으로 수용한 시기와도 맞아떨어진다.

김정일은 “현시대에 해명을 요구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처방을 맑스-레닌주의 고전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⁵⁸⁾될 것을 주장하며, 민족 문제에 대한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민족의 구성 요소로 ‘혈연’을 불러내고, ‘자주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반민족세력”과 이항대립적 개념을 구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민족성’ 또는 ‘주체성’의 대척점에 있는 개념은 ‘제국주의’와 ‘지배주의’⁵⁹⁾, 그리고 ‘세계주의’⁶⁰⁾이며, 구체적으로는 “친미친일매국배족세력”을 의미한다.⁶¹⁾ 이때 제국주의 세력의 투쟁 대상을 ‘미제국주의’로 설정하고 남과 북, 해외동포까지 ‘민족’의 범주로 포섭하여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 구도를 만들고 있다.⁶²⁾ 이러한 ‘민족’ 개념의 변화 과정에서 ‘비민족’의 개념으로 묶어져 ‘민족’과 대립하는 적은 바로 미국이 된다. 이는 북한이 ‘조선민족’ 개념의 확장 과정에서 90년대 체제 위기의 원인의 일정 부분을 미국에 돌리고 남한과 북한을 하나로 아우르는 범주를 (재)구성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⁶³⁾ 이와 같이 ‘민족’ 개념은 남북한을 통합하고 한반도 범주를 넘어

58) 김정일, 『민족문제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1960년 10월 4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 pp. 2-3.

59)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은 곧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이다.” 조성박, 『김정일민족관』, p. 241.

60) “세계주의는 매개 민족인들이 자기의 민족성을 버리고 <세계적공민>으로 되기 위하여 <세계국가>와 <세계정부>를 세우기 위해 투쟁해야 하며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가장 고상한 행동>으로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민족의 독자적발전을 제동하는 유해로운것이다.” 조성박, 『김정일민족관』, p. 56. “력대 당국자들이 벌이는 <국제화>, <세계화>소동은 민족적인 모든것을 말살하고 외세에 나라와 민족을 통째로 넘겨준 대가로 권력과 안락을 유지하려는 전대미문의 매국배족행위이다.” p. 249.

61) 조성박, 『김정일민족관』, pp. 240-250.

62) “이로부터 현단계에서 <한국>에서 제기되는 민족문제의 과제는 외세인 미국을 몰아내고 빼앗긴 민족의 자주성을 되찾는 문제로 된다. <한국>에서의 민족문제는 민족해방혁명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 조성박, 『김정일민족관』, p. 46.

63) “우리 공화국을 고립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의 책동이 전례없이 강화되었고” 『로동신문』, 1995년 1월 1일(신년 공동사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사회주의 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고립시키고 사회주의 위업을 말살하려고 계속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로동신문』, 1996년 1월 1일(신년 공동사설).

종족적 의미의 한(韓)민족을 포괄하는 탈영토적 민족 관념으로 변화되었다.

2. 인종적 동일성의 강조: ‘단일 민족’

이 시기 북한 민족 개념 (재)구성 과정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특징은 인종중심적인 민족 개념의 출현이다. 북한은 민족의 혈통에 대해 “가족, 친척의 범위에서 혈연적인 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씨족, 종족의 핏줄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민족으로서의 핏줄의 공통성은 “일정한 지역적범위에서 사회력사적으로 이루어진것”⁶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민족 가운데는 유목민족과 같이 “새로운 이질적인 주민집단들이 동화되고 융합되”는 민족도 있지만, “우리 민족”은 “하나의 피줄을 이어받은 동일 혈통에 기초”⁶⁵⁾한 민족이며, “조선민족은 혼혈민족이 아니라 하나의 혈통과 독특한 체질을 가진 단일민족”⁶⁶⁾임을 표명하였다.

핏줄의 공통성에 대한 논의는 2002년 발행된 『조선민족의 력사적뿌리』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이 역사서는 역사를 강조하는 혈통 중심의 전근대 민족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는 “피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 중 핏줄과 지역의 공통성의 연원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혈통 중심의 민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줄을 같이 하는 우리 민족의 선조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뒷받침 되어야 했고, 이를 위해서 “사람의 유골에 반영”된 “유전학적계승관계”에 대한 내용이 필요했던 것이다. 조선민족의 인종적 동일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조선민족은 하나의 겨레, 하나의 족에 기초하여 형성된 전형적인 단일민족이다. 따라서 조선민족은 조선사람계통에 속하는 하나의 족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인종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조선민족은 세계적으로 희귀할 정도로 특징적인 단일민족인것으로 하여 **그 형성력사가 오래고 민족의 선조가 명백하고 피줄갈래가 뚜렷하다.**⁶⁷⁾

64) 조성박, 『김정일민족관』.

65) 『조선대백과사전 제10권』, p. 68.

66) 『조선대백과사전 제17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p. 666.

67) 『조선민족의 력사적뿌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pp. 134-135.

위 인용문에서 조선민족은 전형적인 단일민족으로 ‘조선사람계통’에 속하는 하나의 ‘족(族)’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조선민족의 단일성을 논증하기 위해 구석기 시대부터의 유적과 유물을 다룸으로써 한 지역 안에서 구석기 전 기간에 걸쳐 문화발전의 ‘연속성’과 진화의 ‘계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어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가 “같은 겨레의 종족, 동족”에 의하여 형성되었다는 것을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뒷받침하였다. 여기서 “조선옛류형사람”이 고대 국가(고조선)가 건립되기 이전, 신석기 시대 원시문화를 창조한 조상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머리뼈 계측치를 측정하는 등의 논거로 주변 주민들과는 다른 유형의 인종임을 증명하고 있다. 즉, 남한학계의 통구스계 기원설과 차별성을 뒀으로써, 인종적으로 ‘단일한 동족’임을 역설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부빛, 머리카락, 얼굴너비와 높이, 코의 크기, 눈코주름, 입너비, 입술두께, 입천장길이, 사람 뼈의 키, 머리뼈 형태 등 세밀한 생물학적 고찰을 통해 ‘조선사람’ 고유의 인종적인 특징을 유형화하였다.⁶⁸⁾

이러한 인종적 특성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은 ‘인종주의적 민족의 부활’⁶⁹⁾의 극단적인 예이자 ‘단일한 인종의 발명’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혈연’이라는 전근대적 성격을 주조함으로써, 근대적 민족이 ‘(재)창조’된 것인데, 이는 스미스의 ‘에스니(ethnie)’ 개념에 기댄 흡스봄적 ‘발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초 남북 관계의 호전이라는 새로운 국면에서 북한의 ‘단일 민족’에 대한 강박은 극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단군 신화의 재창조: 문화적 계승성

북한은 경제난이 심각했던 90년대 중반, 단군릉, 동명왕릉, 왕건릉을 일제히 재건하였다. 단군릉을 복원함으로써 ‘역사적 허구’라고 비판하던 단군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동강 유역의 유적을 전격 발굴하여 ‘대동강 문화’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 북한은 조선민족이 단군을 원시조로 하여 “단군조선의 성립과 더불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단군이래 한강토에서 오래동안 살면서 하나의 피줄을 이어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쳐온 단일민족”임을 주장하였다. 이때 지역의 공통성은 ‘핏줄, 언어, 문화생활의 공통성’을 이룩할 수 있는 자연적 환경이 된다고 보았다.⁷⁰⁾

68) 『조선민족의 역사적뿌리』.

69) A. 스미스(1995), 『세계화 시대의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남지, 1997), pp. 78-122.

이러한 고조선, 고구려, 고려의 시조묘에 대한 재건 작업은 민족사에서 역사적 정통성과 계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민족’이 전근대로 이어져 온 것이라는 ‘믿음’을 만들기 위한 토대는 ‘단일민족’의 신화를 (재)창조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새로운 역사쓰기’ 과정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적 연대를 확보하고, 독특한 정체성을 제시해줄 수 있는 과거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⁷¹⁾ 뿐만 아니라, 북한은 위기 상황에서 민족 신화를 국가적 위기 극복 기제로의 활용하고, 여기에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북한의 ‘단군신화’ 만들기 작업은 철저한 과학적 고증 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이 시기 ‘단군문학’이라는 문학작품의 형태로도 나타났다. 북한은 이러한 작업을 통해 단군이 고증으로 확인된 “현실적으로 존재한 인물”이며, 이때부터 우리 민족이 “단군의 후예로서 대대로 내려”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⁷²⁾ 또한 국가가 전 영토에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족 형성에 있어 공통성 형성의 과정을 추동한다고 설명하며, 민족 형성의 문제에 있어 국가 성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⁷³⁾ 북한은 그러한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로 세워진 통일국가가 바로 ‘단군조선’임을 천명하였다.⁷⁴⁾ 반만 년 전, 건설된 고대국가 고조선은 “오랜 기간 한 주권 밑에서 살아보면서 유구한 력사와 빛나는 문화전통을 창조”하였고, 이 과정에서 “선조들사이의 피줄과 언어, 문화적공통성”이 확립되어 ‘조선민족’이라는 “하나의 사회정치적공통체를 이루게” 된 것이다.⁷⁵⁾ 이 과정에서 “민족 력명기(구석기 시대)”로부터 고조선까지 단일 인종이 변함없이 이어져온 조선민족의 ‘신화’가 탄생하였다. 이어 대동강이 민족의 발원지⁷⁶⁾로서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문화를 창조”하였으며, 고조선에서 고구려, 그리고 고려로 이어지는 문화의 계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⁷⁷⁾ 이러한 단군 전통에 대한 내용은 2000년 『조선대백과사전』과 2007년 『조선말대사전(증보판)』의 ‘조선민족’ 표제어에서 공식화되었다.

70) 조성박, 『김정일민족관』, pp. 19-20.

71) Anthony D. Smith,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p. 209.

72) 조성박, 『김정일민족관』, p. 181-185

73) 『조선민족의 력사적뿌리』, p. 135.

74) 『조선민족의 력사적뿌리』, p. 136.

75) 『광명백과사전 제1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7), p. 36.

76) 조성박, 『김정일민족관』, pp. 181-185; 『조선민족의 력사적뿌리』, pp. 106-112.

77) 조성박, 『김정일민족관』, p. 191.

조선민족: 하나의 피줄과 언어, 문화를 가지고 평양을 중심으로 한 조선반도에서
형성된 단일민족...(중략)...**조선민족의 원시조는 단군이다.** 78)

조선민족: 하나의 피줄과 언어, 문화를 가지고 평양을 중심으로 한 조선반도에서
형성된 단일민족. 조선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고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민족이다.**79)

북한은 단군 신화를 통해 ‘조선민족’ 개념을 설명함으로써, ‘조선민족’의 계승자이자 적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조선민족의 종족성이 전근대와 근대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는 ‘민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흡스봄은 서구의 근대 민족 국가 건설과정에서 두드러진 ‘전통의 창조(invention of tradition)’ 현상에 주목했다. 민족 국가(nation-state)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민족 또는 민족국가를 상징하는 정치적 기제가 필수적이었고 이를 위해 과거의 ‘상상 속의’ 역사를 국가의 지배 담론으로 흡수하고, 상기시키는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족’의 범주를 (재)구성하는 작업 과정을 통해 ‘창조된 전통’이 역사와의 연속성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민족의 단일성에 대한 ‘상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근대 국가 건설’이라는 필요에 의한 ‘원초론의 발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북한의 ‘민족’ 개념의 (재)구성은 일련의 ‘초국가적 민족’ 만들기의 과정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V. 나가며

민족주의는 지배 권력의 도구로서 ‘반역의 이데올로기’로 평가되기도 한다.⁸⁰⁾ 북한의 민족 개념은 근대적 산물이자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만들어진 사회적 구성물이며, 권력과 함수 관계를 유지하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구조되어왔다. 북한의 민족 개념은 스탈린 이론을 계승하여 근대적인 현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근대로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상상된 민족관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어왔다. 민족의 범주를 확대하고, 단일한 인종을 발명하고, 신화를 재창조하는 과정의 배경에는 동족 의식을 창출하고 지배 담론을 구조하는 최고 지도층의 필요

78) 『조선대백과사전 제17권』, p. 666.

79) 『조선말대사전(증보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7), p. 1406.

80)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서울: 소나무, 1999).

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사회주의의 위기 속에 발현된 민족의 전근대적 연속성은 1990년대의 경제난 속에서 더욱 극단화 되어왔다.

앤더슨이 강조했듯, 권력의 작동에서 민족은 상상되고 재구성될 수 있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나타나는 조선민족 개념의 변화는 근대 국가 건설 과정에서 ‘에스니(ethnie)’의 (재)창조를 통한 ‘민족 만들기’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민족 만들기’ 과정에 있어서 북한을 ‘민족주의 국가’⁸¹⁾로 보는 시각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민족 만들기’는 전통 내에서 (재)구성될 수 있었는데 이는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세대의 신화체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민족’ 만들기는 ‘족류사(ethno-history)’를 활용한 ‘신화의 발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족적 징표가 하나의 역사적·사회적 신화가 되는 것 그 자체, 그리고 이것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적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민족’ 개념의 변화 과정은 ‘순수한 에스니’에 기반을 둔 ‘민족(국가)’을 옹호하고 ‘비아(非我)’와 ‘아(我)’의 이항대립⁸²⁾을 통해 ‘비아(非我)’에 의한 ‘아(我)’의 식민화를 극복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북한의 단일민족론을 바탕으로 하는 극단적인 혈통 강조는 향후 차이의 인정에 기초한 남북의 다문화적 통합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상상된’ 민족적 단일성이 ‘실재하는’ 비민족적 다양성을 억압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90년대 중반부터 ‘김일성민족’, ‘태양민족’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등장하였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북한은 ‘조선민족’과 ‘김일성민족’ 담론을 함께 구사하고 있다. 이는 체제 안정성 지향과 통일 지향 간의 경합, 즉 분단 체제를 둘러싼 긴장 관계를 반영한다. 김정은 체제 북한의 ‘민족’ 개념의 변화는 ‘자주적 국가 건설’과 ‘통일 한반도’의 두 지향점 사이에서 또 다른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향후 밝혀야 할 연구 과제로 남긴다.

■ 논문투고일: 2017년 05월 02일 ■ 논문심사일: 2017년 06월 07일 ■ 게재확정일: 2017년 06월 16일

81) 신기욱, 이진준 옮김,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pp. 131-156.

82) 신채호, 『조선상고사』 (서울: 비봉출판사, 2006).

참고문헌

1. 국문단행본

- 송승섭. 『북한자료의 수집과 활용』.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1.
- 신기욱, 이진준 옮김.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파주: 창비, 2009.
- 신채호. 『조선상고사』. 서울: 비봉출판사, 2006.
-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서울: 소나무, 1999.
- Anderson, Benedict, 윤형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 서울: 나남, 2002.
- Gellner, Ernest, 이재석 옮김.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예하, 1988.
- Hall, Stuart, 전효관 외 옮김. 『현대성과 현대문화』. 서울: 현실문화연구, 2001.
- Hobsbawm, Eric (1990), 강명세 옮김.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 Karl Marx 외, 편집부 편역.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민족이론: 민족해방이론의 주체적 정립을 위하여』. 서울: 나라사랑, 1989.
- Smith, Anthony D. (1995), 이재석 옮김. 『세계화 시대의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남지, 1997.

2. 영문단행본

- Smith, Anthony D.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Oxford: Blackwell, 1986.
- Smith, Anthony D. National Identity. NV: University of Nevada Press, 1991.
- Stalin, Joseph, Marxism and the National Colonial Question.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35.

3. 국문논문

- 강진웅. “대한민국 민족 서사시: 종족적 민족주의의 전개와 다양한 얼굴.” 『한국사회학』. 47권 1호 (2013).
- 김갑식.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 북한의 인식과 대응.” 『현대북한연구』. 제8권 1호 (2005).

- _____. “북한 민족주의의 전개와 발전.” 『통일문제연구』. 제45호 (2006).
- 김태우. “북한의 스탈린 민족이론 수용과 이탈과정.” 『역사와 현실』. 제44권 (2002).
- 박명규. “네이션과 민족: 개념사로 본 의미의 간격.” 『동방학지』. 제147권 (2009).
- 박찬승. “한국에서의 ‘민족’ 개념의 형성.” 『개념과 소통』. 창간호 (2008).
- 이진일. “개념사의 학문적 구성과 사전적 기획 사이에서: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제7호 (2011).
- 전미영. “북한의 지배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5권 1호 (2001).
- _____. “통일담론에 나타난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3집 1호 (2003).
- 정성장. “金日成體制의 理念的·文化的 起源과 性格.” 『고황정치학회보』. 1권 (1997).

4. 영문논문

- Duncan, John. “Proto-Nationalism in Pre-modern Korea.” in Sang-Oak Lee and Duk-Soo Park, eds. Perspectives on Korea. Sydney: Wild Peony Press, 1998.
- Keith, Tribe. “Translator’s Introduction.” in Koselleck, Futures Past: On the Semantics of Historical Tim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4.
- Shin, Gi-Wook, James Freda, and Gihong Yi. “The Politics of Ethnic Nationalism in Divided Korea.” Nations and Nationalism. Vol. 5, No. 4 (1999).
- Smith, Anthony D. “Ethno-symbolism,” Introduction, in Atsuko Ichijo and Gordana Uzelac, eds. When is the Nation? Towards an Understanding of Theories of Nationalism. London·New York: Routledge, 2005.
- Verdery, Katherine. “Whither ‘Nation’ and ‘Nationalism’.” in Gopal Balakrishnan, eds. Mapping the Nation. London·New York: Verso, 1996.

5. 기타

- 『광명백과사전 제1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7.
-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 『김일성저작집 제2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김일성저작집 제2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김일성저작선집 3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정일선집 제2권(증보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 김정일. 『민족문제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 1960년 10월 4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 _____. 『언어와 민족문제(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 1964년 2월 20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 『대중정치용어사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 『대중정치용어사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 『로동신문』. 1991년 8월 5일, 1면.
- 『로동신문』. 1995~1996년 1월 1일(신년 공동사설).
- 『로동신문』. 2013~2017년 1월 1일(신년 공동사설).
-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정치사전』. 평양: 과학백과출판사, 1985.
- 『조선대백과사전 제10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9.
- 『조선대백과사전 제17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조선말대사전(증보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6.
- 『조선말대사전(증보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7.
- 『조선말사전』. 평양: 과학원출판사, 1961.
- 『조선말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 『조선말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 『조선민족의 력사적뿌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 조성박. 『김정일민족관』. 평양: 평양출판사, 1999.
-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The Formation and Change of the Concept of ‘Choson Minjok’

Choi, Sunkyung · Lee, Woo Young***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concept of ‘Minjok’ in North Korea by analyzing related texts and documents diachronically. North Korea has changed the notion of ‘Minjok’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which reflected internal and external shifts. The origin of the ‘Minjok’ concept stems from Stalin’s nation theory. However, since the 1970s, the concept was in the process of eschewing Stalin’s theory, instead, the element of ‘blood relation’ was added and emphasized. The notion of ‘Minjok’ which was formed in the 1980s has been maintained throughout the present. Since the 1990s, the range of ‘Minjok’ was extended to overseas Koreans and ‘Choson Minjok’ was described as a ‘homogeneous nation.’ In the process of making ‘Minjok’, North Korea (re)created ‘Dangun’ myth in order to support its homogeneity. The (re)construction of the ‘Minjok’ concept in North Korea is a process of building a modern state and making a transborder ‘Minjok’ by the invention of tradition.

***Keyword:** Choson Minjok, Nation(alism), Conceptual History, State-building, Transborder Nation

* PhD Candidat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북한 최고지도자의 이미지, ‘어버이’ 성격 분석연구 : ‘이미지의 상징화’ 개념적용 및 ‘메타포-상징적 이미지’유형 평가*

정 교 진**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어버이’ 지도자 성격 및 이미지 유형 분석 |
| II. 이론적 논의 및 적용 | V. 나가는 말 |
| III. 북한지도자들의 ‘어버이’이미지의 상징화 과정 | |

[국문요약] 북한 김정은은 2013년 12월 12일 장성택을 처형한 이후 확고한 리더십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자이미지, 상징측면으로 그 주요근거들을 볼 때 첫째, 2014년 1월9일에 김정은의 생일(1.8)이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둘째, 장성택 처형 직후 수많은 김정은 찬가가 쏟아져 나왔다. 셋째, 김정은의 지도자이미지인 ‘태양’, ‘어버이’가 지도자 상징성에 도달했다. 넷째, 김정은에게 ‘수령’의 지도자이미지가 생성되었다.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면서 그에게 부여된 지도자이미지 중 대표적인 것이 ‘어버이’이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2014년을 기점으로 하나의 상징성에 도달했다. 다시 말해, 2014년부

터 북한의 정치문건과 당 문건에서는 김정은을 공식적으로 ‘어버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전체사회에 통용되었음을 의미한다. 30대 초반의 김정은이 북한에서 ‘어버이’라고 일컬어진 것이다. 김일성과 김정일도 권력을 장악하는 시점에 그들에게 부여된 대표적인 지도자 이미지가 ‘어버이’였다. 그런데, 김일성과 김정일의 어버이이미지 성격은 다소간의 차이가 나는데, 김정은의 어버이 이미지는 김정일보다는 김일성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다. 김정은이 공식석상에 처음 등장할 때, 김일성의 젊은 시절 모습을 하고 나타나 ‘김일성 화신’의 이미지를 얻으려고 한 것처럼, 어버이이미지에서도 김정일보다는 김일성의 이미지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 이 논문은 정교진의 박사학위논문(2016)의 일부를 확장시킨 것으로 ‘메타포-상징적 이미지’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북한최고지도자들의 대표적 이미지인 ‘어버이’의 성격을 좀 더 밀도있게 조명함.

**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북한통일연구센터 연구교수. ezekiel9191@gmail.com

과연, 이것이 북한인민대중들에게 얼마나 흡인력이 있을 것인가?

본 연구는 이를 검토하기 위해 이미지의 유형중 하나인 ‘메타포 이미지’, ‘상징적 이미지’ 이론을 적용해서 김일성, 김정

일, 김정은의 아버지 이미지의 성격을 비교분석 하고자 하였다.

* 주제어: 아버지이미지, 이미지의 상징화, 메타포이미지, 상징적이미지

I. 들어가는 말

북한 정권은 지도자이미지정치가 강력하게 작동되는 일인독재체제이다. 북한 특유의 유훈통치는 현 김정은 정권에서도 이것을 가능케 해 준다. 김일성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절대자 이미지’, ‘백전백승의 혁명가 이미지’, ‘자애로운 아버지 이미지’ 등으로, 김정일은 ‘뛰어난 전략가 이미지’, ‘문화예술의 영재 이미지’, ‘충실한 후계자 이미지’, ‘인류의 희망 이미지’ 등으로 분석되었다.¹⁾ 또한 김일성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수령’으로 김정일은 ‘수령의 후계자’, 김정은은 ‘김일성의 화신’으로 제시되기도 했다.²⁾ 김일성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혁명 대장군’, ‘사상의 창시자’, ‘태양’, ‘아버지’, ‘수령’ 등으로 보기도 했다.³⁾ 그런데, 북한자료들을 검토해 본 결과 김일성에게 부여된 이미지들이 김정일, 김정은의 이미지로도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김일성의 지도자이미지를 얼마간 공유한다는 것이다. 김일성의 ‘사상의 창시자’는 김정일에게는 ‘사상의 천재’로, 김정은은 ‘사상의 영재’로 연계되어진다. ‘태양’에 있어서는 김일성은 ‘주체의 태양’으로, 김정일은 ‘선군태양’, 김정은은 ‘세계의 태양’으로 그 이미지를 공유하는 것을 볼 수 있다.⁴⁾ 심지어는 김일성의 절대권위를 나타내며 김일성만의 고유영역이라 할 수 있는 ‘수령’⁵⁾까지도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는 김정일도 ‘위대

1) 김유경, “북한잡지 조선예술에 등장하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이미지 유형 및 정권승계 과정에서의 이미지 활용 분석: 1990~2011년 자료를 중심으로.” 『ATE』, 제3집 (2013)

2) Jae-Cheon Lim, *Leader Symbols and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The leader state*. London: Routledge, 2015.

3) 정교진, “북한정권의 ‘지도자상징정치’에 관한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4) 정교진, 유호열, “북한 최고통치자의 상징, ‘태양’의 성격에 관한 연구: ‘이미지의 상징화’ 개념 적용 및 종교적 의미부여 평가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제77집1호 (2017), pp. 114~121 참고.

5) 절대적 존재로서 수령의 지위는 계승되지 않는다. 이는 김일성의 고유영역이며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정통성의 기반이 된다. 단지 수령 개념의 일부인 영도적 역할만 후계자에 이양된다.

한 수령님들’, ‘선대 수령님들’안에 포함되어 김일성과 함께 다소간 공유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김일성의 아버지이미지도 김정일뿐만 아니라 김정은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제 30대 초반에 불과한 김정은이 북한전체주민들로부터 ‘아버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비록 같은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도자이미지의 성격에는 차이가 난다. ‘태양’의 이미지가 각각 ‘주체의 태양’, ‘선군의 태양’, ‘세계의 태양’이라는 지도자의 특성 및 성격으로 나타나듯이 ‘아버이’ 지도자이미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과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아버지이미지는 각각 어떤 특성 및 성격을 담고 있는 것인가? 또한, 그 이미지의 성격이 서로 유사한 것인가? 아니면 다소간 차이가 나는가? 이것을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이론적 논의 및 적용

1. 이론적 검토

가. ‘이미지의 상징화’ 개념

‘이미지의 상징화’(image symbolization)⁶⁾는 이미지이론과 상징이론을 연계해서 도출된 개념이다. 이미지(image)는 어떤 대상에 대해 전달받은 모든 정보가 인간의 인식 속에서 정보처리과정을 거쳐 재구성된 하나의 상(象)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어떤 대상에 대해 갖게 되는 주관적 관점의 지식이자 신념이며 지각된 인상의 집합으로서 인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감정적, 행동적 측면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⁷⁾

상징(symbol)은 다른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어떤 것으로 질적으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두 개의 사물과 개념이 어떤 유추작용에 의해 전자가 후자를 표상하는 관계에

최경희, “북한 수령권력체제의 생성과 매커니즘” 『한국과 국제정치』 제32-4호 (2016)

6) ‘이미지의 상징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일반논문은 이미 다수가 나와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의와 법 이미지의 상징화,” 『출판저널』(1995); 이훈익, “문화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방안: 문화이미지 상징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04); 안수지, “국가브랜드 친환경이미지 상징화 전략 연구” 『한국디자인포럼』(2004)

7) 유재웅, 『국가이미지 이론·전략·프로그램』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있을 때 그 전자를 가리킨다.⁸⁾ 즉, 대상 자체에 본질적으로 내재해 있거나 그것으로부터 식별할 수 없는 의미를 지시해 주기 위해 인간에 의해 이용되는 어떤 대상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상징은 “사물, 행위, 개념 혹은 언어적 구성물로서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며 감정과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을 행동하게 만들며 그것은 보통 집단의 생활양식을 구성하는 의식, 의례, 선물교환, 선서, 예의범절 등 다양한 유형의 문화적 관습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징 매개물에는 ‘언어’, ‘이미지’, ‘행위’, ‘사물’ 등의 형태가 포함된다.⁹⁾

이처럼, 이미지는 상징의 주요 매개물 중에 하나이다. 또한, 프레밍거(Preminger)는 이미지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그중의 하나인 ‘상징적 이미지’를 설명하면서 상징은 이미지의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 상징성을 획득한다고 했다.¹⁰⁾

이와 같은 두 가지의 개념을 토대로 이론을 확장시키면 ‘이미지의 상징화’라는 개념이 도출된다. 즉, 생성된 이미지가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 구축되고, 강화되어 고착화되고, 정형화됨으로 하나의 상징성에 도달한다는 논리이다. 북한의 김정은이 공식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북한주민들은 그를 보고 김일성을 떠올렸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얼굴 모양, 머리 스타일, 복장과 행동거지가 젊은 시절의 김일성을 꼭 빼어 닮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정권은 인민대중들로 하여금 김정은이 그의 조부인 김일성의 인상을 갖도록 이미지 연출을 한 것이다. 이것이 ‘지도자이미지정치’의 대표적인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 연출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징적 사고로 연결되고 그 상징과정을 통해 하나의 상징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미지의 상징화’라고 정립할 수 있겠다. 북한의 김정은이 김일성처럼 보이려고 시도한 이미지 연출은 ‘김일성의 화신’(incarnation)라는 하나의 상징성을 획득하기 위함인 것이다.

나. ‘메타포 이미지’, ‘상징적 이미지’ 개념

프레밍거(Preminger)는 이미지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바로 정신적(mental=심리적), 비유적(figurative), 상징적(symbolic) 이미지이다.¹¹⁾ 첫 번

8) 유영옥, 『상징과 기호의 사회과학』 (서울: 홍익재, 2007), p. 19.

9) 유영옥, 위의 글, p. 20.

10) A. Preminger,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Univ. Press, 1965, p. 369.

째, 정신적 이미지는 의식의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모든 정신 활동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넓은 범위를 가지는 영역에 해당한다. 이 정신적 이미지는 이성의 활동을 포함하여 모든 정신활동의 모태가 된다. 이 이미지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활동 유형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일종의 정신적 가치들의 집합체이다. 이 유형은 물리적 지각을 통해 감각이 정신 속에서 재생산된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정신적 이미지는 감각의 구분에 따라 이미지의 유형학이 성립된다. 주로 시각적 이미지가 중심을 이루지만, 청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미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색채 이미지, 역동적 이미지, 정태적 이미지 등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들 이미지가 둘 이상 결합될 때 이를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부른다.

둘째, 비유적 이미지(figurative image)는 대개 언어를 통해 감각적 체험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이미지 그 자체를 조성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이 비유적 이미지는 대상과 전체 관계를 일컫는 데에 쓰인다. 언어는 정확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유를 통해 자라나는데, 비유적 이미지는 대상과 비유 즉 은유사이의 관계의 본질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정확히 말하면 비유적 양식으로서 또는 비유적 형상으로서의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인생은 나그네’ 같은 표현이 그것이다. 이 이미지는 제유·환유·직유·은유·의인·풍유로 압축된다.

특히, 메타포(metaphor, 은유)는 사물과 사물이 지닌 속성의 유사성을 연결하여 나타내는 비유를 말한다. ‘같이’, ‘처럼’, ‘듯이’ 등의 연결어를 사용해 명백한 비교를 통해 드러내는 직유와는 다르다. 이것은 원관념과 비유되는 보조관념을 같은 것으로 보므로 ‘A(원관념)는 B(보조관념)이다’의 형태를 취하는 비유를 말한다. 다시 말해, 보조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 연결시키는 비유 방식이다. 분명한 것은 어떤 대상을 그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즉 모양이나 성질의 연관성을 찾아 연상작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덧입히는 것이다.

셋째, 상징적 이미지(symbolic image)는 언어가 만들어 내는 이미지 자체와 그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상징적 이미지는 이미지의 반복에 의해서 상징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상징은 창조적인 상상력과 예술적인 의도에 의해 결정되며, 작품의 의미 구조와 언어 속에서 만들어진다. 언어의 표현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메타포(은

11) A. Preminger, 위의 글, pp. 363~370.

유)와 비슷하지만, 상징적 이미지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의미상 유사성과 동일성이 크게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한 사물(원관념)의 의미를 특정(보조관념)의 방향으로 고정시켜 무의적으로 그 뜻이 굳어진 경우에 해당된다. 즉 상징적 이미지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의미상 유사성과 동일성이 없더라도 그 의미를 특정화시켜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 원관념을 보조관념의 의미에 부합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이론적용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도출된 ‘이미지의 상징화’ 개념을 북한지도자들에게 적용시켜 ‘지도자 이미지의 상징화’라는 논리로 확장시켰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공통적인 지도자이미지 중의 하나인 ‘아버이’ 이미지를 대입하여 그 이미지들의 생성시기 및 상징성 확보시기 즉, 이미지의 상징화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미지생성 기준은 북한자료를 통해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누구를 통해서든 지도자들이 ‘아버이’라고 처음 불려진 때로 한다. 상징성 확보기준은 생성된 이미지가 구축되고, 발전·강화되어 고착화 되고 정형화되어 하나의 상징성을 얻는 시점이다. 즉, 북한의 공식적인 정치문건 및 당 문건에서 그 용어가 일반화되고 북한 전체 사회에 통용될 때를 기준으로 한다. 물론, 제도적으로 접근할 때, 북한에서 김일성이 수령으로써, ‘아버이’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북한의 지도 이념인 주체사상이 1974년에 ‘혁명적 수령관’으로 전변되면서 북한주민들을 김일성 개인에 대한 ‘충성동이’, ‘효성동이’로 개조시킨 원리에 따른 것이다. 이 원리는 1986년에 보다 지도자중심으로 착근된 ‘사회정치생명체론’에 따라 더욱 체계화 되었다. 즉, 수령·당·인민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이 생명체의 뇌수는 수령이 된다는 원리로 ‘뇌수’는 생명체의 근원이 되는 ‘아버이’로도 해석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김일성은 ‘아버이 수령’이라고 지칭되었던 것이다. 이 수령의 영역은 2012년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면서 김정일을 ‘영원한 수령’으로 추대하면서 이후부터 김일성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들’, ‘선대 수령님들’로 지칭되기까지 ‘수령’은 오직 김일성의 고유영역이었던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 측면으로 접근할 때는 쉽게 이해되지 않지만 본 연구의 방법인 지도자이미지의 상징화측면에서 고찰할 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다.

북한 최고지도자들을 지칭하는 ‘아버이’에 대한 기존의 일반적 이해는 ‘수령’과 연관해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지도자이미지 측면에서 접근하면 김정일 경우에는 권

력을 승계하기 전 1992년에 이미 ‘아버이’ 이미지를 얻었고, 김일성은 북한이 1972년 ‘수령제’를 채택하기 전인 1968년에 아버지 이미지가 하나의 상징성에 도달했다. 이것은 북한 최고지도자에 대한 ‘아버이’ 지칭을 반드시 ‘수령’과 연계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아버이’ 지도자이미지의 상징화 과정을 고찰하면서 각각의 이미지의 성격을 비교분석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유사성 및 차이점을 규명하여 김정은의 ‘아버이’ 이미지가 김일성과 김정일 중 누구와 더 유사한지 파악할 것이다.

두 번째는 프레밍거가 이미지 유형으로 제시한 세 가지 유형 중, ‘메타포 이미지’와 ‘상징적 이미지’ 이론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아버지이미지에 적용할 것이다. ‘메타포 이미지’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의미상 유사하며 부합되는 반면, ‘상징적 이미지’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유사성은 없지만 그 의미를 특정화시켜 보조관념의 의미에 부합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 이론을 대입하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아버이’ 이미지가 각각 이 둘 중 어디에 속해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도출된 결과물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김정은에게 부여된 ‘아버이’ 이미지에 대해 평가를 해 볼 것이다.

최고지도자들의 아버지이미지의 성격 및 이미지 유형 제시(메타포&상징적)는 제 4장에서 함께 다루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둘의 내용이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정밀성을 위해 주요자료로는 북한총서라 할 수 있는 조선중앙년감과 노동신문을 활용하였다. 『조선중앙년감』은 그 전년도 북한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문화 부문을 총 망라하며 북한 최고지도자의 연설문, 담화문, 축하문을 비롯해 현지도 현황 및 그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해 놓고 있다. 특히 김일성 3대부자의 혁명전통, 혁명역사를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한마디로, 전년도 북한에서 시행된 것을 전 분야에 걸쳐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지도자이미지의 상징화’ 과정이라는 주제를 풀어 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김정일-김정은 시기 연구는 『노동신문』을 주된 자료로 활용했다. 왜냐하면, 년감 자료만으로는 ‘아버이’이미지 생성시기를 정확히 관찰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신문 활용의 장점은 ‘아버이’이미지의 상징화 구축과정에 있어서 주된 사건 및 내용을 월별로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고, 더불어서 그 변화 추이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추적할 수 있다는 데 있다.

Ⅲ. 북한지도자들의 ‘아버이’이미지 상징화 과정

1. 김일성, ‘아버이’이미지의 상징화 과정

가. ‘아버이’이미지 생성

북한초기정권시기부터 김일성을 친아버지로 따르던 부류가 있었다. 바로 김일성이 항일빨치산 출신들의 자녀, 특히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위해 1947년에 세운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일명, ‘만경대혁명학원’) 학생들이다. 혁명자 유가족학원을 1951-52년감에서는 김일성이 1947년 3월 24일 당시의 북조선 인민위원회 결정으로 만경대에 창설하였는데, 이는 혁명자유가족들을 교육시키는 곳이라고 소개한다.¹²⁾ 즉, 빨치산 활동하다가 죽은 혁명동지들의 자녀들을 주로 키우던 학교이다. 김일성은 이들에게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면서 그 유자녀들을 진짜 자식처럼 돌보고 교육시켰다고 한다. 김일성은 1946년부터 여러 차례 만주지역에 흩어져 방랑생활을 하던 항일혁명유자녀들을 데려오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였고 학원이 세워질 때 현지지도를 116회나 할 정도로 매우 정성을 들였다고 한다. 따라서 만경대 혁명학원의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김일성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김일성의 지도자 이미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한 가정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에 대해 ‘이미지’ 측면으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경대혁명학원 안에서만 아버지로 불러 지던 김일성은 북한이 탁아소와 유치원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그 유아들과 원생들에게도 아버지로 불러 지기 시작했다. 유치원과 관련해서는 1951-1952년감에서 “만 6세미만(3세-6세)의 아동들을 교육하고 있는 유치원은 국가경영과 기타 사회단체 공장, 광산 등에서 설립한 유치원등을 합하여 121개소가 있었는데 7,327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었다”고 소개했다(385페이지

12)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1-1952), p. 384.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펴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는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있는 혁명가 유자녀 교육기관으로 1947년 10월 12일에 ‘평양혁명자유가족학원’이라는 이름으로 평안남도 대성군에 설립했다가 1948년에 평양시 만경대로 이전하였고, 1958년에 명칭을 ‘만경대혁명학원’으로 변경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음. 설립 당시 학제는 특설반, 초급반, 고급반으로 구성되어, 인민학교(초등)에서 고급중학교(중등)까지 정규교육과정을 진행하였다. 당시 10개 학급에 약 350명의 유자녀가 수학하였다고 한다.

지).¹³⁾ 유치원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58년감을 통해, 1949년부터 세워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년 감은 북한 유치원의 증가표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142페이지). 김일성의 아버지이미지는 북한이 국영 탁아소 운영을 하면서 그 이미지가 생성되는데 최적의 환경이 되었을 것이다. 북한은 1949년 보건국 명령1호로 ‘탁아소 규칙’을 마련하고 탁아소를 유치원에 가기 전 단계(1-3세)의 아기들은 국가적 및 사회적으로 키우는 공산주의적 보육교양기관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전국적으로 국영탁아소를 세웠고, 2살 아이부터 무조건 입소시켰다. 탁아소 운영방법에 따라 일 탁아소, 주 탁아소, 월 탁아소로 구분되며 일 탁아소는 매일, 주 탁아소는 1주, 월 탁아소는 한 달 또는 그 이상을 기간으로 어린이들을 맡아보도록 되어 있으며 주·월 탁아소는 장기간의 파견근무나 출장, 소집교육 시 등에 이용되었다. 탁아소에 맡겨진 아기들은 월령에 따라 젖먹이반, 젖떼기반, 밥먹이반으로 나누어져 양육되었다. 탁아소에서는 김일성을 따라 배우는 교양실이 꾸려졌고, 탁아소의 교육은 말, 보행법, 노래, 유희 등을 가르치면서 김일성을 아버지로 섬기는 정신 등을 주입시켰다. 갓난아기 때부터 탁아소에서 배급체계를 통해 모든 먹는 것, 입는 것, 필요한 물품들이 김일성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가리키며 김일성이 위대한 아버지임을 강하게 심어줬던 것이다. 이처럼, 김일성에 대한 ‘아버이’ 이미지는 1949년부터 운영된 국영 탁아소 및 유치원을 통해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상징성 확보

1968년감 정치부문 중 「공화국내각에서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결정 채택」(1967.2.20.)의 제목의 내용 중,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체 청소년학생들은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고 하면서 세상에 부럼없음을 목청껏 노래하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84페이지). 년감, 물질생활편 교육부문 중 <유치원 교육> 내용 중에, “학교전 교육기관인 유치원교육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아버지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양원들은 당과 아버지 수령의 세심한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라고 기술되어 있다

13) 최초의 년감인 1949년감은 단지 대학교 현황, 초등학교(인민학교)가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그 수치만 알려줄 뿐이다. 1948년에 3,314개로 일제 때 약 3천개보다 약 300개 이상이 증원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203페이지).

(181페이지). 그러나 문학예술 부문에서는 1967년 작품들을 “1967년에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장시, 서정시, 소설, 기행문, 극문학 작품들과 음악, 무용, 작품들, 미술작품들에서 수령의 형상을 적극 창조하였다”고 평했다(187페이지). 그리고 김일성을 지칭할 때,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 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라고 불렀다. 아버지라고 지칭하지 않았다. 작품들 중에도 직접 김일성을 아버지로 묘사한 작품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김일성의 모친인 강반석을 지칭한 가요 ‘조선의 어머니’가 있었다.

그런데, 1969년감에서는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표기하고 있다. 1969년 감, 정치부문의 여러 가지 문건 중 위에서 살펴본 『공화국창건 스무돌경축 평양시군 중대회와 30만 평양시근로자들의 장엄한 시위』내용에서 “조국의 운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오직 수령께 의탁하고 일편단심 그이께서 이끄시는 승리의 한길로 곳곳이 걸어온 우리 인민들은 아버지 수령을 모시고 사랑하는 조국...”, “항상 조선인민을 승리와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흠모의 정으로 담은 노래...”라고 김일성 이름 앞에 아버지라는 용어를 붙였다(140-141페이지). 그리고 정치부문, 『평양외국어혁명학원창립 열돛에 즈음하여』문건에서는 “항상 흠모하여 마지않은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라고 표기되었다(166페이지). 물질문화 생활편, 교육부문에서 “세상사람들로부터 교육의 나라로 불리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사랑속에서...”라고 기술하고 있다(265페이지). 이처럼, 1969년감의 공식적인 정치문건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들에서도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것이 일반화 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1968년부터 김일성의 이름에 아버지라는 용어가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북한전체사회부문에 통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2. 김정일, ‘아버지’이미지의 상징화과정

가. ‘아버지’이미지 생성

북한에서 김정일을 향해 처음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김일성 사망 이전이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지만, 로동신문 검색엔진을 돌려보니 1992년부터 김정일을 ‘아버지’라 칭하는 제목의 기사가 나온다. 그런데, 그 반응은 북한 내부가 아닌 외부

에서부터 먼저 비롯되었다. 노동신문 1992년 1월 12일자에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 지도자 선생님은 통일의 구성이시고 겨레의 자애로운 아버지시다’라는 제목의 남조선 인민들이 열렬히 흠모한다는 내용의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기사가 실렸다. 그 내용 중에, “서울에서의 <구국의 소리>방송에 의하면 1992년 새해를 맞이하여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최 아무개 주민이 가족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만수축원의 설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서울의 한 전자회사에서 일하는 그는 새해 첫 아침이 밝아오자 가족들과 함께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고 비단천에 싸고 또 싸서 장롱속에 깊이 간직해 두었던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진을 벽에 모시였다. 그리고나서 그는 두분의 영상을 우러르며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지도자 선생님은 분단민족의 고통과 설움을 가셔주시고 하루빨리 통일된 조국을 7천만 겨레에게 안겨주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바쳐가시는 통일의 구성이시고 겨레의 자애로운 아버지시다”라는 내용이다. 이 기사의 주요 포인트는 제목에 나타나는 것처럼, 외부에서 김정일을 김일성과 같이 아버지로 불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사를 당기관지인 노동신문에 올린 것이다. 비록, 외부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때부터 김정일에게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설명이 없다. 그냥 외부에서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포함해서 1992년에 김정일을 아버지라고 한 제목의 기사가 검색결과 총 다섯 번 나온다. 그 중 다섯 편 모두 외부에서 비롯된 목소리들이다. 비록 외부에서의 반응이지만 매우 그 열기가 뜨겁다고 1992년 11월 1일자 신문에는 알려주고 있다.¹⁴⁾

나. 상징성 확보

1992년에 생성된 아버지이미지가 1993년도에 구축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1993년에 김정일을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기사가 총 8편 나오는데, 그 중 5편이나 북한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였다. 그 처음으로 1993년 2월 1일 ‘온나라 가정의 아버

14) ‘친애하는 김정일 각하는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시다’라는 제목의 여러 나라 인사들과 출판 보도물들이 높이 칭송한다는 기사로 그 첫 문장이 “세계 여러 나라 인사들과 출판보도물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진정한 인민의 지도자>로 높이 칭송하면서 그이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실린다. 그 내용 중에 “온 나라 가정에서 벌어지는 감동깊은 사실은 물론이고 마음속깊은 사연까지도 다 헤아려주시어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없이 넓은 품, 그 품은 진정 우리 인민의 오늘뿐 아니라 먼 앞날까지도 다 책임지고 돌보아주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품이다”라고 이름이 나오지 않은 본사기자의 글이다. 또한, 2월 11자 신문에는 ‘아버지의 그 은정 길이 전하리’(본사기자 주병순)라는 제목의 글이 실린다. 내용 중에, “민족최대의 명절인 2월 16일 맞으며 우리는 석탄생산의 불길드높은 2.8직동청년탄광을 찾았다... 일군은 산등판에서 아래로 내려오려고 발걸음을 떼려는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어조로 말했다. <사랑과 은정은 충신을 낳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무엇에 비길수 없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아버지 사랑과 은정은 탄부들모두에게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힘을 낳게 하는 원천이며 영양소입니다> 그렇다. 탄부들에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믿음과 사랑은...” 이라는 기사다. 이 내용을 볼 때, 북한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김정일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은 바로 김정일의 생일을 앞둔 시점이었다. 로동신문은 또한 내부의 목소리를 또 실었다.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삼가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운광려단 5운광대 표일석 7형제 일동이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를 그대로 로동신문에 올린 것이다. 그 내용에 “자애로운 아버지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는 것이 우리 인민입니다”라는 문구가 나온다. 이를 통해 다시금, 북한 내부에서 어느 정도 김정일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통용됨을 알 수 있다. 아니면, 이러한 기사가 김정일에게 아버지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하나의 선전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1992년에 외부로부터 비롯되어 생성된 이미지가 1993년도에 북한 내부에서 제대로 구축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김일성 사망 후, 1994년 8월 14일자 로동신문 정론(태양은 높이 솟아있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김정일동지는 21세기를 밝히시는 위대한 사상리론가, 21세기를 향도하는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전략가이시며 인민의 위대한 아버지시다”라고 했다. 이는 김일성 사망 후 본격적으로 지도자로서의 김정일의 아버지이미지를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이다.

그리고 년감에서도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다. 물론, 김일성 사망 이전이다. 1994년 감, ‘1993년에 우수하게 평가된 가요작품’이라고 소개하는 곡들 중 <우리 아버지인 김정일원수님> 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포함되어 있다.(214페이지) 그러면서, 북한에서

불리는 대표적인 가요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공신력과 더불어 대중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 점을 볼 때, 김일성 사망 전후로 이미 북한 내부에서 김정일에게 아버지라는 이미지는 상당히 강화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또한, 김정일이 1993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에서 군 최고통수권자인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된 것도 크게 연관되어 보인다.

그러나, 노동신문에서 1996년까지 큰 변화를 감지하기는 어렵다. 매년마다, 5편 안팎의 기사 정도만 올라왔다. 그러다가, 1997년에 그 양상이 확 바뀐 것을 확인하게 된다. 노동신문은 1997년에 김정일이 아버지라는 제목과 그 관련 기사만 20여 편 넘게 올렸다.¹⁵⁾ 큰 변화다. 장문의 정론도 올라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사회주의대가정의 위대한 아버지시다’(승정표)라는 글로 1997년 10월 20일에 실렸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김정일의 아버지이미지는 1997년에 그 상징성에 도달된 것으로 보인다. 1997년은 김정일이 3년 탈상을 마치고 10월에 북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는 때였다. 김정일이 총비서로 추대되는 시점에 북한 전체 인민들에게 김정일이 ‘아버이’ 라고 통용된 것이다.

3. 김정은, ‘아버이’이미지의 상징화 과정

가. ‘아버이’이미지 생성

김정은에게 아버지 이미지가 처음 생성된 것은 2011년 12월 30일이다. 이날은 김정일의 10월 8일 유훈에 따라 김정은을 조선인민군총사령관으로 추대한 날이다. 바로 이때, 노동신문은 <우리 민족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삼가 올립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추모행사에 참가하였던 해외동포조의방문단성원일동> 올린 글을 실었다. 그 내용 중에, “특히 우리 해외동포들의 슬픔을 먼저 생각하시여 세계 최상급의 목란관에서 은정깊은 사랑의 위로연까지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다심하신 아버지 사랑은...”, “... 성대한 연회상까지 차려주시고 구미에 맞는 음식들을 많이 들게 하라고 다심하

15) 노동신문 검색엔진에서 ‘아버이’라는 키워드에 1997년을 검색하여 ‘아버이’라는 제목이 붙은 기사 중에 김정일 관련 타이틀을 발췌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였음.

게 보살펴주시었으니 저희들은 정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아버지 사랑에 목매여 선뜻 수저를 들수 없었습니다.”라고 김정은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 물론, 이 또한 외부의 반응이고 목소리이다.

로동신문에서 내부적으로 김정은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약 세 달 후이다. 2012년 3월 16일 로동신문 1면에는 <병사들의 친아버지>라는 제목의 글이 실린다. 그 내용은 김정은이 초도 방어대를 시찰(3.9)하였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서해안의 전방초소에 불멸의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친부모도 가보지 못한 머나먼 외진 섬초소에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오시었으니 어찌 병사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으랴”, “군인회관과 도서관, 식당을 돌아보시며 섬초소군인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군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자애로운 그이의 모습은 정녕 자식을 위하는 친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는 병사들과 혈연적紐대를 이으신 자애로운 아버지이다” 이처럼, 전방 오지부대 시찰을 통해 김정은에 대한 아버지 이미지를 내부 목소리를 통해 크게 부각시켰던 것이다.

나. 상징성 확보

2013년도 로동신문을 ‘아버지’ 제목관련 검색해보니, 총 46건이 나왔다. 그중에 김정은과 관련된 것은 10여건 조금 넘었다. 대부분은 외부의 반응이다. 내부의 목소리는 두 건에 불과하다.¹⁶⁾ 2014년도 로동신문을 검색해보니, 총 58건 중, 김정은과 직접 관련있는 것은 15건 안쪽이다. 여기서도 대부분은 외부의 목소리들이다. 내부적으로는 다섯 건 정도가 나온다. 물론, 유치원생, 청소년들과 관련되어서 많이 나타난다. 그런데, 11월 8일자 ‘원아들의 궁전에 넘치는 아버지의 뜨거운 정’ 제목의 글을 보면,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올리며 너무 좋아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다.” 이것을 볼 때, 북한 유치원생들이 김정은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6월 2일자 신문, ‘행복의 요람에 넘쳐나는 아버지사

16) ‘천만자식을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는 친아버지사랑’(2013.1.7.), ‘온 나라 가정의 아버지’(2013.7.17.) 기사이다. 후자는 로동신문 기자의 글이다. 이 글에서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며 인민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생활하시는 분,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고 마음속 그늘도 다 가져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우리 모두의 삶의 태양이시고 온 나라 대가정의 자애로운 아버지이다” 라는 내용이 나온다.

랑’에서는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바라보며 교양원들과 보육원, 학부형들은 이 나라 천만부모의 정을 합친 것 보다 더 뜨겁고 위대한 품,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훌륭히 자라날 우리 아이들의 창창할 래일을 확신하였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북한주민들도 김정은을 ‘아버이’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또, 12월 31일자, ‘공로자들이 받아안은 뜨거운 아버지 사랑’에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을 그대로 이어주시며 혁명전사 모두를 한품에 안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량없는 은정은...” 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김정은의 아버지 사랑을 칭송하는 것이다. 이처럼, 전체 인민이 김정은을 아버이로 떠받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2015년감을 보면, 김정은을 ‘아버이’라고 표현한 곳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2014년 김정은이 현지도 한 것이 총 116차례 중 유치원과 청소년들 관련 장소 방문은 대략 13차례 정도이다. 이들에 대한 년감에서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김정은을 아버이로 묘사한 곳이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시의 육아원과 애육원을 돌아보시었다’(2월3일)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부모없는 아이들은 누구보다 정을 그리워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부모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밝게 바르게 잘 키우자고...”, 그리고 한 단계 진전된 면을 알 수 있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애육원을 찾으시고 국제아동절을 맞는 원아들을 축복해주시었다’에서 “친아버지앞에서 재물을 부리는 자식들마냥 노래를 불러드리는 원아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박수도 쳐주시었다”고 했다. 하지만, 김정은을 직접적으로 아버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2014년도에만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현지 지도한 것이 무려, 다섯 차례나 된다. 이는 김정은의 아버지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선전하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지도의 반응을 로동신문이나 북한 언론에서는 김정은을 아버이라고 묘사하고 표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유치원생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인민 전체 구성원들은 김정은을 아버이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2014년도에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징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15년감에서 소개한 2014년 주요 문학작품들 중에 ‘민족의 아버지’(서정시), ‘세상에 부럼없어라’(동시초), ‘우리 아버지’(가요), 등이 있는데,¹⁷⁾

17) 이중,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는 김정은이 보육원, 애육원에 방문할 때 마다 원생들이 김정은 앞에서 부른 곡이라고 년감은 소개하고 있다. 또 ‘우리 아버지’는 모란봉악단이 자주 부른 곡이라고 한다. 2015년감, 330- 340페이지

이 모두는 김정은과 관련된 작품들로 보여진다. 그런데, 김정은이 ‘아버이’라는 상징성을 확보한 2014년은 장성택이 처형(2013.12.12.)된 바로 그 다음해이다. 대체적으로 장성택이 제거되고부터 김정은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김정은이 권력을 독점한 그 시점에 북한은 김정은의 지도자 상징으로 ‘아버이’를 전면적으로 내세웠다고 볼 수 있겠다.

IV. ‘아버이’ 지도자 성격 및 이미지 유형 분석

1. 김일성, 효도의 대상으로: 메타포 이미지

김일성은 조선 인민의 아버지로 통한다. 김일성이 북한에서 ‘아버이’라는 이미지를 갖기 전에 김일성의 친모인 강반석이 조선의 어머니라고 불려졌다. 이는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을 낳았고 키웠다는 연유에서다. 1967년에 연극, ‘우리의 어머니의 기치따라’, ‘우리의 어머니’라는 작품이 나왔다. 그리고 기록영화로는 ‘우리의 어머지 강반석녀사’가 있다. 그런데, 년감에서는 김일성의 부친인 김형직에 대해서도 숭배하는 현상이 당시에 나타났고, 김형직을 애국적인 가문 출생과 강한의지와 뛰어난 성품, 열렬한 애국정신의 반일혁명투사, 혁명적인 교육자라고 칭송하고는 있지만, 김형직을 ‘조선의 아버지(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이는 김일성을 염두한 처사일 것이다.

김일성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1967년, 북한에서는 그 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김일성 가계 우상화를 시작하였다. 그 첫 번째, 우상화의 대상은 바로 김일성의 친부모인 김형직, 강반석이었다. 그러면서,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제3장을 통해, 김일성을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한 곳은 학교교육 기관인 유치원 및 탁아소에서 부터이다. 북한이 탁아소와 유치원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김일성은 그 유아들과 원생들에게도 아버지로 불려지기 시작했다. 북한정권은 탁아소(1-3세)에서 배급체제를 통해 모든 먹는 것, 입는 것, 필요한 물품들이 김일성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가리키며 김일성이 위대한 아버지임을 강하게 심어줬던 것이다. 이처럼, 김일성에 대한 아버지 이미지가 전국에서 운영되는 탁아소, 유치원을 통해, 전체 어

린이들의 아버지로 김일성의 이미지가 자리 잡히게 된 것이다. 그것이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및 대학교로 점차 확산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군중대회 및 사상대회를 통해 전체 모든 인민의 아버지로 그 이미지가 굳어져 김일성의 대표적인 지도자 상징 중 하나가 된 것이다. 또한, 김일성의 아버지이미지 성격은 한 가정의 아버지가 자녀들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것처럼 북한이라는 대가정의 아버지로 북한전체인민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아버지로써, 북한주민들에게 ‘효도의 대상’으로서의 아버지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북한 소학교 국어교과서를 통해서 더욱 명확해진다. 아래 <표 4-1>은 1976년 소학교 2학년용 국어교과서의 구조 및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¹⁸⁾

〈표 4-1〉 1976. 소학교 2학년용 국어교과서 구조 정리

차례	항 목	차례	항 목	차례	항 목
1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말씀	2과	조선의 노래	3과	파속의 비밀
4과	산삼에 깃든 이야기	5과	새집들이	6과	복숭아
7과	감자이야기	8과	한그루의 버드나무	9과	체육대회
10과	놀고먹던 꿀꿀이	11과	혁명군은 왔고나	12과	어머님의 정성
13과	소년유격대원들	14과	단추	15과	웃는 밤동산
16과	닭공장 견학	17과	귀중한 45분	18과	재봉바늘
19과	병원차가 찾아와요	20과	눈보라치던 밤에	21과	판자집 소년
22과	열세살	23과	통쾌한 싸움	24과	어디라도 와봐라
25과	혁명의 후비대를 위하여	26과	콩 한말	27과	뜨거운 아버지 사랑
28과	봉화리를 찾아서	29과	사랑의 온실농장	30과	아름다운 만경대
31과	명절날 아침	32과	초소에 서있는 형님에게	33과	충성의 붉은별
34과	일기	35과	첫 쇠물을 뽑던 날	36과	광산 로동자들의 지난날 이야기
37과	새옷을 타입은 날	38과	밀밭에 물주신 이야기	39과	생명수
40과	용남이의 포탄	41과	한줌의 흙	42과	고래잡이
43과	아동단원 복남이	44과	미제 승냥이	45과	영웅 중기사수
46과	꽃파는 처녀	47과	농장의 어린 주인들	48과	잊을 수 없는 그날

1976년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김일성 우상화에 대한 초점은 김일성의 파스한 보살핌과 은덕을 칭송하는 내용이 거의 주류를 이룬다. 다시 말해 김일성의 ‘아버이’이

18) 리우진 외, 『국어2』(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76); 정교진,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전략 및 특성비교 연구: 지도자 우상화의 ‘신화적 사고’ 접근 유·무 비교분석을 중점으로.” 『통일인문학』, 제68집 (2016), p. 311. 인용.

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인데 무려 19곳이나 되었다. 구체적으로 제4과, 제5과, 제6과, 제7과, 제8과, 제14과, 제15과, 제16과, 제19과, 제20과, 제22과, 제26과, 제27과, 제31과, 제35과, 제39과, 제42과, 제48과가 김일성의 은덕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김일성의 아버지이미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 가장 노골적으로 표현한 곳이 제27과 <뜨거운 아버이 사랑>으로 김일성의 사랑을 극적으로 표현하여 북한 아이들로 하여금 김일성의 효자동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입시킨다.

이러한 강력한 선전 및 일련의 과정을 통해 북한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김일성(원관념)과 아버지(보조관념)는 자연스럽게 연상 작용이 일어난다. 즉, 김일성과 아버지의 속성이 유사하여 자연스럽게 연동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김일성은 아버지이다”에서 김일성의 아버지이미지는 ‘메타포 이미지’라고 규정할 수 있다.

2. 김정일, 충성의 대상으로: 상징적 이미지

제3장에서 확인한 바대로, 김정일에게 아버지 이미지가 생성된 시기가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인 1992년으로 나타났다. 물론, 외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1993년부터는 북한 내부적으로도 김정일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1994년감에서 소개하는 대표적인 문학작품 중에 ‘우리아버진 김정일원수님’이라는 노래를 확인했다. 노래제목에 김정일을 원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것은 김정일이 1992년 4월 20일 원수추대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또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일의 아버지 이미지의 구축이 군대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다. 왜냐하면, 1993년 당시는 김일성이 사망하기 이전이기에 탁아소나, 유치원을 비롯한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그들이 김정일에게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년감에서도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나 어린아이, 청소년들이 김정일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다. 1994년감이나 1995년감은 김정일의 생일을 경축하는 청소년들의 축하문에 김정일을 아버지로 언급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1997년감에 가서야 비로소 나타난다. 1997년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뜻깊게 기념’ 부문의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대회에서는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1비서가 경축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새 세대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고 오늘의 행복과 래일의 찬란한 미래를 꽃피워주고 지켜주시는 경애

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께 300만 소년단원들의 다함없는 충성과 효성을 담아...”라고 하면서 김정일을 아버지라고 불렀다(103페이지). 이것은 1996년 2월에 진행된 내용이다.

그런데, 로동신문은 그보다 1년 앞서 비슷한 내용이 기사화 된다. 1995년 2월 17일 김정일 생일을 최대 명절로 제정한 것에 대한 경축대회 기사가 실렸는데, 그 제목이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 탄생일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진행’이었다. 조선소년단들이 김정일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확인한대로 이미 그전에 군대에서는 김정일을 아버지라 불렀다. 그것도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에 말이다. 그렇다면, 김정일에게 붙여진 아버지의 이미지의 성격은 김일성의 이미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김일성의 아버지 이미지는 먹이고 보살피고 교육시켜주는 주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책임지는 진짜 가정의 친부와 똑같은 이미지로 효도의 대상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한편, 군대에서 처음 불려진 김정일의 아버지의 의미는 ‘다스린다’는 성격으로 충성의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했을 것이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다. 1993년 로동신문에 대해 ‘어버이’라는 용어로 검색엔진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1993년도에 김정일에게 어버이라고 칭한 제목의 글 8편 중, 5편이 북한 내부에서 나오는 반응인데, 유독 탄광의 노동자들의 입을 통해서다. 2월 11자 신문은 ‘어버이의 그 은정 길이 전하리’(본사기자 주병순)라는 제목의 글로 석탄을 생산하는 2.8직 동청년탄광 일군들의 입을 통해 김정일을 어버이로 칭하고 있으며, 김정일에 대한 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며칠 후,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일동이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 전문을 로동신문에 올렸다. 여기서도 김정일을 어버이로 부르고 있으며 그 내용 핵심도 바로 ‘충성’이다. 아래 편지내용 중 일부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사랑과 은정은 충신을 낳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무엇에 비길수 없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어버이 사랑과 은정은 탄부들 모두에게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힘을 낳게 하는 원천이며 영양소입니다”

이 편지내용에서 부각되는 용어는 바로 ‘충신’이다. 이는 김정일의 사랑과 은정이 그들로 하여금 충성을 다 바치게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처럼, 김정일의 어버이 성격은 김일성과는 달리, 효도의 대상 보다는 충성의 대상에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아버이’와 ‘충성’의 연계성 배경은 바로 김정일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비롯된다. 김정일의 ‘어린시절 이야기’ 내용을 보면, 김정일이 김일성에 대한 효심의 표현이 ‘효도적 측면’이 아닌 ‘충성적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¹⁹⁾

김일성과 달리 같은 연령대 및 성인인 군인들과 탄광근로자들로부터 아버지이미지가 구축된 김정일로는 그 이미지의 유형이 김정일과 아버이가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메타포 이미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이미지의 본질적인 속성은 ‘아버지-자녀’간의 ‘책임-효도’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서로 자연스럽게 연상 작용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단지, 원관념(김정일)을 보조관념(아버이)의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에 의해 형성된 이미지, 즉 ‘상징적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다.

3. 김정은, 효도의 대상으로: 상징적 이미지

김정은에게 아버지 이미지가 생성된 시점도 김정은이 조선인민군총사령관으로 추대된 날과 관련이 깊다. 물론, 김정은도 외부로부터 그 아버지 이미지가 생성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김정은에게 부여된 아버이의 느낌은 김정일보다는 김일성에 가깝다. 2011년 12월 30일 로동신문은 김정일 사망 추모행사에 참가했던 해외동포조의방문단이 김정은에게 보낸 감사의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특히 우리 해외동포들의 슬픔을 먼저 생각하시여 세계 최상급의 목란관에서 은정깊은 사랑의 위로연까지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다심하신 아버지 사랑은...”, “...성대한 연회상까지 차려주시고 구미에 맞는 음식들을 많이 들게 하라고 다심하게 보살펴주시었으니 저희들은 정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뜨거운 아버지 사랑에 목매여 선뜻 수저를 들수 없었습니다”라고 칭송하고 있다. 여기서 김정일에게 아버지 이미지는 아주 다정하고 온정이 많은 아버지로 부각되며 살뜰이 살피주는 따뜻한 아버지 이미지로 강하게 비쳐준다. 이는 김정일 보다는 김일성의 아버지이미지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은의 아버지이미지가 내부적으로 구축될 때도 비슷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과 동일하게 군대에서부터 그 이미지가 구축되었다. 2012년 3월 16

19) 김정일의 어린시절 이야기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어린시절』(1985년)을 보면, 이책의 특징이 김일성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 김정일을 상당히 빈번하게 기술하고 있다. 총 18과 중에 십여 과나(56%) 김정일의 효심을 선전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김정일의 효성이 ‘충성’이라는 용어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정교진, 앞의 논문, p. 308.

일 로동신문 1면에는 <병사들의 친아버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린다. 그 내용은 김정은이 초도방어대를 시찰(3.9)하였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서해안의 전방초소에 불멸의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친부모도 가보지 못한 머나먼 외진 섬 초소에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오시었으니 어찌 병사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으랴”, “군인회관과 도서관, 식당을 돌아보시며 섬초소군인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군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자애로운 그이의 모습은 정녕 자식을 위하는 친아버이의 모습그대로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는 병사들과 혈연적뉴대를 이으신 자애로운 아버지시다” 이처럼, 김정은이 전방 오지부대 시찰하는 것을 보도하면서 친부모도 찾아가지 못하는 그 먼 곳을 직접 김정은이 찾아왔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김정은의 아버지이미지를 구축하였다. 즉, 김정은에게는 ‘자애로운 아버지’, ‘혈연적·가정적’ 아버지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김정은의 아버지 이미지성격은 김정일보다 김일성에게 더욱 가깝다고 보여진다. 이 당시 나이가 20대 후반밖에 안된 김정은에게 아버지라 칭하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지만, 딱딱한 지도자보다는 부드럽고 자애로운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셈법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름대로 논리를 내세우기 위해 이 아버지이미지를 김정은이 전방 외진 부대를 현지지도하는 것을 기해서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 선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2014년부터 북한은 본격적으로 김정은의 아버지이미지를 선전하는 많은 노래를 만들어 낸다. <인민의 아버이를 따르는 천만심장의 노래 끝없이 올라가리>, <인민의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 <그품이 제일 좋아>, <다심한 그 정에 마음이 끌려 목메여 우러르는 분>, <우리엔겐 제일 고마운 원수님이 계십니다>. <인덕이 하늘같이 끝없이 안기고 싶은 아 원수님 그 품이 제일 좋아> 등 관련 노래들을 소개하면서 “이들 노래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아버지로, 스승으로, 삶의 은인으로 우리러 따르는 인민의 꾸밈없이 진실한 생활감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했다. 이처럼, 김정은을 찬양하는 많은 곡들이 김정은의 아버지이미지와 직결됨을 볼 수 있다. 이 이미지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김정일보다는 김일성의 이미지와 훨씬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이미지를 통해서도 김정은이 김일성을 답습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아버지이미지는 ‘메타포 이미지’에 가까운가? 아니면 ‘상징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가? '부모-자식'의 본질적인 속성인 '책임-효도' 측면에서는 '메타포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김정일과 같이 그 어버이이미지가 군대에서 구축되었지만 그 선전내용을 위에서 확인한 대로, "...그이의 모습은 정녕 자식을 위하는 친어버이의 모습 그대로이다" 고 한 것처럼 '가정에서의 어버이'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켰던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김일성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김일성은 탁아소,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인민학교까지 '어버이' 이미지를 구축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매우 자연스러워 북한 아이들 및 청소년들, 청년들뿐만 아니라 북한 전체주민들에게 김일성의 어버이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수월하게 동화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은 탁아소, 유치원, 소학교 및 청소년들이 아니라, 청년들인 군인들에게 그 어버이이미지를 선전하는데 있어 아무리 '책임-효도'라는 본질적인 속성으로 접근했을 지라도 그 대상들이 '신화적 사고'²⁰⁾에 지배되지 않고는 동화되어지고 그 이미지가 흡인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그 어떤 사회보다 지도자에 대한 '신화적 사고'가 작동되는 사회라는 점에서 그 내면 의식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는 김정은을 어버이로 떠받는데 반대급부가 형성되지는 못할 것이다.

V. 나가는 말

본문을 통해 도출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어버이이미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버이이미지 생성에 있어서는 김일성의 어버이이미지는 탁아소,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된 반면에 김정일, 김정은의 어버이이미지는 외부로부터 비롯되었고 내부적으로 그 이미지가 구축된 것은 군대 및 탄광에서부터였다. 둘째, 어버이이미지의 상징화 즉, 상징성 확보는 김일성이 일인독재권력을 구축한

20) 반 피어슨(C.G. Van peursen)이 제시한 이론으로서 신화적 사고의 특징은 자신이 하나의 인상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그로 인해 '신들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람이 자류로운 사색을 하지 못하고 완전히 인상의 포로가 되는 식의 사고로 원시문화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화에서든지 간에 모든 사람의 사고에는 강력하고도 광범위한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재자들은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해 이 원리를 심분 활용하여 자신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숭배하게 만들어 그 권위에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든다고 했다. 유영옥, 앞의 글, p. 227.; 정교진, 앞의 논문, 303.

바로 다음해인 1968년이었고, 김정일은 총비서로 추대된 1997년, 김정은은 장성택을 처형 한 다음해인 2014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징성 획득시점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리더십 확보와 긴밀하게 연동됨을 확인시켜 준다.

셋째, 아버지이미지의 성격을 분석한 결과, 김일성의 아버지 지도자 성격은 ‘효도의 대상’으로, 김정일은 ‘충성의 대상으로’, 김정은은 ‘효도의 대상’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김정은의 아버지이미지는 김정일보다 김일성과 그 성격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아버지이미지의 유형비교에서는 김일성의 유형은 ‘메타포 이미지’로 나타났고 김정일은 ‘상징적 이미지’로 나타났다. 김정은은 아버지 속성은 ‘메타포 이미지’에 가깝지만 그 이미지 생성 및 구축과정이 김일성과 같이 자연스럽게 못하고 원관념(김정은)을 보조관념(아버이)으로 의도적으로 특정화 시키는 점에서 ‘상징적 이미지’로 평가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30대 초반의 김정은이 북한 전체인민들로부터 ‘아버이’로 불리어진다는 현실이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김정은이 20대 후반이었을 때, 불과 열 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나 같은 또래인 군인들로부터 ‘아버이’ 이미지가 나타났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불가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방법과 제4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북한은 ‘사회정치생명체론’이라는 영도체계원리와 북한정권의 특유의 ‘세뇌’와 ‘선전’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지도자들에 대한 강력한 ‘신화적 사고’에 지배당하고 있다. 즉 ‘신들리는 현상’에 의해 지도자의 인상에 대해 맹목적인 사고를 갖게 되었다. 다시 말해, 지도자들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선전되어도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전혀 형성되지 못한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생성된 김정은의 아버지이미지가 내부적으로는 군부대로부터 구축되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충성을 내세운 김정일의 상징적인 아버지이미지와는 달리 김일성과 같이 ‘책임-효심’의 속성으로 접근하여 ‘메타포 이미지’로 접근을 시도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물론, 그 과정이 김일성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매끄럽지 못해 ‘상징적 이미지’에 가깝다고 규정했지만 10대 후반, 20대 군인들을 대상으로 ‘친 아버이의 모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이 매우 놀랍기만 하다. 이것은 북한전체인민들이 지도자에 대한 ‘신화적 사고’에 지배당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결국, 2014년에 김정은의 아버지이미지도 김일성, 김정일처럼 하나의 상징성에 도달하였다. 즉 이 시기부터 북한의 공식적인 정치문건이나 당 문건에서 김정은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고 북한 전체인민대중들에게 통용된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사회를 지배하는 ‘신화적 사고’는 아직까지도 강고한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균열의 조짐이 있는 것인가? 김정은의 아버지이미지 및 상징성에서 이점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다. 다만, 북한정권의 김정은 우상화 작업과정에서 조금의 부작용이 발견되는 점이 있었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에 있어서는 ‘어린시절 이야기’와 ‘김정은의 혁명활동’에서도 김정은을 초능력을 발휘하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²¹⁾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선전하는데, 그 흡인력이 크지 못하다는 것이다.²²⁾ 이는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북한의 ‘신화적 사고’가 아주 조금 균열을 보인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것을 아버지이미지를 연결시켜 보면, 혹시 “아니, 30대 초반밖에 안 된 사람이 우리의 아버지라구요?” 라는 반응들도 나오지 않을까?

■ 논문투고일: 2017년 05월 04일 ■ 논문심사일: 2017년 06월 05일 ■ 게재확정일: 2017년 06월 20일

21) 정교진, 앞의 논문, pp. 304~331.

22) 김일성과 김정일의 어린시절 이야기에서는 비범한 인물정도로만 묘사하는데 반해, 김정은의 경우는 초능력을 발휘하는 인물로 그리고 있다. 2015년 북한이 김정은 우상화교육을 위해 만든 <김정은혁명활동 교수참고서> 제1장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지니신 비범한 천품’에서 김정은이 세 살 무렵에 사격을 했다고 선전하는데, “원수님께서 목표물을 조준하시고 1초간격으로 10개의 목표물을 모두 소명하시었다”라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한 반응으로 북한 청소년들이 “3살 때 어떻게 총을 쏘며, 게다가 다 명중을 시킬 수 있느냐?”고 선생들에게 질문을 하며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교진, “북한 독재정권의 상징조작 유형 연구.” 『북한학보』 제40집 2호 (2015), p. 128.

참고문헌

1. 국문단행본

유영옥. 『상징과 기호의 사회과학』. 서울: 홍익재, 2007.

유재웅. 『국가이미지 이론·전략·프로그램』.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2. 영문단행본

A. Preminger.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Univ. Press, 1965.

Jae-Cheon Lim. Leader Symbols and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The leader state. London: Routledge, 2015.

3. 국문논문

김유경. “북한잡지 『조선예술』에 등장하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이미지 유형 및 정권승계 과정에서의 이미지 활용 분석: 1990~2011년 자료를 중심으로.” 『ATE』 제3집 (2013).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의와 법 이미지의 상징화” 『출판저널』 (1995).

안수지, “국가브랜드 친환경이미지상징화 전략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2004).

이훈익. “문화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방안: 문화이미지 상징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정교진, 유호열, “북한 최고통치자의 상징, ‘태양’의 성격에 관한 연구: ‘이미지의 상징화’ 개념 적용 및 종교적의미부여 평가를 중점으로” 『종교연구』, 제77집1호 (2017).

정교진. “북한 독재정권의 상징조작 유형 연구.” 『북한학보』 제40집 2호 (2015).

정교진.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전략 및 특성비교 연구: 지도자 우상화의 ‘신화적 사고’ 접근 유·무 비교분석을 중점으로.” 『통일인문학』, 제68집 (2016).

정교진. “북한정권의 ‘지도자상징정치’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최경희. “북한 ‘수령권력’ 체제의 생성과 매커니즘.” 『한국과 국제정치』 제32-4호 (2016).

4. 기타

김승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어린시절』.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85.

리우진 외. 『국어2』.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76.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저, 김동규 옮김. 『백두산 전설집1: 김일성 전설집』. 서울: 백수사, 1996.

문학예술종합출판사. 『백두광명 전설집』.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1.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49.

『조선중앙년감』 1949, 1951-1952, 1958, 1968, 1969, 1994, 1995, 1997, 2015년

로동신문, 1992.1.12./11.1. 1993.2.1./2.11/2.16. 1994.8.14.

1995.2.17. 1997.10.20. 2011.12.30. 2012.3.16.

2013.1.7./6.2/7.17/11.8.

A Analysis Study on Character of ‘Father’ as Image of North Korea’s Ruler: ‘Image Symbolization’ concept application and ‘metaphor-symbolic image’ type evaluation

Jung, Kyo Jin

North Korea’s Ruler, Kim Jong Un seems to have secured solid leadership after the execution of Jang Sung Taek on December 12, 2013. as ruler’s image, symbolic aspect. First, on January 9, 2014, Kim Jong Un’s birthday (1.8) was announced for the first time through North Korea’s Central News Agency. Secondly, after the execution of Jang Sung Taek, a lot of Kim Jong Eun hymns came out. Third, the image of leader Kim Jong Un, ‘Sun’ and ‘Father’ reached the symbolism of leader. Fourth, Kim Jong Un’s leader’s image, ‘SURYOUNG’ was created. When Kim Jong Il dies and When Kim Jong Un succeeds his power, the representative image of the leader given to him is ‘Father’. And that image has reached one symbolize from 2014.

In other words, in the political documents and party documents of the North since 2014, Kim Jong Un is officially called “Father”. it means which it has been used in the entire North Korean society. In the early thirties, Kim Jong Un was called “Father” in North Korea. Kim Il-sung and Kim Jong Il also had a image as ‘Father’ leader image when they took power. However, the character of Kim Il Sung and Kim Jong Il’s image is somewhat different. and Kim Jong Un’s image is closer to Kim Il Sung than Kim Jong Il. When Kim Jong Un first appeared on the official stage, He appeared as in the form of young Kim Il Sung. Because He want to get the image of Kim Il Sung’s incarnation. Likewise his Fathers’ image also follows Kim Il Sung’s image rather than Kim Jong Il.

But how will this be absorbent to the North Korean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ages of Kim Il Sung, Kim Jong Il and Kim Jong Un by applying ‘metaphor- symbolic image’ which is one of the types of images.

***Keyword:** Father’s Image, Image Symbolization, metaphor image, symbolic image

불가리아 사유화 정책과 시사점 연구

탁 용 달*

목 차

I. 서론

II. 불가리아 체제전환과 경제현황

III. 사유화 정책과 추진기구의 역할

IV. 사유화 정책 평가 및 시사점

[국문요약] 남북한 경제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제전환 국가들의 경험은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 성공적인 체제전환 국가들의 사례보다는 실패한 사례가 더 유용할 수 있다. 불가리아 체제전환 및 사유화 정책은 정책일관성의 부재와 추진체계 미흡으로 실패한 체제전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불가리아는 사유화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함과 동시에 사유화청을 설립하였고, 후속 조치로 사유화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재원조달 정책을 강화했다. 사유화법에는 구체적인 사유화 방식을 명기했고, 기업의 규모 및 소유형태 등에 따라 사유화 담당 기관을 구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부처별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사유화 실적이 미진했고, 사유화 과정에서 국영기업 노동자들이 저항했으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부의 리더십이 부재했다.

사유화청의 역할은 설립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지만, 정치적 갈등과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사유화 실적 미비는 해결하지 못했다. 사유화 관리기구의 통합과 일원화

를 목적으로 사유화 및 사유화 사후 관리 기구가 출범(2010년)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국영기업 사유화를 추진했다. 불가리아는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같이 사유화 전담기구를 설치했지만, 정책의 일관성 부재, 사유화 정책의 중요성 간과, 사유화 추진을 위한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추진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사유화의 대상과 속도 방식에 따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통일한국의 북한지역 사유화를 위해서는 사유화 전담기구가 필요하지만 단계별로 성격과 운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초기 사유화 단계에서는 사유화청 형태가 아닌 사유화 대상 기업의 선정 및 가치평가, 북한지역 산업 활성화 차원의 사유화 준비기구가 필요하고, 후기 사유화 단계에서는 북한지역 국유재산 관리청(가칭)의 형태로 토지 및 기업에 대한 사유화 추진 기구를 설립 운영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불가리아 체제전환, 사유화청, 사유화 및 사유화 이후 감독청, 전담기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통일자산연구센터 연구원

I. 서론

남북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경험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통일한국의 정치·경제 청사진을 단정적으로 결론내리기는 어려움 있지만, 적어도 정치적 민주주의가 확보되고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는 형태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사유화 확산도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금은 진부한 주제일 수 있지만 여전히 사유화 관련 논의는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당사자로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주의 체제전환이나 사유화 과정은 개별 국가들의 경제적 초기조건(initial condition) 및 사유화 정책 추진 속도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었다. 개별 국가들의 경제성장의 경험, 규모, 사유화의 진척 정도와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체제전환에 성공한 국가들이 추진했던 주요 정책을 통일한국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반대로 체제전환 실적이 미흡한 국가들의 사례가 통일준비 과정에서 좀 더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동유럽 체제전환국 가운데 불가리아는 비셰그라드 4국¹⁾에 비해 체제전환 성과가 낮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불가리아는 체제전환 정책 추진과정에서 일관성의 부족, 사유화 정책 혼선, 추진체계 미흡 등으로 실적이 부진했다. 또한 토지에 대한 원소유자 반환(restitution)과 사유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과도한 정치 개입 등으로 인해 사유화 정책의 효율성이 낮았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유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하면서 지속적인 토지 및 국영기업 매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불가리아의 체제전환 및 사유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통일대비 북한지역 사유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했다. II장에서는 체제전환의 일반적 개념과 불가리아 체제전환 정책과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III장에서는 불가리아의 사유화 과정을 분석하면서, 사유화 과정에 대한 이해와 불가리아 사유화 과정의 특징에 대한 분석을 병행했다. IV장에서는 불가리아 사유화 과정에 대한 평가와 통일대비 사유화 전담기구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1)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4개국으로 중부유럽의 체제전환 국가들을 지칭하는 용어

II. 불가리아 체제전환과 경제현황

1. 불가리아 체제전환 개관

불가리아는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민주화와 시장경제화가 추진되던 시기에 민중봉기에 의한 체제전환 시도가 있었다.²⁾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독재체제 붕괴가 시작되었지만, 낙후된 사회·경제적 조건과 기존 지배세력의 권력독점, 미성숙한 시민사회 역량 등으로 전면적인 지배세력 교체에는 실패했다.

1990년 1월 불가리아 의회는 공산당의 군사력 독점 및 지도적 역할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삭제하고 다당제 및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발의³⁾했다. 1990년 4월 발의된 개헌안은 국민투표 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승인·발표되었다. 불가리아는 헌법 개정을 통해 민주헌정 국가임을 선포하고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등의 체제전환을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했다.

경제적으로는 1990년 3월 29일 대외무역은행은 채권은행과 사전 협의 없이 116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 동결령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불가리아 대외신용은 급락했고 무역거래 중단 사태로 국영기업이 도산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서방국가들은 불가리아 경제개혁 추진에 필요한 경제지원을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대응했다.⁴⁾ 추가적으로 불가리아 정부는 생필품 보조금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격자유화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정치적 갈등과 물가불안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가중으로 가격자유화 조치를 철회하는 등의 정책적 혼선을 보여줬다.⁵⁾

사유화법 제정을 통해 국영기업 사유화 및 부동산의 개인소유를 허용하는 법적 토대를 구축했다. 특히, 농지법 제정을 통한 협동농장의 개인소유를 허용했고, 과거 원소유자 토지를 반환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1992년 1월에는 외국인 투자 제한조항들을 철폐하고, 불가리아 전역에 걸쳐 6개의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는 등의 개방화 정책 추진했다.

2) 민경배, “체제전환국 법제의 특징과 구조,” 『통일문제연구』, 평화문제연구소, 제18권 2호, 2006. p. 296.

3) 김규판·한정철, 『불가리아 편람 1996 증보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p. 51.

4) 이종태, “불가리아 경제개혁이 갈 길은,” 『통일한국』, 평화문제연구소, 1993, 2, pp. 84~87.

5) 손병환, “러시아와 동유럽의 사유화 평가,” (서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p. 65.

하지만, 불가리아 체제전환 과정에서 내각 수반 교체가 빈번하면서 경제정책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내각의 짧은 재임기간 동안 경제부흥정책 추진, 경제개혁 관련 입법 마련, 사유화 등의 정책들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거시경제 지표의 안정성을 해치면서 물가폭등, 성장률 하락 등을 초래했다. 따라서 내각의 정치인들은 정권 유지를 위해 개혁적 조치를 철회하는 등의 정책적 혼선을 초래했다. 이는 전체적인 경제안정과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 체제전환 이후 리더십 교체와 주요 정책 변화 〉

내각	집권 기간	주요 정책
루카 치노	1989.12~1990.12	■ 경제부흥책 발표 - 소비재 산업 육성책 발표, 생필품 가격 동결 - 농업생산 성장률 목표 : 전년 대비 3.2% 제시 - 외자획득이 가능한 프로젝트에 우선 투자, 공공투자 삭감 및 건설프로젝트 30% 감축
포포프	1990.12~1991.11	■ 경제개혁 법안 입안 - 회계법, 농지법, 독점금지법, 외국인투자법, 국가예산법, 은행 여신법 등의 법률 제정 ■ IMF, 세계은행 등과 새로운 경제개혁 프로그램 발표 - 재정안정화 프로그램 추진, 부분적인 가격자유화 추진 -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대출금리 인상* * 1991년 1월 4.5% -> 15% -> 2월 45% ■ 레버 환율 평가절하, 변동환율제 도입, 저축 장려 등을 추진 ■ 농지법 제정을 통해 협동농장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
디미트 로프	1991.11~1992.10	■ 사유화법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사유화 정책 추진 - 국영기업 140, 국가가 지분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900개를 유한회사로 분할 ■ 민간기업 창업지원을 위해 외국인 합작회사 면세혜택 - 신외국인투자법 제정 : 외국인 건물소유 가능, 투자최저액 폐지, 불가리아 국내은행을 통한 외화판매 및 해외송금 가능 ■ 주요 교역대상국을 사회주의권 국가에서 자본주의국가로 전환
베로프	1992.10~1994.12	■ 재정적자, 실업,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거시경제목표 설정 - 사유화 정책을 통한 민간부문 육성, 국영기업 관리체계 정비, 대외무역 확대 정책 - 국가예산법 개정, 대출보다는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수지 적자 보호대책 추진 - 국영기업 근로자 평균임금 및 최저임금 재설정 및 사회보장 확대

자료: 이원희, 『해외의 공공기관 IV: 동유럽편』,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pp. 121~123의 내용을 정리

2. 체제전환이후 경제상황

체제전환 이후 불가리아 정부가 전격적으로 시행한 가격자유화 조치는 생필품 가격의 급등을 초래했으며 체제전환 초기의 실업률 증가는 물가상승과 맞물려 불가리아 거시경제안정성을 크게 위협했다. 체제전환 이전 불가리아 정부는 생필품에 대한 가격통제 및 각종 보조금 제도를 통해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유지했다. 1980년대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1% 이하, 1985~1989년 소매물가상승률 평균도 3.18% 수준이었다.⁶⁾ 하지만, 체제전환 이후 노동자 급여가 5배 상승했지만,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10~20배 상승했고, 산업시설의 50% 이상 가동이 중단되면서 백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체제전환 이후 불가리아 정부는 가격자유화의 단계적 확대 및 통화발행을 통한 재정확대 정책으로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을 경험했다. 불가리아 정부는 생필품에 대한 보조금 폐지 등을 추진하면서 점진적 가격자유화 조치를 추진했고, 1990년의 경우 소매물가 상승률이 79%를 기록한 바 있으며, 같은 해 9월 IMF 가입을 계기로 전면적인 가격 자유화 정책을 추진했다.⁷⁾ 1991년 2월 1일부로 소비자가격 및 생산자가격이 동시에 자유화되었으며, 이 조치에 따라 대부분의 가격 통제가 사라지게 되었고, 다만 가격이 50% 이상 상승한 품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통제⁸⁾가 시행되었다.

불가리아 정부의 가격자유화 조치는 지속되었고 1992년 5월 식료품 및 에너지에 대한 정부 보조금 삭감 등으로 관련 물품의 소비자 가격 급등했다.⁹⁾ 1994년에는 통화발행을 통한 재정수지 적자보전과 18%의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라 물가불안이 심화되어 연간 물가상승률이 936.2%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불가리아는 정치·경제적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계속 높은 물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1997년 초 경제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초인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했다.

6) 이원희, 『해외의 공공기관 IV: 동유럽편』,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p.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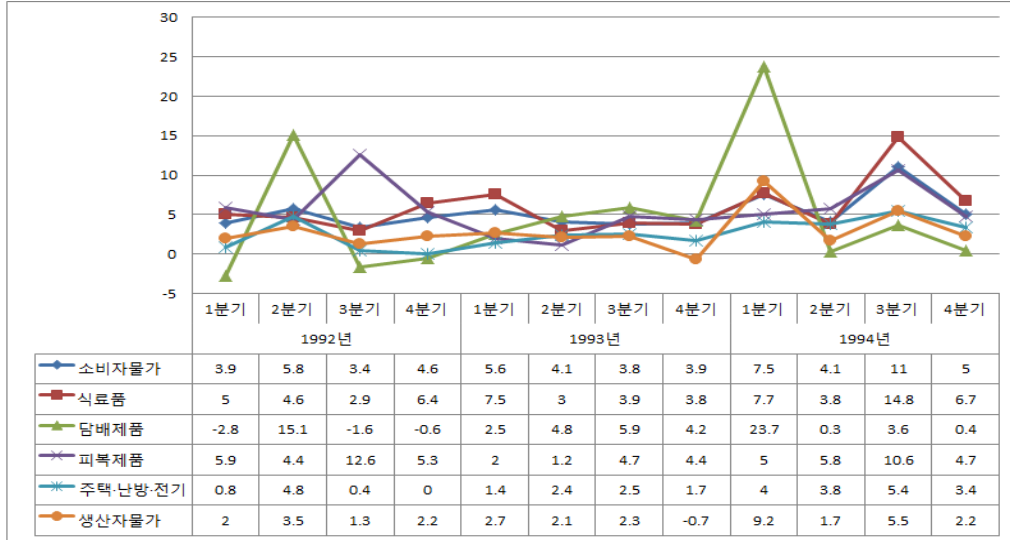
7) IMF는 불가리아의 IMF 가입 조건으로 각종 보조금의 단계적인 폐지, 국영기업의 경영평가 도입 등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사실상 강제

8) 제한적인 통제가 적용된 품목은 에너지, 식료품, 공공요금 등이며, 에너지의 경우 가격이 고정되었고, 식료품과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가격상한제가 적용

9) 1991년 1월 대비 12월 물가상승률은 504.9%

〈 불가리아 체제전환기 분기별 물가상승률(1992~1994) 〉

(단위: 분기별 증가율, %)



자료: 이원희, 『해외의 공공기관 IV: 동유럽편』,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p. 120(원자료는 PlanEcon(1995), *PlanEcon Report*, Vol. XI, No. 13~14.)

초인플레이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1995년 사회당 정부는 가격결정에 대한 국가 개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격법(Price Law)을 제정·통과시킴으로써 정부의 가격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개혁조치에 역행하는 정책이 시도했다. 가격통제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완전 가격자유화가 실시된 이후에도 가격통제가 가능한 가격법은 2년간 지속했다. 1997년 3~6월중 일부 공공요금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가격 자유화가 실시되었고 연말에는 사실상의 가격 자유화가 완성되었지만, 가격법은 1999년 7월에 폐지되었다.

불가리아의 가격 자유화 추이를 동구 주요국과 비교하면, 불가리아 가격 자유화 정책은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반면 동구 주요국들은 체제전환 초기에도 불가리아와 비교하여도 높은 수준의 가격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가격 자유화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 동구권 주요 국가들의 가격 자유화* 추이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불가리아	30.0	76.0	84.0	74.0	57.0	54.0	48.0	95.6	84.2
체코	-	72.1	81.7	82.1	81.7	82.6	82.6	86.7	86.7
헝가리	84.0	89.0	89.1	89.2	88.2	87.1	87.2	84.1	-
폴란드	89.0	89.0	89.0	89.4	88.0	88.0	88.4	89.4	89.4

주: * 소비자가격지수(CPI)에서 자유화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김성철 외, 『동유럽국가의 개혁·개방 과정과 체제전환』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 69. (원자료는 EBRD(2001), p. 182.)

체제전환 직후 불가리아는 기존 대외무역을 독점해오던 대외무역기구(FTO)를 비롯한 모든 기업에게 대외무역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수입업자에게 은행간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환에 대한 접근을 자유화했다. 1991년 2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입허가제를 폐지하여 수출입절차가 간소화했음은 물론 외환보유제한이 완화되면서 무역자유화가 증진했다.

하지만, 제도상으로 불가리아는 대외개방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표면상이 이유는 대외무역 자유화 조치가 원자재 급등을 야기하고 이는 국민들의 후생수준을 하락시킬 것이라 우려했기 때문이다.¹⁰⁾ 하지만 정책당국은 구체제당시 집권 기득권층이 보유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독점적 이득을 보호할 필요성에 의해 무역자유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현실이었고, 이는 경제개혁을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서비스 부문에 대한 정부의 허가 제도를 지속했고, 경제위기로 도입된 수입과징금(import surcharge) 제도도 1998년에 이르러 철폐하는 등의 폐쇄적인 정책을 유지했고, 외환거래를 위한 금융시스템에 대한 국가통제를 지속했다.

1989년 이래 불가리아 경제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증했다. 1991년에는 민간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에 불과했으나, 1995년에는 1994년에 비해 25%나 급증하여 GDP의 1/3을 차지하였고, 1996년에는 50%에 육박¹¹⁾했다.

불가리아는 체제전환 이후 급격한 경제침체를 경험했고, 마이너스 성장과 높은 물가상승률, 실업 등의 문제로 인해 거시경제안정성이 크게 위협했다. 불가리아의 체제전환 불황(Transformational Recession)¹²⁾은 불가리아만의 특성이 아니라 구 사

10) 김성철 외, 『동유럽국가의 개혁·개방 과정과 체제전환』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 67.

11) UNECE, *Economic Survey of Europe*, No. 1 (New York: United Nations, 2000), pp. 4~8.

12) 체제전환 불황은 체제전환 경제학자 Kornai가 그의 저서에서 밝힌 개념으로 체제전환을 경험한 국가들의 급격한 성장을 저하와 초인플레이션, 심각한 실업률이 발생한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

회주의권 체제전환 국가 대부분에서 발생했다.¹³⁾ 지역별로 GDP 하락 경향을 분석하면, 중부유럽에서 GDP 총 하락은 19%, 남동유럽에서는 29%, 발트 해 연안국(불가리아, 아제르바이잔 등)에서는 44% 수준의 GDP 하락이 나타났다. 불가리아는 1990년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53%, 물가상승률은 평균 161.7%, 실업률은 15% 수준으로 체제전환 불황을 경험했다.

〈 체제전환 이후 불가리아 주요 경제지표 〉

연도	GDP (백만 달러)	연평균 GDP 성장률(%)	물가상승률 (%)	실업률 (%)
1990	20,726	-9.1	26.2	-
1991	10,944	-8.4	226.5	18.5
1992	10,372	-7.3	59.6	13.8
1993	10,832	-1.5	51.1	21.4
1994	9,705	1.8	72.7	20.0
1995	13,069	2.9	62.4	15.7
1996	8,890	-9.0	98.0	13.5
1997	10,053	-1.6	987.1	13.7
1998	13,061	4.9	29.7	12.2
1999	13,228	2.0	3.7	14.1

자료: 이원희, 『해외의 공공기관 IV: 동유럽편』,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p. 120

III. 사유화 정책과 추진기구의 역할

1. 체제전환 초기의 사유화 정책

불가리아는 체제전환 초기 ‘국유 및 사유기업의 전환과 사유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유화 정책을 추진했다. 정부기관으로 각료회의 산하에 사유화청을 신설하고, 1000만 레버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국영기업을 사유화 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 사유화청은 매년 300개의 국영기업을 사유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994년 말 현재 사유화가 완료된 국영기업은 229개이고, 사유화에 착수한 국영기업은 953개에 이르렀다.¹⁴⁾

13) UNECE, *Economic Survey of Europe*, No. 1 (New York: United Nations, 2000), pp. 4~8.

14) 이원희, 『해외의 공공기관 IV: 동유럽편』,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p. 126.

〈 국영기업 사유화 현황(1994년 말 기준) 〉

(단위: 개, %)

주무부처	사유화 착수 기업		사유화 완료 기업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사유화청	217	22.8	46	20.1
공업부	144	15.1	24	10.5
농업부	147	15.4	51	22.3
무역부	202	21.2	72	31.4
운송부	97	10.2	8	3.5
건설부	49	5.1	19	8.3
관광위원회	75	7.9	7	3.1
기타	22	2.3	2	0.9
합계	953	100	229	100

자료: 이원희, 『해외의 공공기관 IV: 동유럽편』,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p. 126. (원자료는 168 Hours BBN(1995), *Bulgarian Business News*, pp. 10~16.)

불가리아 국영기업 사유화는 계획 대비 실적 기준으로 약 30% 수준이었고, 기업 규모별 현황을 보면 소규모 지방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¹⁵⁾ 사유화청과 주무부처를 통해 총 1,543개 기업의 사유화 추진을 결정했으나 실제 사유화가 완료된 기업은 534건에 불과했다. 주요 산업별 사유화 추진 실적은 무역관련 기업 179개, 농·식품 기업 116개, 제조업체 81개, 건설관련 기업 62개, 관광관련 기업 48개 등이다. 사유화가 추진된 기업 규모를 보면 대차대조표상 고정자산가치 기준으로 소규모 기업(7천만 레버 이하)이 전체 사유화 대상 기업의 93.8%였고, 7천만 레버 ~ 2억 레버 규모의 기업은 4.3%에 불과했다. 불가리아 국영기업 고정자산가치 평균이 1억 레버 수준을 고려하면 당시 사유화 추진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낮은 수준이었다. 체제전환 초기에는 사유화 정책 담당조직이 비대했고 의사결정 지연으로 실적이 저조했다.¹⁶⁾

1992년~1996년 불가리아 정부는 국영기업의 사유화 추진을 위해 사유화기금법(the Privatization Funds Act)을 제정하여 중소규모기업 중심의 사유화를 추진했다. 사유화기금을 통해 사유화대상 기업의 매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었고, 더불어 민간기업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되었다.

불가리아 정부는 1997년~1998년의 기간 동안 사유화 정책의 확산과 실효성 제고

15) Maria Prohaska, "Bulgaria: Summing up Privatization," Centre for the Study of Democracy, 1996. p. 3.

16) Maria Prohaska, "Bulgaria: Summing up Privatization," Centre for the Study of Democracy, 1996. p. 4.

를 위해 바우처(Voucher) 방식¹⁷⁾을 적극 활용했다. 불가리아 정부는 바우처 사유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명시적 목표를 제시했다. 바우처 사유화 방식은 첫째, 기업 생산성 향상, 둘째, 경제 전체에서 민간부문의 역할과 비중을 확대, 셋째,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강화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 사유화 대상 국영 기업의 매각이나 처분 과정에서 투자 바우처를 활용하게 되었고 이 시기 전체 국영 기업 1,000여개가 사유화 되었으며 자산규모로는 전체 국영기업 자산의 20% 정도가 민간부문으로 매각했다. 바우처 사유화 제도는 기존 사유화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사유화기금법 제정 이후 지지부진한 사유화 실적을 개선시킨 것으로 평가받았다.¹⁸⁾

불가리아는 과거 공산체제시절의 몰수자산에 대해 원소유주에 반환¹⁹⁾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 불가리아는 1992년 2월 반환법(Law on Restitution)을 제정하여 구체제 당시 국유화 과정에서 몰수된 자산의 원소유주에 대한 반환을 시작했다.²⁰⁾ 국가, 자치단체, 또는 일정조직이 소유하는 토지가 대상이 되며, 이들 토지는 원소유자 또는 그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되는 것이다.

기업의 재사유화에 관해서는 “국영기업 및 자치단체소유기업의 조직변경과 사유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해당 법률에는 기업의 원소유자에 대한 보상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지 못했다. 이는 토지와 국영기업의 원소유자 반환을 어렵게 만든 원인으로 작용했다. 기업의 경우 설립당시 기업 가치와 가치가 하락한 시점에서 매매를 위한 현재 가치를 결정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반환이 불가능하여 보상을 하는 경우에도 비용산정의 문제 등이 발생했다. 실제로 토지와 국영기업 반환과정에서 막대한 소송이 제기되었고 현재까지 상당수의 소송건수가 미해결된 상태이므로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

17) 18세 이상의 국민들이 500레버 수수료를 납부하면 2만 5,000레버 가치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바우처를 교부받고 사유화 대상기업 가운데 주식구입 희망업체를 선정하여 바우처와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

18) 이원희, 『해외의 공공기관 IV: 동유럽편』,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p. 128.

19) 반환의 법률적 근거는 1992년 2월 5일부로 발효된 “지역 및 촌락 질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몰수된 일정자산의 소유권 회복에 관한 법률”은 국유화 토지의 소유관계 부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률에 따르면 과거 국유화법으로 인해 소유관계가 변경된 토지는 국유화되기 이전의 소유관계가 인정된다고 규정

20) 1994년 말까지 총 4만 5,906건의 반환이 이루어졌고, 반환이 완료된 대상 물건은 주로 소규모 점포이긴 하지만, 식당, 호텔, 창고, 공공건물, 공장 등 대상이 다양하고 광범위했음.

불가리아 사유화는 국영기업 지배구조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속도가 체코나 헝가리 등과 비교하여 느리게 추진되었다.²¹⁾ 국영기업 경영진들은 정치권과 결탁하여 사유화 이후 경영권 유지를 위한 갈등을 일으켰고, 대규모 국영기업 분할 과정에서 국영기업 그룹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었다. 1993년~1999년까지 국영기업의 46.3%가 사유화²²⁾가 추진되었고, 민간부문 비중이 69.3%까지 확대 되었다.²³⁾

불가리아 사유화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대규모 국영기업 사유화 지표(Privatization Index)를²⁴⁾ 비교하면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²⁵⁾이었다. 체제전환 초기 불가리아 사유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첫째, 지속된 정치적 불안과 이에 따른 잦은 정권 교체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훼손되었다. 둘째, 정치적으로 건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못했다. 체제전환 이전의 독재세력들이 여전히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이는 가격 및 규제 자유화 등과 같은 사유화의 핵심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되었다. 사유화 정책의 속도와 일관성의 부재가 초기 사유화 실적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 대규모 국영기업 사유화 지표 추이 〉

	1989	1995	2001	2007
불가리아	1.0	2.0	3.7	4.0
체코	1.0	4.0	4.0	4.0
헝가리	1.0	4.0	4.0	4.0
폴란드	1.0	3.0	3.3	3.3

자료: EBRD, Transition Report Data, (김석진 외, 『체제전환국사례를 통해 본 북한 산업개발전략』, 산업연구원, 2008 재인용)

21) EVGENI PEEV, "Ownership and Control Structures in Transition to 'GRONY' Capitalism: The Case of Bulgaria," *Eastern European Economics*, Vol 40. no 5. Sep-Oct, 2002.

22) 대표적으로 발칸항공(Balkan Airlines), Neftochim(정유), Agropolichim(비료화학), Himko(비료화학), Antibiotic-Razgrad(의약품), Yambolen(화학), Kremikovtzi(철강), Promet-Burgas(철강), Asarel-Medet(광업), DZU-Stara Zagora(제조) 등

23) 2000년 부가가치 기준

24) EBRD에서 1995년 이후 매년 발표하는 지수이며, 1.0~4.3으로 구성되어 있고, 1.0은 별 진전이 없는 상태이고, 4.3은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의 범위에 있다는 의미. 하지만 2013년 이후에는 사유화 지표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25) 김석진 외,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 본 북한 산업개발전략』, 산업연구원, 2008, p. 163.

2. 사유화 정책 확대와 추진기구의 역할

가. 사유화법 제정과 사유화청 설립·운영

불가리아는 사유화 활성화를 위해 1992년 4월 “국유 및 시유기업의 전환과 사유화에 관한 법률(the Transformation and Privatization of State and Municipal Enterprise Act)을 제정했다. 1992년 불가리아 각료회의 산하에 사유화청(the National Privatization Agency, NPA)을 설립²⁶⁾했다. 이후 1,000만 레버 이상의 자산을 가진 국영기업을 사유화 대상기업으로 선정했다.

사유화법 제정 이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사유화기금법(The Privatization Funds Act)과 보증·증권거래 및 투자회사법(Securities, Stock Exchanges, and Investment Companies Act), 부동산보상법(the Restitution of Immovable Property Act)등을 제정하여 사유화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법·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²⁷⁾ 1992년 4월 제정된 사유화법에는 공개제공(Public Offering), 지분에 대한 공개경매, 채무에 대한 공개변제의 사유화 기법을 제시했다. 1994년 개정된 사유화법에는 공개 입찰, 경매, 경영자 매수 등의 사유화 기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²⁸⁾ 부동산보상법 제정을 통해 과거 정부에 의해 강제로 수용된 부동산과 기업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하기도 했다.

사유화 업무는 주무부처 및 사유화청이 수행했고, 사유화 담당기관의 구분 기준은 중앙기업과 지방기업, 기업의 규모, 소유형태, 사유화 방식 등의 기준으로 구분했다.²⁹⁾ 사유화 담당기관은 각료회의라고 하는 불가리아 정부 내의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운영되었다. 각료회의는 전체적인 사유화 방식을 결정하고, 기업 고정자산 기준으로 사유화 추진 담당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국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의 경우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7,000만 레버 이상인 경우는 사유화청이 나머지는 각료회의가 지정하는 정부기관이 사유화 업무를 추진했다. 지방의

26) 김규판·한정철, 『불가리아 편람 1996 증보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p. 68.

27) Snežina Michailova, “The bulgarian Experience in the privatization process,” *Eastern European Economics*, Vol. 35. No. 3(May–Jun, 1997), pp. 75~92.

28) Miller, Leland Rhett, “Land Restitution in Post-Communist Bulgaria,” *Post-Communist Economies* Vol. 15. No. 1, 2003, pp. 77~78.

29) 김규판·한정철, 『불가리아 편람 1996 증보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pp. 55~58.

회(Municipal Council)의 경우 시가 소유권이나 지분을 갖고 있는 지방기업에 대한 사유화를 추진했다.

〈 사유화 대상 기업의 성격에 따른 사유화 담당 국가기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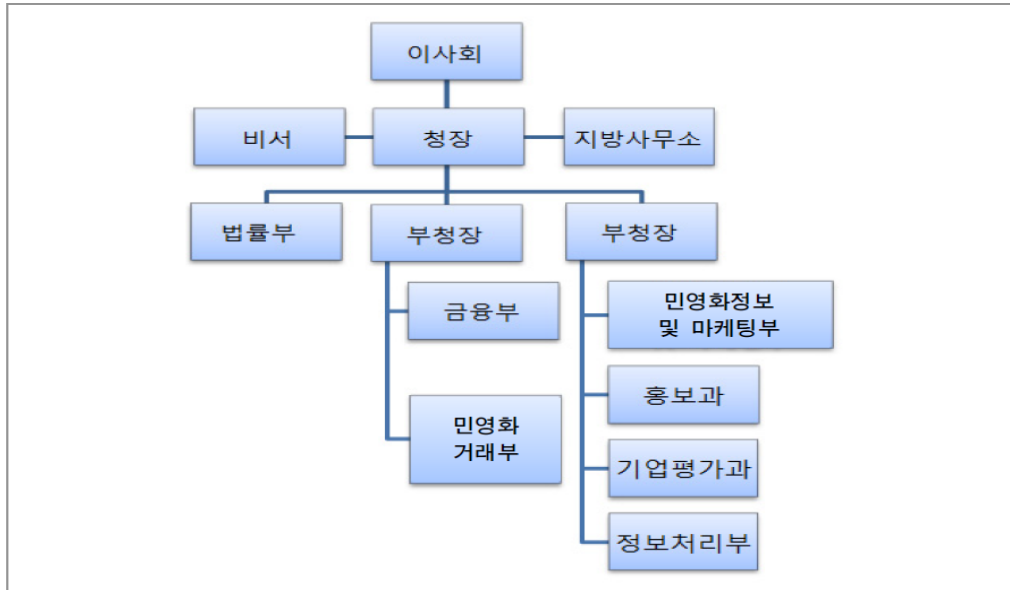
사유화 담당 국가기관	사유화 대상 기업의 구분
각료회의가 지정하는 정부기관	■ 대차대조표상 고정자산 7,000만 레버 이하 국영기업 또는 국가가 지분 또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 건설 중인 가건물 등
사유화청	■ 대차대조표상 고정자산 7,000만 레버 초과하는 기업 중 국가가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각료회의의 승인을 거친 후 사유화청	■ 각료회의가 연간 사유화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국영기업 또는 이중 국가가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지방의회 (Municipal Councils)	■ 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기업 ■ 시가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각료회의	■ 바우처 사유화

자료: 김규판·한정철(1996), 『불가리아 편람 1996 증보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228. 재구성.

사유화청(the National Privatization Agency: NPA)은 국영기업의 사유화 프로그램을 관리·감독하는 기관³⁰⁾이며, 주요 업무는 사유화 기업의 재산가치 평가와 사유화에 필요한 민간분야 재원 조달 업무이다. 사유화 대상 기업의 재산가치 평가는 사유화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으므로 평가위원 선정, 선정결과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했다. 기업의 기초적인 자산 평가는 불가리아 정부가 시행하고 자산규모가 1000만 레버가 넘는 기업에 대한 평가는 행정부가 인증한 국내 전문가 및 해외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공정성을 확보했다. 사유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원조달 과정에서 구조화 금융을 설계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했다. 일반적으로 정부예산을 통해 필요 재원을 조달했지만, 민간부문의 자금 조달을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 기초자산 평가가 완료된 이후 기업 기초자산이 1000만 레버 이상의 기업은 사유화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유화 방식을 통해 소유권 이전했다. 사유화청의 주요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사회는 불가리아 정부의 각료회의에서 임명한 이사로 구성된다.

30) Snejina Michailova, "The Bulgarian Experience in the privatization process," *Eastern European Economics*, Vol. 35. No. 3(May-Jun, 1997), pp. 75~92.

〈 사유화청 조직 구조도 〉



자료: Privatization Agency(1995), "Privatization in Bulgaria," p. 11. 김규판·한정철, 『불가리아 편람 1996 증보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사유화청은 사유화법에서 명시된 공개 입찰, 경매, 경영자 인수 방식을 통해 국영 기업 사유화를 추진했다.³¹⁾ 사유화를 추진하면서 공개제공(Public offering), 지분에 대한 공개공매, 채무에 대한 공개변제 방법 중에서만 가능했다. 실제 사유화 과정에서 사용된 방식은 지분에 대한 공개경매와 채무에 대한 공개변제 방식만 사용했다. 1994년 수정법안 통과와 함께 공개경매 방식으로만 사유화를 추진했다. 또한 지분의 20% 이하에 한해 사전 사유화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고용자나 퇴직자에 대한 선택도 매각도 가능했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 회사지분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바우처를 통한 일반 경매 참가를 제한했다.³²⁾

반면, 자산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인 기업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가치 평가 없이 자유경매를 시행했다. 하지만, 고용자의 30% 이상이 경매 참여를³³⁾ 선언하고 이들

31) Miller, Leland Rhett, "Land Restitution in Post-Communist Bulgaria," *Post-Communist Economies* Vol. 15. No. 1, 2003, pp. 77~78.

32) Frydman et al. *The Privatization Process in Central State* (New York: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1993, p. 29.

이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으면 30% 가격 할인을 해주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사유화청과 내각의 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관리·운영했다.³⁴⁾

〈 불가리아 주요 사유화 방식 〉

방식	주요 내용
반환(Restitution)	■ 원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적 권원에서 시작 - 1946~1962년 전체주의 정권에 의해 국유화된 부동산이 대상 - 전체주의 정권의 행정행위를 불인정
자금 사유화 (Cash Privatization)	■ 사유화 당시 시장가격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 - 대중 사유화 방식에 비해 많은 비용 소요
근로자-경영자 매수 (Worker-Manager Buyout)	■ 기업 내부의 경영자와 노동자를 우대하는 방식 - 기존 경영진의 영향력 행사를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 - 중간규모 이하의 회사 사유화에 적합 - 1996년 9월 기준 203건의 거래가 결정되었고, 1997년 약 200개의 기업이 이 방식으로 사유화
대중 사유화 (Mass Privatization)	■ 바우처를 무상이나 헐값으로 배포하고 이를 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방식 - 액면가 25,000레버를 기본단위로 발행, 등록 수수료는 500레버, 등록 바우처 소지자는 직접 또는 투자기금회사를 통해 사유화 대상 기업의 지분 및 주식을 구입 - 바우처 사유화 방식이며, 대중사유화센터를 통해 운영, 보증증권 거래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투자기금을 운용

자료: Snejina Michailova, "The bulgarian Experience in the privatization process," Eastern European Economics, Vol. 35. No. 3(May-Jun, 1997), pp. 75~92.

불가리아의 경제개발과 사유화 과정은 정치적 역학관계와 강하게 결합되어 진행되었다.³⁵⁾ 사유화 과정은 “끝없는 정치적 투쟁의 산물”³⁶⁾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사유화 과정에서 국영기업 노동자들의 저항이 강했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부의 리더십이 부재했다. 사회주의 시기 불가리아 국영기업 운영은 고용자평의회(general

33) 경매 참가자격에는 법인과 개인의 차별은 없었고, 법인의 경매 참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와 사유화청의 승인이 필요했고, 상호채무변제를 위해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승인이 필요

34) Frydman et al. *The Privatization Process in Central State* (New York: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1993, p. 31.

35) Snejina Michailova, "The Bulgarian Experience in the privatization process," *Eastern European Economics*, Vol. 35. No. 3(May-Jun, 1997), pp. 75~92.

36) Rock, C. 1994. "Employment and Privatization in Bulgaria's Reform," Interdepartmental project on structural adjustment, Occasional Paper, 24, International Labor office, Geneva, Switzerland-Snejina Michailova, 1997.

assembly of employees), 관리자부(the management board), 감독부(the management board), 일반매니저(general manager) 등의 개별 조직으로 구성되었고,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한, 사유화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체제전환 직후 집권한 불가리아 사회당(the Bulgarian Socialist Party: BSP)은 구 공산당 승계정당으로,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다.

체제전환 초기 정치적 갈등관계 속에서 민주세력연합(Union of Democratic Forces)의 등장으로 사유화청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선호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시장작동원리에 기반을 둔 기업의 가치평가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정치적 타협의 과정으로서 사유화가 추진되었다. 사유화청은 설립 초기 보다는 위상이나 역할이 강화되었지만, 근본적으로 불가리아 정부 각료회의의 산하 조직으로서 주요한 의사결정 보다는 사유화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리감독이 주된 역할이었다.

나. 사유화 및 사유화 후속 관리청(PPCA)의 설립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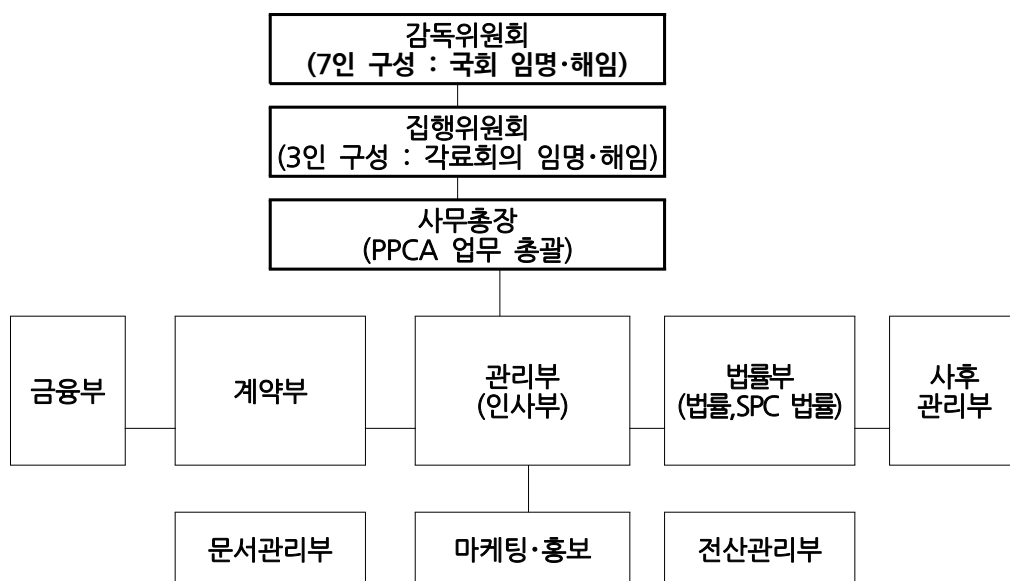
사유화 및 사유화 사후 관리기구(The Privatization and Post-Privatization Control Agency, PPCA)는 2010년 前사유화청(Privatization Agency)과 2002년 설립된 사유화·사후 관리기구(Post-Privatization Control Agency)를 통합하여 설립되었다.³⁷⁾ PPCA의 설립 목표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국영기업 사유화를 추진했다. 이 기구는 사유화 추진 과정에 참여한 경제주체들에게 공정하게 사유화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고, 해외자본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과거 사유화청이 국영기업 사유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지만, PPCA는 국가 소유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기관이었다. 불가리아 국유지의 독점적 매각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며, 불가리아 각료회의의 감독과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이기도 했다. 2010년 설립된 PPCA의 법적 근거는 2002년 제정된 사유화-사유화사후관리법(Privatization and Post-Privatization Control Act)이며, 이 법은 2009년 3월 31일까지 개정 및 보완을 지속했다. 2009년 개정된 법률에

37) 불가리아 사유화 및 사유화 사후 관리기구 홈페이지(www.priv.government.bg)

근거하여 舊 사유화청과 PPCA가 통합되어 통합 PPCA가 설립되었다.

PPCA는 감독위원회(the Supervisory Board)와 집행위원회(the Executive Board)에 의해 관리되었다.³⁸⁾ 감독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며, 구성원에 대한 임명·해임 권한은 불가리아 의회가 갖고 있다. 감독위원회는 PPCA의 제반 활동을 통제하고, 감독위원회는 PPCA와 구매자 사이의 모든 계약에 대한 승인 권한을 보유했다. 특히 자산평가 기준 50만 레버를 초과하는 자산(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공개경매나 공개입찰에 대해 승인 권한을 보유했다. 집행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료회의가 임명·해임 권한을 가진다. 집행위원회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관리하는 이사(executive director)의 역할을 하며, 기관의 임원으로서 조직 관리의 책임을 보유하고 있다. PPCA 인원 규모는 2016년 기준 120여명 수준이며, 2009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사무총장이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금융부, 계약부, 관리부, 법률부, 사후관리부의 5개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 불가리아 PPCA 조직도 〉



자료: 불가리아 사유화 및 사유화 사후 관리기구 홈페이지(www.priv.government.bg)

38) 불가리아 사유화 및 사유화 사후 관리기구 홈페이지(www.priv.government.bg)

PPCA는 사유화 계약 조건에 따른 이행관리 및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사유화 계약 조건에 따른 투자자의 지불기일 관리 및 지불이행을 위한 법적·행정적 사무를 관리했다. 계약조건 이행과정 감시의 권한이 폭넓게 부여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투자자에게 계약조건의 위반이 의심되는 정보 및 자료 요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투자자가 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계약 파기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계약 조항에 대한 준수 여부 검토를 위한 문서관리 의무 등을 보유했다. PPCA의 활동에 대한 통계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사유화 사후 관리 과정에서 불가리아 정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및 관련 단체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하고 있다.³⁹⁾

PPCA의 사유화 과정은 사유화 준비 및 마케팅, 사유화 방식 선정, 실질적인 계약 체결 단계로 구분된다. 사유화 준비과정에서는 사유화 대상 자산평가 및 마케팅 과정이 추진된다. 사유화 대상 자산(기업 및 부동산)에 대한 자산평가와 더불어 관련 법률 검토를 진행한다.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는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선정을 통해 투자자에 대한 대출지원 등의 제반사항을 준비한다. 사유화 방식 선정 단계로 공개 입찰, 공개 경매, 증권 거래소 매각 등의 방식을 선정한다. 사유화 계약 체결 단계로 투자자와 가계약 체결 및 감독위원회 승인 준비 등의 제반업무를 추진한다. 최종적인 사유화 계약 체결 및 주식 양도 등의 절차 진행한다.⁴⁰⁾

PPCA의 사유화는 공공경매(Public Auction), 공공입찰(Public Tender), 증권거래(Stock Exchange)의 방식을 활용한다.⁴¹⁾ 공공경매는 경매위원회, 공공입찰은 입찰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며, 절차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서류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두 개 이상의 중앙신문에 관련 사실을 공고할 것을 명문화 하고 있다. 증권거래 방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소규모 주식(Minority package of shares)을 불가리아 증권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유화를 추진했다. 2010년 기준으로 불가리아 각료회의는 주식이나 지분의 매각을 통해 사유화가 가능한(증권거래 방식 사유화) 1,070개 기업 목록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사유화 방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매각 방식 결정권한은 PPCA가 갖고 있었고, 구체적인 실무는 PPCA 실무그룹에서 총괄하고 있다.

39) 불가리아 사유화 및 사유화 사후 관리기구 홈페이지(www.priv.government.bg)

40) 불가리아 사유화 및 사유화 사후 관리기구 홈페이지(www.priv.government.bg)

41) 불가리아 사유화 및 사유화 사후 관리기구 홈페이지(www.priv.government.bg)

IV. 사유화 정책 평가 및 시사점

1. 사유화 정책 평가 및 문제점

가. 사유화 정책 평가

불가리아 사유화 정책은 동유럽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방식과 속도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불가리아는 사유화 추진 방식에서는 체제전환 성공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과 비교하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직접매각과 대중사유화(Voucher)방식을 통한 사유화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속도와 정책적 중요성을 인지한 시점을 비교하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늦었고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고 정책적 실패의 구체적인 예로는 외국인 투자유치 부족으로 나타났다.

〈 동유럽 주요 국가들의 사유화 방식 〉

주요 정책	폴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우선 정책	직접매각	직접매각	대중사유화(Voucher)	MEBOs	직접매각	직접매각
후순위 정책	MEBOs*	MEBOs	직접매각	직접매각	대중사유화(Voucher)	대중사유화(Voucher)
사유화 속도의 정책적 중요성	보통	90년대 중반 이후 중요	90년대 초반까지 최우선	90년대 중반 이후 중요	90년대 중반 이후 중요	1993년 이후 최우선
원소유자 반환	원칙적으로 인정 법규미비로 거의 적용 안됨	광범위하게 적용	소규모 사유화에서 일부	토지 및 주택에 대해 일부	토지 및 주택에 대해 일부	거의 적용 안함
외국인 투자도입 정책 (실적, USD)	중요 (389)	매우 중요 (1,627)	90년대 중반 이후 중요 (967)	중요 (200)	중요 (159)	매우 중요 (953)

주: * Manager-Employer Buyout(사유화 기업의 경영진과 종업원에게 특혜 매각)

** 1989~1998년간 국민1인당 외국인직접투자(FDI) 도입 실적(단위: 만 달러)

자료: 김성환 외, 『북한의 경제전환 모형: 사회주의국가의 경험이 주는 함의』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 75.

사유화청은 2009년 말까지 총 110개 국영기업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각했다. 매각 방식은 현금 매각, 투자자의 채무인수를 통한 지분확보(debt-equity swap), 미래

투자약정 등으로 추진했고, 총규모는 3,590,890백만 달러 수준⁴²⁾이었다.

〈 사유화청-외국투자자 사유화 판매계약 금액(1993~2009.12.31.) 〉

(단위: 백만USD)

연 도	건 수	수 입	외국기업의 채무인수액	미래투자약정
1993	2	22	0	30
1994	8	73	53	108
1995	4	13	5	49
1996	13	49	27	32
1997	20	354	2	613
1998	14	76	0	90
1999	22	206	83	819
2000	7	26	0.230	21
1993~2000 소계	90	2,753,346		
2001	1	5	0	1
2002	7	50	0	25
2003		1	0	0
2004	8	1,183	89	509
2005				
2006	1	259		
2007	3	169		
총 계	110	3,590,890		

자료: 이원희, 『해외의 공공기관 IV: 동유럽편』,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p. 146(원자료는 불가리아 사유화 및 사유화 사후 관리기구 홈페이지(www.priv.government.bg))

불가리아는 대중사유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체코의 사유화 펀드⁴³⁾를 참고하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펀드들을 관리 감독하는 규제기구를 설립했다.⁴⁴⁾ 사유화청 및 사유화 및 사유화 이후 관리청이 펀드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을 보유했고, 동시에 주식시장을 감독하고 규제하기 위한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를 설립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사유화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했다.

42) 불가리아 사유화 및 사유화 사후 관리기구 홈페이지(www.priv.government.bg)

43) 체코의 민영화 펀드는 바우처 경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만든 뮤추얼 펀드로서 투자사유화기금(Investment Privatization Fund) 등을 운영

44) Jeffrey Miller, "Evaluation of Mass Privatization in Bulgaria," William Davidson Institute Working Paper, Number 814, The William Davidson Institute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March 2006, p. 4.

불가리아 정부는 지방공기업의 사유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한 대중사유화센터⁴⁵⁾를 설치·운영⁴⁶⁾했다.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부처 및 위원회가 참여한 대중사유화센터(the Center for Mass Privatization)를 운영하면서 투자 채권 매입 등의 과정을 통해 사유화를 추진했다. 사유화 과정에 참여하는 정부부처와 위원회 및 지방의회는 개별 주체들의 이해관계와 사유화 추진 과정에서의 책임성 소재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워 합의에 실패한 사례도 발생했다. 사유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승인 권한은 보증·증권거래위원회(Bulgarian Securities and Stock Exchanges Commission, SSEC)가 보유했다.

불가리아 대중사유화 프로그램은 국민 참여의 관점에서는 실패한 방식이다.⁴⁷⁾ 불가리아 대중사유화는 ‘대중없는 대중 사유화(mass privatization without mass)’라는 평가가 있다. 대중사유화 실패 원인은 대상 기업에 대한 정보부족, 부실기업 처리 방식으로 대중 사유화를 추진한 정부의 정책 실패와 낮은 수익성 및 국민들이 1995년 실행되고 실패한 소위 ‘금융 피라미드’⁴⁸⁾를 대중 사유화로 인식하게 만든 정부의 신뢰 부족이 정책실패의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사유화 대상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뒤따르지 않음으로써 형식적인 사유화에 그쳤고 이는 대중사유화 실패의 주요 원인이기도 했다. 1997년 6월까지 대중사유화센터를 통해 추진된 대중사유화 프로그램은 전체 국영기업의 약 1/4(1,040개)을 사유화되었다. 이 수치는 국영기업의 추정자산의 1/6 정도이고, 사유화청이 주로 추진한 경매 방식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대중사유화센터를 통한 대중사유화는 1997년 이후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했고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전락했다.

45) 장관급 지위를 갖는 6개 부처와 5개 위원회는 지방정부(시)가 소유권이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한 사유화 추진 권한을 보유

46) 김규판·한정철, 『불가리아 편람 1996 중보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Snezhina Michailova, “The bulgarian Experience in the privatization process,” *Eastern European Economics*, Vol. 35. No. 3(May-Jun, 1997), pp. 75~92.

47) 이원희, 『해외의 공공기관 IV: 동유럽편』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p. 136.

48) 150,000명의 불가리아 국민이 금전적 손해를 본 사건

〈 총 국가자산의 사유화 비율(balance values)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All	사유 화청	0.32	1.47	0.50	3.53	2.38	1.76	13.99	2.32
State Bodies (정부 부처)		0.37	1.63	1.07	4.09	3.78	4.47	16.96	4.43
대중사유화센터						14.58			
계		0.37	1.63	1.07	4.09	18.36	4.47	16.96	4.43

자료: 이원희, 『해외의 공공기관 IV: 동유럽편』,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p. 136(원자료는 불가리아 사유화 및 사유화 사후 관리기구 홈페이지(www.priv.government.bg))

불가리아 사유화 정책에서 다른 체제전환국과 비교되는 특징은 사유화가 완료된 기업 지분의 20%를 사회보장 기금(Social Security Fund)과 재건설 기금(Reconstruction Fund)의 설립을 위해 은행 예금 형태로 존치하는 제도를 운영했다.⁴⁹⁾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 기금과 재건설 기금 출연을 통해 추가적인 국가재정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실제로 기금 출연을 강제하는 조항은 사유화 추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⁵⁰⁾

불가리아 국영기업 사유화 과정에서 정부는 사유화 대상기업 선정과정에서부터 최종적인 의사결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사유화 과정에서 민간시장의 미성숙도 문제였지만, 전적으로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이 개입되면서 시장의 원리에 입각한 사유화 보다는 정치적·정책적 결정이 우선될 수밖에 없었다.

불가리아 뿐 아니라 동구체제전환국 대부분의 국가들의 사유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문제점은 구조조정 없이 성급한 사유화를 추진한 것이다.⁵¹⁾ 국영기업 사유화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증했다. 국영은행들은 구체제의 관행대로 부실기업에도 “soft-credit”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은행권 부실화가 심화되는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 같은 현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경우, 정부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뿐 아니라, 기업과 금융기관이 같이 부실화됨으로써 국영기업 사유화에 장애요인이었다.

49) Nowotny Thomas, “Transition from Communist and the spectre of Latin Americanization,” *East European Quarterly* Vol. 31, No.1 1997, pp. 69-91.

50) 실제로 사회보장 기금 및 재건설 기금 출연 조항은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에는 없는 제도이며 실질적인 사유화 추진을 방해하는 규제 요인으로 작용했다.

51) 조명철, “남북한 체제통합 대비를 위한 동유럽 체제전환국 변화과정 연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p. 149.

불가리아 국유재산 사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원소유자에 대한 반환(restitution)은 실패한 정책이었다.⁵²⁾ 체제전환 국가들 대부분이 취했던 원소유자 반환은 과도한 행정비용의 발생, 반환 절차 및 원소유권 증명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 불가리아의 경우 원소유자 반환 이후에도 토지의 매매와 저당과 같은 제도가 미비하여 실제 토지이용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농지의 원소유자 반환으로 인해 농업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불가리아 정부는 1997년부터 농지소유의 반환(restitution of landownership) 대신 농지소유의 재건(restoration of landownership)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현재 경작자를 중심으로 농지를 재분배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불가리아 농지의 약 70%가 소유권의 변화가 발생했다.

나. 사유화 추진기구의 문제점

불가리아 사유화 정책은 체제전환 초기에 구체제의 정치엘리트들이 지속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유로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체제전환 직후 자유선거가 실시되었으나, 개혁적인 대안 정치세력이 미약하여 결국 구체제 정치엘리트들이 계속 집권했다. 정치단체(정당)의 명칭과 이념을 개혁지향적인 것으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끄는 인물들은 구체제의 정치엘리트들이 계속 집권했다. 구체제 정치엘리트들은 체제전환에 대한 지식과 의지가 상대적으로 박약했고, 개혁을 통한 기득권 상실을 우려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 구체제 엘리트들은 사유화 추진 과정에서 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유화 추진 기관을 사유화청, 각료회의, 지방의회 등으로 업무를 분산하면서 정책혼선을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불가리아는 사유화 정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현저하게 낮았고 이는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 늦은 사유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체제전환 초기 거시경제지표의 불안정은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켰고, 이는 약 5년간의 기간 동안 5명의 총리가 교체되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 상황에 직면했다. 사유화 정책 추진보다는 거시경제안정화를 위한 조치들이 우선적으로 추진했고, 사유화가 늦어지는 중요한 원인이었다. 사유화 추진기구 이었던 사유화청은 정책적으로 중심을 잡지 못했고, 중앙부처의 체제전환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쳤다.

불가리아 사유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금융·자본시장의 도입, 기업지배구조 및 조

52) 위의 책, p. 170.

세제도 개혁과 같은 시장 인프라의 부재가 사유화 전체를 지연시켰다. 체제전환 전체를 지연시키는 문제를 야기했고, 체제전환을 위해 취했던 개혁적 조치들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불가리아 국영기업 사유화는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장기간을 요하는 과정이었다. 사유화청은 사유화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미비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다. 초기 사유화청은 사유화 대상기업의 선정과정과 평가 등에 대한 자체적인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단순히 정부 정책의 집행자 역할에 불과했다. 사회를 위한 민간자본이 미성숙된 상태에서 효율적인 사유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 및 자본시장의 기능이 확립될 필요하다.

2. 시사점

대부분의 체제전환 국가들은 사유화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했다.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만들었다. 대표적인 전담기구는 폴란드의 사유화부, 헝가리의 국가자산청(SPA)과 국가지주회사(SHC) 등이 있다.

불가리아 사유화 과정을 보면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사유화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정책의 일관성이었다. 불가리아는 체제전환 정책 기조를 자주 변경했고⁵³⁾ 일관성이 부족하여 경제주체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하지만, 폴란드 정부는 1990년대 초 “nominal anchor(임금과 환율수준)”를 추진했다. 이는 경직된 정책운용이라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들에게 정책방향의 일관성에 대한 믿음을 줌으로써 거시경제 안정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헝가리의 경우 사유화 과정에서 ‘상업적 매각’ 원칙을 끝까지 유지했다. 폴란드와 헝가리의 사례를 보면, 사유화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통해 시장에 지속적이고 통일적인 정책 메시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고, 그 중심에는 사유화 전담기구의 역할이 있었다.

불가리아 사유화 추진과정에서 사유화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기금을 운영하였고, 전담기구를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한 바 있다. 사유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상업적 매각(경제적 가치 판단 이후 매각)만을 허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불가리아의 경우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고, 사유화 전담기구를 통한 기금을 운영하면서 재정적 문제를 일정정

53) 특히 거시경제 분야에서 가격자유화와 사유화 대상기업 선정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등

도 해소한 경험이 있다.

또한, 기업 사유화의 과정에서 전문성의 부족과 선행된 구조조정 없이 사유화를 추진한 것이 사유화 실패원인 이었다. 특히 기업의 가치평가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정치인과 관료집단에 의해 의사결정에 방해를 받았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개별 이해집단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만한 리더십과 거버넌스를 갖고 있지 못했다.

통일대비 북한 사유화를 담당할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여 이 기구가 사유화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사유화의 단계별로 기구의 성격과 운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북한 지역 초기 사유화 단계에서는 전면적이고 신속한 사유화는 지양하고, 사유화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⁵⁴⁾

사유화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재원 마련 차원에서 사유화 전략을 병행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유화 대상 국영기업 자산상황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새로운 기업부문을 창설하고 육성하는 기업부문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기구를 통해 사유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불가리아의 사유화청이나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났던 전담기구와는 성격이 다르며, ‘기업청(가칭)’을 설립하여 사유화 대상 국가자산의 선별, 사유화 방식의 결정, 그리고 사유화 등을 통한 새로운 기업의 지원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 독일의 신탁청과 같이 토지와 기업으로 사유화 대상을 포괄하는 형태의 전담기구와는 다르게 기업과 토지 부분을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특화된 형태의 사유화 전담기구 설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별도로 동유럽의 사유화청과 같은 국유자산 사유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립을 통하여 사유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 국유자산 관리청(가칭)이 기업, 비기업 국가자산, 광산, 기반시설 등의 국유자산을 일괄적으로 넘겨받아 사유화를 추진하고, 토지와 기업의 사유화는 사유화의 대상이나 방법 등에 있어서 성격이 다르므로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구를 통한 사유화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논문투고일: 2017년 05월 15일 ■ 논문심사일: 2017년 06월 03일 ■ 게재확정일: 2017년 06월 21일

54) 이석,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운영 방안』 (서울: KDI, 2013) 참조.

참고문헌

1. 국문단행본

- 김규판·한정철. 『불가리아 편람 1996 증보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 김석진 외.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 본 북한 산업개발전략』. 산업연구원. 2008.
- 김성철 외. 『동유럽국가의 개혁·개방 과정과 체제전환』. 통일연구원. 2001.
- 이석.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운영 방안』. 서울. KDI. 2013.
- 이원희. 『해외의 공공기관 IV: 동유럽편』.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2. 영문단행본

- Frydman et al. The Privatization Process in Central State (New York: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1993.
- IBRD, World Development Report, 1990.
- UNECE, Economic Survey of Europe, No. 1 (New York: United Nations, 2000)

3. 국문논문

- 민경배. “체제전환국 법제의 특징과 구조.” 『통일문제연구』. 평화문제연구소. 제18권 2호. (2006).
- 손병환. “러시아와 동유럽의 사유화 평가.” 서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조명철. “남북한 체제통합 대비를 위한 동유럽 체제전환국 변화과정 연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4. 영문논문

- Jeffrey Miller, “Evaluation of Mass Privatization in Bulgaria,” William Davidson Institute Working Paper, Number 814, The William Davidson Institute at eh University of Michigan, March. 2006.
- Maria Prohaska, “Bulgaria: Summing up Privatization,” Centre for the Study of Democracy, 1996.

- Michailova, "The bulgarian Experience in the privatization process," Eastern European Economics, Vol. 35. No. 3. May-Jun, 1997.
- Miller, Leland Rhett, "Land Restitution in Post-Communist Bulgaria," Post-Communist Economies Vol. 15. No. 1, 2003.
- Rock, C. 1994. "Employment and Privatization in Bulgaria's Reform," Interdepartmental project on structural adjustment, Occasional Paper, 24, International Labor office, Geneva, Switzerland-Snejina Michailova, 1997.
- The Case of Bulgaria, Eastern European Economics, Vol 40. no 5. Sep-Oct, 2002.
- The United Bulgarian Bank(July 1997); the Bulgarian Post Bank(the end of 1998)
- Snejina Michailova, "The bulgarian Experience in the privatization process," Eastern European Economics, Vol. 35. No. 3. May-Jun, 1997.
- Nowotny Thomas, "Transition from Communist and the spectre of Latin Americanization," East European Quarterly Vol. 31. No.1 1997.

5. 기타

불가리아 사유화 및 사유화 사후 관리기구 홈페이지(www.priv.government.bg)

The study of the Lessons from the privatization of state - transitions of Bulgaria

*Tak yong dal**

The lessons from state-transition are significantly useful to addition in Korean peninsular about Easter European Countries, particularly the failure countries lessons are more useful to us.

Bulgaria estimated failure country about privatization compare with the others such as Poland, Czech and Slovenia. Bulgaria privatization index is lower than the other countries. There are not sufficiently tried the privatization policy such as voucher, direct sales and auction. Moreover, the not enough the finical fundamentals to make the overcome the economical crisis and they have had bad governance by the old state's civil servant or politicians.

Therefore, to win the privatization after the unification in Korean peninsular, the special organization toward the privatization policy in North Korean area about the property, factories and national farms.

***Keyword:** Bulgaria, state transition, privatization agency, privatization and post control agency. sepcial organization

* Researcher, Unification Asset Research Center,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통일이후 독일주민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 : 삶의 만족도와 스트레스의 영향을 중심으로*

양 계 민**

목 차

- I. 문제제기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결론 및 논의

[국문요약] 본 연구는 통일된 지 30년이 가까워지는 현 시점에서 독일주민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분석해봄으로써 미래 한국의 통일사회에서 남북한출신 주민과 이주배경주민간의 갈등상황을 예측해보고 이주배경주민에 대한 원주민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이주민에 대한 태도, 삶의 만족, 생활스트레스에서 구동독출신과 구서독출신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성별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연령별로는 나이가 적은 집단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학력은 직업학

교와 실업학교, 전문학교 재학 및 졸업자들의 태도가 가장 부정적이었다. 셋째,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는 삶의 만족도가, 부정적 태도에는 생활스트레스와 주관적 경제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서로 다른 차원임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미래 통일한국사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주제어: 독일통일, 이주민, 사회통합, 남북통일, 집단간 갈등, 삶의 만족, 생활스트레스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3A2043571).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메일: yangkm@nypi.re.kr

I. 문제제기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일된 지 거의 30년이 되어가고 있다. 독일은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를 지향하였고, 동서독으로 분단되었던 국가였다는 점에서 한국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지니며, 현재는 이미 통일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한국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통일 후 독일의 사회통합 영역은 정치, 경제, 행정, 사회·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본질적이고도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아마도 동서독 주민의 심리적 통합 문제일 것이다. 상이한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지닌 두 집단이 갑자기 통합을 시도한 결과, 독일은 통일 초기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였고,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재정적 지원을 통한 경제적 격차 해소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인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후유증은 간단하지 않았고, 서독주민 역시 통일 이후 증가한 세금부담과 동독이주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 범죄문제 등으로 사회적 안정이 침해되는 현실에 불만을 가지기도 하였다¹⁾. 이 중 특히 동독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통일후 삶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과도한 기대와 서독주민과의 경제적 격차, 그리고 통일 초기 동독주민들이 경험한 실업과 그로 인한 불안감 등이 주요 원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²⁾.

한 사회에서 특정한 집단이 소외되었다고 느낄 때 그들이 경험하는 열등감과 하락한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회복하기 위한 심리적 방안으로 선택하는 전략 중 하나는 외집단에 대한 차별이다. 특히 자기보다 사회 내에서 더 지위가 낮은 대상에 대해 깎아내리고 부정적 평가를 하며³⁾, 부정적 평가는 부정적 감정과 차별적 행동으로 이어진다. 심한 경우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물리적 폭력이 가해지기도 하는데, 통일 후 구 동독 주민들이 경험한 상대적 박탈감과 그로 인한 열등감은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과 폭력행동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⁴⁾. 독일의 경우 세계에서 두 번째

1) 김관호,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갈등사례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북한학연구』, 6권 1호 (2010), pp. 77-78.

2) 고상두, “통일 이후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동서독 지역주민의 인식,” 『유럽연구』, 제 28권 2호 (2010), p. 278.

3) Tajfel, H., Social categorization, social identity and social comparison. In H. Tajfel,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London: Academic Press, 1978).

로 이민자가 많은 이민국으로 독일 주민 5명 중 1명이 이주배경을 지닌 국가이다. 따라서 통일 후 동서독 주민간의 통합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못지않게 이주민과의 통합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의 경우 이주배경의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06년도 당시 이주배경 주민이 54만 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약 1.1%였던 것이 2015년 11월 기준 약 171만 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고⁵⁾, 이 추세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주요 관심대상은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이지만 사실상 행정자치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체류와 가족동반문제는 언젠가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통합문제로 등장할 것이라는 점에서 독일사회의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통일 후 사회적 상황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북한출신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회적 소수집단인 이주민들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독일의 사례가 한국의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관계, 나아가 통일 후 북한주민과 남한주민, 그리고 이주배경을 지닌 집단 간의 관계에 직접적인 답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사례를 이해함으로써 한국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통찰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이론적 배경

1. 통일 후 동서독 주민의 사회통합

독일은 통일 이후 정치, 경제, 행정, 사회 등 사회 전 영역에 대하여 빠른 통합을 위하여 노력해왔으나, 40년간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던 동서독은 통합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통일 이후 내적 통일에 대한 독일의 평가는 다양한데, 한 편에서는 내적 통일이 이미 완수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완성은 아니어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기도 하며, 또 다

4) 이기식, 『독일통일 15년의 작은 백서』, 고려대학교 교양총서 5.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8), pp. 109-110.

5)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조사결과,” 『행정자치부』(2016).

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동서독 주민간의 차이는 크다고 평가하기도 한다⁶⁾. 이러한 논의들에서 내적 통일을 평가하는 기준은 경제적 사회적 생활수준, 상호간의 인식 등 연구자들마다 서로 다르다. 독일의 통합정책은 경제적 자립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이르게 하는 방식으로, 생계능력이 경제적 자립 뿐 아니라 사회적 교류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보고 사회경제적 통합의 기초전략으로 직업통합을 중시하였다⁷⁾. 또한 통일운동 당시 독일사회가 동서독 주민간의 내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 부르짖었던 것이 ‘우리는 한겨레’라는 민족의식이었고⁸⁾, 통일 후에는 독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강조하는 새로운 뉴라이트 지식인층이 형성되어⁹⁾ 독일인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독일민족주의를 고양시키려고 하기도 하였다¹⁰⁾.

이러한 움직임은 동독인에게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의식을 갖게 만들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동서독인 간 위상의 차이가 있었다¹¹⁾. 통일 후 나타난 동서독간의 경제적 불균형과 상호 이해부족, 편견, 동독인들의 새로운 체제에 대한 적응 지체현상 등이 통합의 걸림돌이 되었고¹²⁾, 동독인들은 서독출신들이 지배하는 공동체 내에서 외국인 같은 존재로 인지되기도 하였다¹³⁾.

통일 후 가치 통합에 대한 동서독 주민들의 태도를 비교해 보면 그 상대적 박탈감을 가늠할 수 있는데, 2008년 당시 GMF의 동서독 주민 대상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서독/동독 주민에게 많은 손해를 가져다주었다’는 문항에 대하여 서독주민은 55.9%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동독주민은 57.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동독의 재건을 위해 힘쓴 서독/동독주민의 노력이 평가 받지 못했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서독주민의 경우

6) 김상무, “통일독일 학교교육의 내적통일문제 인식에 관한 연구: 중등학교 역사교과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15권 3호 (2009), p. 37.

7) 허준영,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 46권 1호 (2012 봄), p. 279.

8) 진행남, “동서독의 사회적 통합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 서서히 극복”, 『통일한국』 165권 (1997), p. 98.

9) 이용일, “독일의 뉴라이트와 복지국가위기론: 탈로 자라친, 『독일이 사라지고 있다』”, 『서양사론』 129호, (2016), p. 91.

10) Friedemann Schmidt Die Neue Rechte und die Berliner Republik: Pralle laufende Wege im Normalisierungsdiskurs(Wiesbaden, 2001), p. 13; 위의 논문, p. 91. 재인용

11) 서정일, “구동독 주민의 동독 이탈 및 서독 사회 적응과정에 관한 사회문화적 고찰”, 『독일언어문학』 제 42집 (2008), p. 206.

12) 진행남, “동서독의 사회적 통합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 서서히 극복”, p. 98.

13) 이등기, “독일통일 후 동독정체성: 오스탈기는 통합의 걸림돌인가?” 『역사와 세계』, 50 (2016), p. 43.

53.9%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동독주민의 경우는 75.3%가 ‘그렇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서독/동독 주민의 상대지역 주민에 대한 이해심이 부족하였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서독주민은 44.1%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동독주민의 경우는 72.4%가 ‘그렇다’고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동서독 주민의 인식수준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상호간의 이해부족이나 동독주민의 보이지 않는 노력에 대한 간과를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수준은 두 집단 간 차이가 매우 크고 동독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의 수준이 매우 높았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¹⁴⁾.

통일 후 동독주민의 삶과 지위는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주민들이 느끼는 불만과 불안감 등은 최근까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¹⁵⁾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나, 다른 한 편에서는 동서독 주민들의 가치정향이 흔히 추측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접근해 있으며, 젊은 세대에 있어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시각도 있다¹⁶⁾. 아마도 이러한 가치의 통합 정도는 어떤 영역이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는 통일을 이룬 지 30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으로 과거에 비해 동서독 주민간의 유사한 측면들이 더 많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2. 독일의 이주민 현황

독일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이민국가로, 독일연방이며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독일 이민자는 전년 대비 39만 명 증가한 1,090만 명으로, 2011년에 비해서는 100만 명이 증가한 수치이다.¹⁷⁾ 사실상 독일 이주노동자의 역사는 매우 오래 된 것으로, 19세기에 산업화가 됨에 따라 농촌지역의 인력이 부족하게 되어 농업부문에 이탈리아와 폴란드로부터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였고, 제 1차 세계대전과 나치시대에는 외국인 노동력을 강제 징용하여 전쟁 산업에 투입하였으며, 제 2차 세계대전 후 195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부문의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자 1955년부터 ‘손님

14) 고상두, “통일 이후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동서독 지역주민의 인식,” p. 282.

15) 황병덕, 여인곤, 김면희, 김학성, 랄프 하베르츠, 송태수, 안숙영, 윤덕룡, 이무철, 장준호, 정상돈, 정홍모,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 (서울: 늘봄플러스, 2011), pp. 358-359.

16) Gransow, V., “Eile mit Weile. Für eine Debatte um die schnelle deutsche Vereinigung und die stockende innere Einheit.,” Detschland Archive, 38, H. 5, p. 884; 김상무, “통일독일 학교교육의 내적통일문제 인식에 관한 연구: 중등학교 역사교과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p. 37 재인용.

17) 연합뉴스, “독일 작년 이민자수 사상최대... 주민 5명 중 1명 외국출신,” 『연합뉴스』(온라인), 2015년 8월 4일.

노동자(Gastarbeiter)'라는 이름으로 인접국가의 인력을 불러들였다¹⁸⁾.

그러나 1970년대 초 경제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독일 사회에 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중단하고 장기적인 체류를 막기 위하여 본국으로 돌려보내려는 정책들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이주 노동자들의 장기체류, 가족초청, 외국인 2세대 및 3세대 출생 등의 결과를 야기하였고, 뒤이어 독일계 재외동포의 귀환, 망명자의 증가 등으로 독일사회의 이민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비교적 동질적인 단일인종 국가였던 독일이 외국으로부터 부족한 노동력을 수입하게 되는 과정에서 독일이 스스로 원하지 않는 이민국이 된 것이다¹⁹⁾.

부족한 노동력의 문제는 불가피하게 이방인의 도움으로 해결하지만 국가만은 민족적으로 순수하게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 독일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²⁰⁾. 그 근거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독일 주민 5명 중 1명이 외국 출신일 정도로 많은 이민자를 가지고 있지만, 독일은 오랫동안 이민국가임을 부인해 왔고, 이주민 정책을 노동력 공급이나 치안과 관련한 사항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²¹⁾. 그러다 2005년 이민법을 제정하면서 경제적 통합 뿐 아니라 사회적인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고, 기존에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인구정책, 노동시장정책, 사회정책이 종합적인 이주민 정책으로 연결되었다²²⁾.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는 이주민 집단은 난민집단으로, 2015년경부터 시리아 내전으로 인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한 난민들은 EU회원국 중 실업률이 낮고 경제성장이 양호한 독일로의 망명을 매우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약 20만 2,600명이 독일로의 망명을 신청하였고, 2015년 중 10개월 간 망명을 신청한 수는 전년 대비 69.6%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²³⁾.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유럽 및 난민 수용

18) 강정숙, “독일이민자 동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민족연구』, 7권 (2001), p. 153.

19) 정용숙, “병존에서 공존으로?: 독일의 이주민 문제와 ‘다문화’전쟁,” 『학림』, 34권 (2013), p. 61.

20) 윤용선, “독일의 이주민 정책: 모델인가, 반면교사인가?,” 『독일연구』, 30 (2015), p. 149.

21) 고상두, 기주옥, “프랑스 이민자 폭동의 배경요인: 독일과의 비교,”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2집 1호 (2014), pp. 101.

22) 박명선, “독일 이민법과 통합정책의 외국인 차별에 관한 연,” 『한국사회학』, 14권 2호 (2007), p. 272; 고상두, 기주옥, “프랑스 이민자 폭동의 배경요인: 독일과의 비교,”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2집 1호 (2014), p. 101, 재인용

23) 이현진, 이철원, “EU의 난민정책 현황과 향후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5. No. 36 (2015), p. 5.

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나, 메르켈 총리 및 기민당(CDU)의 지지도가 급락하여 차기 총리직 재선여부가 흔들릴 정도로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기도 하는 등 독일국민의 태도는 반드시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²⁴⁾. 그에 대한 근거로 일각에서 난민수용소를 방화하는 등 적대감이 표출되고 있다.²⁵⁾

따라서 독일의 이주민 집단은 점차 더욱 더 다양한 문화적 계층적 특성을 지닌 집단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동서독 주민과의 관계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3. 독일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

독일의 경우는 앞에서 보았듯이 이주의 역사가 비교적 오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 지구적인 글로벌화 세계화로 국가간 이동은 매우 일반적이 되었고, 이주민으로 인한 각종 문제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 문제는 거의 모든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이다. 독일은 2005년 이민법을 제정하면서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²⁶⁾ 현재 독일은 이민자들에게도 의료보험, 실업보험, 사회복지보조금, 연금, 자녀들의 의무교육 등 사회복지의 기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자들 역시 독일의 부족한 노동력을 지원함으로써 독일사회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²⁷⁾, 이민자에 대한 독일사회의 사회복지적 혜택은 일방적인 시혜라기보다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독일사회에서 나타난 자라친(Sarrazin)과 같은 뉴라이트가 보이는 독일 주류사회의 불편한 심정과 불안감²⁸⁾은 독일의 사회통합정책이 크게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²⁹⁾.

24) 위 자료, p. 12.

25) 위 자료, p. 12.

26) 고상두, 하명신, “독일 거주 이주민의 사회통합 유형 :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출신 이주민 집단의 비교분석,” 『국제정치논총』, 52권 5호 (2012), p. 234.

27) 강정숙, “독일이민자 동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p. 153.

28) 이용일, “독일의 뉴라이트와 복지국가위기론: 티로 자라친, 『독일이 사라지고 있다』,” p. 78.

29) 독일의 연방은행 이사였던 티로 자라친(Thilo Sarrazin)은 2010년 ‘자멸하는 독일: 우리가 어떻게 독일을 위험에 빠뜨렸나’라는 책을 출간하였는데, 그 책에서 그는 이주민의 증가와 사회통합의 실패로 독일사회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전망하였으며, 그 원인을 이주민, 특히 무슬림 이주민의 독일사회에 대한 통합의지 및 능력부족으로 돌려서 엄청난 여론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상두, 하명신, 2012, p. 234).

독일의 주류사회가 불편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주요 이주민 집단은 터키계로, 아마도 독일 내 이주민 집단 중 많은 수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터키계 이주민은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독일에 들어와서 서부 공업지대의 석탄, 철강 건설, 섬유, 화학 분야의 노동자로 시작하여, 당시 독일의 경제호황으로 독일 노동자들이 중산층으로 상승하고 독일의 노동자 계층이 떠난 빈자리를 이들이 메꾸면서 사회 계층의 가장 아래 부분으로 편입되었다³⁰⁾. 터키 이주민에 대해 독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대체로 부정적인데, ‘높은 출산율’과 ‘이슬람교도’라는 특성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독일의 인구는 점점 감소하는데 비해 터키 이주민의 출산율은 높아서 미래의 독일을 터키인들이 점수할 것이라는 인종주의적 공포와 서구 근대의 가치와 다른 이슬람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다³¹⁾. 대체적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주류 사회의 고정관념은 ‘교양과 거리가 멀고’, ‘사회적 약자’이고, ‘범죄자’이며, ‘신분상승의 기회가 적고’, ‘통합의 의지가 없다’는 등 부정적인데³²⁾, 수입된 최하층 이주민 중 특히 무슬림 이주민들의 낮은 교육율, 낮은 사회통합의지, 높은 출산율, 높은 복지부담 등이 향후 국가경쟁력을 상실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³³⁾. 사실상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독일의 귀국 장려조치정책도 독일 내 이주민 중 다수를 차지하는 터키노동자를 염두에 둔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³⁴⁾.

이러한 편견과 차별은 반드시 터키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인, 중국인, 한국인 등과 같은 아시아계 독일인의 경우는 극단적인 폭력이나 테러의 희생자가 되지는 않으나 일상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³⁵⁾. 한국인의 경우 유럽 최대의 한인교포사회를 이루고 있는 집단으로 독일 내에서 모범적 이민자로 꼽히고, 대체로 성실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며 사회통합의 의지가 강하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고정관념과는 다르게 평가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일사회에서 타자나 이방

30) 정용숙, “병존에서 공존으로?: 독일의 이주민 문제와 ‘다문화’전쟁,” 『학림』34권(2013), p. 64.

31) 위의 논문, p. 65.

32) 최윤영, “독일 한인2세들의 정체성과 인종적 제노포비아 문제: 마르틴 현의 두 텍스트 예 분석,” 『인문논총』, 14권 1호 (2017), pp. 390-391.

33) 이용일(2016). “독일의 뉴라이트와 복지국가위기론: 틸로 자라친, 『독일이 사라지고 있다』,” p. 78

34) 윤용선, “독일의 이주민 정책: 모델인가, 반면교사인가?,” p. 149.

35) 최윤영, “독일 한인2세들의 정체성과 인종적 제노포비아 문제: 마르틴 현의 두 텍스트 예 분석,” p. 375

인으로 간주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³⁶⁾.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독일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매우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독일이 경제호황을 누리던 시기에 독일인들이 하지 않던 고강도 저임금 노동을 맡아서 하던 외국인노동자들은 경제호황이 끝나면서 독일인의 배타적 대상이 되었고, 독일 내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그 배타성은 더욱 심화되었다³⁷⁾. 특히 통일이 되면서 오랫동안 사회 밑바닥에 깔려 있던 이주자들에 대한 거부와 배척의 심리가 이민자에 대한 과격한 폭력행위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한 예로, 1982년 극우파의 폭력행위가 80건이었으나, 통일을 즈음하여 1990년에 390건, 2000년에는 998건으로 매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³⁸⁾.

이주민에 대한 배타성은 통일 후 동독주민들에게서 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1992년 구 동독지역인 작센주의 14세에서 2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국인 대상 적대감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의 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 거부감의 수준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의 문제가 통일 후 더 심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2007년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도 40%의 구동독지역 주민들이 ‘독일에 외국인이 너무 많고 이들이 실업과 주거상황을 더 좋지 않게 만들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³⁹⁾.

이에 대한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통일 후 동독출신 주민들의 새로운 가치체계 및 사회적 변화에 대한 부적응⁴⁰⁾,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⁴¹⁾, 실업에 대한 공포심⁴²⁾, 통일 후 동서독간의 경제적 격차와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⁴³⁾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통일 후 젊은 노동력이 서독으로 이주하게 되자 동독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게 되었고, 동독지역의 실업률이 높아졌으며, 서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은 소수집단과 더 열악한 조건을 가진 집단에 대해 가혹하

36) 최윤영, “독일 한인2세들의 정체성과 인종적 제노포비아 문제: 마르틴 현의 두 텍스트 예 분석,” p. 378.

37) 정용숙, “병존에서 공존으로?: 독일의 이주민 문제와 ‘다문화’전쟁,” p. 63.

38) 강정숙, “독일이민자 동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p. 156.

39) 손기웅, 『독일통일 쟁점과 과제 2』, (서울: 늘품플러스, 2009), p. 288.

40) 박영정,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pp. 99-101.

41) 이용일, (2016). p. 89.

42) 송광성, “독일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청소년 문제,” 『청소년학연구』 2권 1호(1994), p. 152.

43) 김국현,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통합을 위한 반편견 교육방안,” 『통일정책연구』, 제 12권 2호, (2003), p. 142.

게 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여 보이려는 심리적 시도로 표출되고, 이때 일자리를 놓고 경쟁관계에 있다고 여겨지는 외국인의 경우 그러한 시도의 희생자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⁴⁴⁾.

따라서 독일 사회에서 이주민은 역사적으로 오랜 동안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었고, 사회적 상황이 혼란스럽거나 경제적으로 악화될 때 이들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더욱 강화되고 공격적 행동으로까지 이어졌으며, 통일 직후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이론들

앞에서 언급한 독일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심리학적으로 현실갈등인식이론(Realistic Conflict Theory)과 사회정체감이론(Social Identity Theory), 또는 희생양 메커니즘(Scapegoat mechanism)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현실갈등이론에서는 집단간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있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집단들 간에 경쟁심과 적개심이 생기고 부정적 평가가 편견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것이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⁴⁵⁾. 따라서 한 사회 내에서도 모든 집단이 현실갈등을 인식한다기 보다는 소수집단과 경쟁의 관계에 있는 비교적 교육수준이 낮은 단순노동자 계층이 현실갈등인식의 수준이 높고 따라서 갈등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본다. Heitmeyer의 연구에서, 독일의 경우 농촌지역의 사람들, 나이든 사람들, 교육수준이 낮은 층과 낮은 소득계층에서 이주민에 대해 더 적대적인 것으로 나타났고⁴⁶⁾, 1991년 1월부터 1992년 4월 사이에 독일연방 각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대상 범죄행위를 분석한 연구⁴⁷⁾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자의 절반 이상은 학생이거나 직업훈

44) 손기웅, 『독일통일 쟁점과 과제 2』, p. 288.

45) Sherif, M., *Group conflict and co-operation: Their social psycholog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6).

46) Heitmeyer, W. (2010). Disparate Entwicklungen in Krisenzeiten, Entsolidarisierung und Gruppenbezogene Menschenfeindlichkeit, in W. Heitmeyer(ed.), *Deutsche Zustände. Folge 9* (Frankfurt am Main/Berlin: suhrkamp, 2010). pp. 13-38; 박채복, “독일사회의 이주와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 『세계지역연구논총』 34권 4호, (2016). p. 73 재인용.

47) Helmut Willems, Stefanie Würtz, Roland Eckert, Fremdenfeindliche Gewalt: Eine Analyse von Täterströmen und Eskalationsprozessen, in *Rechtsradikale Gewalt im vereinigten*

련생들이었다는 결과를 볼 때 현실갈등인식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사회정체감이론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높임으로써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는데,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속한 내집단을 선호하고 외집단을 차별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⁴⁸⁾. 통일 후 서독주민과 사회경제적 격차를 경험하면서 스스로를 2등 시민이라고 느끼게 된 동독 주민들은 동독의 고위직이 서독사람으로 교체된 것을 식민지배로 여기기도 하였는데⁴⁹⁾, 이는 집단적 자존심이 하락하는 사건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동독에 남아있던 젊은 세대는 대개 학력이 낮거나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고향에 남아 극우파적인 가치와 행동을 보이며 자신의 무능함을 극복하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인에 대한 무시와 극단적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⁵⁰⁾. 통일로 인하여 경험하게 된 자존감의 추락을 사회적 소수집단인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조함으로써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한 동기의 발현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폭력적 행동으로 발전할 때 이는 희생양 메커니즘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희생양 메커니즘은 르네 지라드(Girard)의 개념으로 폭력적 성향의 집단적 전이현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공동체가 갈등으로 인하여 와해될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로에 대한 증오심을 힘없는 개인이나 소수집단에 쏟아 부어 공동체 내부의 긴장과 불만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⁵¹⁾. 사회적으로 위기의식이나 불안감, 위협이 유발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방인을 희생양으로 찾는 경향이 있는데, 2008년 이후 나타난 유럽 경제의 위기, 실업률 증가, 테러, 시리아 난민 대량 이주 등으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이 불안의 원인으로 이주민을 지목한 것⁵²⁾, 독일에서 1차 세계 대전에 패배한 후 상처입은 독일의 민족적 자존심을 세우

Deutschland(ed Hans-Uwe Orro, Roland Merten), Leske, Budrich, 1993. pp. 432-449; 송광성, “독일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청소년 문제, p. 159, 재인용

48) Tajfel, H., Social categorization, social identity and social comparison. In H. Tajfel,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London: Academic Press, 1978); 양계민,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다문화집단에 대하여 지니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권 3호(2015), p. 168 재인용.

49) 진행남, “동서독의 사회적 통합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 서서히 극복,” p. 98.

50) 이기식, 『독일통일 15년의 작은 백서』, p. 109.

51) 이종원, “희생양 메커니즘과 폭력의 윤리적 문제,” 『철학탐구』, 40권 (2015), p. 277.

고 게르만 민족사회의주의를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무고한 유태인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 등이 그러한 예라고 볼 수 있다⁵³⁾.

지금까지 독일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보이는 현상과 이를 설명하는 이론에 대해 기술하였는데, 어떤 기제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든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불황이라는 심리적 스트레스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때 그것은 외부 자극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유발하게 될 수 있고, 특히 사회적 소수집단인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데, 기존의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 being)에 대한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 being)이란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말하는데, 인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삶의 만족’과 정서적 요소에 해당되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경험’으로 구성되어 있다⁵⁴⁾.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은 타인에 대한 복합적 이해를 증가시키고⁵⁵⁾, 자신과 세상에 대한 폭 넓은 통찰을 제공하며 그에 대해 긍정적 관점을 취하게 함으로써 낙관주의와 같은 자원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⁵⁶⁾. 따라서 독일 주민이 이주민에 대해 지니는 태도에 그들이 느끼는 주관적 안녕감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삶의 과정에서 느끼는 생활스트레스 역시 부정적 방향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통일 후 구 동독출신과 구 서독출신들이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

52) 구연정, 통합유럽의 정체성과 이주민. 독일어문화권 연구, 25권 (2016), p. 20.

53) 이종원, “희생양 메커니즘과 폭력의 윤리적 문제,” p. 276.

54) Diener, E.,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1984), pp. 542-575.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1999), pp. 276-302.; 양계민,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경제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안녕감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권 1호 (2010), p. 114 재인용.

55) Waugh, C. E., & Fredrickson, B. L., “Nice to know you: positive emotions, self-other overlap, and complex understanding in the formation of a new relationship,”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 (2006), pp. 93-106; 구재선, “행복은 심리적 자원을 형성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권 1호(2009), 165-179, 양계민,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경제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안녕감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p. 115. 재인용.

56) 구재선, “행복은 심리적 자원을 형성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권 1호(2009), 165-179, 양계민,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경제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안녕감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p. 115. 재인용.

다. 둘째, 독일주민들이 이주민에 대해 지니는 태도가 그들의 성별, 연령, 학력수준, 주관적 경제수준과 같은 배경특성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셋째,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심리적 요인, 그리고 배경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넷째로,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하여 통일 후 한국사회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조사대상자는 현재 독일에 거주하는 독일인 총 465명으로 이 중 동독출신이 230명, 서독출신이 235명이었다. 2017년 2월 14일에서 2월 21일까지 총 7일간 글로벌 온라인 조사회사인 GMI에 의뢰하여 라이트스피드GMI(Lightspeed GMI)에 구축된 독일인을 출신배경별, 성별, 연령별 표집 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출신배경은 출생지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는데, 1차로 본인의 출생지가 동독이면 동독출신자로, 본인의 출생지가 서독이면 서독출신자로 구분하였다. 다만, 본인의 출생지가 서독이지만 부모의 출생지가 동독인 20대 이하는 동독출신자로 구분하였다. 이들의 현재 거주지는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 바덴 뷔템베르크, 바이에른, 브레멘, 함부르크, 헤센, 니더작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라인란트 팔츠, 자를란트, 쉘레스비히 홀슈타인 등 총 16개 지역이었다.

집단별로 보았을 때, 동독출신 남자는 114명(49.6%), 여자는 116명(50.4%)이었고, 연령별로는 20대부터 50대 까지 집단별로 약 25% 내외로 분포하였다. 주관적 경제수준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3.0%로 가장 많았고, ‘어려운 편이다’라는 응답이 61명(26.5%), ‘잘 사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40명(17.4%), ‘아주 어렵다’(22명, 9.6%), ‘아주 잘산다’(8명, 3.5%)의 순이었다. 학력수준의 경우 ‘실업학교/직업학교 졸업’인 사례가 37%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재학/졸업’이 16.1%, ‘대학재학/졸업’이 15.2%, ‘석사과정재학/졸업’이 17.4%, ‘박사과정재학/졸업’이 2.2%였다. 초등학교 졸업자는 단 한명이었다. 또한 직업의 유무를 분석한 결과 73%인 163명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27%만이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 서독출신자들의 경우도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독출신자들과 성별분포, 연령분포, 주관적 경제수준, 학력, 직업 등의 분포가 거의 유사하였다.

〈표 1〉 조사참여자의 배경적 특성

		빈도(%)	
변인		동독출신	서독출신
성별	남자	114(49.6)	115(48.9)
	여자	116(50.4)	120(51.1)
연령집단	20대	55(23.9)	54(23.0)
	30대	58(25.2)	62(26.4)
	40대	56(24.3)	56(23.8)
	50대 이상	61(26.5)	63(26.8)
주관적 경제수준	아주 어렵다	22(9.6)	15(6.4)
	어려운 편이다	61(26.5)	70(29.8)
	보통이다	99(43.0)	102(43.4)
	잘사는 편이다	40(17.4)	37(15.7)
	아주 잘산다	8(3.5)	11(4.7)
학력	초등학교졸업	1(.4)	1(.4)
	중등학교졸업	27(11.7)	23(9.8)
	실업학교/직업학교졸업	85(37.0)	113(48.1)
	전문대재학/졸업	37(16.1)	26(11.1)
	대학재학/졸업	35(15.2)	31(13.2)
	석사과정재학/졸업	40(17.4)	36(15.3)
	박사과정재학/졸업	5(2.2)	5(2.1)
직업	있음	168(73.0)	179(76.2)
	없음	62(27.0)	56(23.8)
전체		230(100)	235(100)

2. 측정도구

가. 배경변인

배경변인으로는 출신배경(동서독), 성별, 연령, 학력수준, 주관적 경제수준 등으로, 학력수준은 독일의 교육체제에 근거하여 그룬트슐레, 김나지움, 레알슐레/하우프트슐레, 파흐호흐슐레, 대학교,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등 총 7개로 구분하였다. 주관적 경제수준은 총 5점 척도로 ‘아주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잘사는 편이다’, ‘아주 잘산다’의 총 5점 척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나. 이주민에 대한 태도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유럽국가의 인종적 편견을 비교하기 위해 개발된 종족배제주의 척도(ethnic exclusionism)의 문항 중 황정미 등⁵⁷⁾이 수정한 12개 문항 중 총 10개의 문항을 선정하여 독일인 대상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은 ‘이주의 위협’, ‘이주자 송환’, ‘이주자시민권’, ‘다문화사회의 긍정성’ 등 총 4개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주의 위협’요인은 이주민들이 본국에 들어오게 됨에 따라 느끼는 위협의 개념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독일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사는 지역은 지저분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는 총 3문항이었다. ‘이주자 송환’은 이주자 송환정책에 대한 찬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합법적 이주민이라도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이주민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등의 총 2개 문항이었고, ‘이주자 시민권’은 이주자의 시민권을 찬성하는 개념으로, ‘합법적 이주민은 독일시민과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지녀야 한다’, ‘합법적 이주민은 가족들을 데려올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의 총 2개 문항이었으며, 마지막으로 ‘다문화사회의 긍정성’은 다문화사회가 되는 것의 가져오는 긍정적 결과에 대한 수용의 의미로, ‘어떤 사회든 서로 다른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인종, 종교,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와 다른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역코딩)’의 총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총 5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수용도’는 보가더스(Bogardus)⁵⁸⁾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를 적용한 양계민의 연구⁵⁹⁾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이주민을 ‘이웃주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직장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 ‘친한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연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결혼할 수 있다’, ‘내 자녀와 결혼시킬 수 있다’의 총 6개 문항이었고, 각 문항에 대해 역시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총 5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57)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 현, 이동주,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58) Bogardus, E. S. "Measuring social distances," 『Journal of Applied Sociology』, 9 (1925), pp. 299-308.

59) 양계민,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경제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안녕감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pp. 111-128.

다. 삶의 만족도⁶⁰⁾

삶의 만족도는 김신영 등⁶¹⁾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의 총 세 문항이었고, 각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척도 상에 응답하였다.

라. 생활스트레스

생활스트레스는 Sarason, Johnson, 및 Siegel이 제작한 Life Experiences Survey(LES)⁶²⁾를 이영호⁶³⁾가 번안하여 사용한 생활경험조사 중 13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문항은 심한 질병이나 상처, 범법, 경제적 상황, 진로문제, 가족간 갈등, 연인과의 관계, 친구와의 갈등, 직장 동료와의 갈등, 실업, 직장의 업무부담, 따돌림, 무시 등의 이유로 최근 3개월 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전혀 없었음’에서 ‘매우 심했음’까지 총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IV. 연구결과

1. 동서독 출신집단간 차이

우선 첫 번째로 동서독출신 집단간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심리요인 및 배경요인에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집단간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60)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영역인 삶의 만족도만을 측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정서적 경험은 상황적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비교적 지속적인 인지적 영역만을 사용하였다.

61) 김신영, 임지연, 김상옥,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2006). 『청소년발달지표조사 I: 결과부 분석정지표검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62) Sarason, L. G., Johnson, J. H., & Siegel, J. M., “Assessing the impact of life changes: Development of the life experiences surve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1978), pp. 932-946.

63) 이영호,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주민에 대한 태도의 네 가지 하위요인과 사회적 수용성, 심리요인인 삶의 만족도와 생활스트레스, 그리고 배경요인인 연령, 학력, 주관적 경제 수준 등 모든 변인에서 동서독 출신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두 집단이 배경특성과 심리요인 및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서 동질적이라고 볼 수 있었다.

〈표 2〉 집단별 주요 변인의 평균차이

변인		동독출신	서독출신	t
이주민에 대한 태도	이주위협	2.85(1.08)	2.85(1.07)	.07
	이주자송환	2.80(1.16)	2.75(1.16)	.48
	이주자시민권	3.23(1.09)	3.27(1.07)	-.44
	다문화긍정성	3.23(.98)	3.35(1.00)	-1.31
	사회적 수용도	3.32(1.14)	3.26(1.05)	.55
심리요인	삶의 만족도	3.15(.76)	3.20(.76)	-.70
	생활스트레스	2.40(.99)	2.51(.98)	-1.20
배경요인	연령	42.00(12.65)	42.53(12.54)	-.46
	학력	5.77(2.38)	5.56(2.62)	.85
	주관적 경제수준	2.79(.96)	2.83(.93)	-.44

2.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

위에서 동서독출신 집단간 배경요인과 심리요인, 이주민에 대한 태도요인 등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집단이 동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두 집단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심리요인을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첫째로,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심리요인에서 성별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성별에 따른 각 변인의 평균차이

변인		남	여	t
이주민에 대한 태도	이주위협	2.87(1.11)	2.83(1.04)	.46
	이주자송환	2.81(1.18)	2.75(1.15)	.50
	이주자시민권	3.29(1.06)	3.21(1.10)	.74
	다문화긍정성	3.24(1.04)	3.35(.95)	-1.19
	사회적 수용도	3.35(1.09)	3.22(1.11)	1.27
심리요인	삶의 만족도	3.19(.76)	3.17(.75)	.30
	생활스트레스	2.44(.98)	2.48(.99)	-.43

두 번째로는 연령집단에 따라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심리요인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사회적 수용도와 생활스트레스 두 가지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그 외 변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수용도의 경우는 연령이 적을수록 평균값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시에 생활스트레스 역시 연령이 적을수록 평균값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대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가장 높고, 30대와 40대가 그 다음으로 높으며, 50대 이상의 사회적 수용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스트레스의 경우는 20대, 30대, 40대에 비해 50대 이상의 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령집단에 따른 각 변인의 평균차이

변인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F
이주민에 대한 태도	이주위협	2.65(1.01)	2.86(1.14)	2.88(1.06)	2.98(1.06)	1.98
	이주자송환	2.52(1.11)	2.80(1.15)	2.91(1.20)	2.87(1.16)	2.59
	이주자시민권	3.31(1.02)	3.24(1.12)	3.29(1.08)	3.17(1.12)	.37
	다문화긍정성	3.22(.95)	3.24(1.02)	3.38(.92)	3.31(1.08)	.61
	사회적 수용도	3.50(1.06)a	3.30(1.08)ab	3.30(1.29)ab	3.08(1.09)b	2.80*
심리요인	삶의 만족도	3.14(.69)	3.26(.79)	3.15(.85)	3.15(.68)	.65
	생활스트레스	2.67(.90)a	2.63(1.00)a	2.44(.98)a	2.13(.97)b	7.76***

* $p < .05$, *** $p < .001$, Duncan: a>b

세 번째로,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심리요인이 학력수준에 따라 다른지 평균을 비교해보았다.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생활스트레스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을 살펴본 결과 학력수준과 이주민에 대한 태도 및 심리요인은 선형적인 양상이 아니고, 포물선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주의 위협과 이주자의 송환정책에 대한 찬성태도의 경우 ‘실업학교/직업학교졸업자’와 ‘전문대재학/졸업자’가 높고, ‘중등학교졸업 이하’와 ‘석사과정 이상’ 집단이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대로 이주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인 이주자 시민권과 다문화긍정성, 사회적 수용도의 경우는 ‘실업학교/직업학교졸업자’와 ‘전문대재학/졸업자’집단이 낮고, ‘중등학교졸업이하’와 ‘석사과정 이상’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도 ‘실업학교/직업학교졸업자’와 ‘전문대재학/졸업자’가 낮고, ‘중등학교졸업이하’와 ‘석사과정 이상’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볼 때 ‘실업학교/직업학교졸업자’집단과 ‘전문대재학/졸업자’집단이 ‘중등학교졸업이하’와 ‘석사과정 이상’ 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5〉 학력수준별 집단에 따른 각 변인의 평균차이

변인		중등학교 졸업이하	실업학교 /직업학교 졸업	전문대재학 /졸업	대학재학/ 졸업	석사과정 이상	F
이주 민에 대한 태도	이주위협	2.61(1.06)bc	3.07(1.04)a	2.95(1.01)ab	2.74(.99)abc	2.51(1.15)c	5.39***
	이주자송환	2.53(1.05)b	2.92(1.14)ab	2.95(1.20)a	2.67(1.21)ab	2.56(1.16)ab	2.60*
	이주자시민권	3.42(1.02)ab	3.12(1.06)ab	3.07(1.22)b	3.48(1.03)a	3.40(1.05)ab	2.71*
	다문화긍정성	3.52(.84)ab	3.13(1.02)c	3.28(.95)bc	3.17(.90)c	3.64(1.02)a	5.14***
	사회적 수용도	3.55(.96)a	3.15(1.09)bc	2.95(1.10)c	3.38(1.04)ab	3.63(1.13)a	5.39***
심리 요인	삶의 만족도	3.28(.73)ab	3.12(.74)b	3.11(.69)b	3.04(.82)b	3.40(.82)a	3.19*
	생활스트레스	2.50(.91)	2.42(.97)	2.42(.93)	2.64(.98)	2.42(1.11)	.73

* $p<.05$, ** $p<.01$, *** $p<.001$, Duncan: a>b>c

마지막으로 주관적 경제수준별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이주민에 대한 태도 중 이주위협, 다문화긍정성 두 개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삶의 만족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주관적으로 경제수준이 어렵다고 지각할수록 외국인의 이주에 대한 위협은 높게 경험하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성은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삶의 만족도의 경우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주관적 경제수준별 집단에 따른 각 변인의 평균차이

변인		아주어렵다	어려운편이다	보통이다	잘사는 편이다 이상	F
이주민에 대한 태도	이주위협	3.20(1.11)a	3.03(1.07)ab	2.76(1.02)bc	2.65(1.11)c	4.24**
	이주자송환	2.92(1.20)	2.97(1.84)	2.69(1.10)	2.65(1.24)	2.10
	이주자시민권	3.19(1.14)	3.13(1.14)	3.28(1.00)	3.38(1.14)	1.04
	다문화긍정성	3.05(1.01)c	3.09(1.07)bc	3.39(.93)ab	3.46(.95)a	4.17**
	사회적 수용도	3.11(1.19)	3.20(1.14)	3.30(1.08)	3.46(1.02)	1.44
심리요인	삶의 만족도	2.42(.85)d	2.81(.66)c	3.32(.59)b	3.65(.70)a	49.04***
	생활스트레스	2.68(.88)	2.52(.96)	2.38(.96)	2.47(1.11)	1.19

* $p<.05$, ** $p<.01$, *** $p<.001$, Duncan: a>b>c>d

3.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다음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이주민에 대한 태도, 심리요인 및 배경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우선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이주로 인한 위협을 지각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이주자 송환에 찬성하는 정도는 높아지고, 이주자의 시민권

에 대한 보장, 다문화사회의 긍정성,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 즉, 이주의 위협과 이주자 송환에 대한 찬성의 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수용도는 낮아지고, 반대로 이주자 시민권 보장과 다문화긍정성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주자의 삶의 만족도와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주의 위협을 낮게 지각하고 다문화사회의 긍정성과 사회적 수용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이주의 위협에 대한 지각수준이 높고 이주자의 송환정책에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배경요인과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는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이주에 대한 위협을 낮게 지각하고, 이주자 송환정책에 찬성하는 수준이 낮아지는 반면, 다문화사회의 긍정성에 대해서는 높게 지각을 하고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의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심리요인 및 배경요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학력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이주민에 대한 태도					심리요인		배경요인	
		이주 위협	이주자 송환	이주자 시민권	다문화 긍정성	사회적 수용도	삶의 만족도	생활 스트레스	학력	주관적 경제수준
이주민에 대한 태도	이주 위협	1								
	이주자 송환	.70***	1							
	이주자 시민권	-.49***	-.54***	1						
	다문화 긍정성	-.54***	-.47***	.59***	1					
	사회적 수용도	-.54***	-.54**	.68***	.61***	1				
심리요인	삶의 만족도	-.10*	-	-	.21***	.11*	1			
	생활 스트레스	.11*	.14**	-	-	-	-.11*	1		

		이주민에 대한 태도					심리요인		배경요인	
		이주 위협	이주자 송환	이주자 시민권	다문화 긍정성	사회적 수용도	삶의 만족도	생활 스트레스	학력	주관적 경제수준
배경 요인	학력	-.12*	-	-	.10*	-	-	-	1	
	주관적 경제수준	-.17***	-.11*	-	.15***	.09*	.48***	-	.21**	1

* $p < .05$, ** $p < .01$, *** $p < .001$

4.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마지막으로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른 변인들을 통제된 상태에서도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삶의 만족도와 생활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요인과 연령, 학력, 주관적 경제수준 등의 배경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이주의 위협, 이주자송환, 이주자 시민권, 다문화사회의긍정성 등과 같은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수용도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학력의 경우 앞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였으나 그 관계가 선형적이라기보다는 포물선의 관계에 가까웠다. 따라서 회귀분석에 그대로 투입할 경우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학력의 수준을 포물선으로 가정하여 재코딩하고 분석하였다. 즉, 앞의 평균비교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업학교나 직업학교, 또는 전문대학 집단의 값이 낮고 중학교 졸업이하 집단이나 석사과정 이상 집단의 값이 높거나 또는 그 반대로 실업학교나 직업학교 또는 전문대학 집단의 값이 높고, 중학교 졸업이하 집단의 값이 낮은 특성 등에 따라 재코딩하여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우선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인 이주로 인한 위협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독일인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 연령, 학력, 그리고 주관적 경제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태도의 두 번째 요인인 이주자 송환에 대한 찬성의 경우는 삶의 만족도와 학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생활스트레스, 연령 및 주관적 경제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주민에 대해 지니는 부정적인 태도의 경우는 생활스트레스가 주로 영향을 미치고, 배경변인 중에서는 연령과 주관적 경제수준이 영향을 미치며, 학력의 효과는 이주로 인한 위협의 경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 태도 중 이주자의 시민권을 보장하는 데 대한 찬성의 수준에는 삶의 만족도, 생활스트레스, 연령, 학력, 주관적 경제수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사회의 긍정성의 경우 삶의 만족도와 학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과 학력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수용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독일주민이 이주민에 대해 지니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R^2
부정적 태도	이주위협	삶의 만족도	-.014	-.29	.07***
		생활스트레스	.129	2.74**	
		연령	.115	2.44*	
		학력	-.115	-2.49*	
		주관적 경제수준	-.130	-2.48**	
	이주자송환	삶의 만족도	.079	1.51	.05***
		생활스트레스	.168	3.53***	
		연령	.121	2.56**	
		학력	-.058	-1.24	
		주관적 경제수준	-.121	-2.29*	
긍정적 태도	이주자시민권	삶의 만족도	.072	1.37	.02
		생활스트레스	-.002	-.05	
		연령	-.019	-.40	
		학력	.077	1.61	
		주관적 경제수준	.017	.31	
	다문화긍정성	삶의 만족도	.194	3.75***	.06***
		생활스트레스	.065	1.38	
		연령	.065	1.27	
		학력	.105	2.25*	
		주관적 경제수준	.035	.78	
사회적 수용도	삶의 만족도	.079	1.51	.03**	
	생활스트레스	.022	.46		
	연령	-.112	-2.35*		
	학력	.102	2.18*		
	주관적 경제수준	.034	.62		

* $p < .05$, ** $p < .01$, *** $p < .001$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통일 이후 독일 주민들이 이주민에 대해 지니는 태도에서 구 동서독출신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독일주민들이 이주민에 대해 지니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삶의 만족도와 생활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요인과 연령, 학력, 주관적 경제수준과 같은 배경요인 등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통일 한국사회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주민들의 동서독 출신배경에 따라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 및 스스로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와 생활스트레스수준이 다른지 비교한 결과, 이주민에 대한 태도, 삶의 만족도, 생활스트레스 등 모든 변인에서 동서독출신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⁶⁴⁾. 특히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평균을 보았을 때 부정적 태도는 5점 만점에 3점 이하, 긍정적 태도는 5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나타나 동서독출신자들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이었다는 점에서 두 집단 모두 이주민에 대해 유사한 수준의 긍정적 방향의 태도를 지닌다고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통일 후 30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동서독출신이라는 배경은 이주민에 대한 태도, 삶의 만족도 및 생활스트레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은 아닐 수 있다는 점으로 그만큼 사회통합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 참여한 독일인들은 대부분이 현재 서독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거나 통일 전 기준 동독에 거주하고 있어도 서독출신이면서 이주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동독 출신이면서 동독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는 10명에 불과하였다. 통일 후 서독으로 넘어 온 동독출신자들이 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젊은 층이었고⁶⁵⁾⁶⁶⁾ 따라서 높은 학력의 고급경력을 지닌 사람들이었던 것⁶⁷⁾을 생각해보면, 현재 서독에 거주하고 있는 동독출신은 서독사회에서도 경쟁력이 갖

64)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와 별도로 거주지역(동서독)에 따른 출신집단간 분석에서도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65) 강경식, 이기주, 『통일의 길, 바로 가고 있는가: 독일 통일에서 얻는 교훈』(서울: 기파랑, 2007), p. 105.

66) 2004년의 경우는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사람들 중 54%는 18세에서 30세의 젊은 층이었다고 보고되고 있다(손기웅, 『독일통일 쟁점과 과제 2』, p. 285).

67) 김창권,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인구이동 및 인구변화와 한반도 통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경상논총』, 제 28권 1호 (2010), p. 41.

추고 있었던 집단이었을 것이고, 따라서 적어도 현재 서독에 거주하고 있는 동독출신의 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경우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삶의 대한 만족도, 생활스트레스 측면에서 서독출신자들과 상호간 많은 부분 통합되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현재 독일의 경제상태가 크게 나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독일연방노동청에 따르면 2016년 11월 현재 고용률이 증가하고 실업률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고, 독일의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6.8%로 EU 중 가장 낮은 수치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론, 2017년도 독일의 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4배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것이 독일의 실질임금을 전년대비 2% 상승하여 치솟는 물가상승률을 완화할 뿐 아니라 적정한 인플레이션이 경제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⁶⁸⁾. 즉, 경제적 상황이 크게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독출신이든 서독출신 이든 특별히 외집단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강하게 형성할 이유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주민에 대한 태도나 삶의 만족도, 생활스트레스 등에서 동서독출신이라는 배경에 따라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성별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태도, 삶의 만족도, 생활스트레스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연령에 따른 차이는 사회적 수용도와 생활스트레스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연령이 낮은 집단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높고,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수용도가 낮은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젊은 세대들의 경우 출생 당시부터 이미 이주민이 다수인 사회에 태어나 이주민의 존재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연령이 높은 세대에 비해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연령이 낮은 집단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기와 성인기 초기라는 발달과정의 특성상 진로의 결정과 취업, 결혼 등 스트레스 요인 자체가 많고 이 과정에서 평소 경험하는 스트레스요인에 대해 발달적으로 보다 안정된 중년시기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었다.

셋째, 학력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모든 하위요인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독일의 경우 한국의 학제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수학에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서열화했을 때 반드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이주민에 대한

68) 『KOTRA』, “2016년 독일 고용시장 동향과 전망,” KOTRA 해외시장 뉴스.(2016. 12. 02)

태도가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학력수준이 가장 낮거나 가장 높은 집단에 비해 중간 직업학교 및 기술학교, 전문학교 재학 및 졸업자들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가장 부정적이었고, 삶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전통적으로 이주민 집단과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일 가능성이 높고⁶⁹⁾,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상대적 박탈감이 높다는 연구결과⁷⁰⁾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는 아마도 독일 상황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결과일 수 있다. 직업학교나 기술학교, 전문학교의 경우 전문적 기술을 공부하여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교로, 취업이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해 좀 더 민감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이주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경쟁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이주민으로 인한 위협을 강하게 느끼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적은 낮게 지각하며, 삶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느끼기에 경제수준이 낮다고 지각하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사회적 외부 자극에 대해 더 위협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고 볼 때, 이 결과는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결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요약하면, 적어도 서독에 거주하고 있는 동독출신과 서독출신자 집단의 경우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지 않고 있고, 그보다는 연령이나 학력 등이 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현재 독일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더 이상 동서독출신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와 계층의 문제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이주자에 대한 태도에 삶의 만족도, 생활스트레스 연령, 학력, 주관적 경제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이주자로 인한 위협을 느끼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주관적 경제수준과 생활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연령과 학력이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자를 송환해야 한다는

69) Coenders, M., Lunners, M., & Scheepers, P. (2003). Majority populations' attitudes towards migrants and minorities-report for the European Monitoring Venter on Racism and xenophobia, <http://eumc.int>.; 양계민, 이우영, “북한이탈주민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한주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제 12권 1호 (2016), pp. 71-105. 재인용

70) 박군석, 한덕웅, “영호남의 상대적박탈에서 사회구조요인과 사회정체성의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2002), pp. 401-402.

생각에 대해서도 생활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과 주관적 경제수준이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삶의 만족도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주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는 삶의 만족도 보다는 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주관적 경제수준이 작용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에 비해 다문화사회의 긍정성에 대한 태도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⁷¹⁾, 다음이 학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만족도와 생활스트레스가 각기 다른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삶의 만족도가 높으면 긍정적 태도가 증가하고 삶의 만족도가 낮으면 부정적 태도가 증가한다거나, 반대로 삶의 스트레스가 높으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높고, 삶의 스트레스가 낮으면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삶의 만족도는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생활스트레스는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임을 의미한다. 또한 주관적 경제수준 역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및 긍정적 태도의 예측요인이 각각 다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통일 후 독일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분석함으로써 통일 후 한국사회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통일 후 30년이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구동독 및 구서독출신들이 적어도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 보면 동독 출신들이 통일 후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하여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강하고 이러한 태도가 폭력과 같은 강한 태도로 나타나기도 하는 등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동서독출신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그 간 동서독 주민간의 갈등과 가치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사회통합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있다는 그간의 평가와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동서독주민들의 가치가 잘 통합되었다고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다

71)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양계민의 연구(2010)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의 태도는 자신이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의 여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양계민, 2010, p. 123). 또한 구재선(2016)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가 더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성은 동일 시점 뿐 아니라 2년 후의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만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가치에 있어서 통합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방향이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일 후 남북한 주민이 이주민에 대해 지니는 태도에 대입하여 생각해 볼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가 혼란인 상황에서 이주민 집단은 북한주민의 차별적 대상이 되기 쉬우나 시간이 지나 남북한 주민간의 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그러한 현상은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낙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독일주민의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으로 생활스트레스와 주관적 경제수준이 산출되었다. 이는 아마도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측된다. 통일 후 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한다면 이는 이주배경을 지닌 사람들에게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북한주민들의 경우 통일이 되면 남한의 경제력 또는 기술력으로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이 좋아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통일 이후 남북 주민들은 매우 잘 어울려 지낼 것이라고 낙관하는 경향성을 생각해 보면⁷²⁾,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이 무관심, 불평등, 차별 등의 사회 현실에 직면하여 자신들의 민족우선주의와 민족 감정이 공유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이는 심리적 좌절, 새로운 체제에 대한 비판, 상대 주민에 대한 반감, 자신의 과거체제에 대한 비난 등으로 나타날 것이고, 통일 후 독일에서 나타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⁷³⁾ 따라서 통일 후 다양한 집단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사회경제적 여건의 안정화가 우선적 과제가 되는 것이 합당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생활스트레스와 주관적 경제수준이 감소한다고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경제적 여건의 안정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경제적 어려움을 감소시키는 것은 부정적 태도를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그것이 직접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 태도나 수용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출신 주민과 이주배경주민들이 모두 사회적으로 갈등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구성원 모두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주민과의 태도에

72) 강동완, 박정란, “북한주민의 통일의식 조사 연구: 북한주민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정책 연구』, 제 23권 2호 (2014), p. 14.

73) 전미영, “통일담론에 나타난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 『국제정치논총』, 43집 1호 (2003), pp. 200-202.

있어서 그것 역시 다소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이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다문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대한 전 국민적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통일에 있어 통일의 핵심주체인 남한사회의 구성원들이 문화적으로 다원화 되어 있는 상황이며, 통일의 과정은 이러한 다중적 주체들의 참여에 의해 만들어지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⁷⁴⁾는 결론에 비추어 볼 때, 통일 후 독일에서 나타나는 동서독주민 간 갈등과 이주민과의 갈등 등의 문제는 한국사회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며, 이 과정에서 이주배경의 집단이 통일 후 혼란의 희생양이 되는 등 독일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논문투고일: 2017년 05월 16일 ■ 논문심사일: 2017년 06월 06일 ■ 게재확정일: 2017년 06월 06일

74) 이수정, “다문화주의가 통일에 말걸기,” 『북한경제리뷰』 2011년 10월호. p. 62-78.

참고문헌

1. 국문단행본

- 강경식, 이기주. 『통일의 길, 바로 가고 있는가: 독일 통일에서 얻는 교훈』. 서울: 기파랑, 2007.
- 김신영, 임지연, 김상옥,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 『청소년발달지표조사 I: 결과부분 측정지표검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 박영정.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 손기웅. 『독일통일 쟁점과 과제 2』. 서울: 늘품플러스, 2009.
- 이기식. 『독일통일 15년의 작은 백서』, 고려대학교 교양총서 5.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8.
- 황병덕, 여인곤, 김면희, 김학성, 랄프 하베르츠, 송태수, 안숙영, 윤덕룡, 이무철, 장준호, 정상돈, 정홍모.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 서울: 늘품플러스, 2011.
-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 현, 이동주.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2. 영문단행본

- Sherif, M. Group conflict and co-operation: Their social psycholog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6.
- Tajfel, H., Social categorization, social identity and social comparison. In H. Tajfel,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London: Academic Press, 1978.

3. 국문논문

- 강동완, 박정란. “북한주민의 통일의식 조사 연구: 북한주민 100명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23권 2호(2014).
- 강정숙. “독일이민자 동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민족연구』, 7권(2001).

- 고상두, 기주옥. “프랑스 이민자 폭동의 배경요인: 독일과의 비교,”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2집 1호(2014).
- 고상두, 하명신. “독일 거주 이주민의 사회통합 유형 :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출신 이주민 집단의 비교분석,” 『국제정치논총』, 52권 5호(2012).
- 고상두. “통일 이후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동서독 지역주민의 인식,” 『유럽연구』, 제 28권 2호(2010).
- 구연정. “통합유럽의 정체성과 이주민,” 『독일어문화권 연구』, 25권(2016).
- 구재선. “주관적 안녕감과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권 2호(2016).
- 구재선. “행복은 심리적 자원을 형성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권 1호(2009).
- 김관호.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갈등사례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북한학연구』, 6권 1호(2010).
- 김국현.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통합을 위한 반편견 교육방안,” 『통일정책연구』, 제 12권 2호(2003).
- 김상무. “통일독일 학교교육의 내적통일문제 인식에 관한 연구: 중등학교 역사교과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15권 3호(2009).
- 김창권.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인구이동 및 인구변화와 한반도 통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경상논총』, 제 28권 1호(2010).
- 박군석, 한덕웅. “영호남의 상대적박탈에서 사회구조요인과 사회정체성의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2002).
- 박명선. “독일 이민법과 통합정책의 외국인 차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14권 2호 (2007).
- 박채복. “독일사회의 이주와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 『세계지역연구논총』 34권 4호, (2016).
- 서정일. “구동독 주민의 동독 이탈 및 서독 사회 적응과정에 관한 사회문화적 고찰,” 『독일언어문학』 제 42집(2008).
- 송광성. “독일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청소년 문제,” 『청소년학연구』 2권 1호(1994).
- 양계민, 이우영. “북한이탈주민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한주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 12권 1호(2016).

- 양계민.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경제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안녕감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권 1호 (2010).
- 양계민.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다문화집단에 대하여 지니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권 3호(2015).
- 윤용선. “독일의 이주민 정책: 모델인가, 반면교사인가?,” 『독일연구』, 30권(2015).
- 이동기. “독일통일 후 동독정체성: 오스탈기는 통합의 걸림돌인가?” 『역사와 세계』, 50 (2016).
- 이수정. “다문화주의가 통일에 말걸기,” 『북한경제리뷰』 2011년 10월호.
- 이영호.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 이용일. “독일의 뉴라이트와 복지국가위기론: 텔로 자라친, 『독일이 사라지고 있다』,” 『서양사론』 129호 (2016).
- 이종원. “희생양 메커니즘과 폭력의 윤리적 문제,” 『철학탐구』, 40권 (2015).
- 이현진, 이철원. “EU의 난민정책 현황과 향후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5. No. 36(2015).
- 전미영. “통일담론에 나타난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 『국제정치논총』, 43집 1호 (2003).
- 정용숙. “병존에서 공존으로?: 독일의 이주민 문제와 ‘다문화’전쟁,” 『학림』, 34권 (2013).
- 진행남. “동서독의 사회적 통합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 서서히 극복,” 『통일한국』 165권 (1997).
- 최윤영. “독일 한인2세들의 정체성과 인종적 제노포비아 문제: 마르틴 현의 두 텍스트 예 분석,” 『인문논총』, 14권 1호 (2017).
- 허준영.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 46권 1호 (2012).

4. 영문논문

Bogardus, E. S.. “Measuring social distances,” Journal of Applied Sociology,

9(1925), pp. 299-308.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1999), pp. 276-302.

Diener, E..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1984), pp. 542-575.

Gransow, V., "Eile mit Weile. Fur eine Debatte um die schnelle deutsche Vereinigung und due stockende innere Einheit," *Detschland Archive*, 38, H. 5, pp. 877-884.

Sarason, L. G., Johnson, J. H., & Siegel, J. M., "Assessing the impact of life changes: Development of the life experiences surve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1978), pp. 932-946.

Waugh, C. E., & Fredrickson, B. L., "Nice to know you: positive emotions, self-other overlap, and complex understanding in the formation of a new relationship,"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 (2006), 93-106.

5. 기타

연합뉴스. "독일 작년 이민자수 사상최대... 주민 5명 중 1명 외국출신," 『연합뉴스』 (온라인), 2015년 8월 4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조사결과," 『행정자치부』 (2016).

KOTRA, "2016년 독일 고용시장 동향과 전망," KOTRA 해외시장 뉴스. (2016. 12. 02)

Coenders, M., Lunnens, M., & Scheepers, P. (2003). Majority populations' attitudes towards migrants and minorities-report for the European Monitoring Venter on Racism and xenophobia, <http://eumc.int>.

Financial Times, "Angela Merkel wins CDU backing on refugee policy." (2015. 12. 14).

Friedemann Schmidtm Die Neue Rechte und die Berliner Republik: Pralle laufende Wege im Normalisierungsdiskurs (Wiesbaden, 2001).

Heitmeyer, W.. Disparate Entwicklungen in Krisenzeiten, Entsolidarisierung und Gruppenbezogene Menschenfeindlichkeit, in W. Heitmeyer(ed.), *Deutsche Zustände. Folge 9* (Frankfurt am Main/Berlin: suhrkamp, 2010). pp. 13-38.

Helmut Willems, Stefanie Würtz, Roland Eckert, Fremdenfeindliche Gewalt: Eine Analyse von Täterstrumen und Eskalationsprozessen, in Rechtsradikale Gewalt im vereinigten Deutschland(ed Hans-Uwe Orro, Roland Merten), Leske, Budrich, 1993. pp. 432-449.

The telegraph, “German fireman refuse to respond to emergencies at refugee shelters.”(2015. 11. 5).

German's Attitude Toward Immigrants after Unification: focusing on the Effects of Life Satisfaction and Stress

*Yang, Kyemi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ttitude toward Immigrants in German to predict Korean social situation and analyze the conflict factors between Korean and immigrant background people after the south-north Korean unification. The results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between old eastern and western Germans in the attitude toward immigrants, life satisfaction, life stress. Second, there was no sex difference, in those variables, but there was the difference in education. Third, the factor affects on the positive attitude was life satisfaction, and stress and the factors on the negative attitude was subjective economic level. Therefore, the fact that the factors affect on the attitude toward immigrants were in the other dimension was derived. Finally, the implication for the Korean unification was suggested.

***Keyword:** German Unification, Immigrants, Social Integration, Korean Unification, Group Conflict, Life Satisfaction, Life Stress

* Senior Research Fellow,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북한의 주민 일상에 대한 법적 통제 : 비사회주의적 행위와 범죄규정화를 중심으로*

황 의 정**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II. 북한의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범죄규정화의 특징과 의미 |
| II. 비사회주의적 행위와 범죄규정화 개념 | IV. 북한의 범죄규정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

[국문요약] 이 연구는 북한 사회구성원의 비사회주의적 행위와 이를 범죄화한 국가의 법적 규정(legal definition)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4년부터 2012년 사이 북한당국이 활발히 추진한 법률 제·개정과 사회변화 간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북한의 법에 대해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또는 죽은 법으로 평가하는 기존 연구시각을 뒤집고자 수행한 연구였다.

2000년대 초 북한법률 가운데 특히 일탈과 범죄의 통제수단인 형법 및 치안·행정처벌법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북한의 사회변화를 대표하는 구성원의 사회적 일탈행위인 비사회주의적 행위와 이의 통제수단인 이들 법률의 상

관관계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에서 법과 사회가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비사회주의적 행위’와 ‘범죄규정화’ 용어를 개념적 도구로 사용하여 북한의 형법 및 행정처벌법상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범죄·위법 행위규정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범죄규정화의 특징과 의미를 해석하였고, 법과 사회 간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범죄규정화를 평가하여 향후 북한당국의 범죄규정화 정책을 전망하였다.

* 주제어: 북한의 비사회주의적 행위, 범죄규정화(crime-definition), 법적 통제, 북한형법,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 사회주의적 일탈행위

* 이 논문은 “북한의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 범죄규정화(crime-definition)를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 박사학위논문, 2016)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제232회 북한법연구회(2016.12.29.)에서 발표된 바 있음.

**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이메일: hwangej@jbi.or.kr

I. 문제제기

1990년대 중후반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 대다수 북한주민은 사적 장사활동과 같이 사회주의원칙에 벗어나는 사회적 일탈행위를 감행해야 생존할 수 있었다.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탈은 다양한 형태의 일탈행위로 변화되고 확산되었다.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사회적 일탈을 이른바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규정하고 사상교양 및 사상투쟁으로 통제하는¹⁾ 동시에 물리적 억압으로 통제하였다. 비사회주의적 행위가 발생하던 당시에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실체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법적 통제방식을 우선적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다.²⁾ 2000년대 들어와 북한의 통제방식에 변화가 일어났다. 북한당국은 형법개정을 통해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비롯한 사회적 일탈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해당 형벌로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행정처벌법이라는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일탈행위를 범죄 외에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행정처벌에 의해서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북한당국의 주민 일상에 대한 통제방식의 새로운 시도와 변화는 이미 존재하는 ‘범죄개념’과 그에 상응한 형벌적용의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현실과 여건 변화로 인한 국가의 법적 ‘범죄정의(crime-definition)’에 의한 것이었다.³⁾ 북한주민의 사회적 일탈행위를 국가가 새로운 ‘범죄행위’로 명명함으로써 다수의 특정 범죄행위 유형이 생겨난 것이다.

북한당국은 범죄규정을 다루는 형법을 1987년 제정 이후 1990년대 3차례, 2004년부터 2012년 사이 16차례 개정하였다. 위법행위규정을 다루는 행정처벌법에 대해서는 2004년 제정 이후 2011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2000년대 와서 행위통제수단인 형법과 행정처벌법 개정이 매우 활발하게 추진된 셈이다. 잦은 법개정의 결과,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범죄 및 위법행위 유형이 다수 생겨났다. 특히 2004

1) ‘사상교양’은 “일정한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말하고, ‘사상투쟁’은 “계급투쟁의 반영으로서의 적대사상 간의 투쟁 또는 노동계급이 자기 계급의 혁명사상과 적대되는 온갖 반동적 사상을 반대하여 벌리는 투쟁”을 말한다.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p. 1631~1632.

2) 북한은 주민들을 통제함에 있어, 법적 통제보다는 사상통제를 우선시하였다. 즉,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과 규정의 요구를 잘 알고 그것을 철저히 준수집행하도록 이끌어주는 사상교양사업”으로 정의되는 ‘준법교양’과 같은 사상교양을 선차적 방도로 활용하여 법적 통제의 효과성을 높이려 하였다.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pp. 364~367.

3) Richard Quinney, *Criminology: Analysis and Critique of Crime in America* (Boston: Little, Brown, 1975).

년 개정형법에서는 일반범죄유형이 기존 106개에서 231개로 확대 규정되어 무려 125개나 되는 범죄행위유형이 형성되었다. 주민들에 대한 행위통제 수단인 형법상 범죄규정의 양적 변화는 형법학적 측면에서 볼 때, “과잉범죄화 또는 과잉사법화(overcriminalization)”현상에 해당한다.⁴⁾

어느 사회나 체제가 어떠한 간에 법은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그 사회구성원과 상호작용한다. 하지만 외부의 시각에서 볼 때, 북한은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라고 평가받아왔다. 특히 국내 법학계는 북한의 법에 대해 “형식적, 명목적, 장식적, 죽은”등과 같은 수식어를 붙여 평가해왔다. 사실상 김일성 교시, 김정일 말씀(지시) 및 당규약이 헌법우위를 차지하는 북한의 법적 현실을 고려한 평가로, 그 실효성이 부인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와서 형법의 빈번한 개정과 그에 따른 범죄규정의 형성 및 변화가 북한에서 법이 “살아있는 법(living law)”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셈이 되었다.⁵⁾ 북한사회에서 일어나는 활발한 법적 현상을 계기로, 이제 북한법을 대하는 기존 시각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각에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시 말해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북한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이 연구는 법과 사회, 법과 행위 사이에 상호작용이 작동한다는 관점에서 사회주의 북한의 형법 진화 및 발전양상에 주목한다.⁶⁾ 북한형법의 진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새로운 범죄규정을 북한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이고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지배 권력의 위기감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안정성의 척도”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⁷⁾ 또한 이전보다 북한사회의 내부변화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현실연관성의 척도’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형법분석을 통해 범죄규정에 편입된 다양한 비사회주의적 행위유형을 외부자가 발견(finding)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형법 및 행정처벌법의 진화와 발전양상 속에서 구성원의 사회적 일탈행위인 비사회주의적 행위와 이를 범죄화한 국가의 법적 규정(legal

4) Richard Quinney, *Class, State, and Crime* (New York: Longman, 1977), p. 158.

5) Eugen Ehrlich(aut.), Moll, Walter L.(trans.)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Sociology of Law*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2002), pp. 486~506.

6) James L. Hildebrand, *The Sociology of Soviet law* (New York: Hein, 1972), pp. 29~32.

7) 박홍규 역, 『자본주의법과 사회주의법』 (서울: 일월서각, 1988), p. 108.

definition)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북한사회 내 행위와 법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비사회주의적 행위’와 ‘범죄규정화’라는 개념적 도구를 사용하여 두 관계를 설명한다. 이를 위해 개정시기별 형법상 범죄규정을 비교분석하여 경제, 문화, 행정, 공동생활, 생명·재산 부문 중 어느 부문에서 상당수 비사회주의적 행위유형을 범죄규정화하였는지 찾아내고자 한다.⁸⁾ 행정처벌법상 위법행위규정 비교분석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북한당국이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어떠한 범죄·위법행위규정에 수용하거나 배제하여 규정하였는지, 범죄규정화의 특징과 의미는 무엇인지, 범죄규정화와 사회 상호 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밝혀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북한당국이 사회구성원에 대한 법적 통제방식을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갈지 전망한다.

II. 비사회주의적 행위와 범죄규정화 개념

위에서 언급한바, 이 논문은 북한에서 사회구성원의 사회주의에 반하는 일탈행위와 이를 범죄화한 국가의 법적 규정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전자는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후자는 ‘범죄규정화’로 지칭하기로 한다. 이들 용어는 이 연구의 핵심 개념도구로, 기술적 편의 및 혼동을 피하기 위해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비사회주의적 행위 개념은 북한당국이 인식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 현상’이나 ‘비사회주의 요소’의 의미에서 추출한 내용을 반영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범죄규정화 개념은 국가적 범죄개념을 사회규정적인 문제로 이해하는 갈등 이론 학자 Quinney의 관점을 차용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일탈행위는 그 사회의 규범이나 가치 등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결국 비사회주의적 행위는 북한의 사회주의규범과 사회주의적 가치 등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이며 곧 일탈행위의 범주에 들어간다. 비사회주의적 행위 개념 역시 일탈행위가 갖는 사회·문화적 상대성과 규정기준의 가변성을 지닌다. 다시 말해 비사회주의적 행위 개념은 북한사회에서 사회규정적 문제로 취급된다.⁹⁾ 북

8) 북한형법은 범죄규정을 크게 정치, 경제, 문화, 행정, 사회(공동생활), 인신(생명)·재산 부문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정치부문의 범죄규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라고 하여 일반범죄와 구별해서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반범죄규정만 다루기로 한다.

한식 사회주의체제에서 제시한 공식규범과 가치관인 사회주의적 규범과 가치관을 거스르는 행위가 곧 비사회주의적 행위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생활양식 확립’이라는 목표 하에 구성원들에게 사회주의규범과 가치관을 강요해 왔다.¹⁰⁾ 여기서 북한의 사회주의적 규범과 가치관은 그간 북한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실시해온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은 1970년 ‘사회주의체제 완성’을 공식 선언한 이후 사회주의적 사상교양을 통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주의적 규범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사상교양사업에 주력해 왔다. 북한은 착취제도를 반대함으로써 공산주의교양사업을 펼쳐왔으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반대함으로써 집단주의정신을 함양하는 교양사업을 펼쳐왔다. 또한 노동을 신성한 의무로 여기도록 강조하면서 공산주의적 사고방식과 공동노동의 성실한 참여를 독려하는 교양사업을 펼쳐왔다. 여기에 더하여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우월성 및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고취시키고 항일혁명전통을 절대시하는 교양사업을 펼쳐왔다. 한편 북한은 사회구성원들을 조직생활에 참여시켜 자아비판 및 호상비판 등의 총화사업을 강조하고, 가정생활 역시 인민반 활동을 통해 감시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생활양식 등을 주입해왔다.¹¹⁾

〈표 1-1〉 북한의 사회주의적 공식규범과 가치관

사상교양 내용		공식규범과 가치관	비사회주의적 가치관
사상 교양 사업	공산주의 교양	착취제도 반대	사적 소유
	집단주의 교양	집단주의 정신	개인주의, 이기주의
	공산주의적 노동 교양	노동의무, 공동노동 참여	노력동원 불성실 참여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	조국 사랑, 체제 수호	정권, 제도 및 정책 비판
	혁명전통 교양	항일혁명의 절대화	수령 및 지도부 비판
조직 사업	총화사업 강화 교양	각급 근로단체생활 강조	조직생활 불성실 참여
	사회주의적 생활양식 교양	집단주의, 공동재산 애호	자본주의생활양식(옷차림, 머리모양), 사적 소유의식
	가정 혁명화 교양	가정과 이웃의 학교화	불성실한 인민반 활동

* 출처: 최대석 외, 『북한 내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확산 실태 및 북한주민 의식변화』(통일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0), p. 17, 저자 약간 수정.

9) Allen E. Liska, and Steven F. Messner, *Perspectives on Crime and Deviance*, 3rd ed., (New Jersey: Prentice Hall, 1999).

10) 안장원,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구,” 『철학연구』, 제1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11) 최대석 외, 『북한 내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확산 실태 및 북한주민 의식변화』(통일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0), p. 17.

이 연구가 비사회주의적 행위 개념에 주목하는 이유는 북한체제의 속성과 내구력, 사회균열 등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며, 이 행위가 북한 사회구성원들이 행하는 개인행동들의 집합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성원들의 집합적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국가적 반응에 해당하는 법적 통제기제인 범죄규정의 시간에 따른 내용변화 속에서 북한체제의 속성과 내부사정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은 ‘비사회주의적 행위(non-socialist behavior)’와 ‘반사회주의적 행위(anti-socialist behavior)’를 구분한다. 북한사전에 따르면, ‘비사회주의’란 “사회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것”을 의미한다.¹²⁾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어 있고 인민대중의 일심단결된 힘에 의하여 발전하는 사회제도”로, “주체사상을 구현한 사람중심의 사회주의”를 의미한다.¹³⁾ 사회주의에 대한 이념적 뜻으로는 북한의 ‘비사회주의적 행위’개념을 정의내리기 쉽지 않다. 다만, 북한의 법률문헌을 통해 북한당국이 인식하는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유추할 따름이다.

비사회주의적 현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사회주의사회를 내부로부터 좀 먹고 파괴하는 온갖 부정적 현상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비사회주의적 현상은 반동적인 부르조야사상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과 생활인습의 발현으로서 사회주의사회를 내부로부터 좀먹고 파괴하는 유해로운 요소, 생활풍조이다. 비사회주의현상은 그 성격에서 사회주의를 의식적으로 반대하는 반사회주의적현상과는 다르다. …… 비사회주의적현상은 사회질서와 공중도덕을 문란시키며 …… 특히 일부 일군들 속에서 나타나는 특전행세와 부정축재를 비롯한 비사회주의적현상은 인민들의 비난을 받게 되며 당과 수령의 권위를 훼손시킬수 있으며 당의 계급진지를 약화시키게 된다.¹⁴⁾

위의 글에서 북한당국이 인식하는 비사회주의적 행위 개념을 세 가지 의미로 추론할 수 있다. 첫째, 비사회주의적 행위는 사회주의 북한 사회내부를 파괴할 수 있는 부정적 행위이다. 둘째, 비사회주의적 행위는 부르주아사상에 해당하는 자본주의사

12)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7), p. 425. ‘비사회주의’에 대해, 2007년의 『조선말대사전』은 용어풀이를 하고 있지만 1992년의 『조선말대사전』에는 ‘비사회주의’ 또는 ‘비사회주의적’에 대한 용어풀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비사회주의적 현상이 1990년대 중후반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2007년 사전 편찬 시 새로 추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13)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2』, p. 567.

14) 최동진, “비사회주의적현상은 반국가적행위,” 『정치법률연구』, 제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 국내 입수자료인 2003년의 『정치법률연구』는 워드파일형태로 존재하여 정확한 해당 페이지를 확인할 수 없다.

상의 발현이고, 사회주의사회 내부에 위협이 되는 이색적이고 퇴폐적인 생활풍조이며, 사회주의적 도덕과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이는 자본주의문화 유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북한주민의 사회적 일탈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관료의 전횡과 부정축재행위 등 부정부패행위 역시 비사회주의적 행위이다. 여기서 비사회주의적 행위와 달리 반사회주의적 행위는 사회주의를 의식적으로 반대하는 행위로 체제전복과 같은 반국가적 행위이다. 이와 같은 개념 구분을 볼 때, 비사회주의적 행위가 형법상 반국가범죄가 아닌 일반범죄로 규정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결론적으로 북한구성원들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는 사회주의의 규범 및 가치관에서 벗어난 행위, 즉 사회주의적 일탈행위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논문에서 명확히 해둘 북한당국이 규정하는 비사회주의적 행위는 ‘북한식 사회주의에 어긋나는 일탈행위’를 말한다.¹⁵⁾ 이는 북한 사회주의사회에서 구성원이 지켜야 할 “우리식 사회주의”의 사회규범과 가치에서 벗어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비사회주의적 행위는 이런 의미를 지닌다. 북한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비사회주의적 행위유형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북한사회에서 범죄통계는 내부문건에 해당하고 그 자체를 파악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일탈에 포함되는 비사회주의적 행위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2000년대 신설된 범죄규정 및 위법행위규정을 분석하여 비사회주의적 행위유형을 추출하고자 한다.

한편 갈등이론 관점에서 범죄개념은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에서 공적 권위기관에 해당하는 지배계급의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과 충돌하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범죄로 규정함으로써(defining) 생겨난다.¹⁶⁾ 이 논문의 ‘범죄규정화’개념은 이러한 관점을 빌려, “국가가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사회구성원의 일탈행위를 법적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로 한다.¹⁷⁾ 이는 곧 사회적 일탈행위에 대

15) 최대석 외 연구는 북한의 ‘비사회주의적 행위’ 개념을 ‘비사회주의적 요소’로 개념화하여 정의하고 있다. 비사회주의적 요소란, “사회구성원이 그들의 도덕, 규범, 법적 규정을 침해하는 모든 의식, 가치관, 행위의 총체”이다. 최대석 외, 『북한 내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확산 실태 및 북한주민 의식변화』, p. 10. 이 논문에서 비사회주의적 행위개념은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행위개념으로 치환한 것이다.

16) Quinney, *Criminology: Analysis and Critique of Crime in America*, 1975, p. 37.

17) 범죄규정화 개념에서 ‘규정(規定)하다’의 의미는,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하다.”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출처: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국가가 지배계급의 이익에 유리하도록 구성원의 행위를 ‘범죄행위’로 정하는 국가적 행위 자체를 지칭하는 ‘법적

한 법적 범죄정의(legal crime-definition)를 말한다.

이 논문은 북한의 “국가적 범죄개념”정의 조치인 입법적 조치를 범죄규정화라고 지칭한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범죄규정화 개념은 입법기술의 정적 측면보다는 입법 후 행사되는 법적 효력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동태적 의미를 내포한다. 북한사회 내 발생하는 일탈 가운데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기제인 범죄규정화는 일종의 ‘법의 행위(behavior of law)’에 해당한다.¹⁸⁾

Ⅲ. 북한의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범죄규정화의 특징과 의미

2004년 개정 북한형법상 새로 규정한 범죄유형 상당부분이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해당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북한당국이 사회주의체제를 위협하거나 체제질서를 위반하는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범죄로 ‘법적 규정화(legal definition)’한 결과였다. 2007년 제정된 형법부칙과 2012년 개정된 형법상 범죄규정은 2004년에 범죄로 규정한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또 다른 범죄유형이나 다른 행위들과 결합한 범죄유형으로 규정하거나 삭제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 시기 북한당국이 행한 범죄규정화는 국가의 ‘선택’과 ‘배제’라는 이중성을 띠었다. 북한당국의 범죄정의(crime-definition)는 사회적 현실과 조건에 따라 체제에 기여하거나 사회적 필요에 의해 범죄화한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비범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는 북한에서 법과 사회 또는 법과 행위가 상호작용을 반복하면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였다. 1990년대 사회변화로 발생한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2000년대 들어와 법규범(범죄규정, 위법행위규정)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북한당국의 대응방식이 범죄규정화를 진전시켰다. 하지만 구성원의 비사회주의적 행위 모두를 범죄화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사회주의 외피에 싸여있는 자본주의 요소 모두를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규정하여 범죄화하기에는 북한체제 자체가 ‘비시장적 사회주의체제’성격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북한의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범죄규정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구성원의 사회적 일탈행위를 법적으로

규정(legal definition)’의 의미로서 사용한다. 이는 법규정(規程, provision of law)과는 구별된 개념이다. 하지만 ‘범죄규정’은 이 논문 맥락상 중의적 의미를 가진다.

18) Donald J. Black, *The Behavior of Law* (New York: Academic Press, 1976).

범죄정의한 북한당국의 법적 조치가 어떤 특징과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지 해석하는 작업이다. 또한 2000년대 이후 활발히 추진된 범죄규정화를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작업이다. 새로 형성되거나 폐지된 범죄규정을 통해 북한사회의 변화를 읽어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하에서 범죄규정화의 특징과 의미를 세 가지 측면, 즉 사회주의구조 측면, 범죄행위자 측면, 범죄규정 유효성 측면에서 접근하여 설명한다.

1. 사회주의구조 측면

가. 사회주의구조 변화의 상관성

‘사회주의구조(체제)’라 함은 북한이 1970년 사회주의체제 완성을 공식 선언한 후 제정한 1972년 사회주의헌법상의 사회주의제도와 원칙을 말한다. 1972년 북한 사회주의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 공민의 권리·의무 등 네 영역에서 사회주의제도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체제는 사회주의헌법이 정한 제도와 원칙이라는 요소를 토대로 사회주의구조를 형성하였고, 사회변화에 따라 이를 변형하고 지속해왔다. 그런데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북한 사회주의구조에 변화가 일어났다. 1972년에 제시했던 사회주의제도와 원칙이 변화된 사실은 구성원의 행위통제수단인 형법상 범죄행위규정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하에서 1972년 사회주의헌법이 정하고 있는 사회주의제도와 원칙을 네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형법 및 행정처벌법상 범죄·위법행위규정에 나타난 사회주의구조 변화를 살펴본다.

첫 번째, 정치영역에서 1972년 사회주의헌법상 대표적인 사회주의제도와 원칙에는 국가 지도적 지침인 맑스-레닌주의를 적용한 주체사상, 노동자·농민·병사·근로인테리의 국가주권 원칙,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프롤레타리아독재 등이 있다. 2012년 개정헌법에는 국가지도지침에 ‘맑스-레닌주의’가 삭제되고 주체사상과 더불어 ‘선군사상’이 추가 규정되었다. 또한 국가주권에서 병사 대신 ‘군인’으로, 프롤레타리아독재 대신 ‘인민민주주의독재’로 개정되었다. 두 번째, 경제영역에서 1972년 사회주의헌법상 대표적인 사회주의제도와 원칙에는 생산수단의 국가·협동단체소유제도, 소비목적의 개인소유제도,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사회주의분배원칙, 비시장적 사회주의경제형태인 인민경제의 계획경제, 세금제도 폐지 원칙 등이 있다.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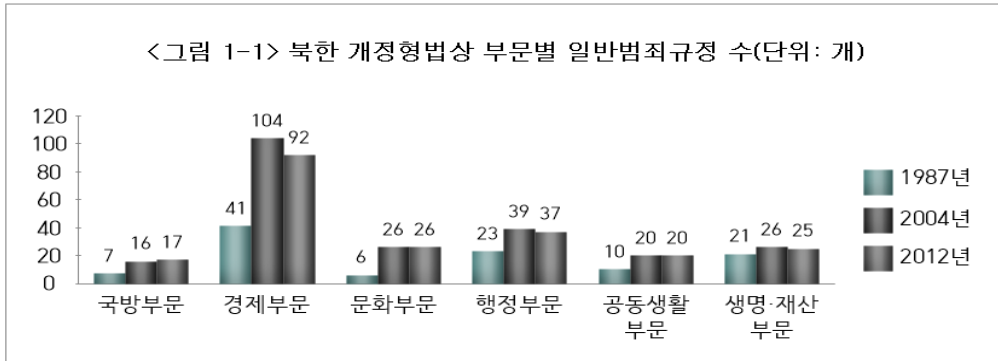
개정헌법에는 ‘무실업 원칙’과¹⁹⁾ 공장·기업소의 경영관리방법인 ‘독립채산제’가 신설되었다.²⁰⁾ 세 번째, 문화영역에서 1972년 사회주의헌법상 대표적인 사회주의제도와 원칙에는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 및 북고주의적 경향 반대,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 사회주의생활양식 확립, 공산주의 인간형 후대양성 등이 있다. 2012년 개정헌법은 공산주의적 인간형 후대양성을 ‘주체형 인간 양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2009년 헌법개정시 수정되었다. 끝으로, 공민의 권리·의무 영역에서 1972년 사회주의헌법상 대표적인 사회주의제도와 원칙에는 집단주의 원칙, 가정공고화 원칙,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생활규범 준수원칙, 집단주의정신 발양 등이 있다. 이 원칙들은 2012년 개정헌법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북한헌법이 정하고 있는 각 영역의 사회주의제도와 원칙은 ‘비사회주의’판단 기준이 된다. 왜냐하면 사회주의헌법상 사회주의제도와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비사회주의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이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규정한 구성원의 일탈행위는 형법 및 행정처벌법상 범죄규정과 위법행위규정에서 나타난다. 범죄·위법행위규정에 나타난 비사회주의적 행위양상이 이 논문이 파악하는 비사회주의적 범죄규정의 특징이다. 또한 이는 북한 사회주의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하에서 헌법상 명시한 각 영역의 사회주의제도와 원칙에 반하는 비사회주의 행위유형이 형법과 행정처벌법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형법의 경우 북한이 간부용으로 발간한 1987년 제정 형법과 2004년 북한 최초로 발간한 대중용 법전에 수록된 개정 형법 및 2012년 발간한 제2판 법전에 수록된 개정 형법을 살펴본다. 행정처벌법의 경우 북한당국이 이를 법전에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국내 입수된 2004년 제정 행정처벌법과 2008년과 2011년 개정된 행정처벌법을 살펴본다. 비사회주의적 범죄·위법행위규정의 특징 분석에서는 2004년의 법규범 중심으로 다룰 것이다.

먼저 범죄규정을 살펴보면, 1987년 형법 제정 이후, 2004년과 2012년 개정헌법상 일반범죄규정 개수 변화는 국방, 경제, 문화, 행정, 사회(공동생활), 생명·재산 등 6개 침해부문별로 <그림 1-1>과 같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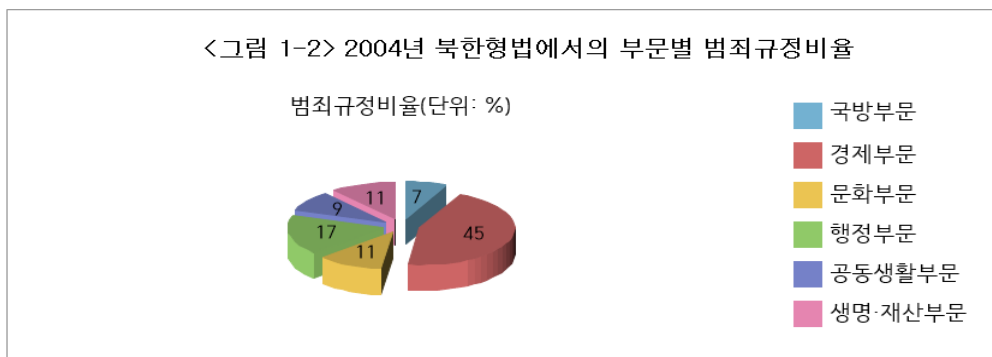
19) 1992년 개정헌법은 경제영역에서 ‘무실업 원칙’을 다음과 같이 추가 규정하였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노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의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제29조 제3장).” 2012년 개정헌법은 이러한 ‘무실업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0) 1998년 개정헌법은 경제영역에서 공장·기업소의 경영관리방법으로 ‘독립채산제’ 실시와 ‘원가, 가격, 수익성 등 경제적 공간 이용’ 등을 신설 규정하였다(제33조). 2012년 개정헌법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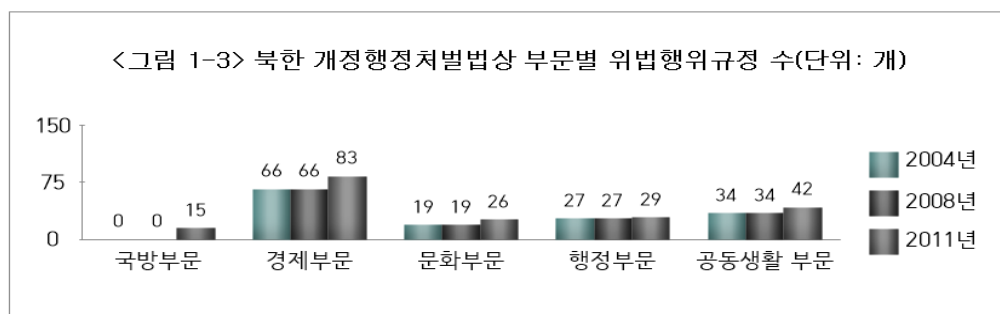


* 1987년 일반행정관리질서 부문에서 ‘국가·군사비밀누설죄(제115조)’는 국가비밀누설죄와 군사비밀누설죄로, 경비근무질서위반죄(제109조)는 행정경비근무질서위반죄와 군사경비근무질서위반죄로 각각 2개 규정으로 나누어 편의상 취급함. 북한 형법전 토대로 저자 작성.

위 그림에서 특히 경제부문에서의 일반범죄규정이 1987년 형법상 전체 106개 대비 41개 규정인데 반해, 2004년 개정형법상 전체 231개 대비 104개 규정임을 알 수 있다. 경제위기이후 경제부문에서 2.5배 이상의 범죄규정이 확대된 것이다.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2004년 북한형법상 6개 침해부문의 범죄규정비율을 도표화하면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를 보면, 2004년 개정형법상 범죄행위유형이 가장 많이 규정된 부문은 전체 대비 약 45%를 차지한 경제부문이다. 그 다음으로 행정부문 약 17%, 문화부문 약 11%, 생명·재산부문 약 11%, 공동생활부문 약 9%, 국방부문 약 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사회주의적 행위유형이 경제부문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행정처벌법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2004년 행정처벌법이 새로 제정된 이후, 2008년과 2011년 개정행정처벌법상 위법행위규정 개수 변화는 5개 침해부문인 국방, 경제, 문화, 행정, 공동생활 부문 등에서 <그림 1-3>과 같이 나타난다. 이러한 규정수의 변화 역시 비사회주의적 위법행위규정의 특징이 된다.



경제위기이후 제정된 2004년 행정처벌법은 경제부문에서 전체 146개 대비 66개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유형을 규정하였다.²¹⁾ 경제부문에 66개의 새로운 위법행위유형이 형성된 것이다. 2004년 행정처벌법이 국방부문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점과 생명·재산부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생활부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형법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경제위기이후 제정된 2004년 행정처벌법상 위법행위규정비율을 도표화한 <그림 1-4>에서 알 수 있듯, 비사회주의적 행위유형은 2004년 행정처벌법상 전체 대비 약 45%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부문의 위법행위규정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형법에서 보여준 양상과 달리 행정처벌법상 공동생활부문에서 약 23%, 행정부문에서 약 19%, 문화부문에서 1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의 생명·재산부문을 공동생활 부문에 함께 규정한 데 따른 결과이다. 북한은 2004년 주민들의 일상에 대한 행위통제수단으로 행정처벌법을 새로 만들어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형법상 범죄 외에 위법행위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21) 국방관리질서 부문은 2011년 개정행정처벌법에 신설된 부문이다. 사실상 행정처벌법 구성은 형법 구성과 유사하다. 다만, 국민의 인신·재산 부문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2004년 제정된 행정처벌법은 형법과 다르게 국민의 인신·재산관련 위법행위를 공동생활질서 부문에서 다루고 있다.

〈그림 1-4〉 2004년 북한행정처벌법상 부문별 위법행위규정 비율

위법행위규정 비율(단위: %)



경제부문에서 높은 범죄·위법행위규정비율이 나타난 점은 헌법이 명시한 사회주의경제원칙에 반하는 비사회주의 행위가 법 제·개정 당시 사회 내 만연하였다는 증거이며, 계획경제체제의 이완과 균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이하에서 행정처벌법이 형법과 유사한 비사회주의적 행위유형을 반영한 점을 고려하여 2004년 형법상 경제, 행정, 문화, 공동생활 부문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범죄규정 변화의 특징과 의미를 사회주의구조 측면에서 파악한다.

우선, ‘경제부문’의 상제 침해부문인 국가·사회협동단체소유 부문과 경제관리질서 부문에서 나타난 범죄규정이 북한 사회주의 경제구조 변화나 균열을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비사회주의 성격의 범죄유형이 이 두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말이다. 2004년 형법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다루는 국가·사회협동단체소유 부문에서 국가재산 절도, 탈취, 사기, 공갈, 횡령 등 ‘국가재산약탈범죄’의 구성요건을 보강하고 강력한 형벌을 규정하였다. 국가재산관련 범죄규정의 변화는 미공급시기인 ‘고난의 행군’기간 북한주민들이 생계 등을 이유로 국가재산 횡령,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데서 연유한다. 이 범죄의 형벌강화에서 알 수 있듯, 이런 비사회주의적 행위가 2000년대 들어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사회적 소유제도인 ‘국가적 소유제도의 와해’를 의미한다.

한편 2004년 형법은 경제관리질서 부문에서 경제부문이 규정한 104개 범죄규정 중 74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중 46개 규정이 신설규정이다. 이들 범죄규정 대부분은 식량난을 계기로 발생한 경제질서관련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해당한다. 이 부문에서 주목할 점은 ‘개인소유제’, ‘비시장적 계획경제 자원배분원칙’, ‘세금제도폐지 원칙’, ‘무실업 원칙’ 등에 반하는 범죄유형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국가납부금미납

죄, 개인상행위죄, 법인가장 경제거래죄, 거간죄, 고리대죄, 노동력착취죄, 인민경제 미달죄, 국가소유살림집 불법양도죄, 밀주죄 등이 그 대표적인 유형들이다. 이들 범죄유형에서 확인할 수 있듯, 북한주민들만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범하는 것은 아니었다. 납부금 등의 세금징수와 개인상행위의 국가승인을 통한 시장료징수는 이미 북한 당국 자신도 사회주의 경제체제원칙에서 벗어난 행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이다. 사회주의체제 근간인 ‘사적 소유제도의 폐지’가 시장에서 개인상거래(상품·화폐의 교환관계)와 임금노동자를 개인적으로 고용(노동력의 상품화)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무너졌다고 하겠다. 고전 사회주의체제에서 개인 노동력의 상품화는 착취행위이다. 2012년 개정형법상 노동력의 개인고용을 허용하는 노력착취죄 폐지는 북한 사회주의체제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과 같다. 경제관리부문의 법인가장 경제거래죄에서 알 수 있듯, 부를 축적한 거대상인이 기관이나 기업소 등의 명의를 빌려 경제거래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개인재산부문이 확장되는 대신 국가소유인 기관이나 기업소의 경제거래가 줄어들어 국가재산부문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형식상 국가소유인 기관, 기업소라도 실질상 개인이 소유한 것이나 다름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2004년 형법상 경제질서관련 범죄규정들은 시장활성화로 개인의 재산축적이 가능해지면서 사적 소유부문이 확대되는 반면 국가재산부문이 축소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형법상 이들 범죄규정형성이 의미하는 바는 ‘비시장적 사회주의체제’의 균열이다.

2004년 형법상 경제부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행정부문’의 범죄규정은 관료의 부정부패행위유형을 보여준다. 이 부문에서 증명서매매죄, 관리일군 아닌자의 뇌물죄, 물질적 부담을 시킨 죄 등의 범죄규정은 북한에서 식량난이후 심화된 관료 부정부패관련 비사회주의 행위유형을 나타낸다. 특히 시장에서 불법 장사활동 봐주기의 대가성 뇌물제공이나 관료의 대가성 증명서발급 등은 이미 북한사회 만연한 현상이다. 이 또한 북한 사회주의체제상 행정부문의 균열양상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체제의 균열은 형법상 ‘문화부문’의 범죄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화부문의 범죄규정은 북한주민의 의식과 문화가 식량난이후 어떠한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특징을 가진다. 2004년 형법상 신설된 범죄규정 중 퇴폐적 문화반입·유포죄, 퇴폐적 행위를 한 죄, 적대방송청취관련 죄 등은 자본주의 사상문화 침투 반대를 규정한 헌법상 문화영역의 사회주의원칙에 반하는 범죄유형이다. 또한 후비양성부정행위죄와 체육선수부당선발죄는 헌법상 주체형 인간 양성

원칙에 반한다. 이 부문에서 2004년 형법상 마약밀수·밀매죄에 대해 형벌이 강화된 이후 2012년 형법에서도 마약밀수·밀매죄 가중처벌로 사형적용이 추가된 점에서 북한 사회 내 마약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북한주민들의 사상의식이 해이해진 상태를 나타낸다. 이렇듯 문화부문의 범죄규정은 헌법이 정한 사회주의사상·문화영역의 사회주의제도와 원칙에도 균열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4년 형법상 ‘공동생활부문’의 패싸움죄, 매음죄, 음탕한 행위죄, 미신행위죄, 비법혼인죄 등은 헌법상 국민의 권리·의무 영역에서 사회주의원칙인 집단주의 원칙, 사회주의생활규범 준수 원칙, 가정공고화 원칙에 반하는 범죄규정들이다. 특히 매음죄, 음탕한 행위죄, 비법혼인죄 등의 범죄규정 형성은 북한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성의식을 포함한 성풍속문화 및 가정관과 결혼관 등의 변화를 보여주는 예이다. 이렇듯 북한 헌법이 명시한 사회주의제도와 원칙은 1990년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를 겪으면서 구성원들의 실천적 실재로서가 아닌 헌법상 선언적 실재로만 남아 있다.

결국 북한에서 범죄규정화는 사회주의체제 균열의 한 표현에 불과하다. 이처럼 범죄규정의 변화는 북한체제가 사회주의체제 원칙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음을 보여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나. 체제균열의 핵심공간으로서의 시장

2000년대 북한에서 형법과 행정처벌법의 변화는 곧 범죄규정화를 뜻한다. 범죄규정화는 특히 ‘사회주의경제질서’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일어났다. 이는 2004년 새로 형성된 범죄·위법행위규정 다수가 ‘경제부문’에 해당하는 점에서 확인하였다. 앞의 <그림 1-2>와 <그림 1-4>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체 부문 중 약 45% 이상의 범죄·위법행위규정이 경제부문에 해당하였다. 이는 범죄규정화의 진전이 북한 내 ‘시장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2004년에 각각 개정된 형법과 제정된 행정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위법행위유형 상당수가 ‘시장’과 연계된 행위유형이었다. 이러한 법적 현상은 ‘시장’과 연계해서 발생하는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범죄·위법행위규정화한 데 따른 결과이다. 시장 확대가 비사회주의적 행위 양산을 촉진시켰고 결국 법적 통제수단인 범죄규정을 확대시켰다는 말이다. 결국 북한당국은 범죄규정화를 시장 규제(단속)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2003년 시장공식화 이후 2004년 비사회주의 행위에 대한 규범적 통제강화는 시장활동의 법적 제약이었다. 이는 시장활동의

촉진과 제약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이었다. 그 결과 시장과 연계한 비사회주의적 범죄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판단은 두 가지 면에서 증명이 가능하다. 첫째, 2004년 형법상 시장연계성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범죄로 편입시켰다가 2012년 형법에서 배제한 범죄규정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둘째, 2004년 범죄규정 확대이후 비사회주의적 범죄를 통제하고자 파행적이고 공포에 가까운 강력한 형벌(사형이나 무기노동교화형)을 정한 2007년의 형법부칙제정이 이를 증명한다. 형법부칙상 일반범죄 가중처벌규정은 기존 범죄규정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시장연계성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하였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2004년 형법상 경제부문의 범죄규정 가운데에서 시장과 연계성이 강한 범죄유형을 추출하였다. 물론 시장연계성 범죄규정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부문은 (사회주의)경제부문 중 경제질서관련 부문이다. 경제질서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2004년에 신설한 범죄유형과 2012년에 폐지하거나 신설한 범죄유형을 <표 1-2>에 시장연계성 범죄유형으로 구성하였다.

〈표 1-2〉 북한형법상 시장연계성 범죄유형 구성

경제질서	2004년 시장연계성 범죄유형	2012년 시장연계성 범죄유형
화폐관련 (세금 포함)	무현금결제수단불법이용죄, 내화반출죄, 외화관리질서위반죄, 외화이용 설비물 자매매죄, 탈세죄, 국가납부금미납죄, 불법외화벌이죄, 불법외화원천동원죄	내화반출죄(폐지), 불법외화벌이죄(폐지), 화폐교환질서위반죄(신설)
상거래관련 (경제활동)	개인상행위죄, 기관·기업소·단체상행위죄, 암거래죄(폐지), 법인행세죄, 거간죄, 상표권침해죄, 귀금속·유색금속밀매죄, 인수품·수매품처분죄, 생산제품불법처분죄, 개인밀주죄, 기관·기업소·단체밀주죄, 가격사업질서위반죄, 수출입질서위반죄	인수품·수매품처분죄(폐지), 생산제품불법처분죄(폐지), 암거래죄(부활), 개인상행위죄(폐지), 불법영업죄(신설), 기관·기업소·단체상행위죄(폐지), 무역·외화벌이기관·단체상거래죄(신설)
대부관련	고리대죄	은행대부질서위반죄(신설)
노동관련	노력착취죄	노력착취죄(폐지)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형법상 경제질서관련 부문에서 추출한 시장연계성 범죄유형 각각은 ‘이윤추구 동기(profit motive)’라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시장활성화가 사적 소유 욕구 현상을 유발하였고, 이는 시장과 연계한 범죄규정 형성을 촉진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위의 표에서 시장과 관련하여 범죄규정의 변화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범죄유형은 개인상행위죄, 암거래죄, 노력착취죄이다.

개인상행위죄(개인의 상적 행위죄)는 2003년 종합시장 허용이후 새로 규정한 범죄유형이다. 북한당국은 개인상행위죄를 새로 규정하면서 암거래죄는 폐지하였다. 개인상거래가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국가승인을 받은 개인의 경우 매대를 이용한 장사활동이 가능하였다. ‘승인’이라는 조건은 국가의 지대(rent) 추구의 다른 이름이었다. 개인 장사활동은 시장 안에서 ‘시장료’와 수익금 일부를 납부하는 전제에서 가능하였다. 만약 시장 안에서 장사를 하고도 ‘시장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개인상행위죄로 처벌하였고, 시장 밖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는 암거래, 되거리라고 하여 개인상행위죄로 처벌하였다.²²⁾ 그런데 이러한 개인상행위죄를 2012년 형법에서 폐지하였다. 대신 상거래 행위를 포함하는 ‘불법영업죄(비법적인 영업죄)’를 신설한 것이다.²³⁾ 국가승인 없는 개인상행위는 물론이고 개인서비스업도 이 범죄규정에 해당한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영업행위(식당, 여관, 편의봉사업인 각종 수리소, 목욕탕, 이발소, 미장원, 노래방, 당구장 등)도 포함시킨 것이다.²⁴⁾ 이는 시장변화에 따른 비사회주의적 행위발생을 기존 범죄규정으로 통제할 수 없었던 점과 국가승인 밖의 경제활동 단속을 통해 국가세수에 제약이 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2012년 형법에서 ‘암거래죄’를 부활시켰다. 이는 ‘대량 이득’의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는 불법영업죄에 해당하지 않는 시장 밖의 불법 소상인 통제 목적에서 부활한 것으로 해석된다.

2004년 형법상 노동력착취죄(로력착취죄) 역시 시장변화를 반영한 범죄규정이다.²⁵⁾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개인의 노동력을 상품화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22) 2004년 형법상 ‘개인의 상적 행위죄(제110조)’ 구성요건은 “비법적으로 개인이 상적행위를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개인상행위죄와 관련하여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는 형법상 개인상행위죄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평양: 인민보안성출판사, 2009).

(정황 114)의 (해답) 공화국형법 제110조에는 **법적으로 팔지 못하게 된 물건이나 시장밖에서 해당한 리익금을 바치지 않고 암거래, 되거리하였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물자 또는 자금을 류용 또는 략취하여 팔아 대량의 리득을 얻었을 때 **개인의 상적행위로 규정하고** 2년이하의 노동단련형으로부터 정상에 따라 3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게 되어있다. …… 비록 시장안이라 하더라도 **시장료를 물지 않고 장사하여 대량의 리득을 보았을 때**에도 개인의 상적행위죄로 된다.

23) 2012년 형법상 ‘비법적인 영업죄(제114조)’ 구성요건은 “개인이 국가기관의 승인없이 영업활동을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24)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 (파주: 한울, 2010), p. 288.

25) 2004년 형법상 ‘로력착취죄(제119조)’ 구성요건은 “비법적으로 돈 또는 물건을 주고 개인의 일을 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시장활성화가 노동력의 사적 고용을 사회적으로 필요하게 만들었다. ‘8·3 노동자’를 비롯한 가정주부, 무직자들이 사적 고용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법적 현상은 이미 사회경제적으로 임금노동자의 필요를 통제할 만한 다른 명분이 북한당국으로서도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노력착취죄의 폐지는 북한에서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활성화의 수혜자가 북한당국인 만큼 시장활성화의 당사자들의 사회경제적 필요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듯 시장연계성 범죄규정의 변화는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현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사실 시장연계성 범죄규정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이유는 북한당국의 시장 허용과 통제라는 이중성에서 비롯된다. 시장 허용으로 각종 비사회주의적 일탈행위를 양산시킨 예는 2007년 형법부칙상 일반범죄 가중처벌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형법부칙상 시장연계성 범죄규정만 추출하여 <표 1-3>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1-3〉 북한형법부칙상 시장연계성 범죄유형 재구성

규율 부문		2007년 형법부칙상 시장연계성 범죄유형과 형벌	2012년 개정형법
경제	경제관리	◦ 극히 무거운 형태의 화폐위조죄: 사형적용 ◦ 극히 무거운 형태의 귀금속·유색금속 밀매매죄: 사형적용	반영 ×
	국토관리	◦ 정상인 무거운 국가자원밀수죄: 사형적용	반영 ×
문화		◦ 극히 무거운 형태의 마약밀매매죄: 사형적용	반영 ○
공동생활 (경제관리 중첩)		◦ (식당이나 여관 운영 중 성매매조직) 불법영업죄: 사형적용	반영 ○

화폐위조죄, 귀금속·유색금속밀매매죄, 마약밀매매죄는 2004년 형법상 비사회주의적 범죄규정이다. 이 중 마약밀매매죄의 경우 2004년 형법은 최고가중처벌에 사형적용을 두지 않았지만, 2012년 형법에서 가중사유와 함께 사형적용을 추가하였다. 불법영업죄의 경우 2012년 형법에서 신설하였다. 하지만 ‘성매매조직의 영업’은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북한당국은 2007년 형법의 특별법인 형법부칙을 제정하였다. 이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23개 일반범죄 가중처벌규정 중 시장연계성 범죄규정은 <표 1-3>에서 보듯 5개 규정이다. 시장연계성이 강한 일반범죄 가중처벌규정의 이례적인 형성은 2007년 북한사회 내 발생한 “돈벌이 폐해사건”을 계기로 시작한 시장단속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²⁶⁾ 시장을 “비사회주의의 서식장”과 “돈벌이 장소”로 규정하고 시장연계성이 강한 화폐위조, 귀금속 등 밀매매, 마약밀매매, 국가자원밀수, 성매매조

직의 영업 등의 범죄를 중형(사형이나 무기노동교화형)으로 처벌하는 가중처벌규정을 별도로 제정한 것이다. 이는 시장이라는 공간이 체제 균열의 핵심 공간으로 북한 당국의 강한 통제공간임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이미 범죄로 규정한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형법상 범죄규정으로 통제하는 대신 또 다른 법률형식을 만들어 범죄규정의 변형을 기한 것은 구성원의 행위통제방식에 있어 법적 안정성의 훼손이며 통제의 비효과성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파행적 통제는 음성적 형태의 일탈과 범죄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살펴본바, 북한 사회주의경제체제에 반하는 범죄규정의 역동적 현상은 시장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반대로 시장변화가 범죄규정의 변화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개인의 상행위나 노동력의 개인고용과 같은 행위가 범죄화되었다가 비범죄화되는 현상은 북한의 경제구조가 계획경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북한체제는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라는 형식에 자본주의시장경제적 요소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체제인 것이다. 결국 북한이 비시장적 사회주의를 포기한 상황이 구성원을 통제하는 범죄규정에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2. 범죄행위자 측면: 계층별 범죄유형

범죄규정 분석결과, 범죄규정화는 범죄행위자 측면에서 계층별 범죄유형 특성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범죄행위자 측면에서 나타난 ‘계층별 특성’이라 함은 각각의 비사회주의적 범죄규정 속에 나타나거나 파악되는 범죄행위의 주체를 유형화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난 성질을 말한다. 계층별 특성을 기준으로 범죄규정 속에 나타난 범죄행위자를 간부계층, 전문지식인계층, 신흥상인계층, 노동계층 등 네 가지 계층으

26) 북한당국이 본격적인 시장통제를 강화한 계기가 되었던 세 가지 사건이 있다. 이는 2007년에 발생한 “돈벌이의 폐해”로 부각된 사건들이다. 첫 번째 사건은 2007년 1월 김정일이 원광석 등이 중국으로 녹거리(싼값)로 밀매된 반면, 중국의 싼 소비품이 비싼 값으로 북한 내 대량 유입되어 팔리는 과정에서 나타난 권력층 내 이권결탁 문제와 국가이익 무시 등을 지적하고 “원광석 등 원자재 밀수출 단속” 통제를 지시한 사건이다. 두 번째 사건은 2007년 7월 함경북도 연사군에서 “혁명전적지의 구호나무” 등을 벌목하여 중국에 밀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최대 비사회주의 범죄”사건으로 간주하여 관련자들을 공개처형한 사건이다. 세 번째 사건은 2007년 12월 청진시 수남시장의 시장관리소장이 시장사용료인 장세로 거둬들인 하루 약 700만원 중 50만원씩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여, 시장관리소장을 공개재판으로 10년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관련 간부들을 해임한 사건이다.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p. 285-289.

로 나눌 수 있다.²⁷⁾ 각각의 계층별 범죄유형을 범죄규정화 특징 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간부계층의 범죄유형

북한사회에서 지배계층인 간부의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북한사회에서 간부는, “당 및 국가기관, 사회단체 등의 일정한 책임적지위에서 사업하는 핵심일군”을 말하며, “당의 골간력량이며 당정책을 조직집행하는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대중의 교양자”의 역할을 담당한다.²⁸⁾ 북한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간부는 ‘상층부’에 속하거나 또는 ‘지휘권’이 있거나 ‘당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기관·기업소·단체 등에서 지배인, 당비서, 인민보안원, 국가안전보위원 등이 간부에 속한다.²⁹⁾ 간부는 직위 고하에 따라 다시 고위간부, 중간간부, 하위간부로 나눌 수 있다.³⁰⁾

간부의 종류가 어떠한 간에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위기와 체제위기 속에서 간부계층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부정부패를 자행하였다. 간부의 부정부패는 “자신이 가진 관료적 권한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 등을 비공식적으로 수수, 횡령, 절취, 약탈, 착복하는 행위”로 나타났다.³¹⁾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체제에서 일어나는 지배계층이나 간부의 일탈과 범죄를 “레드-칼라 범죄(Red-Collar Crime)”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Łoś는 사회주의체제에서 당간부가 저지르는 범죄유형에 경제적 부패든

27) 199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북한은 시장을 중심으로 계층상의 구조변동이 일어났다. 시장 적응 능력이 있는 노동계층의 일부는 신흥상인계층으로 상향이동을, 시장상인들과 결탁한 정치적 권력 계층은 경제적 부의 축적과 시장 기생(parasitism)을, 시장부적응 계층인 지식인계층은 하향 이동 등 직업과 관련하여 구조변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북한의 구성원들을 생산적·사회적 관계 속에서 직업과 사회정치적 신분(지위)을 기준으로 “노동계층, 지식인 계층, 권력엘리트계층, 신흥상인계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p. 14; 서재진 외, 『사회주의 지배엘리트와 체제변화: 북한과 러시아·중국·동독의 비교분석』 (서울: 생각의 나무, 1999), p. 167. 범죄규정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이러한 계층구분 아이디어를 차용하기로 한다.

28)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64.

29)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서울: 통일연구원, 2010), p. 126.

30) 간부를 지위에 따라 고위직, 중간직, 하위직으로 나눌 수 있고, 역할 면에서 간부를 “정치인, 관료, 지식인, 전문가집단” 등 다양한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서재진 외, 『사회주의 지배엘리트와 체제변화: 북한과 러시아·중국·동독의 비교분석』, 1999, pp. 167 & 189.

31)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2010, p. 201.

정치적 부패는 제한이 없다고 한다.³²⁾ 북한사회에서 권력을 이용한 당관료 등의 일탈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Merton의 말을 빌리면, 권력형 일탈행위나 범죄는 기본적으로 행위를 드러내는 사람들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부과된 규범적 의무(normative obligations)를 중대하게 벗어난 행위이다.³³⁾

범죄규정화 속에 나타나는 간부계층은 다시 군간부, 당간부, 관리일군, 법일군(인민보안원, 국가안전보위원, 검찰 등), 기관·기업소·단체의 책임일군(지배인) 등으로 나타난다. 2004년 형법상 간부계층의 범죄유형은 형벌을 강화한 기존 범죄유형이거나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나타난다.

군간부의 경우 국방부문상 새로 규정한 군수품생산용자재 및 군수품 유용죄와 군수품매매죄에서 그 범죄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식량난이후 발생한 군간부의 비사회주의적 행위의 일례로, 다량의 군수품인 군복류나 배급되는 쌀과 부식물 등의 군량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생겨났다.³⁴⁾ 이러한 군관련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범죄규정화한 것이 군수품유용·매매죄이다.

한편 당간부든 관리일군이든 기관·기업소·단체의 책임일군이든 간에 이들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는 2004년 형법상 국가·사회협동단체소유 부문에서 국가재산절도, 사기, 공갈, 횡령 등의 범죄규정에서 드러난다. 경제질서부문에서는 기관·기업소·단체 책임일군의 불법 상적 행위조직죄, 기관·기업소·단체의 기계설비 및 운수수단을 이용한 작업이나 수송의 대가로 돈이나 물건을 받은 죄, 화폐를 비롯한 국가재산을 불법적으로 빌리거나 빌려준 죄, 인수품·수매품처분죄 등의 범죄규정에서 나타난다. 2012년 형법에서 경제질서부문에 은행일군의 대부질서위반죄와 무역기관·외화별이기관·단체의 상적 행위죄가 신설되었다. 이 또한 간부의 비사회주의적 범죄행위이다. 2004년 형법은 노동행정질서부문에 노동행정일군(지배인)의 노력배치·조절·동원을 무책임하게 한 죄를 새로 규정하였는데, 여기서 지배인의 비사회주의적 행위가 드러난다.

특히 간부계층 중 관리일군과 법일군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는 일반행정질서부문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행위는 2004년 형법상 증명서매매죄와 뇌물죄 범죄

32) Maria Łoś, *COMMUNIST IDEOLOGY, LAW AND CRIME: A COMPARATIVE VIEW OF THE USSR AND POLAND*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8), p. 147.

33) Robert K. Merton and Robert A. Nisbet(eds.)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3rd ed.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1), p. 824.

34) 박형중 외, 『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 26.

규정에서, 2012년 형법상 물질적 부담을 시킨 죄와 불법협조죄 범죄규정에서 나타난다. 한편 생명·재산부문과 관련해서 2004년 형법은 개인재산공갈죄를, 2012년 형법은 개인재산대량약취죄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간부계층이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불법재산을 축적한 개인을 대상으로 공갈이나 약취행위를 자행하는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경제위기 및 체제위기시 지배계층인 간부계층 가운데 위기극복을 위한 개혁을 모색하기 보다는 느슨해진 국가통제의 틈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이 다수였다.³⁵⁾

이렇듯, 범죄규정 속에 나타난 간부계층의 범죄유형은 지위(신분)나 권한을 이용한 ‘권력형 범죄유형’의 특성을 지닌다. 간부계층과 관련한 범죄규정화의 진전은 북한 사회 내 관료적 지위를 이용해서 발생한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법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이지만, 사회 곳곳에 만연된 관료부패는 근절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전문지식인계층의 범죄유형

북한에서 ‘지식인’은 ‘인테리’라고 부른다. 인테리는 “일정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사회계층”을 말하며, “혁명의 주체의 한 구성부분이며 혁명투쟁과 사회발전의 추동력”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³⁶⁾ 북한의 지식인계층은 직업적으로 사무직이나 연구·기술직 등의 전문직에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교원, 의사, 작가, 과학자, 기술자 등이 대표적인 전문지식인계층에 속한다. 북한의 지식인계층은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지식인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당정책의 집행 및 체제 유지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들 역시 식량난 이전 국가배급제에 의존하여 살아왔고, 배급과 사회보장 측면에서 노동자·농민계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려왔다.³⁷⁾ 하지만 1990년대 중반이후 극심한 식량난으로 국가가 배급을 중단하면서 지식인계층도 일반 주민과 같이 생계유지를 위해 시장과 연계한 부업활동을 하거나 사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 등을 판매하였다. 대부분은 노동시간에 매여 일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노동시간 일부를 이용해 생계활동을

35) 서재진 외, 『사회주의 지배엘리트와 체제변화: 북한과 러시아·중국·동독의 비교분석』, 1999, pp. 195-197.

36)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2』, 1992, p. 1708.

37)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2008, p. 151.

하였다.³⁸⁾ 일부 지식인들은 직장을 옮기거나 직업을 바꾸어 사회적 체신이나 노동 시간에 신경 쓰지 않고 부담 없이 장사활동을 하였다.³⁹⁾

지식인계층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는 2004년 형법에서 신설한 범죄규정 중 경제부문에서는 개인상행위죄,⁴⁰⁾ 문화부문에서는 후비양성사업을 부당하게 한 죄, 행정부문에서는 출판질서위반죄 등의 범죄규정에서 나타난다. 또한 지식인계층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는 2004년 행정처벌법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문화부문에서 다루는 (시험성적 부당평가 등) 교육질서위반행위, (대가성) 가정교사행위, 학교추천·학생모집질서위반행위, 자격·급수수여질서위반행위, 출판질서위반행위, 불법치료행위 등의 위법행위규정에서 드러난다. 2011년에 개정된 행정처벌법은 특히 가정교사행위에서 ‘전업’으로 대가성 개인교습을 하는 자를 기존 위법행위구성요건에 추가 규정하였다. 전문지식인계층 가운데 국가가 정해주는 직업을 버리고 개인의 부촉적 등을 위해 개인교습을 전업으로 바꾸는 현상이 이러한 위법행위규정 형성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렇듯 범죄규정 속에 나타난 전문지식인계층의 범죄유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자격을 활용한 전문성을 띤 범죄유형으로, ‘명예형(자격형) 범죄유형’의 특성을 지닌다. 전문지식인계층의 범죄행위는 전문적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특히 행정처벌법상 교육질서위반행위, 학교추천·학생모집질서위반행위, 자격·급수수여질서위반행위, 출판질서위반행위 등에 강직이나 해임 등의 행정처벌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들 행위가 명예형 범죄(위법행위)유형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사실상 범죄·위법행위규정에서 파악한 지식인계층의 범죄현상이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사회 지식인들이 과거와 달리 당정책과 체제에 기여하는 역할 수행만 고집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신흥상인계층의 범죄유형

신흥상인계층이 저지를 수 있는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범죄규정에서 살펴보기에 앞서 북한사회에서 ‘신흥상인계층’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경제

38) 이교덕 외,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94.

39) 조정아 외, 위의 책, pp. 151-152.

40) ‘개인상행위’는 전문지식인계층을 비롯해 모든 계층에서 저지를 수 있는 비사회주의적 행위이다.

위기이후 시장 확산과정에서 북한당국이 사적 경제활동을 묵인하면서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가진 신흥자본세력이 생겨났다. 2003년 시장을 공식 허용한 후 이러한 세력은 거대상인들로 커갔다. 이들은 시장에서 잘 팔리는 품목거래로 거대상인이 되기도 하였지만 주로 외화별이사업을 통해 거대상인으로 성장했다. 이들이 주로 한 외화별이사업은 중국으로 승용차를 되거리하거나, 골동품이나 빙두(마약)를 밀무역하는 사업형태였다.⁴¹⁾ 이들 거대상인은 일명 “돈주”라고 부른다.

신흥상인계층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는 2004년 형법에서 신설한 범죄규정 중 경제부문에서 다루는 개인상행위죄, 법인가장 경제거래죄(법인가장행세죄), 거간죄, 고리대죄, 노력착취죄, 불법외화별이죄, 불법외화원천동원죄 등의 범죄규정에서 나타난다. 문화부문에서는 역사유물밀수·밀매죄와 마약밀수·밀매죄의 범죄규정에서 나타난다. 행정부문에서는 증명서매매죄와 (관리일군 아닌 자의) 뇌물죄의 범죄규정에서 나타난다. 공동생활부문에서는 (이권다툼으로 인한) 패싸움죄 범죄규정에서 나타난다.

한편 2012년 형법상 경제부문에서 신흥상인계층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는 화폐교환질서위반죄, 암거래죄, 불법영업죄 등의 범죄규정에서 나타난다. 신흥상인계층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는 형법상 범죄규정 외에도 2004년 행정처벌법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경제부문에서 외화관리질서위반행위, 외화별이질서위반행위(되거리, 거간 등의 외화별이 또는 불법적 외화원천동원) 등의 위법행위규정에서 나타난다. 공동생활부문에서는 불법고용행위, 암거래행위, 고리대행위, 거간행위, 도박행위 등의 위법행위규정에서 나타난다.

이렇듯 범죄규정 속에 나타난 신흥상인계층의 범죄유형은 경제활동을 통한 이윤이나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한 ‘상업형 범죄유형’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런 범죄유형은 북한사회 내 사적 소유욕구가 증대되면서 상인계층은 물론이고 일반 주민들도 행하는 비사회주의적 행위유형이다. 다만, 이러한 범죄유형을 정한 범죄규정 속에서 확인할 수 있듯, ‘대량 이득’행위를 더 엄히 처벌하는 점에서 거대상인인 신흥상인계층에 대한 북한당국의 우려와 경계를 읽을 수 있다. 상인계층의 범죄는 보통 간부계층과 결탁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북한사회에서 범죄규정으로 쉽게 통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1)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2008, pp. 214-215.

라. 노동계층의 범죄유형

여기서 언급하는 노동계층은 ‘주변노동자계층’으로 한정한다. “주변노동”의 의미는 최저생계수준을 유지할 정도의 보상만 받는 노동, 공식적인 경제활동통계에 들어가지 않는 노동, 일의 내용면에서 사회규범을 위배하는 노동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⁴²⁾ 이는 비공식적인 노동이자 주변직업에 해당한다. 식량난이후 북한사회에서 새롭게 생겨난 “주변노동”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시장 규찰대, 소토지 생산자, 소작인, 가정부, 페인트공, 대리동원 노동, 개인교사, 샅군, 외화벌이 고용원” 등이 있다. 또한 여기에 8·3 작업반원과 가내반원이 포함되나 이들은 1984년 ‘8·3 인민소비품창조운동’을 시작하면서 나타났다.⁴³⁾ 북한에서 “주변노동”은 대부분 사회적 일탈행위인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해당한다.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로 에너지, 원·부자재 부족사태가 발생하여 공장가동을 중단하면서 노동자들은 장사나 가내부업 또는 각종 일일노동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기 시작했다. 식량구입을 위해 장사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은 직장에 ‘8·3노동자’로 등록하고 부업으로 번 돈 일부(‘8·3돈’)를 지배인 등에게 내고 출근을 안 하는 대신 다른 생업에 뛰어들었다.⁴⁴⁾

북한사회에서 발생한 노동계층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는 2004년 형법에서 신설한 범죄규정 중 경제부문에서는 개인의 상적행위죄, 노력착취죄, 금채취·제련죄(2012년 형법상 개인의 광석채취·제련죄), 노력배치·조절·동원을 무책임하게 한 죄 등의 범죄규정에서 나타난다. 이들 범죄규정 속에서 노동계층은 행위주체 또는 행위객체로 나타난다. 노력착취죄, 금채취·제련죄 같은 경우 고용된 노동계층은 범죄행위의 주체라기보다 객체인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노동계층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는 2004년 행정처벌법상 위법행위규정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경제부문에서 부업·가내

42) 조정아 외, 위의 책, p. 132.

43) 박영자,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 북한의 ‘주변노동’과 ‘노동시장’: 노동일상의 상황과 구조,”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3호 (2009), p. 155.

44) 이교덕 외,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2009, p. 94.

‘8·3노동자’란, 노동자 자신이 속해 있는 직장에 매월 일정금액을 제공하는 대신에 매월 직장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자유로이 장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8·3돈’은 8·3노동자가 매월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대가로 제공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8·3노동자’나 ‘8·3돈’이라는 말은 1984년 8월 3일 김정일이 주민들의 생필품부족을 메꾸기 위해 지시·장려했던 ‘8·3 인민소비품창조운동’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 2010, p. 251; 김석향, “1990년 이후 북한주민의 소비생활에 나타나는 추세 현상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1호 (2012), p. 210.

편의봉사질서위반행위, 불법상행위(비법적인 상적 행위), 무직건달행위, 가정교사행위 등의 위법행위규정에서 나타난다. 공동생활부문에서는 불법고용행위(비법적인 고용행위), 술, 약품, 음식물의 불법생산·판매행위 등의 위법행위규정에서 나타난다. 2005년 인민보안단속법상 위법행위규정에도 노동계층의 비사회주의적 행위유형이 나타난다. 미승인 음식물매대이용 돈벌이행위, 노력동원질서위반행위, 시장 외에서 물건매매행위 등이 그것들이다.

이렇듯 범죄규정 속에 나타난 노동계층의 범죄유형은 생존욕구를 충족하고자 저지른 ‘생계형 범죄유형’ 또는 ‘생활형 범죄유형’의 특성을 나타낸다. 북한이 국가배급제와 같은 물질적 통제체제를 더 이상 정상화할 수 없는 경제구조 하에 머물러 있는 이상 이러한 형태의 노동계층 범죄는 북한사회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범죄규정의 유효성 측면: 통제의 비효과성

이 논문에서 ‘범죄규정의 유효성’이라 함은 비사회주의적 범죄규정이 사회적 조건과 현실에 따라 국가의 법적 규정에 의해 형성되었다가 폐지될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다시 말해 범죄규정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북한당국이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사회주의체제 원칙을 기준삼아 범죄화한 규정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필요와 여건상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밖에 없을 때 그 범죄규정은 실효성을 잃는다. 곧 통제능력을 상실한다. 이러한 범죄규정으로는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통제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주민통제를 할 수 없다. 북한의 범죄규정은 그 성격상 사회주의제도와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구성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성원의 행위를 강압적 물리력을 동원하여 통제할 근거가 된다. 범죄규정에 의한 통제로 보호받는 이익보다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억압되는 이익이 더 크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체제에 기능’할 수 있는 범죄규정을 만들고 구성요건의 확장과 강력한 형벌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규정의 변화를 모색함으로써 사회주의체제 질서를 위협하는 구성원들의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응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시장활성화가 북한당국에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시장연계성 범죄 일부를 다시 범죄규정에서 배제하는 법적 파행행위는 편파적이면서 다분히 정치적 성격을 띤다. 이러한 점에서 2000년대 북한당국이 행한 범죄규정화는 범죄규정의 유효성을 담보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한편, 범죄규정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비사회주의적 범죄규정에는 2004년 형법에서 신설한 개인상행위죄, 노력착취죄, 불법외화벌이죄, 증명서매매죄, 미신행위조장죄 등이 있다. 개인상행위죄는 국가의 승인이 없거나 대량 이익을 내는 개인장사행위를 범죄로 규정화하여 통제하는 비사회주의적 행위이다. 노력착취죄의 경우 돈주들이나 외화벌이 기관·기업소·단체 등에서 개인들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사회주의체제상 노동력을 상품화하여 교환함으로써 노동력을 착취하는 비사회주의적 행위이다. 불법외화벌이죄의 경우 불법 무역활동을 조직하거나 행사한 행위로 비사회주의적 행위이다. 증명서매매죄는 권한 있는 관리(일군)가 증명서를 팔거나 필요한 자가 이를 사는 행위로 비사회주의적 행위이다. 미신행위조장죄는 종교행위나 점치는 행위 등을 고의적 목적을 가지고 유포하거나 대가를 받고 유포하는 비사회주의적 행위이다. 이들 범죄규정상 비사회주의적 행위유형은 2012년 형법에서 폐지되어 더 이상 범죄행위가 아니다. 이러한 범죄규정의 변화는 비사회주의적 행위이지만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밖에 없는 북한적 사회현실을 보여준다. 물론 이들 행위 중 일부는 행정처벌법상 위법행위이며 행정처벌로 통제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비사회주의적 판단여부가 북한당국의 편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구성원들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선택적으로 범죄로 규정하였다가 배제시키는 법적 행위를 보여 왔다.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당국은 2004년 형법에서 개인상행위와 노동력의 사적 고용행위를 ‘사법적 통제 범주 안’으로 포섭하였다가 2012년 형법에서는 ‘사법적 통제 범주 밖’으로 배제시켰다. 특히 개인상행위와 노동력의 사적 고용과 같은 비사회주의적 행위는 사회주의체제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지만 형법적 통제 밖으로 밀려난 것이다. 이러한 북한당국의 이중적 범죄규정행위는 결국 ‘사법적 통제의 효과성’을 저해하고 ‘법적 안정성’마저도 잃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물론 북한당국의 범죄규정의 형성과 변형은 사회변화를 일정부분 수용하는 법제도의 메카니즘적 변화를 보여준 것이다. 2000년대 북한의 범죄규정화는 그간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규제하던 현실 영역을 범죄규정의 변화를 통해 새롭게 규제하는 ‘법적 확장’을 실행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김정일 교시와 말씀’이라는 초법규성을 이용하면서 대강의 형식적인 법으로 규제하던 방식을 바꾸어 좀 더 개별적인 법으로 특수하게 규제하는 ‘법적 치밀함’을 선택한 것이다.⁴⁵⁾

45) Rüdiger Voigt, Verrechtlichung in Staat und Gesellschaft. in *Verrechtlichung* (Königstein: Athenäum, 1980), p. 16; 이상돈, 『법학입문』 (파주: 법문사, 2007), p. 5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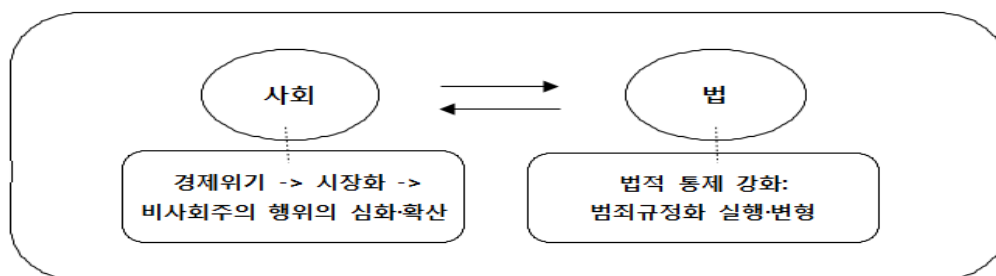
2000년대 새로 출현한 범죄규정들은 2012년 기준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맑스-엥겔스가 구상한 ‘사회주의’원칙을 기준으로 삼지 않더라도 북한헌법이 제시하는 사회주의제도와 원칙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난, 그야말로 ‘비사회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북한에서 규범적 통제체계의 구성요소인 범죄규정의 형성이 사회통제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당국이 원하는 사회주의체제변화를 제약하는 효과를 내는 데도 한계를 드러낸다. 결국 구성원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인 범죄규정화는 범죄규정 형성과 변화를 통해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균열양상과 정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공간을 제공한 셈이 되었다.

IV. 북한의 범죄규정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1. 범죄규정화와 사회변화의 관계

2000년대 초 북한의 범죄규정화 진전은 사실상 기존 통제체계의 비효과성 때문에 일어났다.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은 국가 식량배급제 중단으로 구성원들을 사회주의규범에 순응하게 하는 국가적 유인을 상실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사상적 통제체계와 물리적 강압체계는 주민통제기제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북한당국은 구성원을 통제할 새로운 기제를 동원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법적 통제강화방법인 범죄규정화 실행이었다. 북한당국은 범죄규정화를 지속적으로 실행하면서 사회적 조건과 필요에 따라 범죄규정을 변형하기도 하였다.

〈그림 1-5〉 북한에서의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



* 화살표 방향은 영향을 주는 방향을 표시

사실상 범죄규정화 진전의 근본적 원인은 북한사회의 변화에 있다. 1990년대 식량난 등 경제위기라는 사회변화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생존을 위해 사회주의체제 원칙에 반하는 일탈행위를 하도록 만들었다. 북한주민들은 국가가 금기시하는 시장에서 불법 장사활동을 시작으로 사회주의경제체제에 반하는, 각종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행함으로써 생계를 이어갔다. 또한 그 과정에서 시장으로 흘러 들어온 외국상품에 깃든 자본주의사회의 문화(생활양식)와 사상을 접하고 그것을 동경하며 추구하는 방식으로 사회주의 문화에 반하는 비사회주의적 행위도 저질렀다. 게다가 사회의 어지러운 틈을 이용해 뇌물을 요구하고 횡포를 저지르는 관료의 부정부패가 주민들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조장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비사회주의적 행위의 심화·확산이 시장 확대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북한사회에서 시장화는 비사회주의적 행위 발생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였다. 북한당국은 시장에서 시작된 각종 사회적 일탈을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명명하고 물리적 강압기구로 통제하였다. 하지만 국가신뢰를 상실한 물리적 통제는 구성원의 행위를 통제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새로운 행위통제방식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는 구성원의 일탈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법적 처벌근거에 따라 통제하는 방식인 범죄규정화로 나타났다. 2004년 범죄규정화의 실행은 특히 시장의 영향을 받아 과잉범죄화를 초래하였다. 범죄규정화로 인해 시장과 연계하여 발생한 비사회주의적 행위는 각종 범죄행위로 재탄생하였다. 시장연계성 범죄는 여러 불법행위들과 결합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였다. 2007년 형법부칙상 가중처벌규정에 나타난 범죄유형이 이를 말해준다. 화폐위조범죄나 국가자원밀수범죄, 마약밀매범죄, 성매매조직범죄 등이 2004년 범죄규정화 이후 더욱 심화된 범죄들이다. 북한당국은 이들 범죄에 사형이나 무기노동교화형 등 강력한 형벌을 적용하는 형법부칙을 제정하였던 것이다. 이후 2012년 형법 개정을 통해 2007년 형법부칙상 사형이 적용되는 마약밀매범죄 가중처벌규정이 형법규정에 반영되었다. 이렇듯 범죄규정화는 사회변화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기도 하고 사회에 영향을 주면서 실행되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앞서 실행된 범죄규정화가 뒤의 범죄규정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2012년 사이 발생한 사회변화와 범죄규정화 사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설명이 반드시 두 변인 사이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장화’ 및 범죄규정화에 대한 ‘정치적 수단화’ 등의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

히 시장화는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비사회주의적 행위 발생 초기에는 사적 경제활동이 불법인 시장화로 비사회주의적 행위 발생과 범죄규정화 사이 외생변인으로 작용하였다. 비사회주의적 행위 심화·확산기에는 사적 경제활동이 불법과 합법인 이중성을 띠는 시장화로 비사회주의적 행위 확산과 범죄규정화 사이 내생변인이자 매개변인으로 작동하였기 때문이다.

2. 범죄규정화 평가와 전망

북한의 범죄규정화 진전은 구성원의 행위에 대한 기존 통제체계가 약화되면서 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법규범을 활용해 구성원의 행위를 제약하는 방식을 동원한 것이다. 범죄규정화가 주민통제에 대한 ‘법의 통제’영역을 넓혀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북한당국이 사회 내 발생하는 구성원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법적 근거에 따른 통제방식인 ‘법의 통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 강구를 취했다는 의미이다. 물론 범죄규정화는 사회질서 유지 및 체제 수호 수단으로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위해 실행되었다. 북한당국이 구성원의 행위를 일률적으로 사회주의제도와 원칙하에 범죄화하였다기보다는 지배세력의 이익과 체제 이익에 기능하는 비사회주의적 행위의 경우 비범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림 1-6>을 가지고 북한당국의 범죄규정에 대한 선택과 배제의 법적 행위, 즉 범죄규정화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6〉 북한당국의 범죄규정화의 선택과 배제

^ 국 가 적 규 정 V	범 죄	통상적 의미의 범죄 => 일반범죄	기존 체제를 위협하는 범죄 => 반국가범죄	선택
	비 범 죄	체제에 기능적인 범죄	범죄 아님	배제

* 출처: 심영희, 『국가권력과 범죄통제- 비판범죄론적 시각 -』(서울: 한울, 1988), p. 27, 저자약간 수정.

1987년 형법에서 범죄유형은 <그림 1-6>에서 볼 때, 주로 ‘통상적 의미의 범죄’를 일반범죄로 규정하였고 ‘기존 체제를 위협하는 범죄’는 반국가범죄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2004년 형법에서 범죄화한 비사회주의적 행위유형을 2012년 개정된 형법에서는 ‘체제에 기능적인 범죄’로 규정하여 배제한 사례가 존재한다. ‘개인상행위죄’와 ‘노력착취죄’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이다. 이런 현상은 국가 및 체제 이익에 기여하는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범죄규정에서 배제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재산)’이라는 보호법익을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범죄규정화가 향후 북한에서 행위통제수단과 통치권 강화수단 외에 ‘보호법익 보장수단’으로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범죄규정화는 구성원의 행위통제 및 사회주의체제 유지 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목적하는 방향과 다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북한당국이 시장환경의 변화를 의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체제 원칙만 고수할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당국 스스로 시장활성화의 수혜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당국은 편의에 따라 또는 사회적 조건과 필요에 의해 구성원의 행위를 범죄화하거나 비범죄화하는 법적 규정을 반복적으로 보여줄 확률이 높다. 이로 인해 북한사회에서 법적 안정성이나 법적 통제의 효과성을 온전하게 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범죄규정화가 지속될수록 통제목적인 체제변화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대신 ‘촉진’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하겠다.

만약 북한당국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와 같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기준을 고집하여 구성원의 행위를 이미 형해화된 사회주의 제도와 원칙에 따라 범죄규정화하고 통제한다면, 이러한 법적 통제방식은 결국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할 것이다. 북한이 중국과 같이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또는 ‘시장적 사회주의체제’)로 체제변동을 노정하고 있는 이상 북한의 법이 행위통제수단으로서 활용되기보다 ‘법의 지배(rule by law)’수단으로 발전해가지 않을까하는 먼 미래적 예측을 해본다. 북한법의 진보와 발전이 북한당국이 말하는 ‘당의 영도’를 받는 사회주의법치 대신 ‘진정한 법치(rule of law)’의 발전적 방향으로 흘러갈 때, 통일 역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국문단행본

- 박형중 외. 『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박홍규 역. 『자본주의법과 사회주의법』. 서울: 일월서각, 1988.
- 서재진 외. 『사회주의 지배엘리트와 체제변화: 북한과 러시아·중국·동독의 비교분석』. 서울: 생각의 나무, 1999.
- 심영희. 『국가권력과 범죄통제- 비판범죄론적 시각 -』. 서울: 한울, 1988.
-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 파주: 한울, 2010.
- 이교덕 외.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이상돈. 『법학입문』. 파주: 법문사, 2007.
- 장명봉 편. 『2008 최신 북한법령집』. 서울: 북한법연구회, 2008.
- _____. 『2011 최신 북한법령집』. 서울: 북한법연구회, 2011.
- _____. 『2013 최신 북한법령집』. 서울: 북한법연구회, 2013.
- _____. 『2015 최신 북한법령집』. 서울: 북한법연구회, 2015.
-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_____.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최대석 외. 『북한 내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확산 실태 및 북한주민 의식변화』. 통일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0.

2. 영문단행본

- Black, Donald J. The Behavior of Law. New York: Academic Press, 1976.
- Ehrlich, Eugen (aut.), Moll, Walter L.(trans.)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Sociology of Law.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2002.
- Hildebrand, James L. The Sociology of Soviet law. New York: Hein, 1972.
- Liska, Allen E. and Messner, Steven F. Perspectives on Crime and Deviance(3rd ed.). New Jersey: Prentice Hall, 1999.

- Łoś, Maria. COMMUNIST IDEOLOGY, LAW AND CRIME: A COMPARATIVE VIEW OF THE USSR AND POLAND.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8.
- Merton, Robert K. and Nisbet, Robert A.(eds.) Contemporary Social Problems(3rd ed.).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1.
- Quinney, Richard. Criminology: Analysis and Critique of Crime in America. Boston: Little, Brown, 1975.
- _____. Class, State, and Crime. New York: Longman, 1977.
- Voigt, Rüdiger. Verrechtlichung in Staat und Gesellschaft. in Verrechtlichung. königstein: Athenäum, 1980.

3. 국문논문

- 박영자.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 북한의 ‘주변노동’과 ‘노동시장’: 노동일상의 상황과 구조.”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3호 (2009).
-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황의정. “북한의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 범죄규정화(crime-definition)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 박사학위논문, (2016).

4. 기타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 법률출판사 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2004).
- ____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 평양: 법률출판사, (2006).
- ____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제2판). 평양: 법률출판사, (2012).
-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_____.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7).
-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 안장원.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구.” 『철학연구』, 제1호 (1990), pp. 32~37,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평양: 인민보안성출판사, (2009).
최동진. “비사회주의적현상은 반국가적행위.” 『정치법률연구』, 제2호 (2003), 워드파
일형태(페이지 미상),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The Legal Control over Daily Lives of People in North Korea: Focused on Non-socialist Behaviour and Legal Crime-definition

*Hwang, Euij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correlation between non-socialist deeds of social members and the legal prescriptions by the state that define such deeds as crimes in North Korea. This study was performed on the premise that there exist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umerous legislations and revisions of laws and regulations promoted by North Korean authorities from 2004 to 2012 and social changes that occurred during the period. The intent of this study was to reverse the existing viewpoint in the study of laws of North Korea that considers them to be merely nominal or dead. In the early 2000s, significant changes occurred in North Korean laws, particularly in criminal law and laws relevant to public order and administrative punishment, which are the means for controlling deviations and crim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aw and the society of North Korea by investigating the correlation between non-socialist deeds of members of North Korean society, which amount to social deviations and at the same time represent the social changes happening in North Korea, and the relevant laws, the means of controlling them.

For this purpose, 'non-socialist deeds' and 'crime-definition(criminalization)' were used as conceptual tools in the investigation and content analysis of the criminalization of non-socialist deeds in criminal law and administrative punishment law. Based on the results, characteristics and the meaning of criminalization of non-socialist deeds were determined; criminalization of non-socialist deeds was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rrelation between law and society; and future North Korean policies concerning criminalization were predicted.

***Keyword:** non-socialist behaviour in North Korea, crime-definition(criminalization), legal control in North Korea, criminal law of North Korea, Interaction between law and society, socialist deviance

* Visiting Researcher Fellow, Institute for Study of Unification in Ewha Womans University.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전략과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

임 상 순*

목 차

- I. 서론
- II.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전략

- III. 김정은 정권의 대응 전략
- IV. 결론 - 남북한 전략평가와 시사점

[국문요약] 본 논문은 박근혜 정부가 실행한 대북 인권전략과 이에 대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압력중심의 인권 문제화 전략’을 활용하여 김정은 정권을 변화시키고, 북한 인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 전략에 대해서 김정은 정권은 ‘선전 중심의 물거품 전략’을 바탕으로 내부 단결 및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지지 및 동정을 확보하여 김정은 중심의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 안정시키고자 했다. 여러 통계 자료가 보여주듯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전략은 성과를 내지 못하

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규모가 매우 작았고, 둘째,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권 공세를 중국과 러시아가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는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북한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를 중지하도록 국제사회 특히, 중국, 러시아와 함께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 경제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주제어: 박근혜 정부, 북한인권, COI, 유엔인권이사회, 반인도적 범죄

I. 서론

북한은 2016년 12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다. 이로써 북한은 ‘자유권협약’, ‘사회권협약’, ‘아동협약’, ‘여성협약’, ‘장애인협약’의 가입국이 되었다. 북한이 최근에 유엔 인권이사회와 협약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들에 의하면, ‘모든 북한 주민들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들을 충분히 보장받고 향유’¹⁾하고 있으며, ‘적대세력의 정치적 압력과 경제봉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권리가 놀랄 정도로 보호되고 증진’²⁾되었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가 최상의 수준에서 충분히 향유’되고 있다.³⁾

하지만, 이런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 주민들은 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될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으며, 북한 정부는 언론, 출판, 이주, 집회, 종교의 자유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⁴⁾ 북한인구 2460만 명 중에서 1600만 명이 만성적으로 식량불안 상태에 놓여 있으며, 5세 이하 아동 중 28%가 영양실조상태이고, 15세에서 49세 여성 중 1/3이 영양부족으로 만성 빈혈을 앓고 있다.⁵⁾ 여성들은 가부장적 사회 질서에 의해 항시적인 차별상태에 놓여 있으며, 거의 모든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국가적 배려 내지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가족의 부양을 받거나 주위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 가고 있다.⁶⁾

남한 정부가 이렇게 열악한 북한인권⁷⁾ 상황에 관심과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식량난 이후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자유권보다, 북한주민의 생존권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을 확대했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는 5.24조

1) 유엔문서 A/HRC/WG.6/19/PRC/1

2) 유엔문서 CEDAW/C/PRK/2-4. para.3.

3) 유엔문서 CRC/C/PRK/5. para.7.

4)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https://www.state.gov/j/drl/rls/hrrpt/humanrightsreport/index.htm?year=2015&dldid=252771#wrapper>>

5) 유엔문서 A/69/639. para.17. para.19.

6) 북한 여성, 아동, 장애인의 구체적인 인권상황은,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6』 (서울: 통일연구원, 2016) 4장 취약계층 참조.

7) 본 논문에서 다루는 북한인권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으로 한다.

치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북한의 자유권 신장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 정부를 압박했다.⁸⁾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유엔인권이사회 대북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영유아, 산모 등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⁹⁾하는 등 북한 인권개선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4년 후인 2016년 10월에 발표된 유엔 사무총장 ‘북한인권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북한 주민들의 자유권과 사회권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¹⁰⁾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인권전략과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구체적인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론 1에서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어떤 입장에서 어떤 전략을 구사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본론 2에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를 자신의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김정은 정권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전략에 대하여 어떤 대응전략으로 대처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결론에서, 박근혜 정부와 김정은 정권의 전략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법이며, 사회학의 ‘사회문제 이론’과 북한 김정은이 제시한 ‘물거품 전략’을 주요 분석 틀로 활용하였다. 실증적 연구를 위해 1차 자료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남한 자료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관의 국내외 발언, 정부 발간 자료 그리고, 유엔 문서들이 이용되었고, 북한자료로는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서한 및 보고서 그리고, 북한 대표자의 발언이 녹화된 인터넷 자료들이 사용되었다.

8) 서보혁, 『북한인권 - 이론, 실제, 정책』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4), pp.357-358.

9) “박근혜 대통령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문 전문,” 2013년 5월 9일;
<<http://www1.president.go.kr/news/speech.php>>.

10) 유엔문서 S/PV.7830.

II.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전략

1.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전략 목표와 전략 메커니즘

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전략 목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¹¹⁾부터 북한 인권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당선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¹²⁾이며, 북한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한 주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 나갈 것¹³⁾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유엔군 참전 및 정전 60주년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로울 권리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자유를 책임질 수 있도록 북한정권을 변화시켜야 한다¹⁴⁾고 강조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공동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서, 북한인권문제 해결의 세부목표로 북한 주민의 민생 향상과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성 규명을 제시했고,¹⁵⁾ 69차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 세계가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¹⁶⁾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연설문 분석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북한주민의 민생 향상과 책임성 규명을 통해 북한정권을 변화시켜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11) “북한 인권 단체들, 한국 대선후보에 공개 질의,” 『미국의 소리』(온라인), 2012년 11월 6일; <<http://www.voakorea.com/a/1540201.html>>

12) “제 20대 국회개원 연설문,” 2016년 6월 13일; <<http://www1.president.go.kr/news/speech.php>>.

13)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 2016년 2월 16일; <<http://www1.president.go.kr/news/speech.php>>.

14) “유엔군 참전 및 정전 60주년 기념사,” 2013년 7월 27일; <<http://www1.president.go.kr/news/speech.php>>.

15) “2015 북한에 관한 한미공동성명,” 2015년 10월 18일; <<http://www1.president.go.kr/news/overseasTrip/2015/trip2015.php>>.

16) “제 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문,” 2014년 9월 25일; <<http://www1.president.go.kr/news/speech.php>>.

나. 북한 인권 개입 전략 메커니즘

사회문제 이론에 따르면, 사회문제란 ‘많은 구성원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개입하게 되는 특정현상¹⁷⁾’을 의미한다.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부는 여론 형성을 통해, 북한 인권상황이 열악하며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면서,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주민과 북한 정부에 개입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인권상황을 ‘인권문제화’하는 전략을 구사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인권문제에 개입하는 수단에는 ‘압력’과 ‘관여’가 있다. 압력수단에는 책임성 규명,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비난 및 개선촉구 등이 있고, 관여수단에는 인도적 지원 등이 있다.¹⁸⁾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 두 가지 수단 중에서 북한 주민의 민생향상을 위한 ‘관여’에는 소극적인 반면에, 책임자 처벌 및 책임성 규명과 같은 ‘압력’에는 적극적이었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전략은 ‘압력중심의 인권문제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전략 메커니즘을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모형 1〉 ‘압력중심의 인권문제화 전략’ 메커니즘 모형

전략목표	김정은 정권 변화를 통한 북한 인권문제 해결		
세부목표	북한주민의 민생 향상	책임 규명 및 책임자 처벌	
	↑	↑	↑
전략수단	여론조성	북한주민에 대한 관여	북한정부에 대한 압력
국내	정부기구의 비정부단체 활동지원	민간단체 기금 지원	북한인권법 제정
국제	유엔에서 대표 발언	유엔 기구를 통한 지원	유엔 결의 참여 및 이행협력

17) Paul B. Horton et. *The Sociology of Social Problems* (New Jersey: Prentice Hall, 1977), pp.3-5.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점점 좁아지고 있고, 세계인들 간의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가간 상호의존이 확대됨에 따라, 과거에 한 국가에 한정 되어 규정되었던 사회문제가 전 세계의 차원에서 규정되고 있다. 박철현, 『사회문제론-이론, 실태, 지구적 시각』 (서울: 박영사, 2016), p.6.

18) 최진욱,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40.

위의 모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는 ‘김정은 정권 변화를 통한 인권문제 해결’이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로 북한주민의 민생향상과 책임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설정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론을 형성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관심을 추진했으며, 북한정부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정부기구의 비정부단체 활동지원’, ‘민간단체 기금 지원’, ‘북한인권법 제정’ 등을 했으며, 국제적으로는 전 세계 193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엔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즉, 국제 여론 형성을 위해 유엔에서 대표들이 발언했고, 유엔 기구를 통해 대북 지원을 했으며, 여러 유엔 기구의 결의에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그 결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2. 전략 수단 1 : 여론조성 수단

박근혜 정부는 북한인권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여론조성 수단을 사용하였다. 먼저, 국내 여론 형성을 위해 정부기구들이 비정부단체 활동을 지원했으며, 국제사회의 여론형성을 위해 여러 유엔기구에 대표를 파견하여 발언하도록 하였다.

가. 국내 여론 조성 : 정부기구의 비정부단체 활동지원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내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부기구는 통일교육원이다. 통일교육원은 통일부 소속 교육연수기관으로서, 자체 통일연수를 진행하는 한편, 각급 학교와 일반인 연수기관에 ‘통일교육지침서’를 배부하여 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2013년 이후 배부된 ‘통일교육지침서’에 의하면, 각급 학교와 연수기관이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자유, 인권, 복지를 지향해야 하며,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실태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 우리정부의 노력을 설명’해야 한다.¹⁹⁾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높이고, 북

19) 통일교육원, 『2014통일교육지침서(일반용)』 (서울: 통일교육원, 2014), p.48, 통일교육원, 『2014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서울: 통일교육원, 2014), p.54, 통일교육원, 『2016통일교육지침서(통합용)』 (서울: 통일교육원, 2016), p.52.

한인권 개선활동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다.²⁰⁾ 북한인권백서는 전년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 결과와 북한의 공식문건, 유엔문서, 국내외 북한 인권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다.²¹⁾

이와 함께 통일부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내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통일부에 등록된 북한인권 비정부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통일부가 지원하는 활동이 인권교육활동과 전시회, 공연²²⁾, 스포치 대회, 사진전, 다큐멘터리 제작²³⁾, 학술회의 개최, 자료집 발간, 아카데미 운영, 웅변대회, 문화행사 및 캠페인 등²⁴⁾으로 이전 정부보다 더욱 다양해졌다. 그리고, 통일부에 등록된 북한인권 비정부단체도 2012년 말 24개에서 2013년 말 26개, 2014년 말 29개, 2015년 말 33개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체 국민 중에서 80.8%가 평소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96%가 북한인권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²⁵⁾ 하지만,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견해차이가 여전히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²⁶⁾

나. 국제 여론 조성 : 유엔에서의 대표 발언

유엔은 보편적 인권관을 실현하기 위해 ‘유엔 인권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핵심 역할을 하는 기관이 유엔인권이사회(이하 인권이사회), 유엔총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이다.²⁷⁾ 박근혜 정부는 이 기관들의 주요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발언하게 함으로써,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려고 했다. 각 기관에서 행한 남한 대표들의 발언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 통일연구원, 『2016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14.

21) 통일연구원, 『2016북한인권백서』, p.15.

22) 통일부, 『통일백서 2013』 (서울: 통일부, 2013), p.150.

23) 통일부, 『통일백서 2015』 (서울: 통일부, 2015), p.128.

24) 통일부, 『통일백서 2016』 (서울: 통일부, 2016), p.131.

25) 국회의원 황우여, 『북한인권과 북한인권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보고서』 (서울: 황우여의원실, 2014), pp.10-11.

26) 김수암,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인권,”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6월호(2013), p.31.

27) 임상순,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관여전략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 『북한연구학회보』, 제 9권 1호(2015), pp.164-165.

〈표 1〉 유엔 기관에서 행한 박근혜 정부의 대표 발언 주요 내용

날짜(회의)	발언자	주요 발언 내용
2013.2.27(22차 인권이사회)	다자외교조정관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국제 조사 필요성 증대
2014.3.5 (25차 인권이사회)	외교부 장관	COI가 심각하고 조직적인 북한인권침해 확인
2015.3.3 (28차 인권이사회)	외교부 2차관	북한당국은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해체할 것
2016.3.2 (31차 인권이사회)	외교부 장관	북한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R2P)이 있음
2013.9.27 (68차 유엔총회)	외교부 장관	북한의 비인도적 결정은 정당화될 수 없음
2014.9.24 (69차 유엔총회)	대통령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문제
2015.9.28 (70차 유엔총회)	대통령	북한인권문제는 유엔총회, 안보리 논의사항
2016.9.22 (71차 유엔총회)	외교부 장관	북한주민보호는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
2015.12.10(7575차 안보리)	유엔 대사	북한인권문제는 한반도와 지역 평화 문제
2016.12.9 (7830차 안보리)	유엔 대사	북한 핵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인권문제

대통령 발언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 외교부 장관·차관 발언 출처: 외교부, 『신뢰외교』 (서울: 외교부, 2013-2016). / 유엔대사 발언 출처: 유엔안보리문서.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제여론 형성을 위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매년 인권이사회, 유엔총회, 안보리에 대통령, 외교부 장·차관, 유엔 대사 등 고위 관리가 참석하여, 보호할 책임(R2P)을 언급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과 국제사회의 개입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3. 전략 수단 2 : 북한 주민에 대한 관여 수단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첫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굶주림과 어려움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해 나갈 것’²⁸⁾이라고 밝혔고, 2015년 5월 아시안리더십 컨퍼런스 축사에서는, ‘국제사회, 국내외 민간단체와 힘을 모아서 북한의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북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에 착수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²⁹⁾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북한 주민에 대한 관여는, 국내적으로 민간단체 기금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국제적으로는 유엔 기구 자금지원을 통해서 실행되었다.

28) “제 68주년 광복절 경축사,” 2013년 8월 15일; <<http://www1.president.go.kr/news/speech.php>>.

29) “아시안리더십 콘퍼런스 축사,” 2015년 5월 19일; <<http://www1.president.go.kr/news/speech.php>>.

가. 민간단체 기금 지원

남한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민생향상을 위해 국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대북 직접 무상지원과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기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5.24조치가 시행된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대북 직접 무상지원과 민간단체 기금지원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5.24조치 이후 남한 정부의 대북 직접무상지원 및 민간단체 기금지원

(단위: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대북 직접무상지원	183	0	0	0	0	0	0
민간단체 기금지원	21	0	0	0	0	23	1
합계	204	0	0	0	0	23	1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북 직접 무상지원은 하나도 없었으며, 민간단체 기금지원도 24억원에 불과하다. 이 금액은 5.24조치가 시행된 2010년 한 해 지원액보다 3억원이 많을 뿐이다. 2015년에 정부는 민간단체 기금지원을 통해 북한의 진료소 개선사업, 장애인 지원사업, 농축산 협력사업을 실시하였다.³⁰⁾ 북한이 2차례 핵실험을 단행한 2016년에는 북한 농업생산증대 및 식수, 위생 개선사업에 1억원을 지원했다.³¹⁾

나. 유엔 기구를 통한 지원

박근혜 정부는 주로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유엔 기구³²⁾에 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박근혜 정부가 기금을 지원한 유엔 기구와 지원 금액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0) 통일부, 『통일백서 2016』, pp.120-123.

31) “남북협력기금통계(2016년 12월말 현재),”;
<<https://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100&mode=view&page=1&cid=47317>>.

32) 북한에 상주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는 유엔 기구에는 세계식량계획(이하 WFP),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유엔아동기금(이하 UNICEF), 유엔인구기금(이하 UNFPA), 세계식량농업기구(이하 FAO), 유엔개발계획(이하 UNDP)이 있다. “United Nations Country Team,”; <<http://kp.one.un.org/country-team>>

〈표 3〉 박근혜 정부의 유엔 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총지원액	지원이 이루어진 북한 상주 유엔 기구(지원액)
2013	133	UNICEF(67), WHO(66)
2014	141	WHO(67), WFP(74)
2015	117	UNICEF(44), WFP(24), UNFPA(9)
2016	0	없음
합계	391	UNICEF(111), WHO(133), WFP(98), UNFPA(9)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통일부,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4-2016)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6개 유엔 기구 가운데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를 위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계획(WFP)에 대부분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것은 5.24조치와 드라스덴 선언(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의 엄격한 집행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2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2016년에 유엔 기구를 통한 지원이 중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는 민간단체 기금지원과 북한에 상주하는 유엔 기구에 대한 기금 지원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실시했다. 하지만, 지원 규모가 매우 작고, 지원 대상도 영유아와 임산부에 한정되어 있어서 그 효과가 매우 미미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지속적인 공식발표와는 달리, 2016년 북한 함경북도의 대규모 수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4차, 5차 북 핵실험에 의해 거부되었다.³³⁾

4. 전략 수단 3 : 북한 정부에 대한 압력 수단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1차적 책임은 북한 정부에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 정부가 주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을 자행³⁴⁾하고 있으며, 주민들을 더욱 착취하고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³⁵⁾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비난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국제적으로 유엔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33) “통일부, 북한이 수해지원 요청해도 지원 어렵다,” 『CBS노컷뉴스』(온라인), 2016년 9월 9일; <<http://www.nocutnews.co.kr/news/4655866>>.

34) “제 48회 국가조찬기도회,” 2016년 3월 3일; <<http://www1.president.go.kr/news/speech.php>>.

35) “장교 합동 임관식 축사,” 2016년 3월 4일; <<http://www1.president.go.kr/news/speech.php>>.

가. 북한인권법 제정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선거 공약으로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약속³⁶⁾했으며, 당선 이후 국회연설을 통해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³⁷⁾했다.

2016년 3월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236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4인으로 반대 없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북한인권법을 심의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나경원 위원장은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북한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참혹한 현실에 놓여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³⁸⁾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박근혜 정부의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입법적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³⁹⁾

북한인권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매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집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둘째,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정책 자문을 위해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셋째,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두어야 하며, 넷째, 북한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 연구, 정책개발,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관련 정보를 수집, 연구, 보존, 발간을 위해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두고, 여기에서 수집된 북한인권기록을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이 중에서 김정은 정권의 인권침해 사실을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기록하고 법무부에 이관, 보존, 관리하는 것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일부 차관이 밝힌 바와 같이, ‘통일이후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을 상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북한당국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다.⁴⁰⁾ ‘북한인권법’ 제정의 결과로, 김정은 정권의 북한주민에 대한 자유권적, 생존권적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는 범죄를 구성하게 되었고, 통일 이후 국내형법 뿐만 아니라, 국제형법적 차원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다.⁴¹⁾

36) 새누리당,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서울: 새누리당, 2012), p.360.

37)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 2016년 2월 16일; <<http://www1.president.go.kr/news/speech.php>>.

38) 국회사무처,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 2호(340회 국회)』 (서울: 국회사무처, 2016), p.2.

39) 제성호, “북한인권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북한인권법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기독교통일학회 제 19차 정기학술심포지엄 (2016년 4월 23일), p.7.

40) 국회사무처, 『외교통일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회의록 제 3호(329회 국회)』 (서울: 국회사무처, 2016), p.5.

나. 유엔 결의 참여 및 이행 협력

박근혜 정부는 이전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의 주요 제안국가로 참여했으며, 그 결의 사항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북한인권상황을 안보리 논의 사항으로 상정하는 안건을 공동제안하기도 했다. 안보리의 결의사항은 인권이사회나 유엔총회 결의와 달리 회원국가의 행위를 강제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주요 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관련 결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박근혜 정부가 공동제안한 유엔 북한인권 관련 결의 주요 사항

	투표결과 찬성:반대:기권	결의 항목	결의 주요 사항
2013.3.21. 22차 인권이사회	무투표 결의	12	▷1년 기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북한 당국의 ‘반인도적 범죄’여부 확인할 것
2014. 3. 28. 25차 인권이사회	30 : 6 : 11	18	▷북한인권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기반조직’설립 ▷유엔총회는 ‘COI’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할 것
2015.3.27. 28차 인권이사회	27 : 6 : 14	22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패널토론’ 소집 ▷북한은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에 협력할 것
2016.3.23. 31차 인권이사회	무투표 결의	25	▷‘책임성에 관한 독립된 전문가 그룹’ 설립 ▷북한 반인도적 범죄자 책임추궁 메커니즘 탐구
2013.12.18. 68차 유엔총회	무투표 결의	6	▷북한은 인권침해자들을 사법기구에 세울 것 ▷북한은 ‘COI’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
2014.12.18. 69차 유엔총회	116 : 20 : 53	16	▷‘COI’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할 것 ▷안보리는 북한인권상황의 ‘ICC’ 회부 고려할 것
2015.12.17. 70차 유엔총회	119 : 19 : 48	20	▷안보리는 북한인권 관련 토의를 지속할 것 ▷안보리는 북한인권책임자 제재를 고려할 것
2016.12.19. 71차 유엔총회	무투표 결의	20	▷안보리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 ▷국제공동체는 북한의 책임성 증진에 협력할 것
2014.12.22. 7353차 안보리	10 : 2 : 2	1	▷북한인권상황을 안보리의 의제로 상정함 ▷북한인권상황의 중대성에 대하여 깊이 우려함

출처: 유엔문서.

41) 김한균, “북한인권법 제정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형사법의 신통향』, 제 51호(2016), p.426.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공동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매년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결의 항목의 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2014년과 2015년에, 북한인권상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민감한 항목이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투표를 거쳐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7353차 안보리 회의에서 남한대표는 북한 인권상황이 안보리 의제로 채택된 것을 환영하면서, 안보리가 보다 결정적인 관여를 해야 한다⁴²⁾고 주장했다.

한편, 25차 인권이사회에서는 ‘COI’의 권고사항⁴³⁾을 받아들여 ‘현장기반조직’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정부는 이 ‘현장기반조직’을 서울에 유치하기로 결정했고, 2015년 6월 23일 서울에 ‘유엔인권사무소(서울)’가 설치되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 사무소가 장래 북한 인권침해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추구를 준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곳으로서, 이 사무소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인권침해의 범위와 본질을 심도 깊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⁴⁴⁾ 이 ‘서울사무소’는 한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 8월 현재, 탈북자 100명 이상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북한 정부의 인권침해 기록들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⁴⁵⁾

Ⅲ. 김정은 정권의 대응 전략

1. 김정은 정권의 대응 전략 목표 및 전략 메커니즘

가. 김정은 정권의 대응 전략 목표

신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 왈츠(Kenneth N. Waltz)는, 무정부상태인 국제질서에서 개별 국가들이 단일주체로서 작게는 자기보존을, 크게는 세계지배를 추구하며,

42) 유엔문서 S/PV.7573

43) 유엔문서 A/HRC/25/63 para. 94(c).

44) 유엔문서 A/HRC/31/70 para. 17. para. 45.

45) 유엔문서 A/71/439 para. 58-59.

각 국가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현명한 방법으로 동원한다고 주장한다.⁴⁶⁾

김정은 정권은 박근혜 정부의 인권 공세에 대하여, ‘북한의 제도와 존엄에 대한 도전으로서 흉악무도한 정치모략의 산물이자 적대시 정책의 연장’⁴⁷⁾이며, 북한의 ‘존엄높은 사회주의 제도의 영상을 흐려놓고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해치며 체제통일의 망상을 실현해 보려는 극악무도한 도발’⁴⁸⁾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소동을 벌이는 적대세력에게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김정은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더욱 확고히 할 것’⁴⁹⁾이라고 주장한다.

즉, 북한 김정은 정권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전략에 대한 대응전략을 통해서,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고 체제를 안정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국내외 선전’을 주요 도구로 활용하여, 대내적으로 내부 단결과 정당성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지지와 동정을 확보⁵⁰⁾하고자 한다.

나.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 메커니즘

김정은은 2014년 제 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연설을 통하여, 외부의 공세를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한 작전을 전개해야 한다⁵¹⁾고 주장했다. 북한은 김정은의 물거품 전략에 대해서, ‘상대방의 최대약점을 찾은 다음, 품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주장이나 활동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전략’⁵²⁾이라고 소개한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전략이 지니는 약점을 찾아, 그것을 국내외적으로 적극 확대선전 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유지 및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북한에서는 ‘선전’을 ‘일정한 사상, 지식, 정치적 견해 등을 구두, 출판물, 기타수단을 통하여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며 해설 교양하는 것’이라고 정의⁵³⁾하는데, 통상적으로 선전

46)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Boston : McGraw-Hill, 1979), p.184.

47) 『로동신문』, 2013년 3월 25일.

48) 『로동신문』, 2016년 3월 10일.

49) 유엔문서 A/HRC/30/G/8

50)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1970.11.2.),” 김일성 저작선집 5권 (평양: 인문과학사, 1972), p.277.

51) 『로동신문』, 2014년 2월 26일.

52) 『로동신문』, 2012년 3월 10일.

53) 박순서 등, 『대중 정치용어 사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p.251.

(propaganda)은 설득(persuasion)과 달리 국가에 의해 결정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정보가 통제되고 조작되는 과정⁵⁴⁾을 거치게 된다. 김일성은 선전사업이 논리정연하고 진실하게,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해야 한다⁵⁵⁾고 강조했다.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인 ‘선전 중심의 물거품 전략’을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모형 2〉 ‘선전 중심의 물거품 전략’ 메커니즘 모형

전략목표		김정은 정권의 유지 및 안정	
		⌞	⌞
세부목표		내부단결 및 정당성 강화	국제적 지지 및 동정 확보
전략수단	국내	로동신문 활용	내외신 기자회견
	국제		유엔 서한, 대표발언

위의 모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세부목표인 ‘내부단결 및 정당성 강화’를 위해서 출판매체인 로동신문을 활용했고, ‘국제적 지지 및 동정’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적 수단으로 내외신 기자회견을 그리고, 국제적 수단으로 유엔 서한과 대표발언을 이용했다. 북한은 철저한 폐쇄국가이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국제적 경로를 통해 국내 선전을 실시하지 않았다.

2. 전략 수단 1 : 내부단결 및 정당성 강화 수단

김정은 정권은 박근혜 정부의 인권관여에 대응하고, 내부단결과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전매체인 로동신문을 활용하고 있다. 로동신문과 관련하여 김정일은, “당 선전일군들이 매일아침마다 먼저 로동신문의 사설을 비롯한 중요기사를 보는 것을 생활화, 습성화하여야 하며 전당과 온 사회가 하루 일을 시작할 때 로동신문을 보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⁵⁶⁾고 지시했다. 김정일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 모든 기관, 단체,

54) Garth S. Jowett, Victoria O'Donnell, *Propaganda & persuasion* (London: Sage Pub, 2012), pp.33-34.

55)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1986.5.31.),”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4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46.

56) 김정일, “당사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1981.3.8.),” 김정일, 『김정일선집 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29-30.

기업소에서는 아침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약 30분간 노동신문을 읽고 토론하는 아침 독보회 시간을 갖는다.⁵⁷⁾

북한은 노동신문에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를 제시하면서, 남한은 북한을 적대시하는 미국의 식민지이고, 박근혜 정부의 악정으로 남한이 ‘인간 생지옥’으로 변화되었음을 선전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내부단결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을 허물어뜨리고자 한다.

가. 노동신문 활용 1 : 남한의 자주권 상실에 따른 인권침해 강조

김정은 정권은 인권을 인간의 자주적 권리라고 하면서, 국권을 잃은 국가의 주민들은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⁵⁸⁾고 주장한다. 그리고, 남한은 미국에게 국권을 상실한 식민지로서, 실권은 모두 미국이 가지고 있고 남한 정권은 미국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애당초 인권을 말할 자격도 체면도 없다⁵⁹⁾고 강조한다.

북한은, 남한이 미국에 의해 철저히 예속된 식민지이기 때문에 남한 주민들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을⁶⁰⁾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인권마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남한 주민들은 침략미군에 의해 매일같이 살인, 강도, 폭행, 강간 등 각종 범죄에 시달리면서 생존권이 깃밟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한미 ‘행정협정’에 의해 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이 남한 당국에 없기 때문에, 미군들이 아무런 법적 제한도 없이 남한에서 온갖 범죄행위를 감행하면서 남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⁶¹⁾

그리고, 북한은 남한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민족의 자존심을 버렸으며, 성노예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했다고 비난했다.⁶²⁾

57) 이용희, “주체사상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고찰,” 『통일문제연구』, 제 25권 2호(2013), pp.160-161.

58) 『노동신문』, 2013년 12월 10일.

59) 『노동신문』, 2013년 3월 19일.

60) 『노동신문』, 2015년 11월 21일.

61) 『노동신문』, 2013년 6월 19일. 『노동신문』, 2014년 4월 30일.

62) 『노동신문』, 2016년 2월 1일. 『노동신문』, 2016년 7월 2일. 『노동신문』, 2016년 9월 19일.

나. 노동신문 활용 2 : 남한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따른 인권침해 강조

북한은 박근혜 정부 4년을 평가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반인민적 악정으로 인해 남한이 ‘헬조선’, ‘인간생지옥’, ‘인권의 황량한 무덤’으로 변화되었다⁶³⁾고 비난했다. 북한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남한 주민들의 인권침해는, 크게 정치적 자유 침해, 경제적 생존권 침해, 사회적 안전권 침해, 여성, 아동, 노인 등 약자의 권리 침해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로 지목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남한 인민의 인권을 법률적으로 탄압하는 도구로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정치적, 정신적으로 박해하고, 탄압하며, 처형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사용하여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켰다.⁶⁴⁾

둘째, 남한 사회에서는 근로대중의 노동권과 경제적 생존권이 깃밟히고 있다. 2016년 현재 실업자가 450만 명에 이르고, 하루에 1, 2시간 일하는 반실업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남한 전체 주민세대의 45%인 700만 세대가 자기 집이 없으며, 셋방살이조차 할 수 없어 동굴과 같은 집 아닌 집에서 살아가는 세대가 68만 세대이다. 남한에는 1000만 명의 빈곤층이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275만명의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떠돌고 있다.⁶⁵⁾

셋째, 박근혜 정부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세월호 와 물대포 사건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고발생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300여명의 어린 생명 중 단 한명도 구원하지 못했다. 이 대참사는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자행된 집단학살범죄이다.⁶⁶⁾ 그리고, 박근혜 정부 경찰은 집회에 참가해서 생존권을 요구하는 무고한 농민을 물대포로 쏘아 목숨까지 빼앗아 갔다.⁶⁷⁾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남한 여성의 3분의 2 이상이 항시적인 성폭행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성대상 범죄가 연간 30만 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전체 범죄 건수의 16%를 차지한다.⁶⁸⁾ 남한에서는 아

63) 『로동신문』, 2016년 9월 18일.

64) 『로동신문』, 2013년 3월 19일. 『로동신문』, 2013년 6월 19일. 『로동신문』, 2015년 11월 13일.

65) 『로동신문』, 2013년 3월 17일. 『로동신문』, 2015년 12월 3일. 『로동신문』, 2016년 4월 17일.

66) 『로동신문』, 2014년 5월 20일. 『로동신문』, 2016년 5월 4일. 『로동신문』, 2016년 7월 2일.

67) 『로동신문』, 2015년 11월 28일. 『로동신문』, 2016년 10월 15일.

68) 『로동신문』, 2015년 10월 22일. 『로동신문』, 2016년 4월 17일.

동학대 사건이 매년 11,000건 이상이 발생하며, 아동의 39.8%가 날이 갈수록 성행하는 폭력행위 때문에 자살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극심한 빈부격차와 무거운 학비부담 때문에 매년 7만명의 어린 학생들이 배움을 포기하고 있다.⁶⁹⁾ 남한의 노인 138만 명이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살고 있으며, 매년 노인학대 신고가 11,900건 접수되고, 매일 평균 11명의 노인들이 가난과 고독 속에 자살을 선택하고 있다.⁷⁰⁾

3. 전략 수단 2 : 국제적 지지 및 동정 확보 수단

북한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대외선전⁷¹⁾을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은 매우 이상적이라는 점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북한주민들을 유인 납치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함께 사실을 조작하여 북한 인권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인권을 구실로 북한의 자주권을 공격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대외선전을 통해,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동정세력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북한이 활용하는 대외 선전도구에는 내외신 기자회견 그리고, 유엔에 보낸 서한과 대표발언이 있다.

나. 내외신 기자회견

북한은 국내 출판보도부문의 기자들 뿐만 아니라 조총련 기자들, AP통신과 같은 외국 언론 기자들, 북한 주재 외교관과 국제기구 대표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북한 인권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주장이 가지는 문제점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한다. 평양에서 진행된 북한 인권과 관련된 내외신 기자회견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9) 『로동신문』, 2014년 4월 3일. 『로동신문』, 2015년 12월 4일. 『로동신문』, 2016년 3월 31일.

70) 『로동신문』, 2014년 4월 5일. 『로동신문』, 2016년 4월 13일. 『로동신문』, 2016년 8월 12일.

71) 정상혁, “북한 핵 선전선동전략 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1권 4호(2015), p.53.

〈표 5〉 김정은 정권 주관 내외신 기자회견

날짜	회견 대상	북한 인권 관련 주요 진술내용
2014. 2. 27	남한 정보원 간첩 1명	▷국정원의 지시로 탈북자들을 남한으로 빼돌리는 행위 했음 ▷북한인권 문제를 비방하여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했음
2014. 3. 29.	납치 후 복귀한 선원 3명	▷남한 군 당국이 평화적인 어선을 납치하고, 선원들을 식물동일로 구타하면서 귀순을 강요함
2014. 12. 12	납치에서 구출된 청소년 9명	▷남한당국이 북한 청소년들을 유인 납치해가고 있음 ▷남한당국이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에 맞지 않음
2015. 3. 27.	남조선 정보원 간첩 2명	▷국정원의 지시로 북한주민들을 유인하여 남한으로 끌고 감 ▷북한의 인권에 대해 떠드는 것은 완전한 날조이고 모략임
2015. 7. 30.	캐나다 목사 (적대행위자)	▷남한당국의 북한 주민에 대한 유인 납치에 가담함 ▷남한당국이 벌이는 북한인권 망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2015. 9. 25	불법입국 한 미국대학생 1명	▷북한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인권문제, 폭압정치는 없음
2016. 3. 25.	재미교포 1명 (적대행위자)	▷북한은 당당한 주권국가이며 인권소통은 비신사적인 처사 ▷북한에는 그 어떤 인권문제도 없음. 모두 조작 날조된 것
2016. 5. 3.	납치피해여성들의 가족과 동료	▷여중업원들이 남한당국에 의해서 유인 납치되었음 ▷남한은 세월호 참사로 아이들이 생죽음 당한 저주로운 땅
2016. 7. 15.	남한 정보원 탈북자간첩 1명	▷국정원의 지시로 어린 고아들을 남조선으로 데려가려고 함 ▷여중업원 집단탈북사건은 남한 당국이 기획한 것이라고 들음

출처: 『로동신문』.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은 매년 3회씩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의 3가지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고자 했다. 첫째, 북한 인권문제는 남한과 일부 국가가 사실을 날조하여 만들어 낸 것이고, 둘째, 남한당국이 북한 주민들을 유인 납치하는 인권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으며, 셋째, 남한의 인권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이다.

나. 유엔 서한 및 대표발언

김정은 정권은 먼저, 자국의 입장이 포함된 공식서한을 인권이사회, 유엔총회, 안보리에 발송하고, 그 서한이 해당 유엔 기구의 회원국 대표들에게 회람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대외선전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은 인권이사회에 총 14회, 유엔총회와 안보리에 2회 서한을 발송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회, 2014년 6회(유엔총회, 안보리 2회 포함), 2015년 7회, 2016년 2회인데, 이중 12회는 2014년 11월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안보리에 회부하기로 결의된 이후 발송된 것이다. 이를 통해, 강제력을 가진 안보리에 북한인권문제가 회부되는 것에 대해서 김정은 정권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서한을 통해서 다음의 3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남한이 제안국으로 참여한 인권이사회,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와 그 결의의 산물인 COI,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인권서울사무소는 인권의 정치화, 선별화, 이중기준의 산물로서,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고 주권과 존엄을 짓밟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⁷²⁾ 둘째, 남한을 인권폐해지대로 만든 박근혜 정부가 북한 주민들을 유인 납치해 가는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⁷³⁾ 셋째, 북한인권상황을 안보리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유엔총회 결의의 근거인 COI보고서가 신동혁과 같은 핵심 탈북자들의 허위증언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한다.⁷⁴⁾

북한은 서한과 함께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대표 발언을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북한 대표의 주요 발언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북한 대표 발언의 주요내용

	발언자	주요 발언 내용
2013.3.21. (25차 인권이사회)	서세평 유엔 대사	▷남한정부는 국가보안법으로 시민의 인권과 자유를 말살 ▷북한인권문제 제기는 독립국가의 주권에 간섭하는 것
2015.3.27. (28차 인권이사회)	리수용 외무상	▷탈북자의 증언이 거짓으로 판명났으므로 결의는 무효 ▷북한인권문제라는 것은 인권법주를 벗어난 정치공세
2016.3.23. (31차 인권이사회)	리수용 외무상	▷적대세력들이 인권을 구실로 북한을 공격하고 있음 ▷탈북자들이 사실을 조작하고, 국제공동체를 속이고 있음
2013.10.1. (68차 유엔총회)	박길연 외무 부상	▷인권보호 미명하에 자행되는 주권 침해, 내정 간섭 반대 ▷서방식 가치관으로 일부 국가 인권을 문제시하지 말 것
2014.9.27. (69차 유엔총회)	리수용 외무상	▷남한은 군통수권을 미국에 통째로 맡기고 있음 ▷북한의 주권을 인정치 않고 인권문제 제기하는 것은 위선
2015.10.1. (70차 유엔총회)	리수용 외무상	▷유엔총회와 안보리가 조작된 증거로 북한인권 문제삼음 ▷남한의 자그마한 도발로도 남북관계가 냉각될 수 있음
2016.9.23. (71차 유엔총회)	리수용 외무상	▷북한 인권문제제기는 북한체제를 말살해 보려는 시도 ▷미국이 적대시하는 나라가 ‘인권문제국’으로 분류됨

인권이사회 발언 출처: 유엔 Web-TV. / 유엔총회 발언 출처: 『로동신문』.

72) 유엔문서 A/HRC/22/G/4, A/HRC/25/G/6, A/HRC/29/G/7

73) 유엔문서 A/HRC/26/G/2, A/HRC/32/G/6, A/HRC/32/G/7

74) 유엔문서 A/HRC/28/G/4, A/HRC/28/G/7, A/69/616-S/2014/849

위의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 인권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2014년 유엔총회 결의 이전에는, 서세평 유엔대사와 박길연 외무부 부상이 각각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대표발언을 했다. 하지만, 2014년 유엔총회결의를 전후하여 북한은 직급도 높고 외교능력도 뛰어난 리수용 외무상을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파견하여 발언하도록 했다. 발언의 내용도 2013년에는 남한의 국가보안법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 인권문제 관여를 주권침해라고 비난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2014년 이후에는 남한에 대해 군 통수권을 미국에 의존하는 비자주적 국가라고 언급했으며,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제기는 북한 체제 자체를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탈북자들의 거짓증거에 기초해서 북한인권결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한인권결의는 무효라고 강조한다.

IV. 결론 - 남북한 전략평가와 시사점

본론에서 박근혜 정부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압력중심의 인권문제화 전략’과 이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선전 중심의 물거품 전략’을 전략목표, 세부목표, (국내적, 국제적) 전략수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결론으로 이러한 박근혜 정부와 김정은 정권의 전략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에 기초하여 문재인 정부에 주는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박근혜 정부의 ‘압력중심의 인권문제화 전략’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 할 수 있다. 첫째,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 하겠다’는 선언과 달리, 북한인권과 북한 핵문제를 연계시켰다. 즉, 북한이 ‘진정성을 바탕으로 비핵화의 길로 나아온다면’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다⁷⁵⁾는 것이다. 이로인해 박근혜 정부는 2016년 4차, 5차 북핵 실험 이후 대북 민간단체 지원과 유엔 기구를 통한 지원을 중단시켰으며, 2016년 9월 함경북도에 최악의 홍수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북한당국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핵실험을 할 것이 아니라 민생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하면

75) “핵 안보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결과,” 2014년 3월 26일.

<<http://www1.president.go.kr/news/speech.php>>.

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거부했다. 둘째, 북한 김정은 정권은 정권이 북한주민의 인권보장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김정은 정권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시켜야 할 목표로 설정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박근혜 정부가 실행한 ‘김정은 정권 변화를 위한 국내외적 압박’을,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내부 단결을 강화하면서 인권을 더욱 억압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엔을 통해 북한인권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미국, 일본, 유럽 국가와의 협력에 집중한 반면, 러시아와 중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 대표들은 ‘안보리’라는 곳이 인권을 논의하는 장소가 아닐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을 논의하게 되면 북핵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한반도에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인권 논의를 거부했다.⁷⁶⁾

북한 김정은 정권은 ‘선전 중심의 물거품 전략’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내부 단결과 정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⁷⁷⁾ 하지만, 인권 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의 결의항목 수 그리고, 결의에 찬성하는 국가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4년 12월에는 북한 인권상황이 안보리 의제로 상정되었다. 이와 같이 북한 정권이 목표로 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동정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리고, 4차, 5차 북핵 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심화되었고, 북한 주민들의 사회권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남북한 전략 평가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수립에 3가지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치, 군사 영역의 경성이슈들(hard issues)과 경제, 인권 영역의 연성이슈들(soft issues)⁷⁸⁾을 엄격히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 특히, 북한 내 취약계층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들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집행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취약계층별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취약계층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⁷⁹⁾ 그리고,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

76) 유엔문서 S/PV.7830.

77) 2015년 탈북한 탈북자 A와의 인터뷰

78) 변창구,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통일전략』, 제 15권 3호(2015), pp.159-160.

79)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22.

도적 지원이 재개 될 수 있도록 대북접촉 승인 요건을 완화시켜야 한다.

둘째, 북한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엔, 서방국가들과 인권대화를 재개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먼저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남북 접촉을 통해 ‘DMZ목함지뢰사건’ 해결 수준⁸⁰⁾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5.24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북한 특별경제구역에 대한 공동개발 등을 논의하여야 하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친선 스포츠 경기 및 학술 교류, 북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 및 실습 사업, 학생 간 교류, 시민단체 간의 인적 대화와 교류가 시작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⁸¹⁾

마지막으로, 차기정부는 북한인권개선을 위하여 미국 등 서방국가들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 러시아의 도움 없이는 북핵 문제 해결도 어렵고, 유엔 총회와 안보리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도록 김정은 정권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먼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 중 5개국인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한편,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북한이 인권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권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 논문투고일: 2017년 05월 16일 ■ 논문심사일: 2017년 06월 02일 ■ 게재확정일: 2017년 06월 20일

80) 남한은 2015년 8월 4일 발생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하여, 2015년 8월 25일 “(북한이)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 것을 받아들인바 있다.

81) A/HRC/25/63 para. 1222. 1223.

참고문헌

1. 국문단행본

- 국회사무처. 『외교통일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회의록 제 3호(329회 국회)』. 서울: 국회사무처, 2016.
- 국회사무처.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 2호(340회 국회)』. 서울: 국회사무처, 2016.
- 박철현. 『사회문제론-이론, 실태, 지구적 시각』. 서울: 박영사, 2016.
- 새누리당.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서울: 새누리당, 2012.
- 서보혁. 『북한인권 - 이론, 실제, 정책』.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4.
- 최진욱.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통일교육원. 『2014통일교육지침서(일반용)』. 서울: 통일교육원, 2014.
- 통일교육원. 『2014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서울: 통일교육원, 2014.
- 통일교육원. 『2016통일교육지침서(통합용)』. 서울: 통일교육원, 2016.
- 통일부. 『통일백서 2013』. 서울: 통일부, 2013.
- 통일부. 『통일백서 2015』. 서울: 통일부, 2015.
- 통일부. 『통일백서 2016』. 서울: 통일부, 2016.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6』. 서울: 통일연구원, 2016.
- 황우여. 『북한인권과 북한인권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보고서』. 서울: 황우여의 원실, 2014.

2. 영문단행본

- Garth S. Jowett, Victoria O'Donnell. Propaganda & persuasion. London: Sage Pub, 2012.
-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Boston : McGraw-Hill, 1979.
- Paul B. Horton et. The Sociology of Social Problems. New Jersey: Prentice Hall, 1977.

3. 국문논문

- 김수암.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인권.”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6월호, (2013).
- 김한균. “북한인권법 제정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형사법 의 신동향』, 제 51호, (2016).
- 변창구.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통일전략』, 제 15권 3호, (2015).
- 이용희. “주체사상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고찰.” 『통일문제연구』, 제 25권 2호, (2013).
- 임상순.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관여전략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 『북한연구학회보』, 제 9권 1호, (2015).
- 정상혁. “북한 핵 선전선동전략 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1권 4호, (2015).
- 제성호. “북한인권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북한인권법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기독교통일학회 제 19차 정기학술심포지엄, (2016년 4월 23일).

4. 기타

-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5권』. 평양: 인문과학사, 1972.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4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김정일. 『김정일선집 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박순서 등. 『대중 정치용어 사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 유엔문서(인권이사회)
- A/HRC/22/G/4 A/HRC/25/63 A/HRC/25/G/6 A/HRC/26/G/2
A/HRC/28/G/4 A/HRC/28/G/7 A/HRC/29/G/7 A/HRC/31/70
A/HRC/32/G/6 A/HRC/32/G/7
A/HRC/WG.6/19/PRC/1 A/HRC/30/G/8
- 유엔문서(유엔총회)
- A/69/616 A/69/639 A/71/439
- 유엔문서(안보리)
- S/PV.7830 S/PV.7573 S/2014/849
- 유엔문서(아동협약위원회, 여성협약위원회)

CEDAW/C/PRK/2-4

CRC/C/PRK/5

“남북협력기금통계(2016년 12월말 현재),”;

<<https://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100&mode=view&page=1&cid=47317>>.

“대통령 연설 자료,” <<http://www1.president.go.kr/news/speech.php>>

“북한 인권 단체들, 한국 대선후보에 공개 질의,” 『미국의 소리』(온라인), 2012년 11월 6일; <<http://www.voakorea.com/a/1540201.html>>

“통일부, 북한이 수해지원 요청해도 지원 어렵다,” 『CBS노컷뉴스』(온라인), 2016년 9월 9일; <<http://www.nocutnews.co.kr/news/4655866>>.

“2015 북한에 관한 한미공동성명,” 2015년 10월 18일;

<<http://www1.president.go.kr/news/overseasTrip/2015/trip2015.php>>.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https://www.state.gov/j/drl/rls/hrrpt/humanrightsreport/index.htm?year=2015&dld=252771#wrapper>>

“United Nations Country Team,”; <<http://kp.one.un.org/country-team>>

『로동신문』.

The Strategy of Park's government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and the Response of Kim Jung-eun Regime

Lim, Sangsoon^{*82)}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and compare the strategy of Park's government for 4 years and the strategic response of North Korean regime. Through the delicate research, I found that Park's government used the 'strategy to mak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international problems' in order to change the Kim Jung-eun regime as well as to solve the human rights issue.

As the response against the South Korean hostile strategy, North Korean authority set the 'bubble strategy' in order to strengthen internal cooperation and legitimacy of the regime as well as to acquire the international support and sympathy.

The lesson I could obtain from this study is that next government, if it would want to improve North Korean people's practical human rights situation, need to increase the humanitarian aid for North Korean normal people, in particular, the underprivileged and the handicapped. In addition, it has to make significant efforts to make better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Koreas.

***Keyword:** North Korean Human Rights, U.N. Human Rights Council, COI, Propaganda, U.N. Resolution

* Assistant Professor, Pyeongtaek University

‘비판적 북한학’ 시론: 사회비판이론의 관점에서

김 원 식*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비판적 북한학의 과제와 학제적 연구 체계 |
| II. 전통이론과 비판이론: 비판이론으로서의 북한학 | V. 나가는 말 |
| III. 비판의 규범적 토대: ‘내재적 초월(Immanent Transcendence)’ | |

[국문요약] 이 글은 북한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과제 및 체계에 대한 나름의 시론적 구상을 ‘비판적 북한학’이라는 표제하에서 제시한다. 이러한 구상을 제시하는 데에서 필자는 비판이론의 역사를 주로 참조했다. 비판이론의 역사가 사회비판이론 일반의 학문적 정체성과 비판의 기준 및 과제 그리고 사회비판을 위한 학제적 연구 기획 등에 대한 나름의 풍부한 경험과 성찰들을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판적 북한학이라는 구상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북한‘학’이 단지 객관적 세계 기술을 목표로 하는 전통이론이 아닌 비판이론의 성격을 가져야만 한다는 점을 밝혔다(II). 다음으로는 ‘내재적 접근’을 둘러싼 기존의 논쟁을 실마리로 삼아서 비판적 북한학이 봉착할 수밖에 없는 비판의 기준 혹은 토대 설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었다(III). 마지막으로 이

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비판적 북한학의 과제와 학제적 연구 체계에 대한 구상을 개략적으로나마 제시해 보았다(IV). 이와 같은 비판적 북한학 구상을 통해서 이 글은 북한학이 비판이론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비판의 규범은 ‘내재적인 동시에 초월적’이어야 하고, 이에 기초한 비판적 북한학의 연구 체계는 대안사회에 대한 해방적 관심의 주도 하에 진행되는 학제적 연구가 되어야 함을 밝혔다.

이러한 비판적 북한학 구상은 북한사회의 부정의 구조와 그에 대한 내부적 비판과 저항의 가능성 및 동력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북한사회의 변화를 전망하는 데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내재적 접근, 내재적 초월, 비판적 북한학, 북한 내부의 비판과 저항

I. 들어가는 말

최근 북한연구학회에서 발간한 『북한연구학회 20년사』는 학회가 이룩한 그간의 성과와 더불어 북한학의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한편에서 북한학의 이론적 체계성과 과학성의 결핍을 지적하면서 학문적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북한학의 지역학적 성격이나 정책학적 성격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¹⁾ 북한‘학’이라고 할 때, 과연 그 ‘학’의 성격은 무엇이며, ‘학’의 영역 속에서 ‘북한’학의 고유성을 규정하는 종차(種差)는 무엇인가? 북한학은 북한이라는 지역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학문인가 아니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는 실천적 혹은 실용적 학문인가? 혹은 북한학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역사학 등 기존 이론 체계를 북한이라는 특수 상황에 적용하여 획득한 학제적 연구 성과물들에 대한 총칭에 불과한 것인가?

북한학에 대해 일정 부분 외부적 관찰자에 지나지 않는 필자로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능력도 없지만, 어쨌든 이런 질문들 자체가 불필요한지도 모른다. 인간의 실천 일반이 그러하듯이 특정한 학문적 실천 역시 어떤 기존의 청사진이나 방법론에 입각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이 봉착한 다양한 구체적 문제 상황을 나름의 방식으로 함께 풀어나가려는 협력적 탐구의 시도와 그 산물에 가까울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서에도 불구하고 북한학의 체계 구축이라는 실천적 목적을 위해 그리고 구체적 연구 활동에 대한 인식론적이고 방법론적인 성찰을 위해서는 각각의 학문의 성격과 방법론, 과제와 체계에 대한 일반론 차원의 고민들을 그저 방기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단상들을 출발점으로 삼아 이 글은 북한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과제 및 체계에 대한 나름의 시론적 구상을 ‘비판적 북한학’이라는 표제 하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아래에서 이러한 구상을 제시하는 데에서 필자는 비판이론의 역사를 주로 참조해 보고자 한다.²⁾ 비판이론의 역사가 사회비판이론 일반의 학문적 정체성과 비판

1)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연구학회 20년사 1996-2016』, 2016.

2) 여기서 비판이론은 주로 프랑크푸르트학파 전통을 의미한다. 프랑크푸르트학파는 1923년 사회연구소 설립 이후 오늘날까지 사회철학 주도의 학제적 연구를 통해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적 진단과 대안 제시를 모색해 왔다. 프랑크푸르트학파에 대한 소개는 연구모임 사회비판과 대안,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테제들』, 사월의책, 2012 참조.

의 기준 및 과제 그리고 사회비판을 위한 학제적 연구 기획 등에 대한 나름의 풍부한 경험과 성찰들을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이를 위해서 먼저 북한‘학’이 단지 객관적 세계 기술을 목표로 하는 전통이론이 아닌 비판이론의 성격을 가져야만 한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2). 다음으로는 ‘내재적 접근’을 둘러싼 기존의 논쟁을 실마리로 삼아서 비판적 북한학이 봉착할 수밖에 없는 비판의 기준 혹은 토대 설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룬다(3).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비판적 북한학의 과제와 학제적 연구 체계에 대한 구상을 개략적으로나마 제시해 볼 것이다(4). 이와 같은 비판적 북한학 구상을 통해서 이글은 북한학이 비판이론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비판의 규범은 ‘내재적인 동시에 초월적’이어야 하고, 이에 기초한 비판적 북한학의 연구 체계는 대안 사회에 대한 해방적 인식관심(emanzipatorische Erkenntnisinteresse)의 주도 하에 진행되는 학제적 연구가 되어야 함을 밝힐 것이다.³⁾

II. 전통이론과 비판이론: 비판이론으로서의 북한학

전통적으로 서구에서 ‘학문’ 혹은 ‘이론’은 객관성과 보편성을 그 본질적 특징으로 삼아왔다고 할 수 있다. 이론이라는 단어의 고대적 어원 자체가 ‘본다(theorein)’는 말에서 나왔으며, 그리스 고전 철학의 학문적 이상 역시 조화로운 세계의 질서에 대한 투명한 관조에 있었다. 이러한 전통은 근대적 학문의 이상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다. 근대 자연과학은 자연세계를 지배하는 객관적인 인과적 법칙과 질서를 밝히는 것을 그 목표로 삼아왔으며, 근대의 인문사회과학 역시 예를 들면 뉴턴이 이룩한 자연과학적 성과를 동경하면서 그 방법을 빌어 자신의 영역 내에서도 그와 같은 이론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⁴⁾

물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투명한 객관성에 대한 학적 이상은 일종

3) 초기 하버마스는 경험적-분석적 학문, 역사적-해석학적 학문, 비판을 지향하는 학문을 각각 구별하고 이들 각각의 학문 영역을 주도하는 근본적인 인식관심으로 기술적, 실천적, 해방적 인식관심을 제시하였다. Jürgen Habermas, *Technik und Wissenschaft als 'Ideologie'*, Suhrkamp, 1969, p.155 이하 참조.

4) 뉴턴의 연구 방법이 근대철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정병훈, “고전적 경험론의 방법과 그 성과”, 철학연구학회 편, 『철학연구』, 32호, 1993 참조.

의 실현 불가능한 목표로 보인다. 과학철학의 영역에서는 과학적 인식의 역사 구축성이 쿤의 패러다임론을 통해 제기되었으며, 논리실증주의자들이 객관적 이론 구성을 위한 출발점으로 간주하였던 경험적 소여가 이론에 의존할(theory-laden)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지적되었다.⁵⁾ 한편 해석학의 전통 속에서는 딜타이에 의해 객관적 법칙에 대한 인과적 ‘설명(Erklärung)’을 목표로 하는 자연과학의 경우와 달리 정신과학의 경우는 ‘이해(Verstehen)’를 목표로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⁶⁾ 이외에도 로티와 같은 현대의 철학자들은 투명한 ‘자연의 거울’과 같은 인식이라는 본질주의의 이상이 불가능함을 주장하였고, 심지어 오늘날 포스트주의자들의 경우는 보편적 합리성이나 규범은 원리적으로 성립 불가능하다고 까지 주장하기도 한다.⁷⁾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식 혹은 이론이라는 전통적인 학적 이상에 대한 이러한 반성은 초기 비판이론의 전통 속에서도 발견된다. 1세대 비판이론 그룹을 주도했던 호르크하이머는 잘 알려진 그의 논문 ‘전통이론과 비판이론(1937)’을 통해 객관성과 실증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학적 이상이 가지는 근본적 한계를 비판하면서 당대의 실증주의 흐름에 맞서는 비판이론의 출발을 선언하였다.⁸⁾ 이를 통해 그는 당대의 실증주의를 포함하여 세계와 사회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목표로 하는 ‘전통이론’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지배 관심을 은폐한 채 결국 현존하는 불의와 지배에 대한 순응만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이제 사회이론은 객관적주의적이고 순응적인 이러한 학문이해를 넘어 사회현실에 대해 비판적이고 해방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역사적 현실이란 인간 실천의 산물이고 그런 한에서 현존하는 사회적 불의 역시 인간의 집합적 실천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현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 하에서 이후 진행된 ‘실증주의’ 논쟁에서도 비판이론가 그룹들은 실증주의의 성립 불가능성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또한 비판이론 2세대인 하버마스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인간의 인식을 주도하는 세 가지 근본적인 인식관심(기술적 관심, 실천적

5) 토마스 S. 쿤, 김명자 옮김, 『과학혁명의 구조』, 동아출판사, 1992.

6) 박순영, “행위하는 인간-빌헬름 딜타이의 사회과학 이론”,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편, 『현상과 인식』, 2권 1호, 1978.

7) 리처드 로티, 박지수 옮김, 『철학 그리고 자연의 거울』, 까치, 1998.

8) M. 호르크하이머, 조창섭 옮김, 『철학의 사회적 기능』, 전예원, 1983.

관심, 해방적 관심)을 분류하고, 오늘날 비판이론은 해방적 관심에 의해 인도되어야만 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⁹⁾

물론 객관적이고 투명한 학문의 이상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논의들이 구체적인 학문실천에서 추구해야할 일반적이고 실용적인 의미에서의 객관성이나 보편성 그 자체를 거부하는 주장들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학문적 실천에서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통해 이론을 구성하고 각각의 이론적 주장과 가설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검증하는 과정 자체는 언제나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성찰들이 직접적으로 문제 삼는 차원은 학문 실천의 실용적 차원이라기보다는 학문 자체에 대한 메타적 자기이해의 방식이며,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학문에 대한 전통적인 학적 이상이 가지는 이데올로기적 왜곡 효과를 문제 삼고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만 한다.

거칠게 살펴본 이러한 논의들은 먼저 오늘날 북한‘학’ 역시 단지 북한사회에 대한 그 어떤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식이라는 학적 이상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학적 이상 자체가 존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학이 인간의 행위를 포함하는 사회현상을 다루는 일종의 사회과학이라는 점, 나아가서는 북한학이 이를 테면 ‘분단현실 혹은 분단체제’를 그저 기술하는 것을 넘어 통일과 같은 미래지향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북한학은 전통이론이라기보다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관심을 가지는 일종의 ‘비판이론’이어야만 할 것이다.¹⁰⁾ 비판적 북한학은 북한지역에 대한 객관적 기술이나 경험적 연구를 넘어 북한사회 내에 현존하는 불의 나아가서는 분단체제에서 기인하는 불의를 극복하기 위한 해방적 인식관심에 의해 인도되어야만 한다. 북한학이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넘어 북한사회 내부의 불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관심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면, 나아가서 북한학이 분단체제에서 기인하는 한국사회 내부의 불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관심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면, 그런 한에서 북한학은 비판적 북한학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직접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북한연구 활동의 차원이라기보다는 북한학 자체의 학문적 자기이해의 차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북한학 연구가 어떠한 학문적 자기이해를 전제로

9) Jürgen Habermas, *Erkenntnis und Interesse*, Suhrkamp, 1973.

10) 분단체제론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한 평가로는 박순성, “한반도 분단현실에 대한 두 개의 접근”, 비판사회학회 편, 『경제와 사회』, 통권 제94호, 2012 참조.

진행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학문적 자기이해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가 구체적인 북한연구 활동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학문적 자기이해를 가지는가 하는 것은 구체적 연구 활동의 방향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호르크하이머가 당대 실증주의적 연구경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유 역시 실증주의적 학문 이해에 기초한 사회과학 연구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증주의적 학문 이해에 기초한 제반 사회과학 연구는 결국 현존하는 지배와 억압, 불의를 은폐한 채 인간을 도구화하고 착취하는 기존 지배질서를 정당화 하는 데에 기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후 비판이론 전통 속에서 해방적 관심 혹은 의사소통 합리성에 대한 요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근본적인 이유 역시 인간과 세계를 도구화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인식 혹은 지식의 차원을 넘어 해방과 상호인정을 지향하는 비판적 인식의 존립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¹¹⁾

그렇다면, 북한학을 이와 같이 일종의 비판이론으로 규정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먼저 북한학을 일종의 비판이론으로, 즉 비판적 북한학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북한학 연구를 배후에서 주도하는 인식관심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 성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북한학 연구를 배후에서 추동하고 있는 근원적 인식관심은 과연 무엇일까? 북한학이 일종의 지역학으로 규정된다면, 지역학 자체의 학문적 유래가 보여주었던 일종의 ‘지배 욕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우리의 북한학이 일종의 정책학으로 규정된다면, 북한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에 대한 욕구 혹은 (흡수) 통일에 대한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혹은 그간 많이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우리의 북한연구는 반공주의 혹은 서구중심주의의 지향을 이미 깊이 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만일 북한학이 북한지역에 대한 가치중립적 연구로 스스로를 규정한다면, 실증주의가 그러했던 바와 같이 그것은 결국 현존하는 분단체제의 문제나 북한사회 내부의 불의, 즉 지배와 억압을 은폐하는 데에 오히려 기여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북한학을 비판적 북한학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와 같은 북한학 자체의 학문적 자기이해에 대한 근본적 성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성찰 속에서 결국 우리가 다시 봉착하게 되는 문제는 그

11) 이에 대해서는 김원식, 『하버마스 읽기』, 세창출판사, 2015, p.97 이하 참조.

렇다면 비판적 북한학을 주도하는 인식관심은 도대체 무엇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다. 비판적 북한학이 지배관심이나 실증주의적 자기이해를 넘어 북한 사회 자체에 대한 내재적 이해와 비판적 인식을 목표로 한다면, 그러한 비판적 인식 관심의 내용과 기준은 과연 무엇이어야만 하는가?

Ⅲ. 비판의 규범적 토대: ‘내재적 초월(Immanent Transcendence)’

1. 내재적 비판의 가능 근거

앞서 우리는 북한학이 전통이론과 구별되는 일종의 비판이론으로 규정되어야만 한다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 경우 비판적 북한학이 전제하는 비판의 보편적 기준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그러한 기준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관점과 기준으로 북한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아가서 정당하게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외부자인 우리의 관점 혹은 그 어떤 초월적인 보편자의 관점에서, 아니면 북한사회가 내세우는 이념이나 북한 주민들이 제기하는 비판적 요구에 입각해서? 사실 북한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기준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북한학계 내부에서 진행되었던 방법론 혹은 인식론 논쟁에도 일정부분 투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80년대 말 이후 진행된 북한연구 방법론과 관련된 논쟁에서 진보 성향의 일군의 학자들은 반공의식에 사로잡혀 자유민주주의 이념만을 갖대로 북한을 외부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평가하는 기존의 북한연구 경향에 맞서 북한사회 자체의 논리에 따라 북한사회를 내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해야만 한다는 소위 ‘내재적 접근법’을 주장하였다.¹²⁾ 북한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벗어나서 북한사회 내부의 시선으로부터 북한의 현실에 경험적으로 접근하고 나아가서는 그 성과 역시 정당하게 평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들의 시도는 외부의 시선과 기준에서만 북한사회를 바라볼 때 나타나는

12) 과거 동독 연구와 관련된 내재적 접근 및 초월적 접근의 논쟁 맥락에 대해서는 이국영, “독일 내재적 접근의 한국적 수용과 오해”, 평화문제연구소 편,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50호, 2008 참조.

일정한 인식의 왜곡과 북한사회의 ‘타자화’라는 문제를 지적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 북한사회 나아가서는 북한주민을 지배나 극복의 대상 혹은 ‘타자’로만 규정하는 관점을 넘어서 북한주민들을 우리와 동등한 주체 혹은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이들의 내재적 접근법이 북한의 현실을 미화하고 북한의 현실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접근한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해서 내재적 접근법의 지지자들은 내재적 접근이 외재적 접근법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거나 내재적 접근과 외재적 접근을 결합한 소위 ‘내재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방식으로 이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내재적 접근이 비판적 접근을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필요한 경우는 보편적 규범에 입각한 외재적 접근 혹은 비판 역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¹³⁾ 예를 들어 강정구에 따르면, “권력세습, 민주화 등의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는 북한의 내적 논리로는 객관적인 설명이나 비판을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외재적 접근법을 사용함으로써 설득력이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¹⁴⁾ 또한 이와 유사하게 이종석은 충분한 내재적 이해를 전제로 외재적 기준에 입각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한다.¹⁵⁾

필자가 보기에 이 논쟁과 관련하여 북한 문제를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대립이나 양극화된 우리사회의 ‘북한관’과 같은 배경적인 문제들을 접어둔다면, 이론적인 차원에서 논쟁의 관건은 결국 ‘내재적’ 접근과 ‘비판적’ 접근의 결합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데에 있을 듯하다. 예를 들어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데서는 내재적 접근 태도를 취하고, 그에 대해 ‘평가’할 때는 혹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재적인 비판적 태도를 취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내재적인 동시에 비판적인’ 그 어떤 접근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일까? 예를 들어 수령주의의 논리와 이념에 따라서 북한체제의 성과를 내재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면서 동시에 동일한 논리와 이념에 입각해서 북한의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또한 설사 그런 접근이 가능하다

13) 내재적 접근법을 둘러싼 북한학계 내부 논쟁의 전개 과정 및 공과 전반에 대한 평가는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연구 방법론』, 한울, 2008. 내재적 접근에 대한 비판은 강정인, “북한연구 방법론: 재론”,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현대북한연구』, 창간호, 1998 참조.

14) 강정구, “연구방법론: 우리의 반쪽인 북한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까?”, 『북한의 사회』, 을유문화사, 1990. p.26

15)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p.23.

고 해도 북한연구의 주체인 ‘우리’는 과연 그러한 평가에 머물러야만 하는 것일까?

우선 분명해 보이는 것은 필요에 따라 내재적 접근과 외재적 접근을 절충적으로 병용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령 북한의 수령제와 같은 권력구조에 대한 평가에서 외재적 접근을 허용한다면, 내재적 접근이 본래부터 지적하고자 했던 북한의 타자화의 문제, 서구중심적인 외부적 관점에 입각한 자의적 평가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단 외재적 접근을 이렇게 허용하기 시작하면 사실상 어디까지가 내재적 접근이 필요하고 어디까지가 외재적 접근이 필요한지 그 경계 설정 자체도 점차 불명확해질 수 있다.¹⁶⁾

또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외재적 평가는 북한사회 내부의 구체적인 비판과 저항의 동력을 이해하는 데에서도 한계에 봉착하게 되기가 쉽다. 예를 들어 전적으로 외부적인 가치와 규범을 북한사회 비판의 척도로 삼는다면, 우리는 북한사회 내부의 자기비판과 저항의 동력을 그 자체로, 당사자의 관점에서 포착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보편적 규범을 상정하지 않고 단지 내재적인 관점만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적절한 비판의 관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사정이 이렇다면 결국 우리가 봉착한 문제는 북한사회에 대한 ‘내재적인 동시에 비판적인(초월적인)’ 비판의 규범을 과연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데로 다시 귀착될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사회와 북한주민을 그저 외부적 평가의 대상으로 타자화하지 않으면서 내재적인 시선에서 그 사회 자체를 이해하고 비판하며 나아가서 북한사회 변혁의 내적 동력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사실 북한연구 방법론을 둘러싸고 진행된 내재적 접근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에서는 북한 사회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와 비판적 평가의 차원만이 강조되었을 뿐, 비판의 차원을 북한주민들에 의한 북한사회 변혁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하여 논의하지는 않아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 북한 연구자들의 내재적 비판이 가능한 궁극적 근거는 결국 연구대상인 북한사회 자체 내부의 비판적 잠재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사회의 내적 요구와 당사자인 북한주민들의 요

16) 이러한 논점에 대해서는 강정인, “북한연구 방법론: 재론”, p.27.

구를 떠난 내재적 비판이 성립할 근거는 없다. 연구대상 자체의 내적 모순 혹은 북한 주민이라는 당사자들의 요구를 떠나서 단지 관찰자인 연구자 관점에서 제기되는 비판을 과연 우리가 내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따라서 결국 연구자들의 내재적 비판이 가능한 궁극적 근거는 북한사회 자체의 내적인 요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연구자들의 비판이 북한사회 자체의 요구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러한 비판은 아무리 그것이 내재적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토대를 상실하거나 외재적 비판에 머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만일 북한 연구가 외재적인 접근에 머물지 않고 진정 내재적 비판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러한 비판은 결국 북한사회에 내재하는 비판적 잠재력과 당사자들의 요구에 대한 고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연구를 떠나서도 사회비판 일반이 가능하고 필요한 근거 역시 결국 사회 자체의 요구, 다시 말해 현존하는 지배와 억압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 자체의 운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비판을 사회변혁의 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피한 귀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비판’하는 것도 언제나 현존하는 지배와 억압, 즉 불의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내재적 초월

사실 사회비판의 규범적 토대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의식, 즉 ‘내재적 초월(Immanent Transcendence)’에 대한 요구는 사회비판이론의 역사에서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되고 고민되어 온 주제라고 할 수 있다.¹⁷⁾ 우리가 한 사회를 비판하고 나아가서 변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회 자체에 내재하며 실천적인 영향력과 정당성

17) ‘내재적 초월’은 본래 존재론적 혹은 신학적 문제 상황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현실 초월적인 동시에 현실에 분유되어 존재한다고 규정되었으며, 기독교의 신은 이 세계를 초월하여 존재하지만 동시에 세계의 질서에 내재하거나 혹은 작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대에 이러한 내재적 초월의 구조는 이성비판의 맥락에서도 반복되는데, 이성의 자기비판은 이성 자체에 내재하는 동시에 자기를 넘어서는, 즉 초월하는 이성을 전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의 자기의식은 나(Me)를 대상화하는 자아, 즉 대상으로서의 나와는 구별되는 주격 나(I)를 다시 전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내재적 초월의 구조를 사회이론 차원으로 가져오면, 사회비판의 주체는 사회에 내재하는 동시에 현존하는 불의한 사회를 넘어서는, 즉 초월하는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규범이 가지는 일반적 성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당위적 규범은 한편으로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기존 질서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불의한 현실을 넘어서려 할 것을 명령한다는 점에서 내재적인 동시에 초월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을 가지는 동시에 해당 사회의 불의한 현 상태를 초월,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먼저 확보해낼 수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저 내재적이기만 한 근거는 비판과 변혁의 기초가 될 수 없으며, 그저 초월적이기만 한 근거는 현실 변혁의 실천적 동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 사회의 불의를 진단하고 나아가서 이를 변혁하고자 하는 사회비판이론 일반에게 내재적 초월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비판이론의 전통에서 본다면, 내재적 초월의 요구는 단지 북한사회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이나 평가의 문제를 넘어 북한사회 변혁의 규범적 토대를 구축하고 설정하는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비판의 전통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시기에는 이와 같은 내재적 초월의 문제가 비교적 손쉽게 해결될 수 있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경우 현존하는 노동계급의 해방적 요구 자체에 사회를 비판하고 변혁할 수 있는 근거가 여실히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노동계급의 투쟁 속에 이미 자본주의적 사회질서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사회 건설의 요구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사회비판이론의 과제는 단지 이러한 ‘내재적이고 초월적’인 노동계급의 요구들을 명료하게 서술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의 필연적 몰락과 사회주의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역사철학적 확신 속에서 현존하는 노동계급의 요구 속에 내재적 초월의 근거가 경험적으로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¹⁸⁾

그러나 이후 산업사회의 계급 분화를 통해 단일한 거대 주체로서의 노동계급이 소멸하고, 역사적 필연에 의한 사회주의로의 이행이라는 역사철학적 희망도 사라지게 되면서, 내재적인 동시에 초월적인 사회비판의 규범을 과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 상황은 첨예화되기 시작한다. 만일 현존하는 특정 계급이나 주체가 사회변혁의 명시적 주체가 될 수 없다면, 현존 사회에 대한 ‘내재적 초월’의 근거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상황은 비판적 북한학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북한사회 내부에 그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그 어떤 계급적 거대 주체를 상정할 수 있는가? 우리는 북한사회의 미래를 역사철학적인 그 어떤 필연성에 의해 재단

18) 악셀 호네트, 문성훈 옮김, 『사회주의 재발명』, 사월의책, 2016의 1, 2장 참조.

할 수 있을까? 북한 지배층에 반대하여 대안사회를 건설하고 요구할 그 어떤 주체로서의 북한 인민이 오늘날 북한사회에 현존하는가? 혹은 남북 분단 체제의 지배세력에 저항하여 통일조국을 건설하려는 그 어떤 민중적 저항의 단일 주체를 우리가 여전히 상정할 수 있을까? 과연 통일은 우리 민족사의 역사철학적 필연성에 의거한 미래라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통일에 관한 각종 국민의식 조사의 결과들을 본다면, 그리고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이라는 사건이 주변 강대국들 사이의 현실적 패권 경쟁의 상황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역사적 현실에 주목한다면, 이런 질문들에 단순히 긍정의 답을 내리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¹⁹⁾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북한사회 비판과 변혁을 위한 내재적인 동시에 초월적인 규범을 확보할 수 있을까?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대한 역사철학적 확신이 사라지고 생산패러다임에 기초한 계급주의를 포기한 이후 현대 비판이론의 역사 속에서 사회변혁을 위한 내재적 초월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제안된 비판적 대안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도식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인간의 본원적인 심리적 충동 구조 속에 현존하는 사회질서에 대한 근원적 비판의 요구가 뿌리내리고 있다(카스토리아디스/마르쿠제). 둘째, 인간의 언어적이고 도덕적인 상호작용 속에 현존 사회질서에 대한 비판과 변혁의 요구가 뿌리내리고 있다(하버마스/호네프). 셋째, 현존 질서에 대한 일탈적이고 자기창조적인 행위 양식들 속에 사회비판의 요구가 내재해 있다(푸코/버틀러).²⁰⁾

이러한 이론적 시도들은 노동계급과 같은 특정한 거대 주체를 상정하거나 역사철학적인 필연성을 통한 새로운 미래의 도래를 주장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러한 시도들은 인간의 심리적인 본원적 충동 혹은 합리적인 언어 소통 능력이나 도덕적 울분 속에 내재하는 사회비판과 변혁의 근원적 가능성과 토대들을 포착하고자 한다. 오늘날 사회비판의 근원적 가능성은 해방을 지향하는 인간의 심리적 충동이나 합리적인 언어적 의사소통, 도덕적 상호작용, 자기창조 행위 등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에 근거하여 예를 들어 마르쿠제는 68혁명의 반소비주의와 반권위주의

19) 이와 관련하여서는 한승완, “한국 국민 정체성의 ‘민주적 반추’와 통일 문제”, 사회와철학연구회 편, 『사회와 철학』, 제22집, 2011, p.50 이하 참조.

20) 이러한 도식화 시도는 악셀 호네프의 설명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낸시 프레이저·악셀 호네프, 김원식·문성훈 옮김, 『분배냐 인정이나?』, 사월의책, 2014, pp.359-364.

운동 속에서, 하버마스는 시민사회 공론장의 민주주의적 잠재력 속에서, 호네트는 도덕적 울분에 기초한 다양한 인정투쟁들 속에서 오늘날 사회비판의 규범적 토대와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판적 북한학의 경우는 북한사회에 대한 내재적인 동시에 초월적인 비판의 규범적 토대를 과연 어디에서부터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손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저항이나 소요 속에서 실제로 표출되고 있는 북한주민들 자신의 비판적 요구들을 경험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각종 규칙 위반 행위, 집단적 저항, 일상적 불만들 속에서 내재적이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비판과 저항의 요구와 규범들을 확인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이다.²¹⁾ 그렇지만 이러한 접근의 경우는 무엇보다 먼저 현재의 억압적인 북한 상황에서는 주민들의 불만이 정상적으로 표출되기가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는 억압되거나 잠재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또한 일정 부분 다양한 경험적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다양한 요구들을 어떤 일반적인 규범적 요구로 집약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울 수가 있다.

비판이론 내부에서 내재적인 동시에 초월적인 비판규범을 찾고자 하는 시도들 역시 단순히 사회비판의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근거나 사례들, 예를 들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저항운동이나 사회운동의 경우만을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아니다. 비판이론 내부의 시도들은 이런 우연적인 경험적 근거들의 발견을 넘어서 한 사회가 유지되고 재생산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규범적 질서 속에서 현존하는 사회질서의 변혁을 요구하는 그런 비판의 규범적 토대들을 찾고자 한다. 예를 들면 우리사회에서 시민운동 단체들이 이런저런 구체적 비판이나 저항을 시도한다고 해서 그것들 자체가 직접적으로 내재적인 동시에 초월적인 사회비판의 보편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관건은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재생산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한에서 이미 실질적인 정당성과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어떤 규범적 요구들 속에서 현재의 불의한 상황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규범적 단초를 발견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공동체는 소위 자유와 평등 그리고

21) 북한의 작업장 내에서의 일상적 저항들에 대한 고찰은 조정아, “북한의 작업장 문화: 순응과 저항의 스펙트럼”, 통일연구원 편, 『통일정책연구』, 14권 2호, 2005, p.317 이하 참조. 북한사회 내의 보다 일반적인 일상적 저항에 대한 고찰로는 조정아 외, 『북한주민의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010의 III장 참조.

우애와 같은 민주주의 사회의 보편적 질서를 반드시 전제할 수밖에 없으며, 불완전한 형태로나마 이러한 규범적 질서를 실현하고 있고 이를 그 공동체 존립의 명분으로 하고 있다. 그런 한에서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들은 현실 속에서 결코 완벽하게 실현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내재적 규범들에 기초하여 현존하는 억압과 지배, 각종 불의와 불평등을 정당하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²²⁾

이는 비판적 북한학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비판적 북한학이 내재적인 동시에 초월적인 비판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왜곡된 형태로 남아 내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근본적 규범, 예를 들자면 ‘인민의 자주성’과 같은 규범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들을 노예화하고 배제하는 현재의 불의한 상태가 비판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비판적 북한학의 경우 역시 내재적인 동시에 초월적인 규범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수준에서 북한사회를 정당화하고 지탱하는 규범들 자체로부터 현재 북한사회의 현실을 비판하고 사회변혁을 추동할 수 있는 규범들을 재구성해낼 수 있어야만 한다. 결국 북한사회 자체의 비판과 변혁의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내재적인 동시에 초월적인 비판의 규범들을 설득력 있게 구체화 하는 것이야말로 비판적 북한학의 규범이론적 출발점이 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당강령과 북한헌법은 물론 수령절대주의를 정당화 하는 주체사상과 10대 원칙 나아가서는 여전히 북한사회에서 잠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유교적 규범 등 북한사회 전반을 규제하는 다양한 제도화된 규범들 속에서 내재적인 동시에 초월적인 비판 규범의 핵심을 재구성해낼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시론적 시도에 불과한 이 글에서 이러한 재구성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지는 못하지만, 마지막으로 비판규범의 설정과 관련하여 한 가지 문제만을 간단히 생각해 보고자 한다. 비판적 북한학이 설정하고자 하는 이러한 내재적인 동시에 초월적인 규범이 과연 규범적 보편주의와 양립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북한사회의 이해와 비판을 위해 재구성한 내재적인 동시에 초월적인 비판의 규범은 과연 북한연구자인 ‘우리의 규범’ 혹은 인권이나 민주주의와 같은 오늘날의 보편적

22)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시도로는 문지영, “한국의 근대국가 형성과 자유주의: 민주화의 기원과 전망에 대한 재고찰”,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정치학회보』 39집 1호, 2006 및 강정인 외,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책세상, 2002, 제3장 자유민주주의와 민주화 운동 참조.

규범들과 과연 공존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우리가 추구하는 비판적 북한학의 내재적인 동시에 초월적인 비판의 규범을 전적으로 ‘북한적인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먼저 북한체제를 지배하는 제도적 규범들이 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영향과 무관한 것도 아니며,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제도의 규범들이 구체제의 규범들과 전적으로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또한 비록 폐쇄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북한사회에는 수많은 외부 정보와 문화들이 유입되고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들 역시 분명 북한주민들의 규범의식과 규범해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아마도 오늘날 북한사회를 지배하는 규범들 역시 과거의 영향사와 외부의 영향을 통해 역동적인 변화와 해석의 장 속에 놓여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사회와 주민들의 삶과 의식 속에서 내재적으로 작용하는 구체적 규범들은 분명 북한의 복잡한 역사와 현실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매우 ‘두터운’ 것들일 것이다.²³⁾ 예를 들어 자주나 민주 등의 가치나 규범 역시 북한의 고유한 역사와 현실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규범들이 동시에 현재 북한의 현실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는 규범으로 재구성되고 추상화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보편적 규범으로의 지향을 이미 내장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자주성에 기초한 평등과 민주주의의 규범과 같은 것 말이다. 그리고 만일 우리 북한 연구자들이 매우 ‘얇은’ 형태의 인권이나 민주주의, 정의 이론과 같은 보편적 규범들만을 전제로 북한사회에 접근할 수 있다면, 비판적 북한학이 제시하는 내재적인 동시에 초월적인 규범은 아마도 이러한 형태의 보편적 규범들과 공존하고 소통할 수도 있을 것이다.²⁴⁾ 물론 이러한 주장은 아직은 하나의

23) 여기서 두터운thick과 얇은thin이라는 구별은 특정한 윤리적 개념이나 규범이 구체적인 내용을 얼마나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통상 얇은 윤리적 개념이란 정의나 올바름과 같은 추상적, 보편적 개념을 지시하며, 두터운 윤리적 개념이란 자비나 성실성 등 특정한 공동체의 문화와 보다 깊은 관련성을 갖는 구체적 개념들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Michael Walzer, *Thick and Thin: Moral Argument at Home and Abroa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4 참조.

24) 물론 우리는 자주성과 같은 철학적 근본 개념 역시 북한의 철학적, 정치적 담론 속에서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줄고, “‘자주성의 역설’에 대한 성찰: 주체철학의 자주성 개념과 근대적 자유”,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연구학회보』, 제20권 제1호, 2016 참조.

‘예견’ 혹은 ‘기대’일 뿐이며,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북한학의 내재적인 동시에 초월적인 규범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나 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IV. 비판적 북한학의 과제와 학제적 연구 체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사회에 대한 내재적인 동시에 비판적인 접근을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북한사회 현실 속에 실제로 작동하며 그 사회를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동시에 그 잠재력이 현실 속에서 왜곡되고 있는 그런 핵심적 규범을 재구성해 내는 일이다. 아직까지 이러한 재구성 작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지는 못했지만, 여기서는 예를 들어 인민의 ‘자주성’ 혹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같은 규범을 잠정적으로 북한사회 비판을 위한 내재적인 동시에 초월적인 규범의 후보군으로 상정해보도록 하자.

먼저 자주성이라는 개념은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의 핵심 개념인 동시에 북한의 주요 정책을 정당화 하는 근본적 토대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북한사회의 내재적인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인민의 자주성이 현재 북한 사회에서 심각하게 억압 혹은 왜곡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에 따라 자주성이라는 개념은 북한사회에 대한 내재적 비판을 위한 규범으로 기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²⁵⁾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되었든 ‘자강력제일주의’가 되었든 현재 북한의 주요 정책들은 모두가 인민의 자주성 확립을 그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북한 인민들은 자주성 회복을 자신들의 저항 혹은 권리 확보를 위한 규범적 근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이념 역시 현재 북한은 자신들의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만이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라면서 현 체제를 정당화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이러한 민주주의 개념은 북한 내부의 특정 기득권 세력은 물론 수령제 자체에 대한 저항의 규범으로 작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²⁶⁾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이 북한사회에 내재적인 동시에 초월적인 규범들을 확보해

25) 주체사상이 가진 비판적 잠재력과 관련하여서는 서재진, 『주체사상의 이반』, 박영사, 2006.

26) 북한 민주주의론에 대한 내재적 비판의 시도로는 방인혁·손호철, “내재적 접근법에 기초한 북한의 민주주의론 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편, 『민주주의와 인권』, 제13권 2호, 2013.

낼 수 있다면, 이제 비판적 북한학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규범들이 북한의 구체적인 사회생활 영역들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그러한 규범이 가지는 잠재력이 어떤 방식으로 왜곡, 침해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일이 될 것이다.²⁷⁾ 모든 사회적 저항과 갈등이 내재적인 동시에 초월적인 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도덕적 울분을 통한 일종의 ‘인정투쟁’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을 참조한다면, 이러한 작업은 향후 북한사회 변혁을 위한 내부적인 비판과 저항의 잠재력을 분석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²⁸⁾

이러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단지 규범적 재구성 작업을 넘어서 북한의 구체적인 사회생활 영역들 속에서 이러한 규범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이러한 핵심적 규범 혹은 이상들이 어떻게 구현되고 작동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그러한 규범적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왜곡되고 침해되고 있는지 역시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제반 사회과학의 경험적이고 실증적이며 동시에 학제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근본 규범들이 북한 사회의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전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역사학 등의 학제적 연구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주성이라는 이념이 북한의 어떠한 구체적 역사적 경로 속에서 등장하였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이라는 원리가 정치와 경제 영역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이념이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무엇인지 나아가서는 이러한 이념이 어떤 원인과 경로를 통해 왜곡되고 있는지에 대한 학제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²⁹⁾ 물론 이러한 작업은 그것이 북한사회에 대한 내재적 비판과 사회변혁에 대한

27) 이러한 규범적 사회비판의 구상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이나 행위들이 규범적 원칙들에 의해 주도된다는 특정한 사회이론적 전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이론적 접근은 예를 들어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영역에 관한 체계(system)이론적 접근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관해서는 연구모임 사회비판과 대안편, 『베스텐트 한국판 2014』, 사월의책, 2015의 p.38 이하 참조.

28) 악셀 호네트, 문성훈·이현재 옮김, 『인정투쟁』, 사월의책, 2011.

29) 이러한 연구의 한 사례로는 Axel Honneth (Hg), *Befreiung aus der Mündigkeit*, Campus, 2002 참조. 이 연구는 진보적 이념으로 등장했던 규범, 예를 들면 업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나 진정성에 대한 규범들이 현대 자본주의의 변화 과정 속에서 각각의 사회적 영역들 속에서 역설적인 방식으로 어떤 사회적 왜곡 효과를 초래하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역시 예를 들면 인민대중의 자주성이나 집단주의와 같은 규범들이 북한사회의 역사적 변화 과정 속에서 어떤 역설적 결과들을 산출하고 있는지를 추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해방적 관심의 주도 하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보면, 단지 경험적 사회과학 분과들 사이의 학제적 연구를 넘어서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비판적 북한학 구상이 제시하는 이러한 학제적 연구 체계 구상은 사회비판이론의 학제적 연구 모델에도 상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비판이론의 과제는 해당사회의 불의와 병리현상에 대한 비판적 진단과 대안 제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1) 비판의 규범 확보를 위한 ‘규범이론’, 2) 해당사회의 불의와 병리현상 진단을 위한 ‘사회이론’, 3) 대안 및 실천 방안 제시를 위한 ‘실천이론’이 요구된다. 사회비판이론은 해당 사회 내부의 내재적 초월의 근거를 확보하고, 이러한 비판 규범의 주도 하에 현존하는 불의와 병리현상을 진단하며 나아가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에 따라 프랑크푸르트학과 1세대는 일찍이 비판적 사회철학 주도의 학제적 연구 기획을 시도한 바 있으며, 이러한 학제적 연구 경향은 오늘날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³⁰⁾ 이 그룹은 세대를 거치며 다양한 방식으로 당대 사회비판을 위한 규범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규범에 기초하여 현대 자본주의의 현실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 문화적 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이러한 학제적 연구의 사례로 비판이론 2세대의 대표자인 하버마스의 연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현대사회 비판의 규범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의사소통 합리성과 담론윤리 이론을 제시하였으며, 현대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체계와 생활세계 개념에 기초한 ‘생활세계 식민화’ 테제를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시민사회 공론장에 기초한 ‘토의 민주주의’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의사소통 행위 속에서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 내재하는 동시에 그 현실을 비판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고, 체계와 생활세계 개념을 핵심으로 하는 이층위적 사회이론에 입각하여 오늘날 민주적 잠재력이 억압되고 침해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 공론장의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실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비판이론의 학제적 연구 시도를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¹⁾

30)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연구모임 사회비판과 대안 편, 『베스텐트 한국판』, 사월의책 참조. 『베스텐트 한국판』은 2012년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의 동명 기관지의 주요 논문들을 번역 소개하는 동시에 한국판 기획특집을 추가하여 발간되고 있다.

31) 하버마스의 작업 전반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연구모임 사회비판과 대안,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테제들』의 6장 하버마스 부분 참조.

이러한 사례를 비판적 북한학의 경우에 적용해보면,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작업은 바로 비판을 위한 내재적 규범의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앞서 언급한 내재적 초월의 근거를 확보하는 작업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서 관건은 북한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내재적인 동시에 초월적인 비판 규범을 설득력 있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³²⁾

다음으로 이러한 비판 규범을 전제로 북한사회 내에 존재하는 각종 불의와 병리 현상을 진단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이론적 연구들이 이와 결합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북한사회 현실과 관련된 이러한 경험적 연구들은 이미 북한학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다양한 분과 연구들에 의해서 상당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판적 북한학의 사회이론 측면에서의 과제는 새로운 형태의 경험적 연구의 진행과 더불어 이러한 기존의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북한사회 불의와 병리현상에 대한 비판적 진단이라는 측면에서 재구성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정치, 경제, 문화 영역 내에 존재하는 북한사회의 다양한 지배와 억압 나아가서는 불의를 밝혀내는 학제적 연구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대안 제시를 위한 실천이론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북한사회에 대한 비판적 진단에 입각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방안, 즉 운동론 혹은 정치이론이 필요하다. 아마도 기존의 대북정책 관련 연구나 북한민주화 방안 연구 그리고 통일론 연구 등이 이러한 실천적 부분의 과제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판적 북한학의 경우는 이러한 남북관계 차원의 접근에 앞서서 북한사회 내부의 저항 주체와 동력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작업들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결국 비판적 북한학의 학제적 연구 체계는 해방적 관심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제반 사회과학 분과의 학제적 연구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북한사회에 대한 내재적 비판과 더불어 이를 기초로 하는 북한사회 변혁을 위한 실천론을 제시하는 것을 그 궁극적 과제로 삼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그 성격상 특정한 개인이나 학문분과가 감당할 수 있는 작업

32) 물론 사회비판을 위한 규범을 어떻게 확보하고 정당화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현대철학 일반의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어떤 일의적인 해결 방안이 손쉽게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이론적 접근들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며, 오히려 이러한 다양한 논의들 속에서 새로운 접근들이 시도되는 것들이 비판적 북한학 구상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천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비판의 방식을 둘러싼 현대철학의 논의 상황에 대해서는 김원식, 『배제, 무시, 물화』, 사월의책, 2016의 2장 참조.

이라기보다는 학제적인 연구 프로젝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비판이론 전통 속에서 이러한 연구 기획은 역사적 환경과 조건의 변화와 연구자들의 세대교체를 이어나가며 근 한 세기에 걸쳐 수행되어 왔다. 비판적 북한학의 경우 역시 이는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며, 여기서는 단지 이러한 연구의 발상 및 개요 정도를 사회비판이론의 역사와 관점을 참조하여 시론의 차원에서 구상해 볼 수 있을 뿐이다.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사회비판이론의 발상과 그 역사를 참조하면서 ‘비판적 북한학’이라는 연구기획에 대한 일종의 시론적 구상을 개략적으로 개진해보았다. 이러한 구상을 통해 문제제기 차원에서 먼저 다루어보고자 했던 것은 북한학 연구를 주도하는 학문적 자기이해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학문적 자기이해에 대한 성찰은 오늘날 북한학연구를 배후에서 주도하는 인식관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필자는 북한학 연구가 그 규범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증주의적 자기이해 나아가서는 그 배후에서 ‘북한’을 타자화 하려는 일종의 ‘지배관심’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그간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을 강조한 입장들이 제기했던 문제의식과도 일정부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연구가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선입견에 의한 왜곡이나 지배욕으로부터 벗어나 북한사회를 내재적 논리에 따라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북한에 대한 타자화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사회에 대한 우리 연구자들의 내재적 이해를 넘어서서 북한주민들을 우리와 ‘동등한 주체’로 상호 인정해야만 한다. 여기서 북한주민들을 동등한 주체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을 단지 연구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북한 사회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입장 속에서 북한주민들을 북한사회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주체로 인정할 때, ‘내재적인 동시에 비판적인’ 북한연구도 비로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내재적인 동시에 비판적인 접근에서의 관건은 내재적인 이해와 외재적인 혹은 비판적인 평가의 병렬적 결합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북한사회 내부의 동학으로부터 그 사회를 이해하고 나아가서 비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보아야만 한다. 북한 연구자의 내재비판적인 접근이 궁극

적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은 결국 북한사회 나아가서는 북한주민이라는 당사자가 가지는 비판적 잠재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비판적 북한학의 과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정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사회를 지탱하고 정당화 하는 동시에 현 사회에 대한 비판 혹은 변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규범적 토대를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둘째는 이에 기초하여 북한사회 전반의 불의와 병리현상을 사회이론 차원에서 해명하고 분석하는 작업이며, 셋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이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규범이론은 물론 제반 사회과학의 긴밀한 학제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과연 이러한 연구 기획 혹은 구상이 오늘날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한 필자가 지적하듯이,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북한사회가 내부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은 것이 사실이지만, 포용정책도 대북압박정책도 북한사회의 근본적 변화, 즉 개혁개방이나 붕괴를 유도하지는 못했다.³³⁾ 북한사회는 지금까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상당부분 변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향후 북한사회의 변화 전망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북한사회 내부의 고유한 변화 동력에 더욱 주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판적 북한학 구상은 북한사회의 부정의 구조와 그에 대한 내부적 비판과 저항의 가능성 및 동력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향후 북한사회의 변화를 전망하는 데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실용적 측면을 넘어서도 비판적 북한학 구상이 북한사회의 현실과 그 내적 변화 동력에 대한 이해 전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이러한 구상은 그야말로 하나의 구상에 불과하다. 사회비판이론의 역사가 보여주었던 바와 같이 다양한 차원의 고민과 학제적 연구 시도들의 성과들이 축적된 이후에나 이러한 기획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본격적 논의와 평가도 비로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 논문투고일: 2017년 04월 26일 ■ 논문심사일: 2017년 06월 07일 ■ 게재확정일: 2017년 06월 16일

33) 박형중, “북한은 왜 ‘붕괴’도 ‘개혁·개방’도 하지 않았을까?”, 북한대학원대학교 편, 『현대북한 연구』, 16권 1호, 2013.

참고문헌

1. 국문단행본

- 강정구, 『북한의 사회』, 을유문화사, 1990.
- 강정인 외,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책세상, 2002.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연구 방법론』, 한울, 2008.
- 김원식, 『배제, 무시, 몰화』, 사월의책, 2016.
- 김원식, 『하버마스 읽기』, 세창출판사, 2015.
- 낸시 프레이저·악셀 호네트, 김원식·문성훈 옮김, 『분배냐 인정이냐?』, 사월의책, 2014.
- 리처드 로티, 박지수 옮김, 『철학 그리고 자연의 거울』, 까치, 1998.
-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연구학회 20년사 1996-2016』, 2016.
- 서재진, 『주체사상의 이반』, 박영사, 2006.
- 악셀 호네트, 문성훈 옮김, 『사회주의 재발명』, 사월의책, 2016.
- 악셀 호네트, 문성훈·이현재 옮김, 『인정투쟁』, 사월의책, 2011.
- 연구모임 사회비판과 대안,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테제들』, 사월의책, 2012.
- 연구모임 사회비판과 대안, 『베스텐트 한국판 2014』, 사월의책, 2015.
-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조정아 외, 『북한주민의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010.
- 토마스 S. 쿤, 김명자 옮김, 『과학혁명의 구조』, 동아출판사, 1992.
- M. 호르크하이머, 조창섭 옮김, 『철학의 사회적 기능』, 전예원, 1983.

2. 영문단행본

- Habermas, Jürgen. Technik und Wissenschaft als 'Ideologie', Suhrkamp, 1969.
- _____. Erkenntnis und Interesse, Suhrkamp, 1973.
- Honneth, Axel.(Hg), Befreiung aus der Mündigkeit, Campus, 2002.
- Walzer, Michael. Thick and Thin: Moral Argument at Home and Abroad, University of Nortre Dame Press, 1994.

3. 국문논문

- 강정인, “북한연구 방법론: 재론”,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현대북한연구』, 창간호, (1998).
- 김원식, “‘자주성의 역설’에 대한 성찰: 주체철학의 자주성 개념과 근대적 자유”,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연구학회보』, 제20권 제1호, (2016).
- 문지영, “한국의 근대국가 형성과 자유주의: 민주화의 기원과 전망에 대한 재고찰”,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정치학회보』 39집 1호, (2006).
- 박순성, “한반도 분단현실에 대한 두 개의 접근”, 비판사회학회 편, 『경제와 사회』, 통권 제94호, (2012).
- 박순영, “행위하는 인간-빌헬름 딜타이의 사회과학 이론”,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편, 『현상과 인식』, 2권 1호, (1978).
- 박형중, “북한은 왜 ‘붕괴’도 ‘개혁·개방’도 하지 않았을까?”, 북한대학원대학교 편, 『현대북한연구』, 16권 1호, (2013).
- 방인혁·손호철, “내재적 접근법에 기초한 북한의 민주주의론 연구”,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편, 『민주주의와 인권』, 제13권 2호, (2013).
- 이국영, “독일 내재적 접근의 한국적 수용과 오해”, 평화문제연구소 편,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50호, (2008).
- 정병훈, “고전적 경험론의 방법과 그 성과”, 철학연구회 편, 『철학연구』, 32호, (1993).
- 조정아, “북한의 작업장 문화: 순응과 저항의 스펙트럼”, 통일연구원 편, 『통일정책연구』, 14권 2호, (2005).
- 한승완, “한국 국민 정체성의 ‘민주적 반추’와 통일 문제”, 사회와철학연구회 편, 『사회와 철학』, 제22집, (2011).

An Introductory Study on ‘Critical North Korean Studies’: From a Viewpoint of Critical Social Theory

*Kim, Woen Sick**

This thesis aims to propose an introductory study plan, called critical North Korean studies, which concerns the scientific identity, task, and system of North Korean studies. For this, I referred mainly to the history of critical social theory. Because I think that the history of critical social theory contains abundant experiences and reflections on the scientific identity of critical social theory in general, the normative standard of social critique and the project for interdisciplinary study for social critique.

For this, firstly, I explained that North Korean studies is not a traditional theory, which aims to describe the world objectively, but a kind of critical theory(Ⅱ). Secondly, starting with the existing debates about ‘immanent approach’, I treated the problems of the standard or foundation for critique that critical North Korean studies has to solve inevitably(Ⅲ). Lastly, I proposed the idea about the task and the system of interdisciplinary critical North Korean studies(Ⅳ). By these considerations, I showed that North Korean studies should be a kind of critical theory, the standards of that critique have to be an immanent transcendence, and North Korean studies, based on it, should be an interdisciplinary study, which is guided by emancipatory cognitive interest.

The project of critical North Korean studies may contribute to explain and predict the changes of North Korean society through the studies on the structure of injustices in North Korean society, and on the possibilities and dynamics of the inner critiques and resists by North Korean people themselves.

***Keyword:** immanent approach, immanent transcendence, critical North Korean studies, inner critiques and resists by North Korean people themselves

* Senior Researcher,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마음의 통합을 위한 남북한 주민 의식 비교 :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최 순 미**

목 차

I. 문제제기
II. 선행연구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및 시사점

[국문요약]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살고 있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가 현재 살아 가고 있는 삶에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는 ‘내가 삶에서 성취한 것에 만족한다’, ‘나는 내 성격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건강상태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직장동료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의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남한에서의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남한주민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서는 남한주민의 경제상황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남한주민의 건강 만족도 개선방안 마련, 북한이탈주민의 성취욕구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진학 지원, 남한주민의 경제활동 외 삶 보장, 통합적 마음을 위한 정책적 기획 마련 등의 정책방안을 제안한다.

* 주제어: 마음통합, 삶의 만족도,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3A2043571).

**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연구교수, miya8379@hanmail.net.

I. 문제제기

한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3만 명을 넘어섰다.¹⁾ 그동안 우리 사회는 북한이탈 주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거주지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왔다. 이때, ‘적응’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에 맞추어 알맞게 되는 상태이며, 자연과학에서는 생물이 환경에 맞게 행태적, 생리학적으로 변화되는 일방적인 개념이다. 이를 사회와 인간에 적용하면, ‘적응’은 상호적이고 조화로우며, 때로는 다양성의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권장하는 ‘적응’은 실제 인간 사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구조적 폭력’으로 작용한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기존 학계의 연구 및 정부 정책들은 남한 중심적 사고로 남한에 대한 일방적인 적응을 강요해 왔다는 한계를 지적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남한의 입장에서 북한이탈주민이 특정한 삶과 생각을 가져줄 것을 기대(또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이 상호작용하는 사회 형성 방안의 필요성을 실감케 한다. 특히 우리는 먼저 들어온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 남북한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마음의 통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²⁾ 즉, 체제의 통합만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문제로부터 귀결된 사람의 통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³⁾ 마음의 통합이 중요한 이유는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정치이념이나 가치관의 차이, 개인적 취향이나 감정 등 다양한 요소들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분단 이후 남북한은 이념뿐만 아니라 감정, 사고방식, 가치관 등에서도 ‘차이’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분단의 역사 속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 마음적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면 통일/통합 문제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어려울 것이다.⁴⁾

1) 통일부는 2016년 11월 11일 기준,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 숫자는 30,005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동아일보, “국내 탈북민 3만명 돌파... 올해 1155명 급증,” 2016년 11월 14일.

2) 양계민,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다문화집단에 대하여 지니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9권 3호 (2015); 양계민, 이우영, “북한이탈주민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한주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12권 1호 (2016); 이우영, 구갑우, “남북한 접촉지대와 마음의 통합이론 ‘마음의 지질학’ 시론,” 『현대북한연구』 제19권 제1호 (2016).

3) 김경숙, “남북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심층적 문제로서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분석과 치유 소통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 1.

4) 이우영 외, 『분단된 마음잇기』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6), p. 7.

또한 마음의 통합은 그 차이를 일치시켜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① 서로의 다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② 차이를 인정하며, ③ 다름을 공감하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동안 남북한/통일 분야에서 심리적 통합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역시 제도적, 이념적 통합에 치우쳐 왔다는 한계가 있다.⁵⁾ 특히 기존 학계의 연구 및 정부 정책들이 북한이탈주민의 마음을 알고자 노력하기보다 남한 중심적 사고로 남한에 대한 일방적인 적응을 강요해 왔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두 집단 모두의 마음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살고 있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에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삶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의 문제이자, 주관적 행복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또한 현재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는 향후 한반도 통일을 ‘사람의 통일’, ‘마음의 통합’ 차원으로 논의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글은 남북한주민 마음통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해보고,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본 글은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긍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II. 선행연구

1. 삶에 대한 만족을 설명하는 이론들

삶의 만족도는 삶에 대한 주관적 행복감이라고 할 수 있다.⁶⁾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개인이나 집단이 객관적인 환경이나 삶의 조건들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 심리적인 안녕 상태(well-being),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행복감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삶의 질은 주로 삶의 만족도 지표 등을 통해 측정된다.

5) 위의 책, p. 6.

6) 이성규,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10호 (2014).

20세기 이후, ‘삶의 만족도’라는 가치의 중요성이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인간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의 추상성을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⁷⁾

삶의 만족도와 유사한 개념에는 삶의 질, 행복(감), 주관적 안녕감 등이 있다. 삶을 둘러싼 객관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삶의 질’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주관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이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일부 연구는 주관적 안녕을 삶의 질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 삶의 질을 주관적 안녕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설명하기도 한다.

주관적 안녕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삶의 만족도는 결국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며,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가?’ ‘자신의 삶의 각 요소에 얼마나 만족하느냐?’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삶의 만족도가 지니고 있는 이런 주관적 특성 때문에 기존 연구들은 개인이 현재 삶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또는 불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질문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경험적으로 측정하였다.⁸⁾ 즉,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은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는다.⁹⁾

삶의 만족도 측정 방식을 살펴보면, 초기의 연구에서는 5점 리커트 척도 등을 이용하여 삶의 만족도를 직접적이고 단순하게 측정하였으나,¹⁰⁾ 최근에는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복잡한 측정 방법들이 논의되기도 한다.¹¹⁾ 그러나 심리학과 사회학을 비롯한 여러 사회과학의 기존 연구들은 응답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둘러싼 환경 및 구성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묻는 방법이 이들이 느끼

7) Suh, Eunkook and Ed Diener(1995), “Subjective Well-Being: Issues and Cross-Cultural Research”,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엄자료집』, 1-22.

8) 장승진, “행복의 정치경제학: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한국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제10권 2호 (2011), pp. 43~66; 이양호, 지은주, 권혁용, “불평등과 행복: 한국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제47권 3호 (2013), pp. 25~43.

9) 이양호, 지은주, 권혁용, “불평등과 행복: 한국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제47권 3호 (2013), pp. 25~43; Frey, B. and A. Stutzer.(2001), Happiness and Economics: How the Economy and Institutions Affect Human Well-Bei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0) Andrews, F. and W. Stephen.(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Fordyce, M.(1977), The Happiness Measures: A Sixty-second Index of Emotional Well-being and Mental Health, Edison Community College, Fort Myers, Florida.

11) Pavot, W., E. Diener and E. Suh.(1998), “The Temporal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70, No. 2, pp.340-354.

는 주관적 삶의 만족도 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방법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삶의 만족도 측정지표들은 그 문항이 직접적이고 응답방식이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신뢰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¹²⁾

2.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삶의 만족도는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 여부에서 오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며, 삶의 환경적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성, 심리적 상태, 생애사적 경험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기존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정치적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Helliwell, J 외(2008)는 정부의 특성이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부의 특성을 정부의 효과성, 규제, 질, 법의 지배 및 부패 통제 등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특성을 평가하는 값이 높을수록 그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개인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¹³⁾ 돈 외(Dorn et al)의 연구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한지 오래된 사회일수록(즉, 민주주의 성숙도가 높은 사회일수록)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경제와 관련된 구조적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과 평가 역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있다. 예컨대 경제적 불평등은 삶의 만족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¹⁴⁾ 복지제도가 발달한 국가의 개인

12) Veenhoven, R.(1996), "Developments in Satisfaction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37, No. 1, pp.1-46.

13) Helliwell, J. and H. Huang.(2008), "How's Your Government? International Evidence Linking Good Government and Well-Being",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8, No. 4, pp.595-619.

14) 장승진, "행복의 정치경제학: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한국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 『한국정당학회보』, 제10권 2호 (2011), pp. 43~66; 이양호, 지은주, 권혁용, "불평등과 행복: 한국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제47권 3호 (2013), pp. 25~43; Hagerty, M.(2000), "Social Comparison of Income in One's Community: Evidence from National Surveys of Income and Happ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8, No. 4, pp.764-771;

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¹⁵⁾ 또한 현재 경제상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소득 등 경제적 자원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외부의 충격들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었다.¹⁶⁾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 이외에도 개인의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 결혼 여부, 학력, 직업, 종교 활동과 같은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들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⁷⁾ 결혼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서는 결혼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¹⁸⁾ 직업유무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⁹⁾ 학력 역시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²⁰⁾ 종교의 경우에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정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인이 종교적 신념과 종교 활동 자체를 통해 삶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극복

Radcliff, B.(2001), "Politics, Markets, and Life Satisfac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Human Happin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5, No. 4, pp.939-952; Graham, C., and A. Felton.(2006), "Inequality and Happiness: Insights from Latin America",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Vol. 4, No. 1, pp.107-122.

15) Di Tella, Rafael, R. MacCulloch, and A. Oswald.(2003), "The Macroeconomics of Happines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85, No. 4, pp.809-827; Álvarez-Díaz, A., L. Gonzalez, and B. Radcliff.(2010), "The Politics of Happiness: On the Political Determinants of Quality of Life in the American States", *Journal of Politics*, Vol. 72, No. 3, pp.894-905.

16) Johnson, W., and R. Krueger(2006), "How Money Buys Happiness: Genetic and Environmental Processes Linking Finance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0, No. 4, pp.680-691.

17) 김미령, "북한이탈 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제34권 3호(2007), pp. 19~39; Elison, C., D. Gay, and T. Glass.(1989), "Does Religious Commitment Contribute to Individual Life Satisfaction?" *Social Forces*, Vol. 68, No. 1, pp.100-123.

18) Elison, C., D. Gay, and T. Glass.(1989), "Does Religious Commitment Contribute to Individual Life Satisfaction?" *Social Forces*, Vol. 68, No. 1, pp.100-123; Elison, C.(1991), "Religious Involve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32, No. 1, pp.80-99; Frijters et al., 2004.

19) Near et al., 1980; Elison, C., D. Gay, and T. Glass.(1989), "Does Religious Commitment Contribute to Individual Life Satisfaction?" *Social Forces*, Vol. 68, No. 1, pp.100-123; Dooley et al., 2000.

20) OECD 2011.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²¹⁾

3.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진행되어 온 삶의 만족도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남한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그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분석한 논문들은 대부분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연령이 젊을수록 사회에 대한 적응이 수월하다는 연구²²⁾가 있는 반면, 삶의 만족도와 연령과는 무관하다는 연구도 있다.²³⁾ 남한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하는 경우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²⁴⁾ 결혼을 한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정신적 안정을 높여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도움을 주었다는 연구²⁵⁾가 있었지만, 기혼자가 탈북 과정에서 배우자를 동반하지 못한 경우 자책감으로 인하여 남한에서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²⁶⁾ 또한 남한 사회에서 생활한 기간이 더 길수록 남한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하고 있으며,²⁷⁾ 남한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직장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21) Elison, C., D. Gay, and T. Glass.(1989), "Does Religious Commitment Contribute to Individual Life Satisfaction?" Social Forces, Vol. 68, No. 1, pp.100-123; Abbot et al., 1990; Elison, C.(1991), "Religious Involve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32, No. 1, pp.80-99

22) 윤인진, "탈북과 사회적응의 통합적 이해: 국내 북한이탈 주민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3권 2호(2000), pp. 123~184.

23) 이종아,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24) 이종아,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미령, "북한이탈 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제34권 3호(2007), pp. 19~39.

25) 윤인진, "탈북과 사회적응의 통합적 이해: 국내 북한이탈 주민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3권 2호 (2000), pp. 123~184.

26) 김미령, "북한이탈 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제34권 3호(2007), pp. 19~39.

27) 전우택, "북한이탈주민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제1권 2호 (1997), pp. 109~167; 김미령, "탈북자의 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1호 (2005), pp. 193~271.

직장과 같은 사회생활을 통해 남한 사회에 대한 소속감 및 통합감이 확대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해석하였다.²⁸⁾ 이 밖에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 여가 생활에 참여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도 있다.²⁹⁾

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남한주민 440명과 북한이탈주민 2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국내 전문조사기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사전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구조화된 설문지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5년 4월 한 달 동안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삶의 만족도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활용하였다. 넷째,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한국청소년개발원(2005)에서 만든 삶의 만족도 문항 중, 김신영 등(2006)이 수정·보완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에

28) 김미령, “북한이탈 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제34권 3호 (2007), pp. 19~39.

29) 이순희, “탈북귀순자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송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삶의 만족도 측정지표에 대한 신뢰도는 $\alpha=.837$ 로 신뢰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측정도구의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수	Cronbach's α
삶의 만족도	8	.837

3. 연구문제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남북한 주민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남북한 마음의 통합을 위해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은 무엇인가?

IV. 연구결과

1. 응답자 특성

〈표 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내용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빈도(%)	빈도(%)
성별	남자	224(50.9)	122(44.7)
	여자	216(49.1)	151(55.3)
연령	20대	93(21.1)	81(29.7)
	30대	115(26.1)	67(24.5)
	40대	122(27.8)	82(30.0)
	50대	110(25.0)	42(15.4)
	무응답	0(0.0)	1(0.4)
남한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2(2.8)	30(11.0)
	고등학교 졸업	199(45.2)	128(46.9)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 이상	228(51.8)	98(35.9)
	기타	1(0.2)	17(6.2)

변수	내용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빈도(%)	빈도(%)
종교 활동	1-2회/주	99(22.3)	92(33.1)
	1-2회/월	31(6.9)	29(10.5)
	1-3회/연	56(12.6)	10(3.5)
	기타	3(0.7)	1(0.4)
	무응답	256(57.5)	146(52.5)
월 평균 수입	100만원 이하	20(4.5)	128(46.9)
	101만원-200만원 이하		113(41.5)
	201만원-300만원 이하	52(11.7)	20(7.2)
	301만원-400만원 이하	100(22.5)	4(1.5)
	401만원-500만원 이하	117(26.4)	2(0.7)
	501만원 이상	151(33.8)	1(0.4)
	무응답	5(1.1)	5(1.8)
정치 성향	진보적	119(26.8)	60(22.0)
	중도	240(54.0)	134(49.1)
	보수적	81(18.2)	74(27.1)
	무응답	5(1.1)	5(1.8)
합계		440(100%)	(100%)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남한주민은 남자 50.9%, 여자 49.1%, 북한이탈주민은 남자 44.7%, 여자 55.3%로 남북한주민의 남녀 성비를 비교적 유사한 쿼터를 차지하도록 구성하였다.

연령 변수는 20대, 30대, 40대, 50대로 나누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도록 조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한주민은 20대가 21.1%, 30대가 26.1%, 40대가 27.8%, 50대가 25.0%로 40대가 가장 많고 20대가 가장 적었다. 북한이탈주민은 20대가 29.7%, 30대가 24.5%, 40대가 30.0%, 50대가 15.4%, 무응답 0.4%로 40대가 가장 많았고 50대가 가장 적었다.

남한 학력의 경우, 남한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2.8%, 고등학교 졸업 45.2%,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 이상이 51.8%, 기타 0.2%로 나타나,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 이상이 과반수가 넘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11.0%, 고등학교 졸업이 46.9%,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 이상이 35.9%, 기타 6.2%로 나타나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았다.

종교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남한주민의 경우, 주 1-2회

22.3%, 월 1-2회 6.9%, 연 1-3회 12.6%, 기타 0.7%, 무응답 57.5%로 나타났다. 북한 이탈주민의 경우, 주 1-2회 33.1%, 월 1-2회 10.5%, 연 1-3회 3.5%, 기타 0.4%, 무응답 52.5%로 나타나, 종교가 있는 응답자들 가운데서는 주 1-2회 종교활동을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월 평균 수입의 경우 개방형 질문으로 물어보았다. 그 결과 남한주민의 경우 200만원 이하 4.5%, 201만원~300만원 이하가 11.7%, 301~400만원 이하가 22.5%, 401만원~500만원 이하가 26.4%, 501만원 이상이 33.8%, 무응답이 1.1%로 나타나, 월 평균 수입이 501만원 이상인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100만원 이하 46.9%, 101만원~200만원 이하가 41.5%, 201만원~300만원 이하가 7.2%, 301만원~400만원 이하가 1.5%, 401만원~500만원 이하가 0.7%, 501만원 이상이 0.4%, 무응답이 1.8%로 나타나, 10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응답자가 46.9%로 가장 많았다. 월 평균 수입 문항에서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7.4%가 200만원 이하의 월 평균 수입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남한주민과의 임금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정치 성향은 남한주민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26.8%가 진보적이라고 응답하였고, 중도가 53.9%, 보수적인 응답자가 18.2%, 무응답이 1.1%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2.0%, 중도가 49.1%,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7.1%, 무응답이 1.8%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중도적 정치 성향을 가진 응답자가 과반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 남북한주민 삶의 만족도 비교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사용하였다. <표 3>는 삶의 만족도 전체에 대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차이를 비교한 표로 남한주민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3.58,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3.49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003이고 유의확률이 0.046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삶의 만족도

변인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삶의 만족도	3.58	.682	3.49	.527	2.003	.046*

*p<0.05, **p<0.01

<표 4>은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각 하위 문항에 대해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차이를 비교한 표이다.

〈표 4〉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 하위문항 비교

변인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내가 삶에서 성취한 것에 만족한다	3.63	.961	3.27	.794	5.470	.000**
나는 내 성격에 대해 만족한다	3.59	.993	3.45	.774	2.099	.036*
나는 건강상태에 대해 만족한다	3.23	1.206	3.50	.835	-3.624	.000**
나는 가족/친척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3.68	.985	3.57	.757	1.634	.103
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3.77	.893	3.70	.691	1.023	.307
나는 직장동료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3.63	.910	3.50	.714	2.220	.027*
나는 거주하는 지역에 만족한다	3.62	1.026	3.49	.739	1.889	.058
나는 내가 속한 직장에 만족한다	3.54	1.105	3.46	.732	1.078	.277

*p<0.05, **p<0.01

‘내가 삶에서 성취한 것에 만족한다’를 살펴보면, 남한의 평균은 3.63, 북한의 평균은 3.27으로 나타났으며, t값이 5.470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내 성격에 대해 만족한다’를 살펴보면, 남한의 평균은 3.59, 북한의 평균은 3.4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099이고 유의확률이 0.036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건강상태에 대해 만족한다’를 살펴보면, 남한의 평균은 3.23, 북한의 평균은 3.5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624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직장동료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를 살펴보면, 남한의 평균은 3.63, 북한의 평균은 3.5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220이고 유의확률이 0.027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나는 가족과 친척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나는 가족과 친척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나는 거주하는 지역에 만족한다’, ‘나는 내가 속한 직장에 만족한다’의 문항에서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가.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독립변수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								
	B	SD	Beta	t	p	VIF	DW	R ²	F
성별	.233	.122	.158	1.906	.059	1.016			
연령	-.005	.000	-.027	-.267	.790	1.514			
학력	.105	.031	.289	3.387	.001*	1.075			
종교	-.054	.038	-.126	-1.416	.159	1.170	1.675	.128	2.697*
월수입	.005	.000	.092	.956	.341	1.378			(.012)
정치성향	.015	.049	.026	.310	.757	1.036			
경제상황	.071	.076	.079	.937	.351	1.041			

*p<0.05, **p<0.01 ad R²=.080

해당 모형의 F값은 2.69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 이 결정계수와 같은 것으로 변수 요소에 의해서 설명 될 수 있는 종속변수의 총 변동 비율을 의미한다. R²은 12.8%로 설명력이 좋다고 볼 수 있다. VIF는 10 이하이므로 다중공성문제가 없다. Durbin-Watson의 결과 2에 가까움으로 자기상관이 없으므로 잔차의 독립성조건이 만족된다. 그러므로 변수에 이상은 없다. 유의수준은 0.05(95%)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0.05보다 높으면 유의하지 않는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에는 학력이 유일하게 유의미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살펴보면, B의 값이 0.10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387이고 유의확률이 0.001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베타의 값이 0.289이므로 학력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만족도는 0.289(28.9%) 증가하게 된다.

나. 남한주민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역시 남한주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모형 역시 모형 F값이 4.75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 이 결정계수와 같은 것으로 변수 요소에 의해서 설명 될 수 있는 종속 변수의 총 변동 비율을 의미한다. R^2 은 15.5%으로 높은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VIF는 10 이하이므로 다중공성문제가 없다. Durbin-Watson의 결과가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으므로 잔차의 독립성조건이 만족된다. 그러므로 변수에 이상은 없다. 유의수준은 0.05(95%)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0.05보다 높으면 유의하지 않는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6〉 남한주민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독립변수	남한주민의 삶의 만족도								F
	B	SD	Beta	t	p	VIF	DW	R^2	
성별	-.278	.553	-.035	-.502	.616	1.035			
연령	-.036	.025	-.104	-1.483	.140	1.062			
학력	.040	.274	.010	.146	.884	1.090			
종교	-.230	.153	-.103	-1.502	.135	1.006	1.332	.155	4.752** (.000)
월수입	-.052	.173	-.022	-.303	.762	1.148			
정치성향	-.407	.335	-.086	-1.214	.226	1.067			
경제상황	-3.070	.625	-.353	-4.913	.000**	1.104			

* $p < 0.05$, ** $p < 0.01$ ad $R^2 = .123$

남한주민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요인은 ‘경제상황’ 한가지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제상황 요인을 살펴보면, B의 값이 -3.07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4.913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베타의 값이 -0.353이므로 경제상황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만족도는 -35.3(-35.3%) 감소하게 된다.

V.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남북한주민의 마음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문제 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고 있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와 그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는 ‘내가 삶에서 성취한 것에 만족한다’, ‘나는 내 성격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건강상태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직장동료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의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내가 삶에서 성취한 것에 만족한다’는 문항에서는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취’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남한과 상이한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아온 북한이탈주민의 성취에 대한 수동성과 자본주의 자율적 경쟁구도에 익숙한 남한주민의 성취에 대한 익숙함이 두 집단의 만족도 차이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나는 직장동료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는 문항에서도 남한주민의 만족도가 북한이탈주민의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이 직장생활과 같은 일 상에서 느끼는 차별감으로 설명될 수 있다.³⁰⁾ 즉, 북한이탈주민들은 늘 2등국민으로 대하는 한국 사회 전반에 차별감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에서 드러나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자신의 성격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보다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사회가 북한이탈주민에게 이 사회에 대한 적응을 요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은 자기 자신의 성격 등에 대한 부정을 경험하면서 성격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객관적인 건강상태가 더 좋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상대적 만족도인 것으로 추측된다. 즉, 북한에 비해 더 나은 남한의 의료 환경과 혜택 등으로 인해 북한에 있을 때보다 더 건강한 상태인 점에 만족하는 것이다. 아울러 응답자의 연령

33) 남북하나재단, 『2014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2014).

분포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 중 가장 고령자에 해당하는 50대 이상의 분포를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은 전체 응답자의 15%가 50대 이상이고, 남한주민은 전체 응답자의 25%가 50대 이상이다. ‘건강’은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므로³¹⁾ 남한주민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북한이탈주민보다 낮은 것은 고령자 분포가 높고, 이에 따른 건강상태가 더 부정적이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하위 문항 중 ‘나는 건강상태에 대해 만족한다’는 문항을 제외한 문항에서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남한주민의 보다 다소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투입한 독립변수 중에서는 ‘학력’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한에서의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와도 일치하는데, 최종 학력이 경제활동 진입 장벽과 직업, 경제력 등을 좌우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남한주민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서는 투입한 독립변수 가운데 ‘경제상황’이라는 변수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남한주민의 경제상황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력과 삶의 만족도가 비례하게 나타났던 기존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로, 잉글하트의 주장으로부터 그 원인을 추측해볼만 하다. 잉글하트는 개인의 동기적 위계에 대한 매슬로우의 이론을 기반으로, 경제적 풍요가 충분하게 배분되지 못하는 시대에는 경제적인 안정이나 부와 같은 물질적인 것들이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었지만,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되면 점차 시민들은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정신적인 만족이라든가 자아의 실현과 같은 탈물질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보다 높은 선호를 갖게 되었다고 주장한다.³²⁾ 즉, 경제상황이라는 변수는 사람들의 삶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여가, 소득분배, 환경 등에 대한 고려가 없는

31) 홍성희, “노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6권 1호 (1998), pp. 107-123.

32) 최순미, ‘마음의 통합을 위한 남북한주민 가치관 비교: 물질-탈물질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0권 1호 (2017), pp. 219-249.

개념이므로 경제수준이 높아질 때, 현실은 외려 여유를 빼앗기면서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2. 정책적 제언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이들의 가치관을 동질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하고 그 영향요인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는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통일 한국에서 남북한 주민 모두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 남한주민의 건강 만족도 개선방안

본 연구 결과에서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난 항목을 살펴보면, 남한주민의 삶의 만족도 중 가장 낮은 결과를 보인 항목은 건강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염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건강과 의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정보 환경은 때로는 ‘건강에 대한 광범위한 걱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도 많이 유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책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개인별 맞춤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나. 북한이탈주민의 성취욕구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보다 부정적으로 나타난 항목은 삶에서 성취한 것에 대한 만족도, 내 성격에 대한 만족도, 직장에서의 관계 등이다. 그 중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 중 가장 낮은 결과를 보인 항목은 삶에서 성취한 것에 대한 만

죽도이다.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내 자본주의 경쟁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 받는 현실 속에서 차별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성취도를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예컨대 북한이탈주민에게 국내외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한다면 사회적 약자를 돕는 과정에서 성취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면 차별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동등한 인격체로 동등한 행동에 참여하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 북한이탈주민의 진학 지원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학력’이 삶의 만족도에 대해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다양한 자아실현의 욕구를 갖고 있다. 이들은 북한과 제3국에서 살아온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기도 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학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언어의 이질화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제공하는 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가 낮으며, 절대적인 진학 정보의 양도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탈북 청소년에 대한 코디네이터 교사의 역할 등을 확대하고, 특히 진로와 진학에 대한 멘토링이 더욱 활발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력과 비례하는 학업능력을 갖추기 위해, 사이버 맞춤 학습 서비스 제공 등의 정책적 실천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라. 남한주민의 경제활동 외 삶 보장

남한주민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상황이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남한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경제력이 높아지면 삶의 질이 높아져야 삶에 대한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가족·공동체가 무너지고 출산을 포기하며, 건강을 담보로 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 늘 문제가 되는 근로기준법은 기준이 될 뿐, 기업의 재량에 따라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면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삶을

침해한다. 이처럼 경제활동 외의 삶을 보장하는 문제는 정책적 개입을 통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장기적인 호흡에서 고민해보면, 남한주민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이다.

마. 통합적 마음을 위한 정책적 기획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대한민국 내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두 집단은 대한민국이라는 한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며 마음의 접촉지대를 경험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같은 공간에서도 삶에 대해 각각 다른 마음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응’이라는 미명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까지 동질화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두 집단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삶의 만족도와 같은 마음의 차이를 인정하는 단계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즉 마음의 통합을 위해 통합적 마음을 형성할 수 있는 정책적 기획이 마련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시작하는 작은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논문투고일: 2017년 05월 15일 ■ 논문심사일: 2017년 06월 02일 ■ 게재확정일: 2017년 06월 21일

참고문헌

1. 국문단행본

이우영 외, 『분단된 마음잇기』 서울: (주)사회평론아카데미, 2016.

2. 영문단행본

Andrews, F. and W. Stephen.(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Fordyce, M..(1977), The Happiness Measures: A Sixty-second Index of Emotional Well-being and Mental Health, Edison Community College, Fort Myers, Florida.

Frey, B. and A. Stutzer.(2001), Happiness and Economics: How the Economy and Institutions Affect Human Well-Bei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3. 국문논문

김경숙, “남북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심층적 문제로서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분석과 치유 소통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김미령, “탈북자의 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1호 (2005).

김미령, “북한이탈 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제34권 3호(2007).

양계민,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다문화집단에 대하여 지니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9권 3호 (2015).

양계민, 이우영, “북한이탈주민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한주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12권 1호 (2016).

윤인진, “탈북과 사회적응의 통합적 이해: 국내 북한이탈 주민을 중심으로”, 『현대북

- 한연구』, 제3권 2호(2000).
- 이성규,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10호 (2014).
- 이순희, “탈북귀순자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통일정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양호, 지은주, 권혁용, “불평등과 행복: 한국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제47권 3호 (2013).
- 이우영, 구갑우, “남북한 접촉지대와 마음의 통합이론 ‘마음의 지질학’ 시론,” 『현대 북한연구』 제19권 제1호 (2016).
- 이종아,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장승진, “행복의 정치경제학: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한국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 『한국정당학회보』, 제10권 2호 (2011).
- 전우택, “북한이탈주민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제1권 2호 (1997).
- 최순미, ‘마음의 통합을 위한 남북한주민 가치관 비교: 물질-탈물질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0권 1호 (2017).

4. 영문논문

- Álvarez-Díaz, A., L. Gonzalez, and B. Radcliff.(2010), “The Politics of Happiness: On the Political Determinants of Quality of Life in the American States”, Journal of Politics. Vol. 72, No. 3.
- Di Tella, Rafael, R. MacCulloch, and A. Oswald.(2003), “The Macroeconomics of Happines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85, No. 4.
- Diener, E.(1998), “Subjective Well-Being and Personality”, D. Barone, M. Hersen, V. Van Hasselt ed., Advanced Personality, New York: Plenum.
- Elison, C., D. Gay, and T. Glass.(1989), “Does Religious Commitment Contribute to Individual Life Satisfaction?” Social Forces, Vol. 68, No. 1.
- Elison, C.(1991), “Religious Involve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32, No. 1, pp.80-99; Frijters et al., 2004.
- Graham, C., and A. Felton.(2006), "Inequality and Happiness: Insights from Latin America",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Vol. 4, No. 1.
- Hagerty, M..(2000), "Social Comparison of Income in One's Community: Evidence from National Surveys of Income and Happ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8, No. 4.
- Helliwell, J. and H. Huang.(2008), "How's Your Government? International Evidence Linking Good Government and Well-Being",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8, No. 4.
- Johnson, W., and R. Krueger(2006), "How Money Buys Happiness: Genetic and Environmental Processes Linking Finance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0, No. 4.
- Near et al., 1980; Elison, C., D. Gay, and T. Glass.(1989), "Does Religious Commitment Contribute to Individual Life Satisfaction?" Social Forces, Vol. 68, No. 1.
- Pavot, W., E. Diener and E. Suh.(1998), "The Temporal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70, No. 2.
- Radcliff, B.(2001), "Politics, Markets, and Life Satisfac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Human Happin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5, No. 4.
- Suh, Eunkook and Ed Diener(1995), "Subjective Well-Being: Issues and Cross-Cultural Research",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엄자료집』.
- Veenhoven, R.(1996), "Developments in Satisfaction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37, No. 1.

5. 기타

<동아일보>

A Comparative Study of Perceptions of South and North Koreans for the Unification of Minds: Focusing on the Life Satisfaction*

*Soon Mi, Choi***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the lives of South Korean residents and North Korean refugees living in the same national space called the Republic of Korea (R.O.K.).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indicated as follow:

First, there were notable difference in the life satisfaction of South Korean residents and North Korean refugees in the survey questions 'I am satisfied with what I have achieved,' 'I am satisfied with my personality,' 'I am satisfied with my health condition,' and 'I am satisfied with the relationship with my colleagues.

Second, when focused on the factors impa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the life satisfaction was higher when they had a higher level of education in the R.O.K.

Third, when focused on the factors impa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South Korean residents, the life satisfaction was lower when they were more financially stable.

Based on the results, social/ political/economic measures on various issues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health satisfaction for South Korean residents, supporting the desire to accomplish of North Korean refugees, supporting educ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securing various living conditions other than financial stability for South Korean residents, and preparation of policies for unification of minds.

***Keyword:** Unification of Minds, Life Satisfaction, South Korean Residents, North Korean Refugees, Unification of Societie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4S1A3A2043571).

**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Research Professor, miya8379@hanmail.net.

『북한연구학회보』 발행 규정

I. 일반 규정

1. 북한연구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명칭은 『북한연구학회보』, 영문으로는 North Korean Studies Review로 한다.
2. 논문집 발간은 연 2회로 하며 시기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원칙으로 한다.
3. 이사회는 결정으로 논문집 발간 횟수와 체제 등을 조정할 수 있다.
4. 게재 신청 논문의 심사 의뢰, 논문집 편집 등 제반사항은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5. 편집위원회 구성원은 회장단이 선임한다.
6. 편집이사 및 간사는 임기 내 학회보에 논문 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II. 투고 규정

1. 『북한연구학회보』 투고자는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2. 『북한연구학회보』에 발표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하며,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로 하고, ‘아래아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북한연구학회보』에 게재를 원하는 원고는 1호의 경우 4월 30일, 2호의 경우 10월 31일까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kanks.jams.or.kr>)에 가입 후 접수한다.
4. 제출 원고는 아래의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한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제출된 원고는 3명의 심사자에 의한 익명심사를 거친다.
6. 심사 위원이 수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판정을 받고 이에 응답이 없거나 수정을 거부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7. ‘게재 불가’의 판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신청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8. 논문 제출자 및 게재자의 의무
 - 1) 논문 제출자는 **접수비(1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 2) **게재가 확정된 논문 중**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에는 소정의 게재료(**2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 3) 제출 원고 분량이 제 2항의 규정 초과 시 5매당 1만원씩 추가비용을납부해야 한다.
9. 투고 논문의 원문공개 동의 및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Ⅲ. 심사 규정

1. 편집위원회는 공정한 입장에서 제출된 원고를 관련 전공자 3인(학회 회원이 아닌 경우도 가능)에게 심사의뢰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원고와 논문심사 의뢰서(첨부 1) 및 논문심사 결과통보서(첨부 2)를 심사자에게 전송한다.
3. 심사자는 학회 회원의 의무에 따라 정해진 시일 내에 논문심사 결과 통보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3. 심사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자의 논문심사 결과 통보서를 취합하여 『북한연구학회보』 논문 심사 판정표(첨부 3)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원고 제출자에게 판정내용과 심사 내용을 통보한다.
5. 편집위원회는 ‘게재 불가’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Ⅳ. 편집 규정

1. 『북한연구학회보』는 개별 논문 수록 다음에 영문 목차 및 영문 요약문 순으로 한다.
2. 『북한연구학회보』게재 개별 논문은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
 - 논문제목, 저자명, 목차, 국문요약, 본문, 참고문헌
 - 국문 요약 (500자 이내) 및 영문 요약문에는 5개 정도의 주제어(Key Words)를 첨부한다.
 - 공동 저작인 경우 제1저자 및 공동저자를 구분한다.
 - 저자의 소개는 논문 첫 면 하단에 소속과 최종 학력, 그리고 주요 저작, 연락처(이메일) 등을 기재한다.
 - 필요시 저자 소개 위에 논문의 연구비 수혜, 감사의 글 등을 기재한다.

Ⅴ. 원고집필 방법

1. 본문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한자 등은 첫 번째에 한하여 한글 다음 괄호 안에 기재한다.
2. 본문에서 짧은 인용은 <“ ”>로, 긴 인용은 본문보다 들여쓰기로 하며, 강조의 표시는 <‘ ’>로 한다.
3. 북한연구의 특성상 원문을 인용할 경우가 많은 바, 직접 인용 시 원문 그대로 표기한다.

- 북한 자료는 출판시기에 따라 미세한 변화가 있으므로 『김일성저작선집』, 『김일성 저작집』 등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판년도를 명기한다.
예) 김일성, “인민군대는 공산주의학교이다(1960.8.25),” 『김일성저작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298~299.
- 4. 표나 그림의 상단에 표, 그림의 번호(표 3-3, 그림 2-5)를 부여하고 하단에는 출처 또는 자료라고 쓴 후 완전한 각주양식으로 표기한다.
- 5. 각주의 인명, 서명, 논문명 등은 외국어의 경우 원어대로 표기하고, 국한문 혼용의 경우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주 형식의 범례는 다음과 같다.
 - 처음으로 어떤 저작에 관해 주를 사용할 때는 완전한 양식을 갖추어야 한다. 완전한 양식이란 저자의 이름, 저서의 이름(논문 이름), 그리고 출판에 관한 사항(저서인 경우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논문인 경우 학술지의 이름, 권, 호, <vol. no.>, 학술지의 출판년, 월), 페이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나의 각주에 여러 문헌을 사용할 때는 마침표 없이 <;>로 연결한다.

(1) 단행본

-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 전환기 ‘북한적’ 정치현상의 재인식』(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6), pp. 110~120.
-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p. 55~57.
- 저자의 이름으로 연구기관, 단체, 정부의 기관 등도 사용되며, 편, 편저, 편역, 1인 이외의 공저, 공편 등의 사항을 표기한다.
- 북한연구학회 엮음, 『분단반세기 북한 연구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9), p. 20 참조.
- 박재규 편, 『새로운 북한읽기를 위하여』 (서울: 법문사, 2004), pp. 20~25.
- Chong-Shik Chung and Chong-Wook Chung, eds., *Major Powers and Peace in Korea*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79), pp. 25~34.
- F. Parkinson 저, 정규섭·강원식 역, 『국제관계사상』 (서울: 일신사, 1994), p. 15.

(2) 논문

〈학술지〉

-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명』, 제×권 ×호 (출판년도)
의 양식으로
- 김용현, “로동신문 분석을 통한 북한정치 변화 연구: 1945-1950,” 『북한연구학회보』, 제7권 1호 (2003), pp. 107~110.

- Donald S. Macdonald, "American Imperialism: Myth or Reality?"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0, no. 3 (Fall 1986), pp. 575~583.

〈단행본 수록〉

- 함인희,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치관의 변화: 집단주의의 균열," 박재규 편, 『새로운 북한읽기를 위하여』 (서울: 법문사, 2004), pp. 267~272.
- Chong-Sik Lee, "Stalinism in the East," in Robert A. Scalapino, ed., *The Communist Revolution in As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5), p. 247.

〈학술회의〉

- 저자, "논문제목," 『학술회의 대주제』, 주최 및 학술회의 명 (학술회의 날짜)
- 양문수, "김정일 방중 이후의 남북경협: 북중경협 확대와 한국정부의 과제," 『북한 체제진단과 남북 및 북미관계 전망』, 북한연구학회 2006년 춘계 학술회의 (2006년 3월 31일).

(3) 학위논문

- 류길재, "북한의 국가건설과 인민위원회의 역할 1945~1947"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pp. 10~15.
- Taik-young Hamm, "State Power and Armament of the Two Koreas: A Case Stud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1996), pp. 7~21.

(4) 신문

- 『로동신문』, 2004년 8월 15일.
- *The Korea Times*, April 20, 2003.

(5) 인터넷 자료

- 뉴스 기사의 경우
"우리가 버린 脫北청소년들," 『조선일보』(온라인), 2004년 7월 14일;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407/200407140421.html>>.
- 논문 등의 경우
유호선, "조선후기 유학자들의 불교관," 『불교평론』, 18호 (2004); <<http://www.budreview.com/html/18/18-nondan-yoo-sun-ho.htm>>.
- url을 명시할 때 세미콜론으로 연결, 웹페이지 내에서의 인용위치를 명시하는 것 등은 불필요

6. 첫 번째 표기한 주를 다시 사용할 경우

- (1) 바로 앞번호의 각주를 다시 사용할 경우는 국문은 위의 책, 위의 논문, 위의 글로, 영문은 Ibid.로 처리한다.
- (2) 주 번호상 바로 앞 번호가 아닌 경우는 출판사항을 삭제하고 저자 이름, 저서 및 논문명의 축소로 처리하는 방법을 적극 권장한다.
 -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 p. 22.
 - Suh, *Kim Il Sung*, p. 60.
 - 함인희,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치관의 변화,” p. 270.
 - Macdonald, “American Imperialism,” p. 577.

7. 참고문헌 작성

- (1) 일반적으로 국문단행본, 영문단행본, 국문논문, 영문논문, 기타의 순서로 배열한다.
- (2) 각각은 저자의 이름에 따라 국문의 경우 가나다 순으로, 영문의 경우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 (3) 참고문헌 작성의 기본양식은 각주에서의 십표 대신 마침표가 사용되고 괄호가 제거된다. 영문의 경우 저자명을 기록할 때 성(last name)을 먼저 쓴다. 2행부터는 들여쓰기를 해야 한다.
 -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 전환기 ‘북한적’ 정치현상의 재인식』. 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6.
 - Suh,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 김용현. “로동신문 분석을 통한 북한정치 변화 연구: 1945-1950.” 『북한연구학회보』, 제7권 1호 (2003), pp. 107~128.
 - Macdonald, Donald S. “American Imperialism: Myth or Reality?”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0, no. 3 (Fall 1986), pp. 575~583.

북한연구학회 연구윤리 규약

전 문

북한연구학회는 각종 연구활동 및 학술교류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북한 및 통일 연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연구윤리 규약은 본 학회 회원이 각종 연구활동과 학회 목적에 맞는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회원들은 학술 연구수행 및 연구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가치를 상호 인정 및 공유하고, 바람직한 학술적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특히 수준 높은 학술지 발간으로 연구윤리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연구논문의 저자는 물론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약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의를 이루기 위해 연구윤리 규약을 세우고 모든 회원들이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제1장. 학회 활동 윤리규약

제1조 윤리규약 서약

북한연구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약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약의 발효 시 윤리규약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윤리규약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약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약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약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회장단 및 이사회에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약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약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약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약 위반이 된다.

제6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약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약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약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9조 윤리규약의 수정

윤리규약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약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학술지 윤리규약

제1절. 저자의 윤리규약

제1조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결과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2조 출판 업적

-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3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 (1)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의 윤리규약

제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의 윤리규약

제1조 심사위원은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제1조 기타세부사항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을 준용한다.

편집위원

위원장 김 연 철 (인제대)

위원	김 성 수 (성균관대)	정 은 미 (서울대)
	신 정 화 (동서대)	고 경 민 (제주대)
	김 성 경 (북학대학원대)	송 영 훈 (강원대)
	최 지 영 (한국은행)	박 찬 석 (공주교대)
	박 정 진 (일본 쓰다쥬큐대)	
편집간사	윤 무 근 (인제대)	

북한연구학회보 [제21권 제1호]

2017년 6월 28일 인 쇄
2017년 6월 30일 발 행

발행처: (사) 북한연구학회

발행인: 김 석 향

편집인: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포스코관 연구동 110호
(사)북한연구학회

• E-mail: nk-study@naver.com

• Homepage: www.kanks.org

인 쇄: 도서출판 한학문화 02-313-7593

ISSN 1229-1161

(비매품)
